

# 자 례

회덕의 현감

○ 발간사 : 송성현 대덕문화원장 —	1
○ 격려사 : 정용기 대덕구청장 —	2
○ 축 사 : 이재현 대덕구의회 의장 —	3
○ 머리말 : 성봉현 —	5
I. 조선시대 수령제와 회덕현감 —	7
II. 회덕현의 현감 —	35
III. 회덕현감 관련 자료 —	175
IV. 회덕현감과 대덕군수 및 구청장 —	301
V. 참고문헌 —	321

## 발 간 사

大德區는 大田의 大자와 懷德의 德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고장의 뿌리인 懷德은 일찍이 고려 명종2년(1172년)부터 懷德縣이라는 이름으로 수령이 파견되었고, 조선의 태종13년(1413년)에는 주위의 군소현을 통합하면서 懹德縣에 縣監을 두어 고을을 다스리게 하였다 합니다.

당시 공주진관에는 공주, 부여현, 석성현, 은진현, 니산현, 연산현, 진잠현, 연기현, 전의현, 회덕현등이 있었으며, 지리적인 범위로 볼 때 회덕현은 현재 대전과 충청일원의 중심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 현이 소재하였던 지역에는 역대 현감의 부임과 퇴임 그리고 재직기간의 치적이 담긴 『邑先生案』이 남겨져 있어 당시의 歷史文化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懹德縣에는 그 자료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덕문화총서 11호로 『懷德의 縿監』을 발간하여 회덕에서 현감을 지낸 분들의 행적을 찾아 잊고 지냈던 우리지역의 역사를 회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懹德 縍監을 지낸 분이 몇 분이었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행적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덕의 현감을 지낸 분들을 이렇게나마 찾은 것은 조사와 집필을 맡아주신 성봉현 선생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大德文化의 발양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용기 대덕구청장님과 이재현 대덕구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대덕문화원장 송 성 현

## 격 려 사

우리 대덕구는 유구한 역사위에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담긴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문화의 보고(寶庫)입니다.

일찍이 계족산 주변 회덕현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라고 할 정도로 오랜 세월 지역을 대표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이래 회덕현의 운영실태와 현감을 지낸 분들의 치적과 행적들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회덕의 현감』을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번에 대덕문화원에서 펴낸 대덕문화총서 제11호 『회덕의 현감』은 긴 세월 사료 속에만 묻혀있던 현감들의 삶의 흔적과 당시 지역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해 주고 있습니다.

『회덕의 현감』을 통해 우리의 옛 행정제도는 물론 지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사는 주민들이 지역을 바로 알고, 자긍심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료조사와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남역사문화원 사료조사위원 성봉현 선생님과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대덕문화원 송성현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대덕구청장 정 용 기

# 축 사

대덕문화총서 제11호(회덕의 현감)

“회덕의 현감 발간을 축하드리며”

따뜻한 가정의 참된 의미를 더욱 소중히 느끼게 하는 추운 계절과 함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대덕문화원의 대덕문화총서 제11호 회덕의 현감 발간을 22만 대덕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대덕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회덕현이라는 지방조직이 있었고, 이 회덕현을 통치하는 관직으로 현령, 감무라는 지방관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태종13년에 현감으로 개칭되어 현의 수령으로서 지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무가 주어졌었습니다.

이에 대덕문화원은 지역 고유의 관료 문화를 발굴 보급하고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등 많은 문화 사업을 하여 왔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고장의 전통 문화를 일깨우고자 회덕의 현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사적 역사서는 우리 지역 전통 역사를 바로 알고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증거에 의해 사실만을 기록해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우리 대덕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 홍보하는 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덕의 현감을 지내신 인물은 조선후기 문관으로 사헌부 장령을 지내신 농은(農隱) 윤추(尹推)선생과 역시 조선시대 문관출신 의병장이던 죽천(竹川) 박광전(朴光前) 선생, 그 외에도 강세정, 김현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하는 일은 우리 고장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온 구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전해 내려질 수 있어 참으로 보람되고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덕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향토조사 및 발간·문예·민속·교육·축제 사업이 구민 모두가 찬란한 문화를 꽂피우며,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그 동안 발간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송성현 대덕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덕문화총서 제11호 회덕의 현감이 부디 우리 고장의 향기와 뿌리를 널리 알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월

대덕구의회 의장

## 머 리 말

조선은 중앙집권제이어서 중앙에서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이란 “守土養民曰守 奉而行之曰令”라하여 토지를 지키고 백성을 양성하며,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수령은 국왕을 대신하여 각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으로 정치·행정·군사 등 제반 권한을 가졌다. 따라서 국왕은 수령의 임명에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왕은 새로 제수되어 지방으로 부임하는 수령을 직접 인견(引見)하고,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 하였다.

수령이 목민관으로서 집행하는 행위는 백성들의 생활과 참으로 밀접한 관계였다. 따라서 백성들도 수령의 행적에 따라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등을 세워 그를 기리었다. 회덕현의 경우에도 14기의 선정비가 대덕구 읍내동 동사무소 앞에 전해오고 있으며, □□회덕읍지□□ 「명관」조에도 회덕현감으로 재임중 선정을 베풀 1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군현에서 수령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할 수 있다. 때문에 각 군현의 □□읍지□□ 등에는 그 고장 역대 수령들의 「읍선생안(邑先生案)」을 작성하였다.

「읍선생안」이란 조선(朝鮮)의 각 관아(官衙)에서 전임(前任) 관원(官員)의 이름, 직명(職名), 생년월일(生年月日), 체직사유, 재임일수 등을 기록한 책이다.

회덕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우술군(雨述郡)이었고, 통일신라시에는 비풍군(比豐郡)이었으며, 고려시대에 회덕현으로 개칭하고 명종 2년(1172)에 감무(監務)을 두었던 곳이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태종 13년(1413)에 군소 현를 통합하면서 회덕현에 현감을 두었다.

이처럼 회덕은 고려시 명종 2년에서부터 수령인 감무가 파견되기 시작하여 조선에서는 현감(종6품)이 파견된 곳이다. 따라서 회덕현에도 인근의 진잠현(鎭岑縣)이나 은진현(恩津縣)의 선생안이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실려있는 것처럼 회덕의 역대 현감을 기록한 「읍선생안」이 있어야 하지만, □□회덕읍지□□에는 물론 기타 다른 기록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덕구는 조선시대 회덕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한 자치구이다. 그럼에도 회덕현만 「읍선생안」이 없다는 것은 회덕현 그리고 대덕구 역사의 한 부분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대덕문화원에서는 회덕현의 역사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역대 현감을 파악하여 회덕현 「읍선생안」의 복원을 필자에게 의뢰를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필자 개인의 능력으로는 힘에 부친 일이나, 최근 국학계의 많은 노력으로 편년사서는 물론 많은 문집 등이 전산화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회덕현 「읍선생안」을 복원하는 작업은 그간 우리 학계의 역사 자료 전산화 작업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회덕현감은 한국학의 데이터베이스가 더욱 집적되면, 더 많이 찾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찾은 회덕현의 현감은 1430년(세종12) 윤12월 12일에 회덕에 현감으로 제수된 박성치(朴成治)로부터, 대한제국기인 1917년(융희3)에 회덕군수로 재임하였던 강원노(姜元魯)까지 모두 187명이었다. 필자는 사료를 바탕으로 찾아진 회덕현의 현감들을 재임 시기별로 나열하고,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 재임시기, 체직일, 과거경력, 회덕현감으로서의 행적, 현감 개인의 이력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이 작업은 대덕문화원의 원장님과 사무국장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의 양승률 학예사도 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회덕현 수령을 찾아 도와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작업에서 미처 찾지 못한 회덕현의 현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기로 하고, 널리 양해를 구한다.

2007년 8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성 봉 현

대덕문화총서제11호

## 조선시대 수령제와 회덕현감





# I. 조선시대 수령제와 회덕현감

## I. 조선 전기의 수령제와 회덕

일반적으로 수령은 군수(郡守)·현령(縣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각군현의 관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守土養民曰守 奉而行之曰令”라하여 토지를 지키고 백성을 양성하며,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각 군현에 파견된 지방장관을 수령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구획은 각 도(道) 밑에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으로 구분 되어 있었다. 도를 제외한 각 군현에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장관을 각각 부윤(府尹: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정3품)·목사(牧使: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종3품)·군수(郡守:종4품)·현령(縣令:종5품)·현감(縣監:종6품)이라 하였는데, 이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수령이다.

조선의 건국후 군현제 정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태조 3년(1394) 정도전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정도전은 개성(開城)·평양(平壤)·영흥(永興)·완산(完山)·계림(鶴臨)을 고쳐 삼경유후사(三京留後司)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호부(大都護)로 강등시키고, 목(牧)중에서 오래되고 큰 것은 대도호(大都護)로 승격시켜 지부(知府)라 하고, 새로운 목(牧)과 소도호(小都護)를 지주(知州)로, 지관(知官)을 지군(知郡)으로, 현령(縣令)·감무(監務)을 지현(知縣)으로 칭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건의는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상하를 일정하게 하여 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 6년(1406)에도 유사한 건의가 있었지만 실시되지 못하였다.

태종 13년(1413) 10월에는 군량화보와 지방재정을 절약하기 위하여 용관(冗官)을 정리하고, 영길(함경)도를 제외한 7도에 소재한 34개의 소현(小縣)을 17현으로 병합하고 하나의 부곡과 향, 2개의 속현을 이속시켜 4현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군현의 명칭도 각도의 단부(單府)를 도호부(都護府)로 감무(監務)를 현감(縣監)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단부에서 도호부로 개정된 읍(邑)은 경기 7, 경상 3, 전라 4, 황해 1, 강원 3, 평안 1로 모두 19개 도호부이었다.

그리고 감무에서 현감으로 개칭된 읍은 경기 13, 충청 27, 경상 18, 전라 8, 황해 4, 강원 8, 평안 1 등 모두 79개 현이었다. 이때 충청도에서도 아래의 27개현이 감무에서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음성(陰城)·연풍(延豐)·제천(堤川)·영춘(永春)·목천(木川)·죽산(竹山)·청안(青安)·직산(稷山)·평택(平澤)·영동(永同)·회인(懷仁)·진천(鎭川)·비인(庇仁)·정산(定山)·홍산(鴻山)·연산(連山)·회덕(懷德)·진잠(鎭岑)·부여(扶餘)·해미(海美)·당진(唐津)·덕산(德山)·예산(禮山)·청양(青陽)·보령(保寧)·결성(結城)·대흥(大興)

즉 회덕현의 경우도 태종13년 10월부터 수령의 호칭이 감무에서 회덕현감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감무를 현감으로 바꾼 것은 당시 감무가 설치된 현(縣)보다 큰 현에 파견되었던 현령(縣令)과 구분하고, ‘지군사(知郡事)’와 마찬가지로 ‘감현사(監縣事)’의 뜻을 갖기 때문이었다.

태종 14년(1414)년 12월에도 경상도와 경기도·황해도의 몇몇 소현을 병합하는 동시에 현명을 개정하였다. 태종 16년 5월에는 제주도의 행정구획을 개편하여 17현을 개편하여 제주 본읍과 대정(大靜)·정의(旌義) 양현으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태종대의 소현병합(小縣竝合)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직을 강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태종은 종래에 수령의 임무를 유덕자(有德者)에 의한 지방민의 교화(敎化)로 여겼던 것에 반하여, 수령을 왕권의 부지자(扶持者)로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의 징수자로 보았다. 이러한 태종의 지방제도 개혁과 수령권의 강화는 서울의 경재소와 연결된 재지세력의 완강한 반대로 태종 18년경에는 거의 이전의 모습으로 환원되었다.

세종대에는 왕권강화와 중앙집권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잣은 수령의 교체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세종5년(1423)에 종래의 수령 임기 30개월을 60개월(六期法)으로 연장하는 수령구임법(守令久任法)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간의 잣은 수령의 교체로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려 한 것이었으나, 군현수령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세종은 군현수령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군현 병합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세종을 이은 세조대에도 동왕 2년(1456)에 군현병합의 사목까지 작성하여 8도의 감사에 하달하였으나, 역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조선 초기 소현병합 정책의 배경은 국가가 지방을 효과적으로 지배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활해서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내를 주부·군현으로 구획하여 군현끼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초기 소현병합 정책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조선초기 중앙집권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남부 6도에는 각 읍마다 강력한 재지세력이 존재하였다. 이들 재지세력들은 자신들의 재지에서 영향력이 읍호의 승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존재이었다.

따라서 이들 재지세력에게 자신들의 읍이 병합되거나 혁파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토착적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소현병합 정책을 방해하였다. 특히 15세기 까지 주현에는 경제소와 유향소를 구성한 토성사족과 유향품관이 있었고, 또한 경저리·영리·읍리 등으로 연결된 향리세력이 서울과 시골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토성사족과 유향품관들과 향리세력들이 소현병합 정책에 강력히 저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각 군현의 대소에 따라 수령의 품질(品秩)이 세종 13년(1467)에 규정되었다.

군현명칭 (郡縣名稱)	유수부 (留守府)	대도호부 (大都護府)	목(牧)	도호부 (都護府)	군(郡)	현(縣)		
품질	종2품	정3품	정3품	종3품	종4품	종5품	종6품	
수령 명칭	□□세종실록□□ 13년 정월조	유수사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지군사	현령	현감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조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이때 정해진 수령들의 품질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용되었고, 이후 지방 수령들의 명칭과 품질은 큰 변화 없이 1850년 한말이전까지 계속되었다.

충청도의 경우 태종 13년(1413)에 조정된 도의 영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도명은 도의 계수관(界首官)인 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홍주(洪州)등의 읍격이 승강함에 따라 충청(忠淸)·공청(公淸)·공홍(公洪)·충홍도(忠洪道) 등으로 개칭이 빈번하였다.

조선초기 충청도의 군현은 목 4, 군 11, 현령 1, 현감 39개소 등이었고, 이후 조선후기 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조선초기 회덕현은 공주 진관에 속해있던 공주(公州), 부여현(扶餘縣), 석성현(石城縣), 은진현(恩津縣), 니산현(尼山縣), 연산현(連山縣), 진잠(鎭岑縣), 옥천군(沃川郡), 회덕현(懷德縣), 연기현(燕岐縣), 전의현(全義縣)" 등에 하나 이었고, 회덕현의 수령은 종6품 현감이 담당하는 지역이었다.

조선 초기에 확립된 지방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체제에 포함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개화기인 1895년 1월 11일에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전국에 23개 부(府)와

331개의 군(郡)을 두었다. 행정구역변경으로 종래의 현감이 군수로 바뀌었다. 회덕현의 경우도

- ① 이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황간 현감(黃潤縣監) 송창로(宋昌老), 평택 현감(平澤縣監) 이종욱(李鍾郁),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규서(李圭瑞),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 (1894) 11월 17일(기축))
- ② 외부 협판 윤치호(尹致昊), 회덕 군수(懷德郡守) 이규서(李圭瑞), 신녕 군수(新寧郡守) 권재기 (權載紀), 한산 군수(韓山郡守) 백낙형(白樂亨)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2년 을미(1895) 11월 8일(갑진) 맑음)

①에서처럼 이규서는 고종 31년(1894) 11월년에 회덕현감으로 도임하였다가, ②에서처럼 고종 32년(1895) 11월 8일에는 회덕군수로 칭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규서는 1984년 11월에 회덕현감으로 도임하였다가, 1895년 1월 11일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회덕군수가 되었던 인물이다.

조선초기 회덕은 태종 13년 10월에 수령의 명칭이 감무에서 현감으로 개칭되었고, 수령의 품관은 총 6품이었다. 조선초 태종 13년에 확정된 행정체계는 큰 변화 없이 한말까지 계속되다가, 1895년에 행정구역명의 변경에 따라 현이 군으로 바뀌었고, 수령의 명칭도 현감에서 군수로 바뀌었다. 따라서 회덕의 경우도 회덕현에서 회덕군으로 개칭되었고, 수령도 현감에서 군수가 되었다.

## 2. 수령의 선임(選任)과 도임(到任) 과정

수령은 국왕을 대신하여 지방의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이다. 목민관으로 수령은 그 인품이나 능력이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수령의 임명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왕도 새로 제수되어 지방수령으로 부임하는 수령을 직접 인견(引見)하고 그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정공신(鄭公慎) …(중략)… 회덕 현감(懷德縣監) 노진해(盧晉諧)·송화 현감(松禾縣監) 한자이(韓自邇)·언양 현감(彦陽縣監) 변종제(卞宗悌)·영춘 현감(永春縣監) 오척

(吳偶)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선무(先務)이다. 너희들은 생각하여 하라. 또 이제 북방(北方)이 허약(虛弱)하므로 남쪽 백성을 옮겨다 채우니, 군정(群情)이 소동(騷動)하여 내가 매우 염려한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몸 받는다면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22일(병진).”

에서와 같이 회덕 현감(懷德縣監) 노진해(盧晉諧), 송화 현감(松禾縣監) 한자이(韓自邇) 등이 임지로 출발하기 위하여 하직할 때 세종은 이들 수령들을 인견하면서 새로 부임하는 수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들 수령들이 모두 남쪽의 고을에 수령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북방(北方)이 허약(虛弱)하므로 남쪽 백성을 옮겨다 채우니, 군정(群情)이 소동(騷動)하여 내가 매우 염려한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몸 받는다면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들이 부임하는 곳에서 급선무를 당부하였다.

## 1) 수령의 천거와 제수

조선초기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현병합 등을 실시하여 군현제를 정비하였고, 군현제의 제도적인 정비을 한 다음에 국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할 수령을 임명하였다. 조선시대 지방통치관이었던 수령은 관찰사의 관할 아래 각 고을의 통치를 전담하는 부윤(府尹:종2품),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정3품), 목사(牧使:정3품), 도호부사(都護府使:종3품), 군수(郡守:종4품), 현령(縣令:종5품), 현감(縣監:종6품) 등이었다. 조선초기에 확정된 수령들의 숫자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의 「吏典」에는 부윤 4, 대도호부사 4, 목사 20, 도호부사 41, 군수 82, 현령 34, 현감 141개소 등 총 329자리였다.

이렇게 329개소나 되는 수령의 자리를 문무과 출신자로 만 충당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조선의 문신들은 내직(內職) 만을 중시하고, 외직(外職)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 외직의 수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피하였다. 외직기피 풍조는

전일에 민번(閔蕃)이 회덕 현감(懷德縣監)의 수망(首望)으로 추천되었는데, 민번이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내가 아뢰기를, 「민번이 현재 가례도감(嘉禮都監) 낭관으로 있으니 낙점(落點)이 되더라도 반드시 도로 옮길 것입니다」 하여 마침내 강희신(姜熙臣)에게 낙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정사(政事)에 민번이 보은 현감의 망에 들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더 하고 싶어 나에게 부탁했으나 내가 응하지 않으며, 「회덕 현감(懷德縣監)을 하려고 했으니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종실록□□ 5권, 中宗 3년(1508 무진 3년 4월 17일 갑신)

에서처럼 민번이 회덕현감의 수망으로 추천되었으나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낙점되어도 반드시 다시 옮길 것이라 하고 있다. 이는 선조 문관들의 외직기피 풍조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령직 기피현상을 막기 위하여 세종은 왕 13년(1431) 10월에는 ‘대소조사(大小朝土)와 공신과 2품이상의 자서(子壻)에게는 예(例)에 의거하여 외임을 주고 이를 회피하려는 자는 6년동안 서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세종 22년(1440)에는 조정에서는 6품으로부터 5품이 된 자까지는 수령을 거치지 않았으면 대부(大夫)의 품계인 4품 이상으로 승품할 수 없도록 하고, 4품으로부터 종 3품이 된 자까지는 수령을 거치지 않았으면 통훈대부로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초기 정부는 외임 기피현상으로 적임의 수령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주요 관원들로 하여금 수령 후보자를 천거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대간(臺諫), 육조(六曹)로 하여금 수령 후보자를 천거토록 하였다. 이는 태조 6년(1397)에 편찬된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수용되어 양부(兩府)로부터 현관(顯官) 6품 관원 까지를 천주로 삼아 천거토록 하였다. 세종은 동왕 6년(1424)에 동반(東班) 6품이상과 서반(西班牙) 4품 이상의 관원을 천주(薦主)로 삼아 “智勇過人 可守邊塞者, 公正總名 可備守令者, 譜錄詳明 可處煩劇者”라는 3가지 과목에 1인씩을 매년 한차례 천거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정부는 수령천거 외에도 ‘식년보거(式年保舉)’라는 천거제도로도 수령 후보자를 확보하였다. 이는 동반 6품이상과 서반 4품 이상의 관원들이 7가지 과목에 해당하는 참상관(參上官) 3명과 참하관(參下官) 1명을 천거하는 제도였다. 식년보거의 4번 째 조항이 수령의 적임자를 천거하는 조항이었다.

이러한 수령천거와 식년보거는 성종 16년에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천거조(薦舉條)”에

중앙과 외방의 동서반 3품이상의 관원은 3년마다 정월에 3품에서 무직(無職)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각각 3명을 천거한다. 매년 정월에 동반 3품이상의 관원과 서반 2품이상의 관원은 각각 수령과 만호가 될만한 자(堪爲守令萬戶者)를 천거하되 (천거된 자는) 모두 3명을 넘지 않게 한다. 만약 (천거된 자가) 장오죄(贓汚罪)나 강상윤리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면 거주(舉主)도 아울러 연좌(緣坐) 한다.

라하여 확립하였다. 이 때 수령의 적임자가 천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천거된 자가 장오죄(贓汚罪)나 강상윤리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면 천거한 사람도 아울러 연좌(緣坐) 토록 하였다.

이렇게 연좌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목정사에서 3명의 의망자중 낙점이 된 사람을 천거한 사람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조선후기 도목정사의 기록인 □□정사책□□에는

懷德縣監, ○僕判 洪景厚(進通訓 蔡弘覆薦) 翼令 沈原之, 漢庶 丁載遠정미(□□정사책□□, 정미 9월 30일 (정조11, 1787))

懷德縣監 ○市令 任重白(蔭, 通訓 吳鼎源薦) 樂主 金敬烈 漢主 嚴載(□□정사책□□, 무진 정월 27일 (순조8, 1806))

에서와 같이 낙점자율 천거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좌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령 천거제에 대하여 이조판서 이언적(李彦迪)은 “허다한 군현의 수령을 천거받은 사람만으로 임용한다면 사람의 수가 부족할 것이고, 또한 천거받은 자들이 반드시 유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수령을 주의(注擬) 할 때는 일부는 천거 받은 사람으로 하고 일부는 전조(銓曹)에서 듣고 본 사람 가운데 공론을 참작하여 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령천거의 피천(被薦) 대상에 대해서도 문신이나 무신은 천거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 시종신(侍從臣)이나 대간(臺諫),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을 역임한 자들 외에는 문무과 출신자라도 모두 천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령 천거제는 권문에 청탁하여 무능한 자들이 수령으로 제수되는 경우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전(吏典)이거나 토관(土官) 출신자들의 수령 진출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상급 서리인 성중관(成衆官)은 여말(麗末) 아래의 관례에 따라 수령으로 제수되었다.

그러나 성중관(成衆官)으로 수령에 부임한 인물들은 포폄에서 하고(下考) 받아 파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잣은 수령의 교체는 영송(迎送)의 폐단을 언급할 만큼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수령의 천거와 의망(擬望)의 불공정은 조선후기에는 당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더욱 증폭되었고, 이후 세도정치기를 거치면서 문란은 극에 이르렀다. 그래서 권세있고 요로(要路)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는 천거가 없어도 전관천(銓官薦)을 통해 좋은 관직에 오르고, 한미한 가문의 사람들은 천거를 받고도 의망에서 누락되어 수령으로 선임(選任)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수령으로 천거된 인물 중에서 수령으로 제수하기 위하여 도목정사에는 삼망(三望)이라하여 수망, 차망, 말망 등으로 구분하여 3명이 선정되었다. 이처럼 도목정사에 올릴 최종 삼망(三望)의 선발은

정월 26일 오시 임금이 공묵합(恭默閣)에 어거하셨다. 추판(秋判)·대신·호판·혜당동이 입시하였을때, …(중략)… 척기가 말하기를 백성들의 곤궁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구제의 길은 수령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선인 일이 없습니다. 저번에 회덕현감이 거의 년한이 찬 사람에게 미

쳤습니다. 비국에서 망단자를 내려 보냈는데, 이에 십고(十考) 십상(十上)중에 헤아려 삼망(三望)을 들이었는데 민백겸이 수의(首擬)로 수점(首點)되었으나 본현에 전답이 10결이 있어서 체차되었다. 그 대신 또한 마땅히 십고(十考) 십상(十上)이상 인자를 들이되, 10고 10상중에 무고한 자 4인 여를 비의(備擬:官員을 임명할 때 吏曹·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推薦)하던 일) 하니 부족할 근심이 없습니다…(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월 26일 (무신))

라하여 관직에 재임시 포첨이 십고(十考)·십상(十上)이상인 사람 가운데서 선발하였다.

## 2) 사은(謝恩)

수령으로 천거된 인물이 도목정사에서 낙점을 받으면, 부임지의 경주인(京主人)이 제수소식을 제수자와 부임지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였다. 이때 경주인은 새로 제수된 수령에게 제수소식과 더불어 수령직에 임명한다는 고신교지(告身敎旨)을 함께 전달하였다. 고신교지를 전해받은 제수자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국왕에게 사은하여야 하였다. 제수받고 국왕에게 사은하기 까지는 제수자가 지방에 있을 경우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다. 회덕현의 수령에 제수되었던 노희천과 장귀한 경우에는

성명	제수일	사은
노희천(盧希天)	1626.7.18	1626.8.12
장귀한(張歸漢)	1641(인조19).5.20	1641.6.11

위 표에서처럼 노희천은 제수일로 사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3일이었고, 장귀한의 경우도 20일이나 되었다. 그런데 제수로부터 사은 기간은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서울에서 근거리이면 30일이내, 원거리이면 40일 이내에 사은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계달하여 개차한다. □□증□□ 함경북도급삼갑오십일, 육진은 60일을 한정하고, 한정된 기한을 넘기면 계품(啓稟)한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전(吏典)」 ‘제수(除授)’)

라하여 근거리이면 30일이내, 원거리인 경우에도 40일 이내에 사은하여야 했다. 따라서 제수소식을 들은 제수자는 신속히 서울로 올라와 사은하여야 했다.

수령에 제수된 인물이 사은을 하기 위해서는 숙배단자(肅拜單子)을 작성하여 통예원(通禮院) 관원을 통해 국왕께 올리고, 숙배을 하기 위하여 상서원(尙瑞院)에 가서 대기하다가, 명을 받고 승정원 밖에 나가서 세 번 사배(四拜)하였다. 그리고 왕명에 의하여 회정당(熙政堂)에 가서 입시하고 여러 사람들과 당(堂)에 올라 곡배하고, 예방승지가 전교를 받아 관직과 성명을 물으면 부임지와 성명을 아뢰고 곡배하고 물러났다.

### 3) 대간의 서경

수령직을 제수하는 고신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 사은숙배를 하고 나서도, 대간들의 서경(署經)을 받아야 하였다. 서경은 대간(臺諫)들의 고유 권한으로 관료(官僚) 본인의 4조(祖)와 처(妻)의 4조(祖), 그리고 외조 중에서 천인과 혼인한 사실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서경은 양사가 관원 2명을 내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관직제수과정에서 초임자인 경우는 반드시 거쳐야 하였다. 서경은 관직 제수을 받은 사람이 서경단자를 작성하여 양사가 합좌할 때에 올리면 서경단자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다시 서경단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승정일기□□ 등에는 서경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서경이 늦어져 도임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 같은달 26일 진시(辰時), 약방(藥房)이 들어와 진료시, 임금께서 회정당에 어거하셨다. …(중략)… 또 아뢰기를, 회덕은 즉 본도 식년 도회관(都會官)인데, 새로 제수한 현감 정환이 서경(署經)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험기한이 이미 닥쳐서 거행하는 일이 급하게 되었다. 회덕현감정완은 서경을 하지말고 몇칠안에 보내는 것이 어떻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7월 26일 (기묘))

에서같이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서경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 4) 사조(辭朝)

조선후기에 수령으로 제수되고, 서경을 마친 수령은 다시 사조(辭朝)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사조는 수령으로 제수 받는 과정에서 힘을 써준 중앙관직자 들에게 감사하는

절차이었다. 사조의 대상은 □□수교집록(受敎輯錄)□□에 의하면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 육조판서, 양국대장(兩局大將), 시임대간(時任臺諫), 이조당상과 낭청, 비국당상(備局堂上)”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관리들이었다. 이러한 사조는 □□증보문현비고□□에 의하면 10일 이내로 규정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는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갑오(甲午) 7월 9일 유시(酉時),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어거하였다. …(중략)…, 회덕현감 조기현(懷德縣監趙基顯), 강령현감 한영석(康翎縣監韓榮錫) 이 차례로 나와 부복을 마치었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도신(道臣) 입래(入來)하였느냐? 종정(種正) 말하기를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3곳의 수령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수령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시고 그 직 성명을 물으시고, 수령질사를 외우도록 명령하였다. 전교를 내리시길 금일 하교(下敎) 후에 하물며 이시간이겠는가? 장성부사회덕현감 다 명일 사조하도록 명하셨다. (長城府使·懷德縣監, 皆令明日辭朝)。…(하략)。(□□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44) 7월 9일 (경신))

에서처럼 회덕현감 조기현과 강령현감 한영석이 사은할 때에 영조가 수령질사를 외우도록 한 다음에, 명일에 사조도록 명하였다. 이처럼 영조가 신임 수령의 사조를 재촉한 것이나, □□증보문현비고□□에 사조를 1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은 지방에 수령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조시에는 참알가(參謁價)라하여 관청에 얼마간의 돈을 바치었다. 참알 비용은 문경 현감으로 나아간 안창렬의 경우는 175량의 잡부금을 중앙관서에 내었는데, 이는 정목(正木)으로 계산하면 87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영덕 현령의 잡부금은 41량으로 200필에 해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조시 드는 비용은 원래 경주인이 꾸어 주고, 수령이 고을에 부임한 이후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는 부임지 고을의 백성들의 부담이었다. 이러한 참알가의 관행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하였지만, 이는 의례적으로 행해진 관행으로 이해 되기도 하였다.

## 5) 하직숙배(下直肅拜)

하직숙배는 수령이 서울에서 임지로 내려가기 직전에 왕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예이다. 하직숙배의 절차는 사은숙배 때와 같이 통례원에서 숙배단자를 올린 뒤, 숙배명령을 받고 인정전의 뜰에서 하직숙배를 올렸다. 그리고 승정원에 나아가 승지의 자리 앞에서

왕의 선유를 들었다. 조선전기에 세종때에 회덕현감으로 부임하는 노진해와 윤위인에게 세종이 내린 선유는

- ①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정공신(鄭公愼) …(중략)… 회덕 현감(懷德縣監) 노진해(盧晉諧) …(중략)… 하직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선무(先務)이다. 너희들은 생각하여 하라. 또 이제 북방(北方)이 허약(虛弱)하므로 남쪽 백성을 옮겨다 채우니, 군정(群情)이 소동(騷動)하여 내가 매우 염려한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봄받는다면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22일(병진)).”
- ② 지금산군사(知金山郡事) 문여충(文汝忠)과 회덕 현감(懷德縣監) 윤위인(尹爲仁)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농사를 권장하고 형벌을 적게 하는 것이 수령들이 급히 할 일이다. 근래에 하삼도(下三道) 백성들이 북도에 들어가 살도록 추쇄(推刷)하였기 때문에 소요(騷擾)를 일으켰으니, 너희가 직책에 나아가거든 힘써 그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 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병오))

에서와 같이 수령칠사와 관련하여 농상을 권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는 등의 수령 칠사의 내용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승정원일기□□ 등에 자주 등장하는 수령들의 하직 인사 때에는 국왕이 신임 수령의 이력을 물어보고, 수령칠사를 직접 외우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 6) 제수에서 도임까지 기간

조선후기 수령은 제수에서부터 하직하고 고을에 부임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었다. 대체로 얼마마한 시간이 필요하였는지를 회덕현감의 제수와 하직 기사를 통해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명	제수일	사은	하직	기간
노희천(盧希天)	1626.7.18	1626.8.12		
장귀한(張歸漢)	1641(인조19).5.20	1641.6.11		
유성오(柳誠吾)		1660.11.7(사은)	1660.11.22	
이수익(李壽翼)		1661.9.22(사은)	1661.10.16	
허찬(許纘)		1664.11.3(하직)	1664.12.2(하직)	
황진구(黃震壽)	1666.7.26	1666.8.19		
한성보(韓聖輔)	1668.12.26	1669.1.28		

성명	제수일	사은	하직	기간
이민정(李敏政)	1670.1.25	1670.1.28(사은)	1670.2.15	20
반윤기(潘潤沂)	1676.5.5		1676.5.18	13
홍진(洪璣)		1677.7.15	1677.8.4	
이중현(李曾賢)	1678.8.16		1678.8.27	11
이동백(李東白)	1679.4.19		1679.5.22	33
정익주(鄭翊周)	1684.4.12	1684.4.14	1684.5.25	43
이인망(李仁望)	1689.5.14		1689.6.16	32
권태시(權泰時)	1690.10.27		1690.11.17	20
안세징(安世徵)	1694.윤5.21		1694.6.21	30
강석범(姜錫範)	1694.8.19		1694.9.19	30
이연(李縵)	1698.6.24		1698.7.27	33
이정천(李挺天)	1702.3.18		1702.4.23	35
허전(許塚)	1702.9.29	1702.10.5	1702.10.27	28
최침(崔沈)	1713.9.10		1713.9.24	14
조정강(趙正綱)	1715.1.23		1715.2.15	22
강찬(姜纘)	1718.8.11		1718.9.9	28
민창하(閔昌夏)	1720.5.15		1720.6.2	17
서종일(徐宗一)	1723.3.25		1723.4.18	23
이간(李柬)	1725.1.26		1725.2.19	23
유신(柳紳)	1726.1.14		1726.2.10	26
조정속(趙廷漣)	1727.6.13		1727.7.8	25
송국위(宋國緯)	1728.8.26		1728.10.9	43
이상요(李相堯)	1733.6.11		1733.7.12	31
이홍모(李弘模)	1735.8.23		1735.9.19	26
서종협(徐宗浤)	1738.9.25		1738.9.27	2
이덕항(李德恒)	1739.7.2		1739.7.27	25
홍성규(洪聖揆)	1741.7.25		1741.8.15	20
이준(李浚)	1751.2.2		1751.2.28	26
오숙(吳壽)	1754.12.28		1755.2.5	37
임지호(林志浩)	1755.5.29		1755.7.17	48
김윤승(金允升)	1755.10.9		1755.12.23	62
정경순(鄭景淳)	1757.7.18		1757.8.1	13
이득영(李得永)	1762.1.16		1762.2.11	25
김상구(金相龜)	1766.6.5		1766.6.22	17
심정진(沈定鎮)	1777.10.9		1777.11.4	25

위 표는 회덕현감으로 제수일과 하직일 자료상 분명한 경우만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특기 할만 것으로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수령의 경우에 18세기 이후로는 별도의 사은  
 기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 시기 이후에는 사은이 생략되었는지, 아니면 기록이 누락된  
 것인지는 더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표를 통해 회덕현감의 경우에 제수에서부터 하직할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체로 약 평균 26일이다. 그리고 수령의 제수에서 하직까지 가장 적게 걸린 시간이 2일에서 최장 62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수령의 교체 과정에서 지방행정이 상당기간 공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수령의 공백기간은 수령이 제수되고 도임할 때 까지만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전임자가 체직 내지는 파직을 되고, 후임자가 제수될 때 까지도 약간의 공백이 있다. 이러한 공백 기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덕현감으로 전임 현감의 체직일과 신임현감의 제수일 대체로 명확한 자료들만 뽑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전임성명	체직일	후임성명	제수일	
지봉수(池鳳邃)	1639.3.19	조송년(趙松年)	1639.4.4	15
조송년(趙松年)	1641.5.17	장귀한(張歸漢)	1641.5.20	4
김단(金端)	1656.10.19	박명우(朴明宇)	1656.10.21	3
유성오(柳誠吾)	1661.9.18	이수익(李壽翼)	1661.9.22	5
이정기(李鼎基)	1670.1.24	이민정(李敏政)	1670.1.25	1
윤추(尹推)	1683.8.23	심력(沈櫟)	1683.8.24	1
심력(沈櫟)	1683.8.25	정정양(鄭正陽)	1683.8.27	2
권태시(權泰時)	1694.윤5.17	안세징(安世徵)	1694.윤5.21	4
강석범(姜錫範)	1697.4.8	이수만(李綏晚)	1697.5.11	31
유만령(柳萬齡)	1698.6.22	이연(李縵)	1698.6.24	2
이연(李縵)	1702.3.13	이정천(李挺天)	1702.3.18	5
이정천(李挺天)	1702.3.18	임명원(任命元)	1702.9.10	171
임명원(任命元)	1702.9.12	남반(南磐)	1702.9.13	1
강찬(姜纘)	1720.5.11	조명국(趙鳴國)	1720.5.11	0
조명국(趙鳴國)	1720.5.13	민창하(閔昌夏)	1720.5.15	2
유신(柳紳)	1727.윤3.5	조정속(趙廷速)	1727.6.13	98
서종협(徐宗浤)	1739.6.25	이덕항(李德恒)	1739.7.2	7
황호원(黃顥源)	1739.10.12	이익현(李益炫)	1739.10.16	4
홍성규(洪聖揆)	1742.9.15	이언환(李彦煥)	1742.9.21	6
이언환(李彦煥)	1747.11.21?	정운유(鄭運維)	1748.4.18	147
이준(李浚)	1753.2.26	임지호(林志浩)	1753.5.21	85
임지호(林志浩)	1753.5.21	정완(鄭完)	1753.7.18	57
정완(鄭完)	1754.12.21	오숙(吳璗)	1754.12.28	7
김윤승(金允升)	1757.7.2	정경순(鄭景淳)	1757.7.18	16
김리복(金履復)	1758.7.17	민백분(閔百奮)	1758.12.30	163
민백분(閔百奮)	1759.1.22	윤동철(尹東喆)	1759.1.24	2
윤동철(尹東喆)	1759.1.26	조재우(趙載遇)	1759.1.27	1

그런데 위 표에서 지나치게 전임 수령의 체직일과 신임수령의 제수일이 긴 것은 어떤 사정이 있거나, 사료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하여도 대체로 1~7일 정도안에서 다음 수령이 제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새로 제수된 수령이 도임과정에서 평균 26일 정도가 소요 된것을 감안하면 조선후기 수령의 교체 과정에 약 30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수령의 공백기간을 지방행정을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이는 겸임제를 통해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 회덕현의 경우에

① 조지빈(趙趾彬), 비변사 언계로 아뢰기를, 각도 군향을 봉납하지 못한 수령과 변장으로 거말(居末)은 나문(拿問)하고 거아·거삼(居二·居三)은 결장(決杖)한다. 원환상미를 봉납하지 못한 수령과 변장으로 거말(居末)은 결장(決杖)하고, 거아·거삼(居二·居三)은 추고(推考)할 일로。…(중략)… 진잠겸임회덕현감신위(鎮岑兼任懷德縣監柳紳) 거이(居二)가 되었다. …(하략). (□□승정원 일기□□ 영조 3년(1727) 10월 19일 (신축))

② 이석재(李碩載), 의금부 언계로 아뢰기를 …(중략)… 燕岐兼任懷德縣監金相龜, 竝拿來,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8월 3일 (병자))

③ 충청 감사 민영상(閔泳商)이 장계하기를, “옥천 겸임 회덕 현감(沃川兼任懷德縣監) 김병휴(金炳休)의 첨정(牒呈) 내에, …(하략)(□□승정원일기□□ 고종 26년 기축(1889) 3월 5일(경술) 맑음)

①②③에서처럼 회덕현감이 진잠·연기·옥천 등 공주진관내 인접 고을의 현감을 겸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령의 교체과정이나 수령의 급가(給暇) 등으로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겼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 3. 수령의 입사로(入仕路)

조선시대에는 각관읍별(各官邑別)로 문과(文窠) 무과(武窠) 음과(蔭窠) 등 어떤 입사로(入仕路)로 출사한 인물이 수령직을 담당하는지가 유형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여지도서(輿地圖書)□□ 관직조(官職條)에 각 군현별로 상세하게 실려 있다. □□여지도서□□ 관직조에는 각 군현 수령들의 입사로 문과(文窠)·무과(武窠)·음과(蔭窠)·문무교차과(文武交差窠)·문음무교차과(文蔭武交差窠) 등 6유형이 있었다.

회덕현이 속해 있던 공주진관 수령들의 입사로와 품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군현	수령	입사로와 품계	군현	수령	입사로와 품계
公州	觀察使兼 巡察使	文二品	連山	縣監	蔭六品
公州,	判官	蔭五品	鎮岑	縣監	蔭六品
扶餘	縣監	蔭六品	沃川	郡守	蔭從四品
石城	縣監	蔭官從六品	懷德	縣監	蔭六品
恩津,	縣監	蔭六品	燕岐	縣監	蔭六品
尼山	縣監	蔭六品	全義	縣監	文陰六品

에서처럼 공주진관에 속해있던 현감은 부여의 6품관과 전의의 문음6품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 6품직이다. 여기서 ‘蔭’은 즉 음관을 의미하므로, 음서로 출사한 인물들이 수령직을 담당하였다. 충청도의 전체 수령을 입사로 별로 나무면 문과 13개소, 무과 4, 음과 37개소 등으로 음과 출신이 대단히 많았다. 이는 충청도 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즉 전국적으로 문과 출신자가 담당하는 수령직이 29%, 무과 출신이 담당하는 곳이 28%, 음과 출신이 담당하는 고을이 42% 등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수령직은 음과 출신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과는 삼남(三南)과 관동(關東)지역에 많았고, 또한 감영이 소재하여 판관(判官)이 임용되는 곳의 예하의 수령은 음과 출신자가 담당하였다. 즉 공주가 판찰사겸 순찰사가 있는 감영이었고, 아울러 영하읍(營下邑)으로 공주에는 판관(判官)이 두어졌던 곳이다. 따라서 공주진관에 속해있던 회덕을 비롯한 10개 현은 모두 음과(蔭窠)로 음관(蔭官)이 수령으로 배치되는 곳이었다.

본 조사에서 확인한 회덕의 수령은 187명이다. 이 가운데 문무과급제가 확인된 인물은 13명이고, 이들 중 생원·진사에 입격후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7명이다. 13명의 문과 급제자로 회덕현감에 제수된 인물들의 문무과 급제시기를 보면 15세기가 3명, 16세기가 5명, 17세기 3명, 18세기가 2명 등이다. 즉 매우 적은 사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5-16-17세기 까지는 회덕현감으로 일부 문과급제가 제수되었다.

그리고 생원·진사에 입격후 회덕현감에 제수된 경우는 50명이다. 회덕이 음과 출신자가 수령으로 제수되는 현이었으므로, 생원·진사에 입격후 천거나 음관으로 회덕현감에 제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째든 회덕현감의 경우에 27%정도가 생원·진사 입격자가 현감으로 제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사료상으로 생원·진사의 입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한하여 통계를 낸것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조선시대 생원·진사시가 초입사로의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덕의 현감 중에서 사료상으로 입사로가 음관으로 표기된 인물은 6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 나의 큰외삼촌 심공(沈公)의 휘는 정기(廷耆), 자는 태수(台叟)이다. …(중략)… 외직으로는 회덕현감(懷德縣監), 온양삭녕군수(溫陽朔寧郡守)을 지냈는데 모두 음직사로(蔭路)로 공이 즐겨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곳 저곳 관직생활 16년에 마침내 을해년(乙亥:1695)에 4월 25일 삭령(朔寧) 임소에서 돌아가셨다. (염현집(恬軒集) 권18(卷之十八) 묘갈명(墓誌銘) 백구삭녕군수심공묘지명 병서(伯舅朔寧郡守沈公墓誌銘 幷序))

② 서원보가 아뢰기를, “성상의 은혜로 편안히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신이 하찮은 음관(蔭官)으로서 평소 학식과 재주가 없어 성상의 명을 잘 받들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드문 은혜를 전후로 받았으므로 송구스러워 양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중략)…상이 이르기를, “참찬관은 누차 지방 수령을 거쳤는데 몇 곳이나 되는가?” 하니, 서원보가 아뢰기를, “회덕(懷德), 천안(天安), 무안(務安), 서흥(瑞興) 등 네 곳인데, 서흥에 있을 때에 특별한 은총으로 해백(海伯)에 제수되었습니다.”하였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계유(1873, ) 5월 17일(갑오) 막음)

①에서처럼 1695년에 심정기가 음직사로인 회덕현감에 재임하였으며, ②에서처럼 1873년(고종 10)에 서원보가 음관으로 회덕현감으로 제수되었다. 이를 뿐만 아니라 이간(李幹)과 정효성(鄭孝成)도 음관으로 회덕수령에 도임하였다.

회덕현의 수령은 음과 출신자가 제수되는 고을이었다. 회덕현 수령으로 조사된 187명 가운데 문과 출신자는 7명, 무과 출신자는 1명, 생·진 출신자는 50명, 음관은 6명, 기타 124명은 출신사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수령이다. 회덕현의 경우 수령의 입사로가 파악된 경우로만 제한하여도 생·진시 입격자의 회덕수령 제수가 약 27% 정도나 된다. 이는 생·진시가 초입사로의 성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수령의 임기

조선 초기 수령의 임기는 태조 1년(1382) 8월에

수령(守令)의 전최법(殿最法)을 제정하였다. 무릇 대소(大小) 목민관(牧民官)들은 모두 30개월로써 1고(考)208)로 삼고 임기가 차[考滿]서 대체(代遞)된 뒤에 경력(經歷)한 녹봉(祿俸)의 달[月]을 계산하여, 같은 부류를 선발해서 승진 제배(除拜)에 빙고(憑考)하고, 그 수령(守令)의 욕심이 많고,

잔인 포학하고, 무능하고 유약하고, 게으르고 용렬하여, 직무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각 도의 감사(監司)가 그 실상을 조사하는 데 따라, 모두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게 하고, 이내 본도(本道)의 한량관(閑良官) 내에 공평하고 근실하고, 청렴하고 재능 있고, 재주와 덕망이 다 갖추어진 사람을 추천해 뽑아서 임시로 〈사무를〉 대리하게 하고, 예수(禮數)로써 임명하여 공무를 집행하게 하며, 직명(職名)을 위에 보고하여 계문(啓聞)에 빙고(憑考)하게 해서 제수(除授)하고, 그 덕이 있고 재능이 있어 공적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재임(在任)에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쓰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1392 임신) 8월 2일 신해)

라하여 대소의 목민관(牧民官)의 임기를 30개월로 정해졌고, 이 때 정해진 외방 수령의 30개월 임기는 태종때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30개월의 임기조차 다 채우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다. 예컨대 조금 시기가 늦은 경우이지만 회덕의 경우에도

승지 강구손(姜龜孫)이 호조에서 아뢴 회덕현(懷德縣)의 포흡(逋欠)을 징수하는 일을 아뢰기를, …(중략)… 겨우 부임[上官]하였다가는 곧 사면하여 버리니, 30여 년간 임기를 채운 자는 우계로 (禹繼老) 한 사람 뿐인데, 해유(解由)에 관계되어 폐출당해 다시는 벼슬하지 못하였으며, 그후로는 비록 어진 관리가 있더라도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략)(□□연산군일기□□ 21권 연산군 3년 (1497) 2월 5일(정축))

라하여 30년간 임기를 채운 수령이 우계로 한사람 뿐이라고 언급한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조 수령의 임기를 30개월로 정한 것은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를 표방한 조선 왕조로서는 재지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즉 수령의 임기가 너무 길면 토착세력과 결탁하거나 혹은 수령자신의 세력기반을 임지에 뿌리 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자, 세종대부터는 수령의 임기를 60개월(六期法)로 연장하여 너무 잦은 수령의 교체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 요인을 제거 하려고 하였다.

세종·문종·단종대에 실시되었던 육기법(六期法)은 수령 임기의 장기화로 피해 또한 적지 않아, 세조는 다시 30개월로 그 임기를 단축시키었다. 수령이 그 직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니 백성을 궁핍하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여 도리어 게으른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수령의 임기는 성종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와서는 관찰사도사(觀察使·都事) 360일,

수령 1800일, 당상관(堂上官) 및 미설가수령(未掣家守令)과 훈도(訓導)는 900일이면 체직하도록 하였다. 이후 조선후기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수령이 한 읍에서 재직해야 할 임기가, 당하수령(堂下守令) 30개월, 당상수령(堂上守令) 20개월, 변지수령(邊地守令) 12개월, 시종수령(侍從守令) 15개월이 되었다.

이와 같이 □□경국대전□□에 정해진 수령의 임기는 정확하게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 전라도 지방의 선생안(先生案)을 분석하여 보면, 전라도 6개읍 수령들의 평균 재직월수는 화순현(和順顯)이 29.5개월, 동복현(同福縣)이 25.3개월, 고부군(古阜郡)이 18.5개월, 진천현(鎭川縣) 24.2개월, 은진현(恩津縣)이 26.4개월, 금산군(金山郡)이 28.7개월 등으로 6개읍 모두 30 개월의 수령임기가 잘 지켜 지지 않았다.

이처럼 임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첫째로는 파직제도(罷職制度)와 관련이 있다. 조선에서 수령의 파직을 규정하고 있는 공죄명목(公罪名目)이 매우 많았고, 실제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국왕을 대리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직의 중요성으로 그 책임도 엄격히 물은 결과이다. 그러나 수령의 임기제나 파직제가 효과적인 지방통치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상반된 모순으로 수령임기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 왕조는 사죄(私罪)가 아니고 공죄(公罪)로 파직된 경우는 이조에서 시임(時任)이나 전임(前任)을 구분없이 취사(取捨)하였기 때문에 수령직에서 파직되었다 하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경직(京職) 등의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회덕현의 경우 187명의 수령 가운데 사료상으로 재임중 파직을 확인할 수 있거나, 사료상 파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0명이다. 그런데 필자가 작성한 회덕현의 선생안은 수령들의 부임일과 체직사유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여러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파직된 수령의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여부에 따라서는 회덕 현감직에서 파직된 수령의 숫자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점을 감안하면 회덕현의 경우도 파직이 임기를 지키지 못하게 한 원인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둘째 원인은 수령구임제(守令久任制)와 중내경외(重內輕外)의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외직 경시 풍조는 조선 전기이래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많은 외임의 수령들이 사직하였고, 사직자도 다시 멀지 않아 내외직으로 기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 수령들의 사직율을 높이는 이유가 되었다. 실례로 김명렬이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재임하던 1669년 1년동안 5차례나 체직이나 파직을 요구하였고, 송요화는 1736년에서 1751년 사이에 5번이나 파직이나 체직을 요구하는 정사 소지를 내었다. 이처럼 김명렬이나 송요화가 외방수령으로 체직이나 파직을 자주 요청하였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이 체직이나 파직이후에도,

어렵지 않게 경관직 내지는 외관직을 다시 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셋째의 원인은 부모상의 경우에 대한 체직(遞職)의 제도적인 허용과 자신의 중병인 경우에도 파직을 요청하였다. 회덕현의 수령도 10명이 부모상 및 자신의 중병을 이유로 파직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있다. 그리고 허전·조이숙 등은 회덕임소에서 사망하여 천전하기도 하였다.

어째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령들의 임기가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회덕현의 경우에 조사된 187명의 수령가운데 재임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임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49명이다. 재임기간의 파악할 수 있는 49명의 수령도 대체로 19세기 이후에 회덕에 수령으로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덕수령으로 재임기간이 제일 긴 경우로 이간(李幹)으로 2,160일이고,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는 제수되었으나 실제로 부임하지 않고 여러 사정으로 바로 체직한 경우이다. 어째든 회덕에 부임한 수령들 가운데 제수일과 체직 일을 알수 있는 49명의 평균 재임 일수는 약 512일이 된다.

이는 매우 제한된 자료로만 통계치를 내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회덕현감의 평균재임 기간은 전라도와 비교해도 매우 짧다. 이처럼 짧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정확한 재임기간을 파악할 수 없는 수령들이 대부분이고, 재임일수 가 파악된 경우라도 그 정확성이 의심되는 통계상의 한계일 수도 있다. 어째든 오차를 감안해도 회덕의 수령들의 재임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회덕현감의 재임기간이 짧은 원인에 대하여 비록 조선전기의 사례이지만

승지 강구손(姜龜孫)이 호조에서 아뢴 회덕현(懷德縣)의 포흠(逋欠)을 징수하는 일을 아뢰기를, “성종조에 간원(諫院)이 경연(經筵)에서 회덕은 잔폐(殘廢)하여 포흠이 매우 많고, 이 때문에 고을의 원이 서로 잇따라 폐출(貶黜) 당함을 아뢰었는데, 성종께서 좌우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신이 그 폐단을 갖추어 알았으므로 하나하나 진술하여 아뢰었는데, 성종께서 특별히 해조(該曹)에 상의하게 하여 미수된 전세(田稅)를 바로 본현에 납입하도록 특별히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을이 조잔하고 피폐함이 이미 심하고 아전[人吏]과 노비도 적으로 고을의 원으로 임명된 자들은 시행 조처할 만한 계책이 없음을 알고, 겨우 부임[上官]하였다가는 곧 사면하여 버리니, 30여 년간 임기를 채운 자는 우계로(禹繼老) 한 사람 뿐인데, 해유(解由)에 관계되어 폐출당해 다시는 벼슬하지 못하였으며, 그후로는 비록 어진 관리가 있더라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포흠을> 독촉해서 징수하려 한다면 폐단만 더욱 심해지고, 끝내는 징수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포흠을 감면하여 소복(蘇復)하게 하소서.” 하니, 드디어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감면해 주었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군 3년(1497) 2월 5일(정축))

에서와 같이 고을이 잔폐하여 포흡이 매우 많아 고을의 원이 잇따라 펌출 당하였고, 그리고 고을이 조찬하고 피폐함이 심하고 아전과 노비도 적어 고을의 원으로 임명된 자들이 시행할 계책이 없어 부임하였다가 곧 사직하여 30년간 임기를 채운 자가 한 사람 뿐이었다는 것이다. 회덕현의 수령의 임기는 고을이 잔폐하고 피폐하여 펌출과 사직이 많았던 것이 수령들의 재임 기간을 짧게 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 5. 수령의 포폄(褒貶)

조선초기부터 수령은 감사의 고과(考課)에 따라 파직되기도 하였다. 조선초기 수령의 고과는 태종때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여 세조때에는 수령고과기준이 강화 되었다. 「속육전(續六典)」 및 세종 5년(1423)에는 10고(考)에 5중자도 파직되지 않던 것이 세종 14년(1432). 세조 2년(1456)에는 연(連) 3중자 파직, 성종 2년(1471) 이후로는 연 3중이 아니라도 10고(考) 3중(中)이면 파직되었다. 당상관수령은 1중(中)만 되더라도 교체되었으며 이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 되었다. 그리고 가자(加資)의 범위도 점점 줄어들어 단종조 이후로는 10고(考) 10상(上)을 받은 자만 가자되거나 우직(右職)을 제수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관(京官)은 그 관아 당상관 제조 및 속한 조(曹)의 당상관이 하고, 외관은 관찰사가 매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차례를 정해 아뢴다. 10고(考)인 자로 10상이면 상(賞)으로 일계(一階)를 더해 주고, 이중(二中)은 무록관에 서용하고, 3중(三中)은 파직한다. 5고·3고·2고인 자와 일중(一中)은 우직(右職)을 제수받을 수 없다. 이중(二中)은 파직한다. 당상관 수령은 일중(一中)도 파직한다.

라고 고과기준이 성문화되어 있다. 회덕의 경우에도

또 함평 현감(咸平縣監) 홍계생(洪季生)은 일찍이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있다가 삼중(三中)으로 파직된 지 이미 두 세 해가 되었고, 이제 나이 67세로 치사(致仕)할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조(吏曹)에서 천거해서 서용(敍用)한 데에는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추국(推鞠)하고 아울러 홍계생을 파직하소서.”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1473) 1월 8일 기해)

라하여 홍계생이 삼중으로 파직된 사례가 있다. 수령은 관내에 대사건, 특히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수령이 책임을 지고 파면되었다.

회덕현감으로 파직된 인물들의 파직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시기	성명	파직사유
1440(세종22)	박염(朴恬)	회덕의 관물 10관을 도둑질
1443(세종25)	황의현(黃義軒)	서울 기생을 불러 현청에 놔둘게 함
1467(세조13)	강순(姜循)	사재감의 船隻을 대납하고 백성에게 거둘수 있도록 허락함
1478(성종9)	이달손(李達孫)	관물인 四段寢帳, 綿布, 紵布 등을 집에 가져감
1480(성종11)	이성생(李誠生)	관비 德只를 형벌을 잘못하여 죽게한 죄
1516(중종11)	오황(吳滉)	災傷이 착오
1525(중종20)	정승주(鄭承周)	貪汚하고 백성에게 잔학
1595(선조28)	정효성(鄭孝誠)	공로 바라서 공로를 허위보고
1597(선조30)	노세준(盧世俊)	정사를 하리에 위임하고 끊임 없이 재물 징수
1617년(광해군9)	유계룡(柳季龍)	불법적으로 수취, 형벌이 잔혹
1656(효종7)	김단(金湍)	안찰사를 거슬려
1618(광해군10)	윤효생(尹孝生)	도적이 달아남
1676(숙종2)	윤징하(尹徵夏)	良丁을 사정할 때 불법적으로 조가의 친서얼을 포함시킴
1728(영조4)	조정속(趙廷漸)	역적의 관문을 전달
1739(영조15)	서종협(徐宗浤)	府隸가 열음에 폐혜를 일으켜 杖治
1753(영조29)	이준(李浚)	미상
1762(영조38)	정극순(鄭克淳)	장인의 묘소에 소분하는 의식처럼 함
1787(정조11)	이상기(李尙琦)	법을 어긴 정상
1815(순조15)	이보한(李普漢)	유현을 모독
1829(순조29)	조운구(趙雲龜)	불법의 죄
1865(조종2)	이교선(李敎善)	서리의 포흡을 백성에게 강제로 거둠
1874(고종11)	이인익(李寅翼)	방임(房任)의 태거(汰去)와 잉임(仍任)을 놔둘로 하고, 송사의 청탁을 받고 판결.

회덕현감의 파직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박염과 이달손은 관물을 도둑질하여 파직되었다. 황의현·강순·정승주·정효성·노세준·윤징하·이상기·조운구·이교선·이인익 등 10명은 수령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파직되었다. 이성생·오황·윤효생·조정속 등 4명은 수령으로 행정집행에 착오 등의 문제로 파직된 경우이다. 기타 김단·정극순·이보한 등은 개인적인 행위가 문제되어 파직되었다. 즉 김단은 안찰사를 거슬려서 파직되었고, 정극순은 장인의 묘소에 소분하는 의식처럼 하여 유가의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고, 이보한은 유현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이로 보면 수령의 파직은 수령 자신의 부정이나, 수령의 불법 행위로 파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타 수령의 행정착오나, 개인적인 행위가 문제가

되어 파직되기도 하였다.

회덕의 수령으로 선정(善政)이 언급된 인물 가운데 □□실록□□ 등의 사료에 그 선정의 구체적 사유가 적시된 경우만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년대	성명	사유
1574년(선조7)경	최세해(崔世灝)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였다.
1618(광해군10)	윤효생(尹孝生)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포장(監司)
1661(현종2)	유성오(柳誠吾)	치적, 진휼의 공
1690(숙종16)경	권태시(權泰時)	호강들의 횡포제압, 흥년에 사재로 진휼, 이자를 탕감
1748(영조24) - 1750(영조26)	정운유(鄭運維)	호우배들 단속, 공법을 바로 세움
1762(영조38)	이득영(李得永)	흥년에 진휼

회덕수령의 선정(善政)은 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흥년에 백성들을 진휼하였거나, 호강들의 횡포를 억압하고 백성들을 보호한 것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덕현에는 회덕현 현감의 선정의 상징으로 불망비(不忘碑),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등이 많다. 현감 김현순 영세불망비(縣監金獻淳永世不忘碑), 현감 송국위 청덕선정비(縣監宋國緯清德善政碑), 현감 유승근 영세불망비(縣監柳承根永世不忘碑), 현감 유지화 애민선정비(縣監柳志和愛民善政碑), 현감 이득영 유애비(縣監李得永遺愛碑), 현감 이상요 애민선정비(縣監李相堯愛民善政碑), 현감 이승린 영세불망비(縣監李承麟永世不忘碑), 현감 전윤담 애민선정비(縣監全允淡愛民善政碑), 현감 정석범 청덕애민선정비(縣監鄭錫範清德愛民善政碑), 군수 조동준 영세불망비(郡守趙東濬永世不忘碑), 현감 조이숙 불망비(縣監趙爾翻不忘碑), 현감 조정강 영세불망비(縣監趙正綱永世不忘碑), 현감 최중정 영세불망비(縣監崔重鼎永世不忘碑), 현감 한성보 몰세불망비 애각(縣監韓聖輔沒世不忘碑) 14명의 불망비 및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이들 14명 현감들이 실제로 어떠한 선정을 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선정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뿐만 아니라 □□회덕읍지□□의 「명관(名官)」 조에도 최세해(崔世灝), 유지화(柳志和), 조이숙(趙爾翻), 윤추(尹推), 유성오(柳誠吾), 한성보(韓聖輔), 심강(沈樞), 김복억(金福億), 심정기(沈廷耆), 최중정(崔重鼎), 조정강(趙正綱), 송국위(宋國緯), 이상요(李相堯), 정석범(鄭錫範) 등이 간단한 치적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현재까지 회덕현감으로 파악된 187명의 범위 내에서 자료상 현감 채임 중 선정을 베풀 인물로 파악되는 수령은 22명이다.

## 6. 수령의 기능

### 1) 수령칠사

고려시대 수령의 기본임무는 전야관(田野關)·호구증(戶口增)·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도적식(盜賊息) 등 5사로 원(元)의 '守令五事'를 수용한 것이다. 고려를 이은 조선 왕조에서는 수령의 기본적인 업무는 "농상성(農桑盛)·학교흥(學校興)·사송간(詞訟簡)·간활식(奸猾息)·군정수(軍政修)·호구증(戶口增)·부역균(賦役均)" 등 7가지 즉 수령칠사(守令七事)이었다. 이와 같은 수령칠사는 조선의 경구지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중앙집권정책의 핵심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이었다. 7사 가운데 학교흥(學校興)·사송간(詞訟簡)·간활식(奸猾息)·군정수(軍政修)·호구증(戶口增)은 중앙 집권정책에 관한 업무이고, 농상성(農桑盛)·부역균(賦役均)은 위민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이는 수령칠사는 태종·세종 대에 기틀이 마련되었고, □□성종 실록□□에 보이는 수령칠사와 같이 간결하게 내용이 다듬어 진것은 □□경국대전□□이 편찬될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령칠사 가운데 농상성(農桑盛)의 문제는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다. 사송(詞訟)도 중요한 문제로 조선초기 사송의 남발은 큰 사회적인 문제이었다. 사송의 번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년법(限年法)을 세운다던지 한번 판결을 받은 것은 다시 정장(呈狀)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식적인 방법보다는 사송은 일선 수령들이 사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편결해 주어야 사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군정수(軍政修)란 곧 군사적인 기율을 밝히고, 진을 때에 맞추어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질병 등을 평계로 자(子)·서(婿)·질(姪)로 대리하게 하는 문제 등을 파악해 처리해야 하였다. 부역(賦役)도 군사문제와 함께 백성들이 지는 의무 중에 가장 큰 것에 하나였다. 따라서 수령들이 부역을 고르게 실시하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이었다. 그 외 학교흥(學校興)·호구증(戶口增)·간활식(奸猾息) 등도 중요시하여 이를 감사 수령으로 하여금 통치목표로 추진해 가도록 하였다.

### 2) 수령의 기능

수령의 기능을 첫째로는 행정적 기능으로 권농(權農)·구휼(救恤)·수세(收稅)·재정(財政),

기타 행정에 참여 한다. 권농은 ‘수령칠사’의 제일항목으로 수령의 업무중 가장 우선하는 업무였다. 특히 농업위주의 조선사회에서 농사는 나라와 백성의 삶의 기본이었으므로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수령은 백성들이 농사를 제 때에 지을 수 있도록 농우(農牛)를 서로 빌려주게 하고, 종량(種糧)을 도와주며, 농사철에 부역을 시키거나 징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제언(堤堰)을 수축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구휼(救恤)은 나라의 근간인 백성을 보호하는 일로 수령의 임무중 하나이었다. 그래서 기민을 구제하는 일에 소홀한 수령을 처벌케 하거나, 각 고을에 진곡(賑穀)을 비축케 하였고, 병으로 신음하는 백성을 구제해야 하는 것도 수령의 업무 중 하나였다. 조선의 재정은 수세로 유지되는 일이었으므로 세금을 거두는 일은 수령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었다. 특히 조선의 중요한 세원이었던 전세(田稅)을 거두는 일이 중요하였다. 그래서 전세수세를 위하여 작황(作況)을 심사하여 연분등제(年分等第)를 정하는 일과, 친가경전(親加耕田)과 재상전(災傷田地)을 파악하여 감영에 보고하는 것도 수령의 책무이었다. 각종 전세를 읍창(邑倉)에 수납하고 이를 다시 경창(京倉)에 봉상(捧上)하는 일도 수령의 책무이었다.

조선정부는 외읍의 경비와 불우와 구휼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미두(田稅米豆), 삼수세(三手稅), 대동미(大同米) 등을 지방에 유치(留置)하였다. 수령은 이 유치미의 절반은 항상 창고에 유치해 두어야 했고, 절반은 빈민에 환곡으로 대여하여 얻은 모곡(耗穀)의 일부는 경사(京司)에 회록(會錄)하고, 일부는 지방관청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유치미와 관련된 업무가 수령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이었다.

두 번째로 수령에게는 사법권을 장악하고, 이를 행사하는 권한이 있었다. 죄수가 사망하면 인근의 수령에게 이문(移文)하여 시체를 검험(檢驗)하여 사인을 규명 후에 매장하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여야 하였다. 읍민이 사망한 경우에도 시체를 친히 검험하여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야 했다. 읍민의 청원(請願)에 따라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인증(認證)하는 입안(立案)이나 입지(立旨)를 발급하는 것도 수령의 업무의 하나이었다. 수령은 범금인 범죄인에 대한 수금(囚禁), 신문(訊問), 처단권(處斷權)을 가지고 있었다. 수령은 형사 민사 사건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가 군사적 기능으로 수령의 군사지휘권(軍事指揮權)과, 수령의 군사행정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수령은 조선 전기이래 발병권(發兵權)을 가지고 있었고, 거진(居鎮)·제진(諸鎮)의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절제도위(節制都尉) 등 군직을 겸직하고, 하나의 독립적 방어 단위인 진관(鎮管)을 편성하여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후 지방군제가 변화하였지만, 수령의 군사지휘권에는 변화가 없었다. 회덕현은 공주목 공주진관에 소속된 2군(임천·한산), 현10(정산·부여·석성·은진·니산·연산·진잠·회덕·연기·전의)중 하나이었다.

그리고 수령이 일읍의 통치권자로 군현에서 수행되는 제반 군사행정업무도 수령의 책무이었다.



대덕문화총서제11호

## 회덕현의 현감





## II. 회덕현의 현감

### 1. 박성치(朴成治)

박성치(朴成治)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성치(朴成治)·문의 현령(文義縣令) 조오(趙晤)·해미 현감(海美縣監) 김경(金徑)이 사조(辭朝)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금 서울에 어린 아이들이 살 곳을 잃고 굶주려 지쳐 있다. 지방 고을엔들 어찌 이런 일이 없겠느냐. 그대들은 가서 구제하라. 또한 형벌이란 지중(至重)한 일이니 삼가서 부디 노여움으로 인한 지나친 형벌을 행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 실록□□ 50권 세종12년 윤12월 12일(무신)).

라하여 세종12(1430)년 윤12월 12일(무신)에 세종에게 사조하고 회덕현감으로 도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조란 관직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가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성치가 회덕현감에 1430년(세종12) 윤12월 12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어 회덕현감에 도임한 사실은 확인 할 수 있지만, 박성치의 체직한 기사가 없어 체직일은 알 수 없다.

### 2. 박염(朴恬)

박염(朴恬)이 회덕현감으로 재직한 것은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목천 현감(木川縣監) 박용(朴容)이 본현(本縣)의 관물(官物) 15관(貫)을 도적질하였고,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염(朴恬)은 본현의 관물 10관을 도적질하였사오니, 모두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고 자자(刺字)하소서.”하니, 명하여 모두 자자하는 것은 면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28일(경오)).

라하여 회덕현감에 재직하였던 박염이 세종 22년(1440) 3월 28일에 회덕현의 관물 10관을 도적질하여 율(律조)에 의하여 죄를 받았다. 즉 박염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파직일은 1440년(세종22) 10년 3월 28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종·세종대의 실록에는 서운관에 재직하였던 박염에 관한 기사가 6건이나 실려 있다. 즉 □□세종실록□□ 39권 세종13년 10년 3월 30일(임자)조에는

서운 정(書雲正) 박염(朴恬) 등에게 명하여, 삼각산(三角山) 꼭대기에 올라가 명일(明日)에 일식(日食)이 있을지 없을지를 바라보게 하였다. 대개 수시력(授時曆)과 선명력법(宣明曆法)에 일식(日食)은 모두 마땅히 인시(寅時)와 묘시(卯時)에 있다 하였으므로 평지(平地)에서는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3년 10년 3월 30일(임자))

라하여 세종이 서운정 박염을 삼각한 꼭대기에 올라가 명일에 일식이 있을지 없을지를 살펴보게 하고 있다. 또한 □□동각잡기(東閣雜記) 上□□ 「본조선원보록本朝睿源寶錄」 “선덕(宣德) 병오년(세종8, 1426) 조에는

“강화 미리산(摩利山)이 진동하여 울려 큰 쇠복을 치는 것과 같더니, 조금 있다가 참성단(塹城壇) 동쪽 봉우리에서 돌이 떨어졌다. 주서(注書) 장후(張厚)와 서운관 정(書雲觀正) 박염(朴恬) 등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라하여 1426년(세종 8)에 서운관정 박염이 서운관정으로 참성단에 올라 강화 마니산의 진동을 살펴 보고 있다. 그런데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서운관의 관리로 나오는 박염과 □□동각잡기 상□□에 나오는 박염은 같은 인물로 보인다.

즉 박염은 태종대에서부터 서운관 관리를 지냈으며, 1428년(세종 10)에 서운정(書雲正), 1431년(세종 13)에는 서운행부정(書雲行副正), 이후 1430년대 후반에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다가, 1440년(세종22) 3월 8일에 회덕현감으로 관물을 도적질한 죄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때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노진해(盧晉諧)

노진해(盧晉諧)가 회덕 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정공신(鄭公慎) …(중략)… 회덕 현감(懷德縣監) 노진해(盧晉諧)·송화 현감(松禾縣監) 한자이(韓自邇)·언양현감(彦陽縣監) 변종제(卞宗悌)·영춘현감(永春縣監) 오척(吳倜)이

하자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선무(先務)이다. 너희들은 생각하여 하라. 또 이제 북방(北方)이 허약(虛弱)하므로 남쪽 백성을 옮겨다 채우니, 군정(群情)이 소동(騷動)하여 내가 매우 염려한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몸받는다면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22일(병진)).”

에서와 같이 세종 23년(1441)년 7월 22일이나, 노진해가 회덕현감직에서 언제 체직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세종실록□□ 세종 24년(1442) 2월 15일(병오)조 기사에 윤위인(尹爲仁)이 회덕현감으로 제수 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진해가 이때에 회덕현감직에서 체직하고, 윤위인이 부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노진해는 1441년 7월 22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다가, 1442년(세종 24) 2월 14일에 체직하였다. 따라서 노진해가 회덕현감에 재직한 기간은 232일이었다.

노진해의 본관은 안강(安康), 부는 노호(盧浩), 생원시를 거쳐 세종(世宗) 17년 (143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3위로 급제하였고, 세종(世宗) 18년(1436) 병진(丙辰) 중시(重試) 을과(乙科) 3위로 급제하였다. 즉 노진해는 문과 급제후 5년에 만에 회덕현감에 부임한 것이다. 그리고 노진해는 시를 잘 하였던 것 같다. 이는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2일(병신)의 기록에 “유생(儒生)들이 지은 시문(詩文)을 보기를 요구하니, 성균관의 관원인 이상국(李相國)이 지은 방선부(放蟬賦)와 김계창(金季昌)이 지은 오장원부(五丈原賦)와 노진해(盧晉諧)가 지은 오경책(五經策)을 이들에게 보였다. 두 사신(使臣)이 또 시(詩)를 짓고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시(詩)를 화답(和答)하기를 청하였다.”에서처럼 중국정사에게 노진해가 지은 오경책(五經策)을 보여 주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4. 윤위인(尹爲仁)

윤위인(尹爲仁)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지금산군사(知金山郡事) 문여충(文汝忠)과 회덕 현감(懷德縣監) 윤위인(尹爲仁)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농사를 권장하고 형벌을 적게 하는 것이 수령들이 급히 할 일이다. 근래에 하삼도(下三道) 백성들이 북도에 들어가 살도록 추쇄(推刷)하였기 때문에 소요(騷擾)를 일으켰으니, 너희가 직책에 나아가거든 힘써 그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병오))

에서와 같이 세종 24년(1442)년 2월 15일이다. 윤위인에 대한 사료는 위에 것이 유일하여 회덕현감에서 체직일이나, 출신, 사환 경력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체직 일시는 회덕현감에 재직하였던 황이현의 재직기사가 □□세종실록□□ 세종 25년(1443) 7월 16일 기사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1443년 7월 16일 이전에 체직한 사실만 확인 할 수 있다.

## 5. 황의현(黃義軒)

황의현(黃義軒)이 회덕 현감으로 재임한 사실은

장령(掌令) 조자(趙孜)가 아뢰기를, …(중략)… 지금 면천 군사(沔川郡事) 김숙지(金叔篪)와 회덕 현감(懷德縣監) 황의현(黃義軒)은 은밀히 서울 기생을 불러서 청사 안에 머물러 두었다가 열흘이나 지나서 돌려보냈사오니, 음란하고 더럽고 방자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사(大赦)가 지났으므로 추후하여 죄주기는 어렵사오나, 모두 파직(罷職)하여 뒷사람을 징계 하소서. …(중략)… 김숙지·황의현과 공좌부을 뭉개어 고친 것도 이미 대사(大赦)를 지났으니 다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현부(憲府)는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니 사전(赦前)의 사건은 더욱 추론(追論)할 수 없는 것이다. 양순·정지년은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지만. 그 겸관(兼官)을 파면한다는 것은 파직(罷職)과 같은 것은 아니니, 내가 마땅히 이조(吏曹)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6일(기사))

라 하여 세종 25년(1448) 7월 16일에 회덕현감 황이현 은밀히 서울 기생을 불러서 청사 안에 머물러 두었다가 서울로 보낸 죄로 파직된 사실로 확인 할 수 있다. 즉 황이현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일시는 알 수 없으나, 파직일은 1448년 7월 16일이다.

문과방목에 의하면 황의현은 서운관시일(書雲觀視日)에 있던 세종(世宗) 24년 (임술, 1442년), 친시(親試) 을과2(乙科2)으로 급제 하였다. 따라서 황의현은 친시 을과 급제 이후에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으로 보인다.

황의현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황의현(黃義軒;?~1454(단종 2))은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창원(昌原), 회산부원군(檜山府院君) 석기(石奇)의 증손으로, 지주사(知州事) 창(昌)의 손자이고, 현감 선경(善慶)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해주최씨(海州崔氏)로 호군 곽(廓)의 딸이다. 1429년(세종 11) 음보

(蔭補)로 입사(入仕)하여 돈령부녹사(敦寧府錄事)에 제수되었으나, 노처중(盧處中)과 함께 호색향락(好色享樂)을 벌인 연유로 하옥되어 장(杖) 80의 형벌에 처하여졌다. 세종 24년 (1442; 임술) 서운관시일(書雲觀視日)직에 있을 때 친시문과에 을과 2위로 급제하였다. 1450년 종부시판관을 역임하였고, 1453년(단종 1) 지안악군사(知安岳郡事)에 올랐다가 1454년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일파로 몰려 처형되었다.

## 6. 홍계생(洪繼生)

홍계생(洪繼生)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선천 군사(宣川郡事) 남회(南薈)·철산 군사(鐵山郡事) 홍치경(洪致敬)·회덕 현감(懷德縣監) 홍계생(洪繼生)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임은 병(兵)·농(農)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는다. 무비(武備)는 마땅히 늘 훈련을 가하여 허술하지 않아야 하며, 환자[還上]는 제때를 잊기 전에 거두고 흩어 주어서 늦추지 않아야 하며, 제언(堤堰)은 비록 새로 쌓지는 못할지라도 옛 둑이 있으면 수보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하였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19일(을묘))

라하여 선천 군사(宣川郡事) 남회(南薈)와 철산 군사(鐵山郡事) 홍치경(洪致敬)과 같이 1451년(문종1) 7월 19일에 제수되었다. 홍계생에 관한 사료는 위의 □□문종실록□□ 사료가 유일하여, 회덕현감 이임 등 기타 개인정보 및 관직경력을 알 수 없다.

## 7. 유맹지(柳孟智)

유맹지(柳孟智)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모재선생집(慕齋先生集)□□ 권13(卷之十三), 묘갈명(墓碣銘) 가선대부충청도병마절도사이공묘갈명(嘉善大夫忠淸道兵馬節度使李公墓碣銘)에

공의 성은 이씨, 휘(諱)는 윤검(允儉), 자는 자문(子文), 본관은 합천인(陝川人)이다. …(중략)… 아버지는(考) 증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휘(諱) 순생(順生)으로 학문을 좋아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향리에서 학도를 모아 가르쳤는데, 저명한 사람이 여러명이었다. 회덕현감

유맹지의 딸을 취하였는데, 선생이 4남 2녀 중에 막내로 경태(景泰) 신미(辛未:1451)에 출생하였다.  
(□□慕齋先生集□□ 卷之十三, 墓碣銘, 嘉善大夫忠清道兵馬節度使李公墓碣銘).

에서와 같이 이윤겸의 어머니가 회덕현감을 지낸 유맹지의 딸이었다는 것이다. 즉 유맹지는 이윤겸에게 외조부가 된다. 그런데 이윤겸은 1451년에 출생하였다. 따라서 유맹지가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시기는 1451년의 전후 어느 시기인 것만 말 할 수 있다.

## 8. 강순(姜循)

강순(姜循)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한 것은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문의 현령(文義縣令) 최여격(崔汝激)과 회덕현감(懷德縣監) 강순(姜循)이 영리(營吏) 하도(河圖)의 청을 들어주어 사재감(司宰監)의 선척(船隻)을 대납(代納)하도록 하고, 공차(公差)를 발송하여 포화(布貨) 및 쌀 99석(石) 9두(斗)를 거두어 빙궁한 백성을 침해하고 독촉하여 하도의 집에 운반하도록 했으므로, 최여격과 강순은 이미 고신(告身)을 거두었습니다. 하도는 비록 자비(自備)한 선척(船隻)으로써 대납(代納)했지만, 이미 불법(不法)을 하였으며, 하물며 남의 배[船]을 빌려서 거짓으로 자기의 물건이라 일컫고는, 문인(文引)을 속여 받고 실제는 충납(充納)하지 않고서 백성을 괴롭게 하여 대가(代價)를 징수하고, 모두 미·포(米布)로써 제 집에 운반해 갔으니, 사유(赦宥) 전의 일이라고 해서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하도를 잔역리(殘驛吏)에 영속(永屬)시키고, 미·포(米布)는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22일(정해)일)

에서처럼 세조 3년(1457) 1월 22일에 회덕현감으로 재임중이던 강순이 부정을 저질러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순이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당한 범죄는 “회덕 현감(懷德縣監) 강순(姜循)이 영리(營吏) 하도(河圖)의 청을 들어주어 사재감(司宰監)의 선척(船隻)을 대납(代納)하도록 하고, 공차(公差)를 발송하여 포화(布貨) 및 쌀 99석(石) 9두(斗)를 거두어 빙궁한 백성을 침해 독촉하여 하도의 집에 운반하도록 했으므로, 최여격과 강순은 이미 고신(告身)을 거두었습니다.”에서와 같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후 강순은 세조 3년 8월 12일에

의정부(議政府)에 하교(下敎)하기를, …(중략)… 강순(姜循) …(중략)…을 원종공신(原種功臣) 3등으로 녹훈(錄勳)하라.”하였다.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8월 12일(계묘))

라하여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어째든 강순이 회덕현감직에 재임하다 부정을 저질러 파직된 시기는 1457년(세조 3)년 1월 22일이다. 그러나 강순이 회덕현감직에 제수된 일시 및 기타 개인정보 및 관직경력은 알 수 없다.

## 9. 흥군(洪君)

홍군(洪君)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강희맹(姜希孟)

내 친구 홍군(洪君) 아무개가 충청도 회덕 현감(懷德縣監)에서 면직되어 금양(衿陽)의 별장에서 사는데, 산수의 경치가 좋았다. 임오년 여름에, 내가 동향 사람으로 향사(鄉射)의 열에 끼이게 되어 술 두어 순배를 나누는데 홍군이 술잔을 쳐들며 청하기를, “내가 대대로 이 땅에 살아서 정자의 나무가 교목(喬木)이 되었는데, 아직도 편액(扁額)이 없으니, 어찌 사문(斯文) 사림(士林) 몇몇 분의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의 친구 홍군이 충청도 회덕현 현감에서 물러나 별야에서 지내는데 임천에 좋은 경치가 있었다. 임오 여름에 내가 이웃으로 향사(鄉射)의 반열에 있어 술을 자주 하였다. (□□사숙재집(私淑齋集)□□ 권8(卷之八), 기(記), 만휴정기(萬休亭記))

라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료만으로는 회덕현감에 재직한 홍군이 사숙재 강희맹(1424~1483)의 친구로 성이 홍씨(洪氏)인 것만 알 수 있고, 이름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회덕현감에서 물러난 홍군과 강희맹이 임오년 여름에 술을 자주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오년은 강희맹의 생년이 1424년(세종 6)이고, 몰년이 1483년(성종 14)인 점으로 보아 1462년(임오)이다. 따라서 홍군이 충청도 회덕현감에 재임하다가 물러난 시기가 임오년(1462)에서 멀지 않은 시기로 보인다.

## 10. 홍계생(洪季生)

홍계생(洪季生)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한 시기는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한정(崔漢禎)이 와서 아뢰기를, “정휘(鄭徽)가 정대(正大)하다면 반드시 남의 그른 짓을 막았을 것인데, 어떻게 그의 집에서 사망(詐妄)한 짓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좌우 전후가 모두 다 바른 사람이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근시(近侍)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청컨대 경연관(經筵官)을 개정하소서. 또 함평 현감(咸平縣監) 홍계생(洪季生)은 일찍이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있다가 삼중(三中)으로 파직된 지 이미 두 세해가 되었고, 이제 나이 67세로 치사(致仕)할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조(吏曹)에서 천거해서 서용(敍用)한 데에는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추국(推鞠)하고 아울러 홍계생을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1473) 1월 8일 기해)

라하여 1473년 1월 8일의 두 세 해 전에 회덕현감으로 재직하였음 알 수 있다. 즉 홍계생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471년에서 1472년 사이였고, 홍계생이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된 것은 1473년 1월 8일에 사간원이 재임중 근무 고과(考課)가 삼중(三中)이어서 파직할 것을 아뢰는 것으로 보아 이 때쯤 파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삼중이란 수령 고과기준(守令考課基準)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수령으로 재직기간에 10考10上자는 가자승직(加資陞職), 일중·이중(一中·二中)은 당상관개차(堂上官改差)·평천(平遷)·별좌(別坐), 삼중·사중·오중(三中·四中·五中)은 파(罷), 일하(一下)·파(罷)이다. 그럼점에서 회덕현감 홍계생은 현감 재직중 고과가 삼중(三中)의 평가를 받아 파직된 것이다.

## 11. 이달손(李達孫)

이달손(李達孫)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한 사실은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前)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달손(李達孫)이 재임시(在任時)에 관(官)에 간직한 필단 침장(匹段寢帳) 1, 면포(綿布) 9필(匹), 저포(紵布) 반 필, 석자(席子) 6장(張)을 몰래 꺼내다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80대에 고신(告身) 3등(等)을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대전(大典)》에 의하여 장안(贓案)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 98 성종 9년 11월 5일(임술)).

라하여 1478년(성종 9) 11월 5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재직하였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달손은 회덕현감으로 재직중에 현의 재물중 “필단 침장(匹段寢帳) 1, 면포(綿布) 9필(匹), 저포(紵布) 반 필, 석자(席子) 6장(張)”을 몰래 꺼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 범죄로 결장(決杖) 80대에 고신(告身) 3등(等)을 추탈(追奪) 당하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장안(贓案) 즉 장리안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위 기사와 관련하여 이달손을 장리안(贓吏案)에 기록하고, 그 자손을 금고시킬것인지에 대하여 □□성종실록□□ 권 98 성종 9년(1478) 11월 5일조, 성종 16년 6월 7일(병술), 성종 17년 7월 18일(신유), 성종 17년 7월 20일(계해) 조 등의 기사에 계속 등장한다.

즉 이달손이 회덕현감으로 1478년(성종9) 11월 5일 이전에 재임한 사실은 확인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제수일과 파직일은 알 수 없다.

## 12. 정일보(鄭一寶)

정일보(鄭一寶)의 회덕현감 제수는

홍원현감(洪原縣監) 강정(姜精)과 회덕 현감(懷德縣監) 정일보(鄭一寶)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수령(守令)의 직(職)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치중해야 하니, 횡령(橫斂)하지 말고 한결같이 국법[邦憲]을 준수해서 각각 그 직에 충실하도록 하라.”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1480) 2월 13일(계해)).

라하여 1480년(성종 11) 2월 13일이었다. 즉 정일보는 성종 11년(1480) 2월 13일에 홍원현감 강정등과 함께 회덕현감에 제수되어 임지로 떠나기 위해 성종에게 사조하였다. 이후 후속기사가 없어 정일보의 체직 시기는 알 수 없다.

## 13. 이성생(李誠生)

이성생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한 시기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성생(李誠生)이 관비(官婢) 덕지(德只)를 그릇 형벌하여 죽게 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1480) 7월 11일(기축))

라하여 1480년 7월 28일이다. 그리고 파직은 이성생이 회덕현감으로 재직하면서 “관비(官婢) 덕지(德只)를 그릇 형벌하여 죽게 한 죄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서용하지 마소서”라는 처벌을 받았다. 즉 이성생이 언제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480년(성종11) 7월 11일 직전에 관비(官婢) 덕지(德只)를 잘못 형벌을 가하여 죽게 한 죄로 파직되었다.

이성생이 회덕현감직에 제수된 일시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사료가 주목 된다.

이성생(李誠生)·정자숙(鄭自淑)·유효중(柳孝中)을 주의하여 유효중이 말망(末望)으로 수점(受點)하였는데, 신이 어찌 사정(私情)을 쓴 것이겠습니까? (□□성종실록□□ 권 94 9년(1478) 7월 14일(계유))

라하여 유효중이 말망이었고, 이성생이 수망이었다는 것이다. 위 사료에서 이성생이 수망으로 제수된 곳이 회덕현감 직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성생의 회덕현감 제수는 1478년 7월 14일 이후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성생의 보다 정확한 체직일은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1480) 2월 13일(계해)조에 정일보가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으로 보아 이때에 체직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성생은 1478년 7월 14일 이후 회덕현감에 제수되어, 1480 2월 12일까지 재임한 것이다.

## 14. 문걸(文傑)

문걸(文傑)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후(侯)의 휘는 걸(傑)이고, 안동부 감천현(甘泉縣) 사람이다. …(중략)… 장인 이문흥(李文興)을 쫓아

성현경전을 수업하여 대의가 통하였고, 또 문사(文辭)에 능하였다. 한 번에 연이어서 생원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을 받아 의정부 사록에 보선되었고, 외직으로는 회덕·영동 현감을 하였다. (□□허백정문집(虛白亭文集)□□ 권4(卷之四), 비지(碑誌), 양양부사문후묘지(襄陽府使文侯墓誌))

라하여 회덕현감을 하였다는 것이다. 문결은 생원진사를 거쳐 문과에 급제후 의정부 사록 및 외직으로 회덕·영동 현감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문결의 소개에는 1480년(성종 1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료에서 문결이 문과급제후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는 문과에 급제한 1480년(성종 11) 이후인 것을 알 수 있다.

문결(文傑)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결(文傑: ?~1500).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감천(甘泉). 초명은 빈(彬), 자는 언장(彦章). 아버지는 숭질(崇質)이며, 어머니는 안강노씨(安康盧氏)이다. 안동 감천현(甘泉縣)에서 출생하였다.

성종 때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고, 1480년(성종 1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의정부사록(議政府司錄)에 임명되었다. 이어 회덕현감(懷德縣監)·영동현감(永同縣監) 등의 수령을 거치고 사간원현납을 비롯하여 사섬시·종부시·사옹원침정(司饔院僉正)을 두루 역임하였다. 1499년(연산군 5) 양양부사(襄陽府使)가 되었다.

## 15. 우계로(禹繼老)

우계로(禹繼老)가 회덕현감에 재임 사실은

승지 강구손(姜龜孫)이 호조에서 아뢴 회덕현(懷德縣)의 포흡(逋欠)을 징수하는 일을 아뢰기를, “성종조에 간원(諫院)이 경연(經筵)에서 회덕은 잔폐(殘廢)하여 포흡이 매우 많고, 이 때문에 고을의 원이 서로 잇따라 폄黜(貶黜) 당함을 아뢰었는데, 성종께서 좌우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신이 그 폐단을 갖추 알았으므로 하나하나 진술하여 아뢰었는데, 성종께서 특별히 해조(該曹)에 상의하게 하여 미수된 전세(田稅)를 바로 본현에 납입하도록 특별히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을이 조잔하고 피폐함이 이미 심하고 아전[人吏]과 노비도 적으로 고을의 원으로 임명된

자들은 시행 조처할 만한 계책이 없음을 알고, 겨우 부임[上官]하였다가는 곧 사면하여 버리니, 30여 년 간 임기를 채운 자는 우계로(禹繼老) 한 사람 뿐인데, 해유(解由)에 관계되어 폐출당해 다시는 벼슬하지 못하였으며, 그후로는 비록 어진 관리가 있더라도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포흡을> 독촉해서 징수하려 한다면 폐단만 더욱 심해지고, 끝내는 징수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포흡을 감면하여 소복(蘇復)하게 하소서.” 하니, 드디어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감면해 주었다. (□□연산군일기□□ 21권 연산군 3년(1497) 2월 5일(정축))

라하여 우계로가 회덕현감의 임기를 채운 인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계로의 회덕현감 재임 시기는 위 기사를 통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즉 위 기사에서 강구손이 30년간에 임기를 채운 자는 우계로 한 사람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1497년 2월 이전에 회덕현감에 재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97년 이전 30년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회덕현감을 지낸 인물이 정일보이다. 정일보의 회덕현감 부임은 성종 11년(1480) 2월 13일이었으므로, 우계로의 회덕현감 재임은 1480년 2월 이후부터 강구손이 언급한 1497년 2월 이전이었다는 것만은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료는 회덕 수령과 관련하여 회덕은 잔폐(殘廢)하여 체납된 세금이 많고, 이 때문에 고을의 원이 서로 잇따라 펌출(貶黜) 당하였고, 그리고 고을이 조잔하고 피폐하고, 아전[人吏]과 노비도 적어서 고을의 원으로 임명된 자들이 어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겨우 부임하였다가는 곧 사면하여 버리니, 30여 년 간 임기를 채운 자는 우계로(禹繼老) 한 사람 뿐일 정도로 피폐한 현이었다.

## 16. 강희신(姜熙臣)

강희신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는

대간이 합사해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략)…정언 김정(金淨)은 작년 8~9월 사이에 병든 아비 때문에 정사(呈辭) 할 일로 예궐(詣闕)하였고, 보은 현감(報恩縣監) 연구령(延九齡)도 또한 대궐에 와서 숙배를 하였는데, 내관 성윤(成胤)이 연구령과 김정을 경회루(慶會樓) 남문으로 인도하여 술을 권하며 연구령에게 이르기를,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전일에 민번(閔蕃)이 회덕 현감(懷德縣監)의 수망(首望)으로 추천되었는데, 민번이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내가 아뢰기를, 「민번이 현재 가례 도감(嘉禮都監) 낭관으로 있으니 낙점(落點)이 되더라도 반드시 도로 옮길 것입니다」 하여 마침내 강희신(姜熙臣)에게 낙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정사(政事)에 민번이 보은 현감의 망에 들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더 하고 싶어 나에게 부탁했으나 내가 응하지 않으며, 회덕 현감(懷德縣監)을 하려고 했으니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후략)…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7일(갑신))

에서와 같이 민번이 회덕현감의 수망(首望)으로 낙점 낙점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아 강희신이 회덕현감에 낙점되었다. 따라서 강희신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일시는 1508년(중종 3) 4월 17일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희신(姜熙臣)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연산군(燕山君) 2년 (1496) 병진(丙辰) 증광시(增廣試)에 생원(生員) 2등(二等) 23위로 입격하였다. 강희신의 자는 사광(士光), 父는 강숙회(姜叔淮)로 행형조정랑(行刑曹正郎)을 지낸 인물이었고, 거주지는 경(京)이었다.

## 17. 오황(吳滉)

### 오황(吳滉)의 회덕현감 제수와 파직 사실은

석강에 나이갔다. 간원(諫院)이 또 아뢰기를, “사옹원 판관(司饔院判官) 오황(吳滉)은 병자년(1516)에 회덕 현감(懷德縣監)이 되었다가 무인년(1518)에 재상(災傷)이 착오되어 파직당하였으므로, 파직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대로 회덕에 있었을 것이니, 품계(品階)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유상령(柳尙齡)은부장(部將)으로 송서(送西) 된 지 오래지 않아서 상의원 주부(尙衣院主簿)가 되었고 또 오래지 않아서 본직(本職)에 제수(除授)되었습니다. 변방(邊方)이라면 높여서 보낼 수 있겠으나 평시에는 높여 줄 것 없습니다. 개정(改正)하소서.” 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윤8월 18일(계묘)).

라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즉 오황은 1516년에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으나 재상(災傷)으로 1518년에 파직되었다.

회덕현감을 지낸 오황은 이후 1520년(중종 15) 9월 사옹원 판관(司饔院判官), 1529년(중종 24) 12월 우봉현령(牛峯縣令) 등을 지냈다. 오황의 가족관계는 알 수 없고 다만 □□명종 실록□□ 9권 명종 4년 8월 19일(병진)조의 기록에 의하면 오황(吳滉)은 종실(宗室) 기성수(岐城守)의 열서(孽婿)이며, 대사간 윤인서(尹仁恕)는 오황의 사위이었다.

## 18. 정승주(鄭承周)

정승주(鄭承周)가 회덕현감에 재임하다가 파출된 사실은

한부가 아뢰기를, …(중략)… 회덕 현감(懷德縣監) 정승주(鄭承周)는 탐오(貪汚)하여 민중들에게 잔학하니 파출(罷黜)하기 바랍니다. (□□중종실록□□ 56권 중종 20년(1525) 12월 19일(계묘))”

에서처럼 탐오하고 잔학하여 1525년(중종20) 12월 19일에 파직되었다. 그런데 파출 기록만 있고, 제수일은 관련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마방목에 의하면 정승주는 1510년(中宗 5)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1등(一等) 4위로 입격하였다.

문과방목에는 1517년(中宗 12) 정축(丁丑) 별시(別試) 을과(乙科) 2위로 급제하였다. 따라서 정승주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일시는 진사로 입격한 1510(중종 5)이후 이었을 것이라는 것만은 말 할 수 있다.

정승주의 회덕현감 제수는 그가 1517년(중종12)에 별시에 급제 이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승주는 중종 13년 7월에는 영변 훈도(寧邊訓導), 중종 23년 7월에 형조 정랑을 역임하였다. 정승주(鄭承周)에 대한 실록기사의 인물평은 “인물이 방탕하고 난잡하여 육조의 낭관에는 합당치 못하니 체직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좋지 않다.

정승주는 사마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장기(長鬚), 자는 회숙(姬叔), 거주지는 공주, 부는 학생 정세영(鄭世榮)이었다. 중종(中宗) 5년 (1510)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1등(一等) 4위로 입격하였다. 그리고 문과방목에는 중종(中宗) 12년 (1517) 정축(丁丑) 별시(別試) 을과(乙科) 2위로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19. 양의(梁羲)

양의(梁羲)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청계집(青溪集)□□ 권1(卷之一), ‘詩’의 제목에

회덕현은 규현공이 옛날에 이 현에 현감을 하셔서 옛 생각에 감동을 주는데, 내가 어렸을 때로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다. (□□청계집(青溪集)□□ 권1(卷之一), [시(詩)])

라한 시체를 통해 알 수 있다. 청계집의 저자는 양대박(梁大樸)으로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사진(士眞), 호는 송암(松巖)·죽암(竹巖)·청계도인(靑溪道人)이다. 생년은 1543년(중종 38)이고, 몰년은 1592년(선조 25)이다. 그런데 위 시의 제목에 나오는 규암공은 양의(梁儀)이다. 양의를 조사유가 천거하려 했었다는 기사가 □□명종실록□□에 있고(□□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1557) 11월 6일 을묘), 또한 순천부사를 지냈다는 기사도 있다. (□□명종실록□□ 23권, 명종 13년(1558) 10월 13일 병진)

어째든 양의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양대박이 어렸을 때이므로 1550년대 이후 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양의를 조사유가 천거하려 한 시점이 1557년(명종 12)이고, 순천부사를 지낸 시점이 1558년(명종 13)이다. 따라서 양의가 회덕현감직에 있었던 시기는 1550년대 이후 1557년 사이가 아닐까 한다.

## 20. 김사수(金師秀)

김사수(金師秀; 1490-1553)가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은 □□졸옹집(拙翁集)□□ 권10, 비명·갈명(碑銘 · 碣銘), ‘회덕현감김공묘갈명(懷德縣監金公墓碣銘)’에서 알 수 있다.

묘갈명에 의하면 김사수(金師秀)는

### 회덕현감김공묘갈명(懷德縣監金公墓碣銘)

(전략)... 김공의 휘는 사수(師秀) 자는 공언(公彦), 김씨의 본관은 안동이다. ... (중략)... 어머니 이씨(李氏)는 국성(國姓: 전주이씨)이고, 의성군(誼成君) 채(棟)가 아버지이다. 공은 어려서 학예을 뜻을 두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늦은 나이에 예빈사(禮賓寺) 별좌(別坐)에 보해졌고, 종부시(宗簿寺) 직장(直長)과 선공감(繕工監) 주부(主簿)로 천직하였고, 감찰(監察)직에서 회덕현감으로 나아갔고, 백성들이 그 은혜를 노래하였다. ((□□졸옹집(拙翁集)□□ 권10(卷之十), 비명(碑銘) · 갈명(碣銘))

라하여 자는 공언(公彦), 본관은 안동(安東), 어머니는 전주이씨이고, 아버지는 의성군(誼成君) 채(棟)이다. 공은 어려서 학을 뜻을 두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는데, 백성들이 그 은혜를 노래하였다 한다. 묘갈에 의하면 김사수의 생년은 1490년(성종 21)이고, 몰년은 1553년(명종 8)이다. 그런데 늦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왔다고 하였으므로, 회덕현감직에 재임한 시기는 그의 만년인 1540년에서 1553년 사이가 아니었을까 한다.

## 21. 권덕린(權德麟)

권덕린(權德麟)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묘갈명(墓碣銘)에

공이 회덕·하동 외직으로 나아가 다 치적이 있었고, 합천은 집에서 가까워 의심을 피하여 그만 두고 돌아왔고, 후에 합천을 다스렸는데 치적이 더욱 명성이 있었다. (□□간옹선생문집(艮翁先生文集)□□ 권 17(卷之十七), 갈(碣), 합천군수구봉권공묘갈명(陝川郡守龜峯權公墓碣銘))

에서처럼 회덕현감으로 치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록만으로는 권덕린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만 확인 할 수 있고, 그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일시와 체직일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문과방목에 의하면 권덕린이 1553년(명종 8)에 별시문과에 을과(乙科) 9위로 급제하였고, 위 묘갈명에 의하면 문과급제이후에 회덕현감에 나갔다. 그렇다면 권덕린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과거에 급제한 시기인 1553년(명종8)에서 몇년인 1573(선조6)년 이전 사이이었을 것이다.

권덕린(權德麟)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29(중종 24)~1573(선조 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군서(君瑞), 호는 구봉(龜峰). 아버지는 첨정 계중(繼中)이다. 이언적(李彦迪)의 문인이다. 1553년(명종 8)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성균관전적을 거쳐 병조·예조의 좌랑을 역임하였다.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강계로 유배된 이언적이 1533년 그곳에서 죽었는데, 그는 스승의 영구(靈柩)를 중로에서 맞이하여 돌아왔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이언적의 전사(奠祀)를 주장하지 못하였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홀로 창의(倡議)하여 옥산서원(玉山書院)을 세워 제향하였다. 그뒤 관직이 합천군수에 이르렀다. 경주의 운천서원(雲泉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구봉유집□□이 남아 있다.

## 22. 안경빈(安敬賓)

안경빈(安敬賓)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백담선생속집(栢潭先生續集)□□ 권3(卷之三), 칠언율시(七言律詩), 송안회덕경빈지임(送安懷德敬賓之任)

이라 한것에서 알 수 있다.

문과방목에 안경빈은 1558년(明宗 13)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에 급제하였다. 따라서 안경빈이 회덕현감에 재임시기는 1558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문과방목에 의하면 안경빈(安敬賓)의 자는 중성(仲誠), 본관은 순흥(順興), 부는 안황(安璜)이다. 생년은 무자(戊子:1528)이고, 명종(明宗) 13년 (15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0위로 급제 하였다.

## 23. 윤응지(尹應之)

윤응지(尹應之:1582-1641)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것은 1641년 병자호란 이전이다. 이러한 사실은 □□포저선생집(浦渚先生集)□□ 卷32, 「묘갈명(墓碣銘)」, ‘양근군수윤군묘갈명(楊根郡守尹君墓碣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묘갈에는

고 양근군수 윤군 휘(諱) 응지(應之), 자는 시경(時卿), 돌아가신지 2년의 가을이 지났다. …(중략)… 40세에 비로서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으로 장릉(章陵)의 동역(董役)이 되었다. 사도시(司導寺) 주부(主簿)로 승진하고, 사헌부 감찰로 옮겼고, 회덕현감이 되었다. 그 후 또 감찰이 되었고, 군자감 판관으로 전직하였다. 병자난(丙子亂)에 한성판관으로 왕을 호가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 환도하여 군기감(軍器監) 첨정(僉正)으로 승진하고, 양근군수가 되었다. 나이가 많아 파직하였다. 신사(1641) 11월 5일 질병으로 죽하니, 나이가 60이었다.

라하여 윤응지가 병자호란(1636) 발발 이전에 회덕현감에 재임하였었고, 1641년(辛巳) 11월에 60세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출생한 시기는 1582년(임오)이다. 따라서 윤응지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것이 40세(1621) 이후로부터 병란(1636)이전 까지이다.

## 24. 민천부(閔天符)

민천부(閔天符)가 회덕현감(懷德縣監)에 재임하였던 사실은 민천부 묘갈에

여흥민씨는 동방에 큰 성씨이니 그 근원은 실상 고려(高麗) 상의봉어(尙衣奉御) 칭도(稱道)에서

부터 나왔으니 10여대에 소문난 사람과 현달한 벼슬이 서로 이어 끊어지지 않았다. …(중략)… 그 아들 장(璋)은 벼슬하지 않았으며 이가 광주(光州)의 큰 성씨 김백균(金百鈞)의 따님에게 결혼 해서 가정(嘉靖) 신묘(辛卯:1531)에 공을 낳으니 공의 이름은 천부(天符)이고, 자는 응명(應明)이다. 몇 달도 되지 않아 아버지를 잃고 외가에서 길러지니 나이 14세에 처음으로 글 읽음을 알게 되었다. 공은 기억하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서 반씨(潘氏)의 역대총서(歷代總敍)는 세상에 큰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글인데 공이 두 번 열람하자 문득 외우니 선비들이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 얼마 안되어 문장이 급히 이뤄지니 임자(壬子)년에 생원(生員)이 되고 무오(戊午:1558)년에는 향시(鄉試)에 장원하고 드디어 대과에 급제하였다. 봉상시 봉사(奉常寺 奉事)로 말미암아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에 오르고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과 형조 좌랑(刑曹 佐郎)을 역임하였다. 이 때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니 봉양을 위해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나갔다가 을축(乙丑:1565) 정월 9일에 관아(官衙)에서 돌아가니 진잠(鎮岑) 동쪽 백이동(白鶲洞) 병좌(丙坐) 언덕에 장시지냈다. (민천부묘갈, □□대전금석문□□, 대전광역시시편찬위원회, 1995. 642~6647쪽)

라하여 민천부는 1531년(중종26)에 출생하여, 1552년(임자:明宗7)에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1558년(무오:明宗13)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급제후 봉상시 봉사(奉常寺奉事)·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형조 좌랑(刑曹佐郎) 등을 역임하였고, 어머니 봉양을 위하여 회덕현감에 나갔다가 1565년에 정월 9일 관사에서 졸하였다.

따라서 민천부의 회덕현감직에서 이임일은 그가 임지 회덕에서 1565년 정월 9일에 사망한 일시이다. 회덕현감 제수일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위 묘갈에 의하면 민천부가 “1558년(무오:명종13)년에 문과에 급제후 제후 봉상시 봉사(奉常寺奉事)·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형조 좌랑(刑曹佐郎) 등을 역임하고, 이어서 회덕현감에 나갔다”고 되어 있으므로 1558년 이후가 된다. 즉 민천부는 1558년이후 회덕현감직에 제수되었다가 1565년 정월 9일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민천부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천부(1531:중종 26~1565;명종 2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여홍(驪興). 자는 응명(應明). 장(璋)의 아들이다. 조실부모하여 외가에 기탁, 불우하게 자랐기 때문에 14세에 이르러 비로소 독서하기 시작하였으나 천품이 총명하여 곧 문리가 트였으며, 마침내 1558년 (명종 1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봉상시봉사(奉常寺奉事)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성균관 전적과 사헌부감찰을 역임하고 형조정랑에 이르렀다. 1564년 자청하여 외직으로 나가서 회덕현감(懷德縣監)으로서 민정을 다스리다 임지에서 순직하였다. 본디 성품이 활달하고 기상이 호탕하여 장래가 기대되었으나, 불행히도 요절하여 세인이 애석하게 여겼다.

## 25. 고응척(高應陟)

고응척(高應陟: 1531~1605)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인재선생문집(訥齋先生文集)□□의 '두곡선생고공언행록(杜谷先生高公言行錄)',에

공의 휘는 응척(應陟), 자는 숙명(叔明), 그의 선대는 안동인이고, 중엽에 본부 서면에 이거하였다. …(중략)… 휘 몽담(夢聃)을 낳았는데, 상주 구도곡 교수 정세향의 녀를 취하여 6남을 낳았는데 모두 학문을 하였는데 공은 넷째이다. 가정(嘉靖) 신묘(辛卯: 1531)에 문양동(文良洞)에서 출생하였다. 하늘로부터 받은 자품이 빼어났으며, 의취(意趣)도 범상치 않았고, 글자를 보면 문득 기억하였다. …(중략)… 경오(庚午: 1570) 어버이를 위하여 현감이 되기를 빌어 회덕현감에 배하였다. (□□인재선생문집(訥齋先生文集)□□ 권 12, 부록, 두곡선생고공언행록(杜谷先生高公言行錄))

라 하여 경오년(庚午: 1570)에 어버이를 위하여 현감이 되기를 빌어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는 것이다. 이때 경오는 그의 생몰년으로 봄 1570년이다. 즉 고응척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것은 1570년이다. 그러나 체직일은 알 수 없다.

고응척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응척(高應陟 1531~1605),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명(叔明), 호는 두곡(杜谷)·취병(翠屏). 몽담(夢聃)의 아들이다. 김범(金範)의 문인으로 1549년(명종 4) 명종(明宗) 16년 (156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5위로 급제하였으나 고향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여 □□대학□□□□주자혹문 朱子或問□□ 등을 읽고 깨달은 바가 많았다. 둘째 형이 당나라 한유(韓愈)의 문장을 읽기를 권하였으나, 성현의 글이 있는데 하필이면 한유의 문장을 배울 것이냐고 거절하였다. 여러 해 동안 □□대학□□을 탐독하였는데 심지어 식사까지 거르며 학문에 열중하여 마을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여겼다. 156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함흥 교수로 부임하였다가, 1563년 사직한 뒤 시골에 묻혀 도학을 연마하였다. 또한, 《대학》의 여러 편을 시조로 읊어 교훈시를 만들고, 사상을 시·부가(歌)·곡(曲)으로 체계화하였다.

1595년 풍기군수에 이어 회덕현감(懷德縣監)과 사성(司成) 등을 역임하고 다시 낙향하였다.

1605년 경주부윤에 부임하였으나, 곧 사직하였다.

## 26. 김복억(金福億)

김복억(金福億:1524-?)이 회덕현감을 지낸 것은 □□회덕읍지□□「명관」에 “김복억(金福億) 거사비(去思碑)가 있다.”라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복억의 회덕현감 제수일과 체직일 및 재임시 행적을 알 수 없다. 다만 □□선조실록□□에는 김복억이 금구현령에 재임시에

시간원이 아뢰기를,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는 수령에게 백성의 휴척(休戚)이 매인 것이 여느 때에 비해 더욱 급박하니, 수령을 신중하게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금구 현령(金溝縣令) 김복억(金福億)은 나이가 이미 노쇠하여 앞길의 애석할 것이 없자 자신을 살찌우는 일을 많이 행하고 있으며 또 본가가 근처에 있으므로 폐단을 끼치는 일이 많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권58, 선조 27년 12월 14일(정사)).

라하여 선조 27(1594)년에 김복억이 나이가 많아 앞길이 애석할 것이 없자 자신을 살찌우는 일을 많이 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김복억의 회덕현감 재임시기는 사마시 입격한 선조 6년(1573)년 이후 금구현령으로 나아간 선조 27년(1594)년 사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복언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자는 백선(伯善), 본관은 강진(康津), 아버지는 양주진 관병마첨절제사(楊州鎮管兵馬僉節制使) 김약묵(金若默)이다. 선조(宣祖) 6년 (157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13위로 입격하였다.

## 27. 이간(李幹)

이간(李幹)이 회덕현감을 지낸 것은 □□월정선생집(月汀先生集)□□에 실려 있는 첨지이공간묘지명(僉知李公幹墓誌銘)에

생각건대 이씨는 왕실로 효령대군 휘 보(補)는 즉 공정대왕(恭定大王)의 둘째 아들로 공(公)의 5대조이다. …(중략)… 파성(把城)은 풍덕군수(豐德郡守) 휘(諱) 광윤(光胤)을 낳았고, 풍덕(豐德)은 경주 이씨(慶州李氏) 사옹직장(司饔直長) 하신(夏臣)의 딸을 취하여 정해년(1527) 3월 6일에 공을 낳았다. 공의 휘(諱)는 간(幹) 자는 간지(幹之)이다. 낳아서 10살이 안되어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한테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기쁨과 성냄을 갑자기 하지 않아 의젓함이 성인과 같았다. …(중략)…

경신년(1560) 봄에 음보로 전설사 별제(典設司別提)에 보임되었고, 신유(辛酉:1561) 가을에 북평관(北平館)으로 옮기었다. …(중략)… 경오(庚午:1570)에 정읍현감에 제수되었고, 5년이 지나 체직되었다. 백성들이 공을 생각하기를 백성을 포옹하는 것과 같았다. 때마침 회덕에 현감이 결원이 되어 충청도 관찰사가 이 책무로서 백성을 소생 시킬자를 가려서 제수해 달하고 청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공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이 읍(회덕)에 제수하였다. 현감으로 있은지 6년에 정사가 깨끗해지고 백성들이 많아져서 다스림이 도내에 으뜸이었다. 임오년(1582) 여름에 경산현령으로 승진하였다. …(중략)… 무술(戊戌)년 봄에 병이 나 3월 3일 그곳에 죽었다. (□□월정선생집(月汀先生集)□□ 권6(卷之六), 묘지(墓誌), 첨지이공간묘지명(僉知李公幹墓誌銘))

라하여 이간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임시기는 첨지이공간묘지명(僉知李公幹墓誌銘)을 찬한 사람이 윤근수로 생년 1537년이고, 몰년은 1616년이다. 그렇다면 이간이 위사료에 이간은 정해년에 출생하여의 무술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윤근수의 생몰년으로 볼 때 이간의 생년은 1527년이고, 몰년은 1598년(무술)이다. 그런데 이간이 경오년(1570)년에 정읍현감에 제수되었고 5년이지나 체직되었다 하므로 1575년에 체직된 것이다. 그리고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다가 6년 뒤인 임오(1582)에 경산현령으로 승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회덕현감에 재임시기는 1575년(선조8)에서 1582년(선조15)까지이다. 이간은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효령대군의 5대손이고, 아버지는 풍덕군수를 지낸 광윤이고, 어머니는 사옹원 직장 이하신의 따님이었다. 이간의 자는 간지(幹之)이고, 경신년(1560) 봄에 음보로 전설사 별제(典設司別提)에 보임되어 사환을 한 인물이다.

## 28. 최세해(崔世灝)

최세해(崔世灝)가 회덕현감으로 재직하였던 것은 □□회덕읍지□□「명관(名官)」조에 거사비(去思碑)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세해에 대해서는 □□미암선생집(眉巖先生集)□□에

황해감사 서장(書狀) 요약하여 말하기를 …(중략)… 판관 최세해(崔世灝)가 본디 이름을 들은 적은 없지만 하는 비를 보건대 뜻이 있고,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조금도 넘쳐서 잃는것이 없으며 세금을 거두는 것은 가볍게 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였으며, 백성과 같이 생활하였다고 정장(呈狀)하고 있다. (□□眉巖先生集□□ 卷之十二, 日記刪節, 上經筵日記別編, 甲戌下)

라하여 외방에 수령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미암선생집□□의 저자는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이다. 위 자료는 유희춘(柳希春)이 경연관으로 있던 갑술(甲戌)년의 경연일기별편(經筵日記別編)이다. 여기서 갑술년은 유희춘 (1513(중종 8)~1577(선조 10))의 생몰년대로 보아 1574년(선조7)이다. 따라서 최서해가 회덕현감으로 재직한 시기는 아마도 1574년 이전의 어느 시기이었을 것이다.

## 29. 박광전(朴光前)

박광전(朴光前)이 회덕현감에 재임했던 사실은 그의 문집 □□죽천선생문집(竹川先生文集)□□ 권7, 「부록(附錄)」, ‘행장(行狀)’에 나온다. 행장에는 정해(丁亥) 즉 1587년에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시기는 알 수 없다.

부임후 회덕현감으로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해(1587), 선생 62세에 장원(掌苑)에 제수 되었으나 직명은 도중에 실전하였고, 또 회덕 현감에 제수되었다. 회덕현에 이르러 종친 한사람이 촌민과 더불어 노비를 다투었는데 누년동안 결절(決折)하지 못하였다. 여러 관직을 지내고 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는데, 이전의 여러 수령들이 세력을 두려워한 까닭으로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었다. 선생은 그간 소송 문제를 보고 그 정상을 상고하여 촌민에게 노비를 허락하였다. 종친이 스스로 권세를 믿고, 현부에 정장(呈狀)을 하니, 현부가 문안을 취하여 보니 곡직(曲直)이 드러나자 종친이 두려워 그만두고 물러났다. (□□죽천선생문집(竹川先生文集)□□ 권6(卷6), 「부록(附錄)」 ‘년보(年譜)’).

라하여 노비소송에 있어서 종친이 촌민과 노비쟁송시에도 엄격하게 판단하여 종친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박광전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광전(朴光前:1526 중종 21~1597 선조 30).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본관은 진원(珍原). 자는 현재(顯哉), 호는 죽천(竹川). 진사 이의(而誼)의 아들이다.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선조(宣祖) 1년 (1568) 무진(戊辰)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1등(一等) 2위로 입격하였다. 유희춘(柳希春)이 감사(監司)였을 때 천거되어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이 되었고,

다시 헌릉참봉(獻陵參奉)으로 옮겼으나 곧 그만두었다. 1581년 왕자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함열(咸悅)-회덕(懷德) 현감을 역임하였으나 상관의 뜻을 거슬려 파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계영(任啓英)-김익복(金益福)-문위세(文緯世) 등과 보성(寶城)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정병 700여명을 모집하고, 문인 안방준(安邦俊)을 종사(從事)로 삼고 장자인 근효(根孝)를 참모로 삼았으나, 병으로 의병을 통솔할 수 없자 임계영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1597년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 적이 호남을 침범하자, 전 판관(判官) 송홍렬(宋弘烈), 생원 박사길(朴士吉) 등에게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이 되었다. 동복(同福)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으나 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좌승지에 추증되고 보성 용산서원(龍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박광전(朴光前)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선조(宣祖) 1년 (1568) 무진(戊辰)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1등(一等) 2위로 입격하였고, 거주지는 보성(寶城)이었다.

## 30. 정효성(鄭孝誠)

정효성(鄭孝誠 ?~1637)이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다가 파직된 시기는

사현부가 아뢰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정효성(鄭孝誠)은 적이 경성을 점거한 시기에 감히 공을 노리고 상을 바라는 마음을 품어 인척의 장수(將帥)에게 청탁하여 공로를 허위로 보고하게 해서 그로 인하여 6품에 승진했으니, 이미 염치없기 그지없습니다. 또 주장(主將)이 이미 파직되었으면 종사관의 직임도 무효인데 그 칭호를 참칭하며 군량을 징수하여 사리 사욕을 도모했으니, 그가 사풍(土風)을 더럽힌 것이 막심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라하여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1595) 6월 9일 경술)

라하여 1595년(선조 28)년 6월 9일이다. 정효성이 회덕현감으로 있다가 파직된 사유는 회덕현감으로 있던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는데 공을 노리고 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척의 장수에게 청탁하여 공로를 허위로 보고하게 해서 6품으로 승진한 것 때문이었다.

정효성에 대해서는 □□동주선생문집(東州先生文集)□□ 권10 갈명(碣銘)에 자세하다. 갈명에 의하면 본관은 진양(晉陽), 자는 술초(述初), 호는 휴휴자(休休子)이었다. 조정의 거재(舉才) 빌탁으로 회덕현감에 제수되었고, 함흥판관(咸興判官) 호조정랑(戶曹正郎)을 지냈다. 1607년

(정미)에 삭녕군수(朔寧郡守), 은진현감(恩津縣監)을 지냈고, 이후 1628년에, 충주목사(忠州牧使), 1631년에 공청도관찰사(公淸道觀察使) 등을 역임하고, 1636년(인조 14)에 졸하였다.

□□인조실록□□에는 정효성에 대하여 “여러 군현을 맡아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제법 있었는데, 고을에 재임하며 아랫사람을 대할 때 농담과 해학을 섞어 말하곤 하였다. (□□인조 실록□□ 권22, 인조 8년 2월 9일)”라고 하였다.

정효성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효성(鄭孝成; 1560~163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술초(述初), 호는 휴휴자(休休子). 승문원박사 주신(舟臣)의 손자로, 침봉 원린(元麟)의 아들이다. 본래 충절 가문의 유복자로 편모슬하에서 자라났으나, 나면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일찍이 진사시에 합격하고 학업을 계속하던 중, 재행이 알려지면서 음직으로 회덕현감에 발탁되었다. 이어 함흥판관·은진현감을 역임하고 내직으로 옮겨 호조정랑을 지냈다. 광해군 말엽에 간신들에 휩싸여 정치기강이 문란해지면서 반대세력에 의하여 1618년(광해군 10)탄핵, 좌천되었다. 인조반정 후 복직되어 삭녕군수·강화유수·청주목사를 지냈다.

1627년 노모가 병사하자, □□가례□□에 의한 법도를 다하여 상례를 치렀다. 1630년(인조 8) 공청감사로서 황폐된 농촌사회를 복구하기 위하여 농민의 부담을 감축하는 등 치적을 쌓았다. 1636년 청나라군대가 재침해오자, 강화도를 지키고자 분투하다가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순사하였다.

## 31. 양응춘(楊應春)

양응춘(楊應春)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현감(縣監) 양응춘(楊應春)의 자(字)는 인경(仁卿), 호(號)는 도동(道洞), 석성(石城) 사람이다. 주부(主簿) 충백(忠伯)의 아들이고, 고려 명신이었던 천수(天壽)의 후예이다. 청렴하고 강직하고 강개(慷慨)하였다. 임진(壬辰:1592)에 회덕현감으로 부모의 상을 당하였고, 선생(조현)의 창의격문을 보고, 묵죄(墨裯: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돌아간 어머니의 담제(禫祭) 뒤에 입는 옷)을 입고 종군하였다. 증이조참의(贈吏曹參議)이고, 정문(旌門)이 내렸으며, 은진인이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

하였다. (□□중봉선생문집부록重峯先生文集附錄□□ 권7(卷之七), 사원(祠院), 의도(義徒), 막좌문생동 일사절록(幕佐門生同日死節錄))

라 하여 임진년(1592)에 회덕현감 양응춘이 중봉 조현의 창의시에 목죄를 입고 종군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응춘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 32. 남경성(南景誠)

남경성(南景誠)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임진년(1592) 12월 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검간선생문집(黔澗先生文集)□□「진사일록(辰巳日錄)」 ‘일록(日錄)’임진(1592) 12월조에

19일 일찍 발병(發兵)하여 고봉(孤峯) 구덕용(具德容) 정사에서 조반을 하였는데, 정경임(鄭景任)은 어제 저녁에 와서 묵었다. …(중략)… 영동현감 한명윤(永同縣監韓明胤), 황의장 박이용(黃義將朴以龍), 회의장 강절(懷義將 姜節), 청의장 남충원(靑義將 南忠元), 진잠현감 변호겸(鎮岑縣監邊好謙), 회덕 현감 남경성(懷德縣監 南景誠), 황간현감 박몽열(黃澗縣監 朴夢說)。이 우측 7진으로 우위(右衛)를 삼았다. 남경성 박몽열을 장수로 하여 그에 속하게 하였다. …(하략)… (□□검간선생진사일록(黔澗先生辰巳日錄)□□ 권1, 「목록(日錄)」, 12월 19일)

라하여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검간 조정(黔澗 趙靖:1555-1636)이 임진년(1592) 12월에 报恩에 가서 여러 의병장들과 約束을 정하였을 때, 회덕현감 남경성이 우측 7진에 우위(右衛)로 참여하였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남경성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592년 12월 경이었음을 알 수 있고, 회덕현감에 제수된 일시나 체직일은 알 수 없다.

남경성(南景誠:1558-?)은 무과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의령(宜寧), 아버지는 수의부위(修義副尉) 남지명(南知命)이다. 무과에 선조(宣祖) 17년 (1584) 갑신(甲申) 별시(別試) 병과(丙科) 157위로 급제하였다.

### 33. 노세준(盧世俊)

노세준(盧世俊)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하였던 사실은

사헌부가 아뢰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노세준(盧世俊)은 위인이 용렬할 뿐 아니라 글을 전혀 알지 못하여 모든 정사를 하리(下吏)에 위임하고 재물을 끝없이 징수하므로 온 고을에 원성이 자자하니, 파직하소서. …(하략). (□□선조실록□□ 권 90 선조 30년(1597) 7월 28일(정사))

라하여 1597년(선조30) 7월 28일에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재임하였다. 그런데 훤거현감 노세준(盧世俊)은 위인이 용렬할 뿐 아니라 글을 전혀 알지 못하여 모든 정사를 하리(下吏)에 위임하였고, 재물을 끝없이 징수하므로 온 고을에 원성이 자자하여 파직 당하였다.

노세준은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된 이후 1606년(선조39)에 6월 19일에 선천군수(宣川郡守)에 제수 되었다(□□선조실록□□ 200권, 선조 39년(1606) 6월 19일 병진). 그러나 선천군수에 재직시에도 “군수 노세준(盧世俊)은 인물됨이 용렬하여 부임한 뒤로 정사를 하리(下吏)에게 맡겨 두고 전혀 수습치 않아 관아의 일을 날로 잔폐해지게 함으로써 길가에 위치한 큰 읍이 버린 땅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선조실록□□ 208권, 선조 40년(1607) 2월 7일 경자)”라한 인물평이 □□선조실록□□에 실려 있다.

노세준에 관한 사료중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에는 노세준의 아들 노대익(盧大益)이 명종(明宗) 1년 (154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32위로 입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노세준 자신도 연산군(燕山君) 7년 (15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66위에 입격하였고, 중종(中宗) 17년 (152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3위로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노세준의 회덕현감 재직시기가 1597년 이었으므로,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에 기록된 노세준과는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 따라서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에 기록된 노세준과는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 34. 양억(梁嶽)

양억(梁嶽)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양억(梁嶽)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79권, 선조 37년(1604) 윤9월 26일 계묘)

라하여 1604년(선조 37) 윤 9월 26일이었다. 양억은 선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회덕현감에 부임하기 전인 1604년(선조 37) 6월 22일에 감찰직에 있었다(□□선조실록□□ 175권, 선조 37년 6월 22일 신축). 그리고 □□연려실기술□□ 「선조조기사본말」에는 진안 현감(鎮安縣監)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연려실기술□□ 권18, 선조조기사본말).

### 35. 유계룡(柳季龍)

유계룡(柳季龍:1561-??)이 회덕현감에 재직하였다가 파직된 것은

① 사간원이 아뢰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계룡(柳季龍)은 고을살이를 삼가지 않아서 절도 없이 거두어 들였으며, 형벌을 씀이 잔혹하여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광해군일기□□ 권114, 광해군 9년 4월 4일(무술)).

②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계룡(柳季龍)이 법도 없이 긁어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비록 들은 바가 없으나, 자신을 배반한 노비를 잡아서 너무 잔혹하게 형벌을 가한 데 대해서는 도내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개 수령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봄에 별로 볼 만한 점이 없으며 경내의 백성들이 몹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간이 아뢴 바가 어찌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광해군 일기□□ 권114, 광해군 9년 4월 22일(병진))

③ 공홍도 감사가 조사하여 보낸 장계에 대해 전교하였다. <“유계룡(柳季龍)은 파직하라.”> (□□광해군 일기□□ 114권, 광해 9년 4월 25일 기미)

라하여 1617년(광해군 9) 4월 25일이다. 유계룡이 회덕현감에서 파직된 사유는 ①에서 처럼 절도 없이 거두어 들이고, 형벌을 씀이 잔혹하여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계룡의 회덕현감 재임시 행위는 ②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계룡의 회덕현감 재임시 행위로 ③에서 처럼 1617년(광해군 9) 4월 25일에 파직되었다.

그런데 유계룡의 회덕현감에 제수되기 전에는 의관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약방(藥房)이 아뢰기를, “의관(醫官)에게 내리신 분부를 방금 듣고, 신들은 매우 황공하고 민망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어의(御醫) 이외에 성협(成浹)이 의술에 자못 통달하고 유계룡(柳季龍)은 맥법(脈法)을 조금 알고 있으니, 모두 서계하게 하면 널리 의논하고 참고하여 쓰는 도리에 맞을 듯합니다.” (□□선조실록□□ 176권, 선조 37년 7월 2일 신해)

에서와 같이 유계룡이 맥법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유계룡은 특히 침의로서(□□선조실록□□ 203권, 선조 39년 9월 14일 경진), 선조의 병을 치유하기위하여 자주 입시한 인물이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유계룡의 자는 군견(君見), 본관 문화(文化), 아버지는 충의위(忠義衛) 유유춘(柳有春)이다. 선조(宣祖) 24년 (159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41위로 입격하였다. 이처럼 진사로 입격한 유계룡이 의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마방목에 유계룡의 아버지 유유춘(柳有春)이 충의위(忠義衛)였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즉 충의위라는 특수병종은 양반들의 천첩소생이 입역하던 병종이다. 따라서 유계룡의 아버지는 천첩소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계룡이 진사에 입격하고도,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의관으로 사환하여, 차차 전전하여 외방수령으로 제수된 것으로 보인다.

## 36. 윤효생(尹孝生)

윤효생(尹孝生)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일시는 알 수 없으나, 윤효생의 파직된 것은

〈비변사가 아뢰기를, “회덕(懷德)에 사는 유학 송원조(宋元祚) 등 30명이 연명으로 본사에 정장을 하였는데 ‘현감 윤효생(尹孝生)은 자상하고 청렴하며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였으므로 전 감사가 이미 포장할 것을 장계하였는데, 지금 도적이 달아난 일 때문에 파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쌀 1백 석을 바치겠으니 유임시켜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광해군일기□□ 권131 광해군 10년 8월 17일(계유))

에서와 같이 1618년(광해군) 10년 8월 17일이다. 그런데 윤효생은 회덕현감의 재임시에 자상하고 청렴하여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였다 한다. 그러나 도적이 달아난 일 때문에 회덕현감에서 파직된 것이다. 이로 인해 회덕에 사는 유학 송원조(宋元祚) 등 30명이 연명으로 정장(呈狀)을 하기를 쌀 1백석을 바치겠으니 유임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는 윤효생이 회덕현감으로 선정을 하였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7. 심척(沈愓)

심척(沈愓)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한 사실은

군이 만력(萬曆) 갑진(甲辰:1584)에 출생하였다. 스스로 신분상 결함으로 공부에도 지장이 있었고 또 2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다. 22세에 하세하였으니 묘소는 회덕현 남쪽 5리 지점인 허수평(虛受坪) 곤향의 언덕에 있다. 심후 척(沈侯愓:후는 군수 또는 봉백의 칭호)은 공과 동문이다. 일찍이 이 고을에 현감으로 왔을 때 제문을 지어 그 묘에 제사 지냈다. 이후로는 다시는 한 사람도 술 한잔 따라 놓는 사람이 없었다. 묘도 허물어져서 다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아! 한 조각 짧은 비석으로 백세에 이름을 퍼뜨리니 후세의 사람들이여! 그 무덤 밟지 말지니라. (□□대전금석문(大田金石文□□,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534-539)

라하여 알 수 있다. 심척이 회덕현감에 제수일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조가 아뢰기를, …(중략)… 직언하다가 죄를 입은 유생 조경기(趙慶起)·이안진(李安眞)·정복형(鄭復亨)·권심(權滌)·김효성(金孝誠)·홍무적(洪茂績)과 학행이 있는 유생 성문준(成文濬)·유진(柳袗)·김집(金集)·홍백순(洪百順)·박응선(朴應善)·강학년(姜鶴年)·조경(趙絅)·김억(金巖)·이유겸(李有謙)·이유양(李有養)·허주(許周)·조공립(趙恭立)·심척(沈愓)·이영원(李榮元)·조형생(趙亨生)·김육(金堉)·박지양(朴知讓) 등을 이조가 계청하니, 모두 발탁하여 6품직을 제수하였다.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1623 계해) 3년) 4월 8일 정묘)

라하여 심척이 1623년 4월 8일에 처음으로 발탁되어 6품이 되었다. 따라서 심척이 1623년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여지도서(輿地圖書)□□ 경기도 김포의 인물조에 심척이 등재되어 있는데,

심척 인조때 사람이다. 1623년(계해)에 처음 천거되어 곧바로 현감에 제수되었다.

라하여 1623년에 초천되어 현감으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다. 심척이 초천된 곳이 회덕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 38. 노희천(盧希天)

노희천(盧希天)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되고 파직된 사실과 관련하여 □□승정원일기□□에는 아래의 4개 기사가 실려 있다.

- ① 이비(吏批), …(전략)… 노희천을 봉정대부 회덕현감으로 제수한다(盧希天爲奉正大夫行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7월 18일(무자)).
- ② 하직(下直), …(전략)… 회덕 현감 노희천(懷德縣監盧希天)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8월 12일(신해))
- ③ 부계(府啓), …(전략)… 회덕 현감 노희천은 사람됨이 가벼워(泛濫) 지금 처녀간택을 연유로 하여 그녀를 거느리고 상경하여 40필의 쇄마(刷馬)을 냄에 이르렀고, 혹 백성에게 목필(木疋)을 받아서 백성들이 건쇄마라 칭하였으니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임금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노희천의 일은 풍문으로 반드시 진실을 다하지 않았으니 다시 상세하게 논하는 것이 가하다. 이상 조보이다. (□□승정원일기□□ 인조5년 7월 24일(무자)).
- ④ 부(사헌부)에서 앞서 아뢰기를 …(전략)… 청컨대 회덕 현감 노희천을 파직하는 일.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승정원일기□□ 인조 5년 7월 25일(기축))
- ⑤ 부(사헌부)에서 앞서 아뢰기를 …(전략)… 회덕 현감 노희천의 파직을 청하였다. 새로이 아뢰기를 새로운 경영이 어지럽고 시골마을이 근심과 탄식을 하니 청컨대 암행어사를 보내어 백성의 고통과, 백성의 다스림이 능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살펴야 한다고 아뢰었다. 답하여 말씀 하시길 계에 의하여 상을 더하는 것을 개정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인조 5년 7월 26일(경인))

따하여 ①에서 처럼 노희천은 1626년(인조4) 7월 18일에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고, ②에서와 같이 1626년 8월 22일에 부임하였다. ③④⑤에서 처럼 노희천은 실정으로 인조 5년 7월 24일 이후 계속 파직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파직된 것으로 보인다.

## 39. 유면종(兪勉曾)

유면종(兪勉曾)이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은 충현서원의 □□심원록(尋院錄)□□에 나온다. 충현서원의 □□심원록□□은 1611년(만력39년)에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장정은 선장이고,

책의 크기는 40.6×30.3cm이다. 유면중이 회덕현감으로 충현서원에 알묘(謁廟)한 사실이 기록 것은 □□심원록□□의 92쪽 중 53쪽에

杞溪俞勉曾尙魯 乙亥十月念日/懷德縣監.

라하여 읊해 10월 20일에 회덕현감으로 알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읊해는 □□심원록□□에 161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1635년(인조13)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면중이 충현서원을 방문하여 알묘한 것은 1635년(인조13) 10월 20일이 된다.

유면중에 대해서는 사마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상로(尙魯), 생년은 신미(辛未) 1571, 부(父)는 유학 유대업(俞大儼)이었고, 거주지는 경(京)이었다. 선조(宣祖) 39년(1606) 병오(丙午)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23위로 입격하였다.

## 40. 지봉수(池鳳邃)

지봉수(池鳳邃)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현부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회덕 현감(懷德縣監) 지봉수(池鳳邃)와 금화 현감(金化縣監) 이진행(李震行)은 일찍이 병자호란에 묘사(廟社)의 관원으로서 잘 모셔 받들지 못한 죄가 있고 기록할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견책을 모면하고 도리어 차례를 건너 뛰어 높은 직급을 받아서 여론이 자자하여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는데, 뜻밖에 지금 특별히 제수하는 명령이 있으니 여론은 더욱 타당치 않게 여깁니다. 아울러 체차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그때 모시고 온 자는 다만 이 두 사람 뿐이었기 때문에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특별히 수령을 제수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하였다.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2월 26일 갑인)

라하여 1638년(인조 16) 12월 26일이다. 지봉수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병자호란시에 묘사(廟社)의 관원 즉 종묘의 관원으로 위폐를 모시고 온 공로가 있어서이다. 그런데 위 사료에서처럼 사헌부에서는 묘사의 관원으로 위폐를 잘 모셔 받들지 못한 죄가 있으니 특별히 현감으로 제수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인조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히 수령으로 제수한 것이다.

그러나 지봉수가 회덕현감으로 제수되고서도 □□승정원일기□□에는 계속 지봉수를 처벌

하자는 주장이 대간을 중심으로 언급된 사실이 실려 있다. 마침내 □□승정원일기□□ 1639(인조 17) 3월 19일조에는 정언 이회계(李禪啓)와 대사헌김수현(金壽賢) 등이 지봉수를 죄줄 것을 청하여, 마침내 인조도 허락하였다. 따라서 지봉수가 파직된 것도 1639(인조17) 3월 19일 것으로 보인다.

## 41. 조송년(趙松年)

조송년(趙松年)이 회덕 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이씨, …(전략)... 조송년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 이조등록(吏曹謄錄)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639) 4월 4일 (신묘))책

② 행대사간이명한(行大司諫李明漢), 정언 이철(正言李哲)-이행원(李行源)이 아뢰기를 …(전략)... 회덕 현감 조송년은 선현의 후예로서 조정에서 이미 수령(字牧)의 임무를 받았거늘, 십분 두려워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임 후에 탐학을 자행하여 속오군을 많이 정하여 죽은자의 군포도 받고, 평화로운 백성들 사이에 억지 명령으로 쌀을 거두고, 소송이 있을 시에는 공공연히 수뢰하였고, 기타 음난하고 탐학한 일이 하나가 아니다. 전하여 듣기에 놀랍고 분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청컨대 파직을 명하시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다. 답에 말하기를 아뢰것대로 하고, 황익으로 체차하라. (□□승정원일기□□ 인조 19년(1641) 5월 17일 (신묘))

①에서처럼 인조 17년(1639) 4월 4일이었다. 그리고 파직은 ②에서처럼 조송년이 선현의 후예로서 회덕현감에 부임하여 탐학하였기 때문에 인조 19년(1641) 5월 17일에 파직되었다.

그리고 회덕현감 조송년과 체차된 것이 황익이다. 그렇다면 황익도 회덕현감에 부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송년 다음에 회덕현감에 도임한 인물은 장귀한(張歸漢)으로, 그는 1641년(이조19) 5월 20일에 회덕현감으로 제수되었다. 따라서 황익은 실제로 회덕현감에 제수된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42. 장귀한(張歸漢)

장귀한(張歸漢)이 회덕 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전략)… 장귀한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張歸漢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인조 19년(1641) 5월 20일 (갑오)

② 하직하다, 백령첨사 신종술(白翎僉使辛宗述), 제천현감 강문명(堤川縣監姜文明), 회덕 현감 장귀한(懷德縣監張歸漢). (□□승정원일기□□, 인조 19년(1641) 6월 11일 (을묘))

라하여 인조 19년(1641) 5월 20일이었고, 회덕현감을 제수받고 인조에게 하직하고 도임한 것은 같은해 6월 11일이었다.

### 43. 안경심(安景深)

안경심(安景深:1571-?)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한 사실은

이비(吏批: 이조에서 임금에게 주청하여 인사 임명에 대한 재가를 받는 일을 담당한 전형관)가 아뢰기를, “호조의 응판색(應辦色)으로 정랑과 좌랑 각 한 사람을 차출하여야 되겠기에 신 정(挺)과 관반(館伴) 신 이이첨(李爾瞻)이 함께 의논하였는데, 정감(鄭鑑)과 안경심(安景深)이 가장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어서 이 직임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다만 안경심은 전에 회덕 현감(懷德縣監)이 되었을 때 해유(解由)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유를 받지 못한 사람을 관직에 제수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청렴하고 신중한 자를 가려 이 직임에 제수하라.” (□□광해군일기□□ 82권, 광해군 6년 9월 14일 계해)

라하여 1614년(광해군 6) 9월 14일 이전의 일로 보인다. 안경심이 이비에 의하여 호조의 응판색(應辦色)으로 천거되었으나, 회덕현감에서 체직할 때 해유가 나오지 않아 제수되지 못하였다. 즉 안경심이 1614년(광해군 6) 9월 14일 이전에 회덕현감에 재직하였던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안경심은 1589년(선조22)에 진사시 입격하였고, 1616년(광해군8)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를 회덕현감 재임시와 비교하면, 안경심은 진사시 입격 후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다가 광해군 8년(1616)에 다시 증광시에 급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록기사에 의하면 안경심은 회덕현감 재임이후에도 필선(弼善:광해11), 교리(校理:광해12), 용천 부사(龍川府使:광해 14), 철산 부사(鐵山府使:인조4), 성천 부사(成川府使:인조5) 등을 역임하였다.

안경심에 대하여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을 통해 이력사항을 알아보면, 선조(宣祖) 22년

(1589) 기축(己丑) 진사시(進士試)에 입격하였고, 광해군(光海君) 8년 (1616) 병진(丙辰)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29위로 급제하였다. 안경심의 자는 자연(子淵), 본관은 죽산(竹山), 부(父)는 안언상(安彦鏘)이다.

#### 44. 조창우(曹昌宇)

조창우(曹昌宇)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전략)… 조창우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曹昌宇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인조 23년(1645) 11월 23일(신미))

라하여 인조 23년(1645) 11월 23일(신미)이었다.

#### 45. 김향(金嚮)

김향(金嚮)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전략)… 김향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金嚮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인조 26년(1648) 12월 19일 (기유))

라하여 인조 26년(1648) 12월 19일이다.

#### 46. 김자회(金自晦)

김자회(金自晦)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전략)… 김자회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金自晦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1649) 12월 26일 (경술))

라하여 효종 즉위년(1649) 12월 26일이었다. 그러나 김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 실제로 회덕현감에 도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조계목(吏曹啓目), 점연홍청우도암행어사(粘連洪淸右道暗行御史) 서계(書啓)에 말하기를 …(중략)…  
회덕 현감 박린(懷德縣監朴麟), …(하략)…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1649) 12월 28일 (임자))

에서처럼 김자회가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바로 2일 뒤에 박린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 47. 박린(朴麟)

박린(朴麟)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것은

이조계목(吏曹啓目), 점연홍청우도암행어사(粘連洪淸右道暗行御史) 서계(書啓)에 말하기를 …(중략)…  
회덕 현감 박린(懷德縣監朴麟), …(하략)…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1649) 12월 28일 (임자))

라하여 효종 즉위년(1649) 12월 28일이었다. 그런데 박린의 회덕현감 재임일은 전임 현감이었던 김자회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1649년 12월 26일에서 바로 2일 뒤의 일이다.

이는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김자회에게 문제가 있어 바로 2일 뒤에 박린이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 48. 조옥(趙沃)

조옥(趙沃)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하직수령(下直守令), …(전략)… 회덕 현감 조옥(懷德縣監趙沃), …(하략)… (□□승정원일기□□, 효종 2년(1651) 7월 9일 (갑신))

라하여 효종 2년(1651) 7월 9일에 효종에게 하직하고 회덕현감으로 도임하고 있다.

조옥(趙沃)이 회덕현감을 재임한 사실은 ‘좌랑조후묘지명(佐郎趙侯墓誌銘)’에서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의 휘는 옥(沃)이고 수직으로 자현대부이다. 큰아버지 지재공(止齋公) 직(灑)은 광해조를 당하여 상소를 하여 인륜을 불잡고자 하였을 때 공은 나이가 약관으로 분연히 같은 뜻이 있었으나 지재공이 친노(親老)가 있으니 형제가 같이 화를 당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지재공이 형을 받고 유배를 당함에 미쳐서 공은 고향에서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어머니 권씨는 판관 제(悌)의 따님으로 양촌의 후예이었다. 1641년(崇禎 辛巳) 8월 9일에 출생하여, 12세에 아버지의 임소인 회덕에 따라가 우암 송선생의 문하에 수업을 청하여 장성할 때까지 왕래하면서 종사하였다. 또한 일찍이 동춘 송선생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장암선생집(丈巖先生集)□□ 권 13 묘지명(墓誌銘), 좌랑조후묘지명(佐郎趙侯墓誌銘))

위 묘지명은 좌랑을 지냈던 조의운(趙義耘)의 묘지명으로, 조의운이 12살때 아버지 조옥(趙沃)이 회덕현감을 지냈다고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의운은 1641년(崇禎 辛巳) 8월 9일에 출생하여, 12세에 아버지의 임소인 회덕에 따라가 우암 송선생의 문학에 수업을 청하여 장성할 때까지 왕래하면서 종사하였던 인물이다.

## 49. 유지화(柳志和)

유지화(柳志和)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김진(金振)을 승지(承旨)로 삼고, 유지화(柳志和)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고, …(하루)… (□□승정원 일기□□ 효종 4년(1653) 10월 0일)

라하여 효종 4년(1653)년 10월이었다.

그런데 유지화의 회덕현감 재임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구 읍내동 사무소에 내에 □□현감유공지화애민선정비현민상입비기 사위행로소상 금역이신지(縣監柳公志和愛民善政碑縣民嘗立碑記 思爲行路所傷 今易以新之□□라는 비가 있다. 이 비는 비의 명문에 “현감 유공 지화 애민 선정비로 현민이 일찍이 비를 세웠는데, 길가에(行路)에 상한 바 되어 지금 바꾸어 새롭게 세운다”라여 처음 세웠던 원비가 아니고, 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유지화의 선정비는 □□회덕읍지□□의 「명관」조에도 “유지화(柳志和) 거사비가 있다”라 기록되어 있다.

선정비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지화는 회덕현감으로 선정을 베풀었던 듯 하다. 유지화의 회덕현감 부임과 현감으로서의 행적은 옥오재(玉吾齋) 송상기(宋相琦) 쓴 “현감유후묘표(縣監柳侯墓表)”에

병자년(1636)에 오랑캐가 침입해오니,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호종하여 들어갔다. 남한산성에 나와 통진현감으로 나갔는데 유망(流亡)한 백성들을 편안하게하여 전난을 잊게하였으나 미문(微文: 은근히 돌려 말하는 언어나 문자)에 연좌되어 귀양을 갔다. 용서를 받아 다시 군자 주부(軍資 主簿)을 회복하였고, 보은과 회덕 2현에 제수되었으나 보은인 즉 부임하지 않았다. 정사를 편안히 하여 더욱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보였으니, 즉 우리 읍(회덕)이다. 회덕현감에서 퇴임하고 향리에 돌아가서 다시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옥오재집(玉吾齋集)□□ 권24(卷之十四), 묘표(墓表) 현감유후묘표(縣監柳侯墓表))

라하여 유지화가 병자호란(1636)때 임금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후에 통진·보은·회덕현감을 역임하였다, 현감으로 재임시에도 정사를 편안히 하였다 한다.

유지화는 위 묘표에서 처럼 병자년(1636)에 임금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효종 4년(1653)년 10월에 회덕현감으로 제수되었다.

유지화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지화(柳志和; 1599(선조 32)~1680(숙종 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후성(後聖), 호는 반구당(伴鷗堂). 첨지중추부사 희춘(喜春)의 손자이고, 사복시 주부 광복(光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승지 남치상(南致祥)의 딸이다. 12세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계모를 지성으로 섭겨 이웃의 칭찬을 받았다. 1633년(인조 11) 효행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으며, 선공감봉사(繕工監奉事)·상의원주부(尙衣院主簿)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근친하는 일로 귀향하였다가, 병자호란을 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산성에 호종하고 척화론을 주장하였다. 이어 통진·회덕 현감 등에 제수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그뒤 계모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문에 ‘반구당’이라는 편액을 걸고 당대의 명류들과 경전을 토론하며 만년을 지냈다. 1680년(숙종 6) 호종공신(扈從功臣)에 추록되고 통정대부에 승서(陞敍)되었으나 조정의 명이 하달되기 전에 죽었다. 효자의 정문이 세워졌다. 김제 남산서원(南山書院)에 제향되었다.

## 50. 김단(金湍)

김단(金湍)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와 파직된 시기는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전략)… 김단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金湍爲懷德縣監,) …(중략)… 이상 조보(朝報) 정사이다. (□□승정원일기□□ 효종 7년(1656) 1월 16일 (을미))  
② 충청감사서목(忠淸監司書目), 회덕 현감 김단을 피출하였다. (懷德縣監金湍罷黜事) (□□승정원일기□□ 효종 7년(1656) 10월 19일 (계사))

①에서처럼 효종 7년(1656) 1월 16일에 제수되었다가, ②에서처럼 효종 7년(1656) 10월 19일에 충청감사의 서목(書目)에 의하여 파출되었다.

김단(金湍)이 회덕현감직에서 파출된 이유는

김신령(金新寧) 단(湍) 만(挽) 신해(辛亥)

우술(회덕)에 지방관으로 있던 병신(丙申)일에 공은 회덕 현감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사(안찰사)를 거슬려 파직되었다. 우술인즉 회덕의 옛 이름이다. …(하략)… (□□동춘당선생문집(同春堂先生文集) 권24(卷之二十四), 시(詩), 金新寧 湍 挽 辛亥)

라하여 회덕현감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찰사를 거슬려 파직된 것이었다. 즉 ②에서 ‘충청감사 서목’은 즉 충청감사 겸 안찰사가 자신을 거슬린 김단을 파출하여 달라는 서목임을 알 수 있다.

## 51. 박명우(朴明宇)

박명우(朴明宇)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박명우를 회덕 현감으로 삼았다(朴明宇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효종 7년(1656) 10월 21일 (을미))

라하여 효종 7년(1656)년 10월 21일이다.

## 52. 심강(沈樞)

심강(沈樞:1636-?)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것은 □□회덕읍지□□「명관」조에 “심강(沈樞) 거사비(去思碑)가 있다.”라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도임과 이임일은 알 수 없다.

다만 사마방목에 의하면 심강이 사마시에 입격한 것이 22살때이었으므로, 그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것은 사마시에 입격하였던 1658년 이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심강의 자는 군직(君直), 본관은 청송(青松), 아버지는 심지영(沈之瀛)이다. 효종(孝宗) 8년 (165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52위로 입격하였다.

이여(李菴:1645-1718)의 문집인 □□수곡집(睡谷集)□□의 권12 묘표(墓表)에 의하면 심강은 조선중기 호서의 유명한 예학자 이었던 안동권씨 권득기(權得己)의 3자 침(訖1600-1673)의 사위이었던 전주 능안(綾安) 이의(李儀)의 사위이었다. □□수곡선생집(睡谷先生集)□□의 묘표에 심강의 관직이 현감인 것으로 보아, 현감으로 관직 생활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 53. 유성오(柳誠吾)

유성오(柳誠吾)의 회덕현감 제수와 체직은

- ① 사은(謝恩), …(중략)… 회덕 현감 유성오(懷德縣監柳誠吾)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1660) 11월 7일 (무오))
- ② 하직(下直), 회덕 현감 유성오(懷德縣監柳誠吾) … (하략)(□□승정원일기□□ 현종 원년(1660) 11월 22일 (계유))
- ③ 총청감사서목(忠淸감사서목), 회덕 현감 유성오(懷德縣監柳誠吾), 금월 초 6일에 부친의 상사를 당하였다.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2년(1661) 9월 18일 (갑오))

라하여 ①에서 처럼 현종 원년(1660) 11월 7일에 제수되었다가, 같은 달 11월 22일에 임금에게 하직하고 부임하였다. 그리고 체직은 ③에서처럼 현종 2년(1661) 9월 18일에 부친상을 당하여 체직하였다.

유성오(柳誠吾)가 회덕현감에 재임시

(전략)…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성오(柳誠吾) …(중략)…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 등의 치적이 으뜸이거나 진휼을 잘 했다는 이유로 모두 포상하였는데, 이는 어사 여성제(呂聖齊)의 서계에 따른 것이었다(□□현종실록□□ 권4, 현종 2년 6월 5일(임오))

라하여 회덕고을을 잘 다스려 어사 여성제의 서계로 포상을 받았다. 유성오의 치적에 대해서 □□회덕읍지□□에는 “청백하고 백성을 사랑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라 되어 있어 현감 재임시 행적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회덕에서 유성오의 거사비는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성오의 과거경력은 인조(仁祖) 11년 (1633)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13위로 입격하였다.

유성오 대해서는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성오(柳誠吾:1608(선조 41)~1674(현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근부(近夫). 첨정 몽익(夢翼)의 손자로, 현감 속(夙)의 아들이다. 인조(仁祖) 11년 (1633)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13위로 사마시에 입격하고 이듬 해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으로 초사(初仕)하여 형조정랑이 되었다. 그뒤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며 선정을 베풀어 가는 곳마다 칭송이 자자하였다. 특히 1661년(현종 2) 삼남지방에 기근이 혹심하게 들었는데, 이때 회덕현감으로 재직중 기민구휼에 전심전력하여 어사 여성제(呂聖齊)는 그의 활동을 조정에 보고하고 포상할 것을 상소하였다. 이에 이조에서는 주목(州牧)의 수령에 의망(擬望:官職의 三望에 추천함.)하였으나 대간(臺諫)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54. 이수익(李壽翼)

이수익(李壽翼)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사은하다. …(중략)… 회덕 현감 이수익(懷德縣監李壽翼),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2년 (1661) 9월 22일 (무술))
-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이수익(懷德縣監李壽翼),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2년(1661) 10월 16일 (임술))

①에서처럼 현종 2년(1661) 9월 22일이며, ②에서처럼 10월 16일에 국왕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회덕현에 도임하였다.

이수익(李壽翼)이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은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00, 「행장(行狀)」, ‘운정이공행장(雪汀李公行狀)’에

공의 휘는 흘(悅) 자는 상중(尙中) …(중략)… 계부인(繼夫人) 최씨(崔氏)。 별도로 장(狀:고신)있고, 4남 1녀를 낳았는데, 큰아들 창익(昌翼)은 일찍 죽었고, 수익(壽翼)은 지금 회덕 현감(懷德縣監)이고, 광익(光翼)과 상익(商翼)은 모두 재랑(齋郎)이었으며, 딸은 직장(直長) 안세구(安世考)에게 시집갔다. …(중략)…승정 임인(1662) 4월 일 은진(恩津) 송시열(宋時烈)。 삼가 쓴다.

라하여 운정(雪汀) 이흘(李悅)의 계부인 최씨(繼夫人崔氏)가 낳은 4남 1녀중 3남이 이수익으로 회덕현감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수익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그의 행장에 “(전략)…수익이 지금 회덕현감이다(壽翼今爲懷德縣監)”이라 되어 있고, 그리고 행장의 말미에 “시승정임인사월일 은진송시열 근장(時崇禎壬寅四月日。恩津宋時烈。謹狀)”이라 되어 있다. 여기서 임인(壬寅)은 1662년(현종 3)이다. 따라서 이수익은 1662년 4월까지 회덕현감에 재임하고 있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이수익(李壽翼:1613-?)의 자는 가구(可久),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을 지낸 이흘의 3째 아들이다. 인조(仁祖) 26년 (164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1등(一等) 5위로 입격하였다.

## 55. 이운(李耘)

이운(李耘)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이운을 회덕 현감으로 삼았다(李耘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 일기□□, 현종 4년(1663) 11월 10일 (갑술))

라하여 현종 4년(1663) 11월 10일이었다.

이운(李耘)이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남계선생박문순공문정집(南溪先生朴

文純公文正集)□□ 권제68(卷第六十八), 제발(題跋), ‘발한강선생갑신수첩(跋寒岡先生甲申手帖)’에 “득문어이회덕운씨(得聞於李懷德耘氏)”라하여 알수 있다. 그리고 이운의 회덕현감 재임 시기는 □□여호선생문집(黎湖先生文集)□□ 권(卷)24, 「묘갈명(墓碣銘)」, 「전부이공묘갈명(典簿李公墓碣銘)」에

신묘년 비로소 진사가 되었다. 계사년에 장릉 참봉(長陵參奉)에 제수되었고, 종묘서 봉사(宗廟署奉事).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다. 계묘년에 회덕현감이 되어 1년간 재임하였다.

라하여 이운이 신묘년에 진사가 되었고, 계사년에 장릉참봉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계묘년에 회덕현감으로 1년을 지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계묘년은 위 묘갈명에 의하면 이운의 몰년이 1672년(임자)년 이므로 계묘년은 1663년이 된다. 즉 이운이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시기는 1663년 11월 10일로부터 약 1년 동안 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운의 후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허찬(許讚)의 회덕현감 제수일이 현종5(1664) 11월 3일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이운은 회덕현감에 현종 4년(1663) 11월 10일에 제수되어 현종 5년(1664) 11월 2일 이전까지 재임하였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운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운(李耘:?-1663)의 자는 공실(公實), 호는 선암(仙巖),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아버지는 사섬시 참봉(司膳寺參奉)을 지낸 경항(景恒)이고, 조부는 남부 참봉(南部參奉)을 지낸 준(璿)으로 율곡 이이의 백형(伯兄)이다. 신묘년(1591)에 진사에 입격하였고, 1593년(癸巳)년에 장능 참봉(長陵參奉), 종묘서 봉사(宗廟署奉事),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계묘(1663)에 회덕현감, 정미년(1667:丁未)에 사직서령(社稷署令), 종친부 전적(宗親府典簿), 군자감판 관(軍資監判官)을 역임하였고, 이 해에 회덕현감 재임시의 작은 허물로 파주 마상역으로 가서 유배를 돌아오지 못했고, 신해년(1671)에 조지서별제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 56. 허찬(許讚)

허찬(許讚)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下直, …(중략)…, 허찬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許纘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664) 11월 3일 (경인))

라하여 현종 5년(1664) 11월 3일이었다.

허찬(許纘)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학암허공(鶴巖許公) 휘는 찬(纘), 자(字)는 수창(秀昌), 양천인(陽川人) …(중략)… 임오(壬午). 비로소 사마시에 입격하였고, …(중략)… 정유년(丁酉:1657)에 광문관에 임명되었고 …(중략)… 승진하여 별제도사로 서용되었고, 혹은 물러나고 다시 나오기 8년에 회덕 현감이 되었는데, 첫 번에 다스림과 교화가 행해졌다. (□□소곡선생유고(素谷先生遺稿)□□ 권6(卷之六), 묘지명(墓誌銘), 동중추 허공묘지명(同中樞許公墓誌銘))

라하여 알 수 있고, 회덕현감으로 부임하여 회덕에 다스림과 교화가 행해 졌다고 한다. 그런데 허찬의 자(字)가 묘지명에는 계창(季昌)으로 되어 있고, 사마방목에는 자술(子述)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다. 다만 자(字)도 개자(改字)하기도 하므로 둘다 맞을 수도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허찬(許纘:1614~)의 자는 자술(子述), 본관은 양천(陽川),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 허감(許檄),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인조(仁祖) 20년 (1642) 임오(壬午) 식년시 (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59위로 입격하였다.

## 57. 황진구(黃震耆)

황진구(黃震耆)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전략)…; 황진구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黃震耆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666) 7월 26일 (을사))

② 하직하다(下直) …(중략)…, 회덕 현감 황진구(懷德縣監黃震耆,)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666) 8월 19일 (정묘))

라하여 ①에서처럼 현종 7년(1668) 7월 26일이었고, ②에서처럼 같은해 8월 19일에 현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황진구(黃震耆)가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문정공유고(文貞公遺稿)□□ 권(卷)8, 「소차(疏劄)」, 「인황진구공사인협소(因黃震耆供辭引嫌疏)」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성재유고(醒齋遺稿)□□ 책(冊)2, 「만(挽)」, 「황회덕진구 만(黃懷德震耆 挽)」에서도 황진구가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 황진구가 회덕현감으로 재식시

한성판관황진고는 사람들이 어둡고 용열하며, 성품이 탐욕하여 인색하였는데, 일찍이 회덕현감으로 있을시 절도없이 소비하여 관고(官庫)를 비자루로 쓴듯하였고, 다른 삭(朔) 늄미를 공공연히 취하였다 소비하였다. 끝내 부패함이 드러나 오래동안 죄수가 되었으나 여행히 사면으로 면하였다. 이미 징계가 부족한데도 다시 사로를 어지럽히고, 외롭되어 본직에 올라 물의가 있으니 놀랍지 않음이 없으니 청컨대 한성판윤황진구의 사판(仕版)을 삭제하여 없애소서 (□□승정원일기□□, 현종 14년(1673) 8월 14일 (신해))

라하여 행정을 잘못하여 구금되었가 사면으로 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진구(黃震耆)는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제7권, 「묘갈명(墓碣銘)」, 「돈용교위(敦勇校尉)를 지낸 김공(金公) 계(槩) 의 묘갈명」에 의하면

김군 익렴(益廉)이 휘가 계(槩)이고 자가 중위(仲衛)인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나에게 묘갈명을 부탁하면서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중략)… 우리 어머니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어모장군(禦侮將軍) 휘 충지(忠止)의 따님이자 판서 계겸(繼謙)의 현손녀이며,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은 바로 익렴이고 딸은 황진구(黃震耆) 아내가 되어 시집갔습니다. …(하략)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제7권, 「묘갈명(墓碣銘)」)

라하여 광산김씨 김계의 사위였다.

## 58. 이군섭(李君燮)

이군섭(李君燮)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지호집(芝湖集)□□ 권(卷) 1, 시(詩), ‘유별 이회덕군섭(有別李懷德君燮)’이라 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호집(芝湖集) 권4(卷之四) 서(書)‘ 여신숙필 익상 별지 경신 3월 28일(與申叔弼 翼相 別紙 庚申三月二十八日)’에

우재(尤庵 宋時烈)의 시적인 서찰은 원래 아우에게 준 서찰이 아니고 병오년간에 사관으로 회덕에 머물시에 공주감영에서 돌아온즉 임방백 의백령공이 서찰을 내어서 보여 주었다. 아들 방(墮)이 회덕에 갔을 때 베껴왔고, 아우 역시 사람에게 빌려서 베껴와서 상자에 두었다.

라하여 병오(丙午)년간에 회덕현감에 재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재는 우암 송시열(1607-1689)이고, 지호는 이선(李選:1631-1692)이다. 이 둘의 생몰년으로 보아 이군섭이 회덕현감으로 머물던 병오년은 1666년이다. 그런데 허찬이 1664년(현종5) 11월 3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고, 1668년(현종 7:병오) 7월 26일에 황진구가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이군섭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668년 7월 25일 이전까지임을 알 수 있다.

## 59. 한성보(韓聖輔)

한성보(韓聖輔)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都政)。이비(吏批), …(중략)… 회덕 현감 한성보(懷德縣監韓聖輔)。((□□승정원일기□□ 현종 9년(1668) 12월 26일 (경인))
- ② 하직(下直), 회덕 현감 한성보(懷德縣監韓聖輔), …(하르). (□□승정원일기□□ 현종 10년(1669) 1월 28일 (임술))

①에서처럼 현종 9년(1668) 12월 26일이고, ②에서처럼 현종 10년(1669) 1월 28일에 현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회덕현에 도임하였다. 한성보의 체직일은 그의 선정비가 현 대전 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현 읍내동 동사무소 앞에

- ③ □□현감 한성보 몰세불망비 경술 이월 일(縣監韓聖輔沒世不忘碑 庚戌二月 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라고 새겨져 세워져 있다. 여기서 경술(庚戌)은 한성보의 회덕현감에 도임일이 1669년 1월 28일인 것으로 보아 1670년 2월이다. 그리고 한성보의 후임으로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정기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이 1669년(현종10) 12월 26일이었다. 따라서 한성보가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것은 1669년 12월 25일 이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성보에 관해서는 송시열이 쓴 한성보의 □□계자잡의(戒子雜儀)□□ 서(序)에 잘 나와 있다.

④ 당촌(棠村) 한성보 여석(韓聖輔汝碩 여석은 자)은 대가 세신(大家世臣)이고 또 사계(沙溪) 문원공 선생의 외증손(外曾孫)이다. 일찍이 우리 고향 원이 되어 오로지 교화(敎化)로써 정사의 근본을 삼았으므로, 공이 갈려 간 뒤에도 백성들이 사모해 마지않았다.

공은 성품이 전원(田園)을 좋아하고 농사짓기를 힘써서 선대(先代) 제사를 받들었으니, 참으로 초자(楚茨 《시경》의 편명) · 신남산(信南山 《시경》의 편명)의 풍습이었다. 일찍이 회재(晦齋) 이 선생(李先生)이 지은 《봉선잡의(奉先雜儀)》를 모방, 손수 한 권의 글을 모아 나에게 보였는데, 대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주로 하고 가끔 여러 사람의 학설과 속례(俗禮)를 참고한 것이었다. 내가 삼가 발문(跋文)을 지어 그 끝에 붙인 적이 있었는데, 이 번에 또 한 책을 편집해서 그 이름을 《계자잡의》라 하고는, 그의 서제(庶弟) 성비(聖毗)를 이곳 산속까지 보내어 ‘다시 한 말을 적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중략)… 숭정 기원 후 무진년(1688) 8월 일에 덕은 송시열은 쓴다. (□□송자 대전(宋子大全)□□ 제139권, 서(序), □□계자잡의(戒子雜儀)□□ 서(序)“

에서처럼 한성보는 대가세신(大家世臣)이고 사계(沙溪) 문원공(金長生)의 외 증손이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한성보가 회덕현의 수령이 되어서는 정사를 근본으로 삼아서, 체직한 이후에도 백성들이 사모하였고, 성품이 전원을 좋아하고, 농사 짓기에 힘써서 □□시경(詩經□□의 초자(楚茨) · 신남산(信南山)의 풍습이 있었다”고하였다. 그리고 한성보가 지은 □□계자잡의(戒子雜儀)□□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지은 □□봉선잡의(奉先雜儀)□□를 모방한 것으로, 우암 송시열이 서문을 써 주었다.

한성보(韓聖輔)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여석(汝碩), 호는 당촌(棠村)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한덕급(韓德及)의 손자이며, 사계(沙溪) 문원공 선생의 외증손(外曾孫)이다. 관직은 부윤(府尹)이다. (신독재전서 권19 부록 문인록), 신독재 김집의 문인이고, 우암 송시열문인이기도 하다.

## 60. 이정기 (李鼎基)

이정기(李鼎基)가 회덕 현감에 제수되고, 체직된 것은

① 이비(吏批), …(중략)… 이정기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鼎基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 일기□□ 현종 10년(1669) 12월 26일 (을유)).

② 이조에서 아뢰기를 근래 새로 제수된 수령들이 체직을 청하는 정장(呈狀)이 심히 분분하다. …(중략)… 회덕 현감 이정기는 83세 노모가 곽란에 또한 감기까지 있어, 증세가 위중하여 식음 전폐하고 기식(氣息)도 막히었다. 그런데 형제가 없이 독자이어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기가 어렵다고 한다. 김군석·이정기(金君錫·李鼎基)는 비단 정장한 것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병상도 적실하고, 정리의 박절함을 여러 사람이 공히 아는 바로 형세가 부임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개차(改差) 하라. 이 양읍은 비록 사람들이 수령으로 부임하려 않는 곳은 아니나, 체직을 허락하는 예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으니, 가까운 예에 의하여 파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기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현종 11년(1670) 1월 24일 (임자))

라하여 ①에서처럼 현종 10년(1669) 12월 26일에 제수되었고, 체직은 ②에서처럼 노모의 중병으로 현종 11년(1670) 1월 24일에 파출되었다.

이정기(李鼎基)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서계선생집(西溪先生集)□□ 권(卷)4, 「시(詩) 석천록(石泉錄) 하(下)」에 ‘이회덕정기 만(李懷德鼎基 挽)’이라하여 나온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이정기(李鼎基:1624-?)의 자는 군섭(君燮), 본관은 전의(全義), 행의 빈부도사(行儀賓府都事) 이구준(李耆俊)의 아들이다. 효종(孝宗) 1년 (1650) 경인(庚寅)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17위로 입격하였다.

## 61. 이민정(李敏政)

이민정(李敏政)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이민정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敏政爲懷德縣監)。(□□승정원 일기□□, 현종 11년(1670) 1월 25일 (계축))

라하여 현종 11년(1670) 1월 25일이다.

이민정(李敏政)이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은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송자대전(宋子大全)□□ 권 117, 「서(書)」에 “여이회덕민정○신해(1671) 5월 5일(與李懷德敏政○辛亥五月五日)”이라한 간찰과 또한 □□송자대전□□ 권 136, 「잡저(雜著)」에 ‘대회덕현감이민정정예조문 경술(1670)(代懷德縣監李敏政呈禮曹文 庚戌)’이라 한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이민정(李敏政; 1610-?)의 자는 극근(克勤), 본관은 전주(全州), 아버지는 전행세자익위사사어(前行世子翊衛司司禦)를 지낸 이정방(李庭芳)이다. 효종(孝宗) 8년 (165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63위로 입격하였다.

## 62. 윤징하(尹徵夏)

윤징하(尹徵夏)가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하직하다. 회덕 현감 윤징하(懷德縣監尹徵夏), (□□승정원일기□□ 현종 12년(1671) 8월 18일 (병신))

라하여 현종 12년(1617) 8월 18일 이었다. 그리고 체직일은

충청도 암행어사(暗行御史) 강석빈(姜碩賓)이 들어와서 서계(書啓)하여 …(중략)… 회덕 전 현감(懷德前縣監) 윤징하(尹徵夏) …(중략)… 를 나치(拿致)하며 …(하략)… (□□숙종실록□□ 권5, 숙종 2년 6월 2일)

라하여 충청도 암행어사 강석빈의 서계에 의하여 1676년(숙종2년)(1676) 6월 2일에 나치(拿致: 범인이 체포 되는 것)되는 것으로 보아 이 때에 과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치되게 된 윤징하의 회덕현감 재직시 실책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중략)…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이번에 호서(湖西)의 양정(良丁)을 사정(查定)할 때에 서얼(庶孽)의 무리들이 그 억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해 왔으며, 수령(守令) 가운데서도 또한 심하게 비난하는 자가 있어서 적발(摘發)하여 논죄(論罪)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회덕(懷德)에서 사정(查定)하여 성책(成冊)한 가운데 친서얼(親庶孽)도 아울러 모두 초록(抄錄)했는데, 고(故) 장령(掌令) 강학년(姜鶴年)의 첨자(妾子)는 그 아비 이름을 다만 학(鶴)자로만 쓰고, 년(年)자를 빼버렸으며, 송준길(宋浚吉)에게도 첨자 2인이 있는데, 송병문(宋炳文)의 얼삼촌(孽三寸)으로 썼으니, 송병문은 곧 송준길의 손자입니다. 이는 그 수령의 마음씀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의 처리도 무상(無狀)하여 조가(朝家)의 친서얼은 정하지 말라는 본의와는 크게 서로 어긋나고 거슬리는 것이므로 한 도(道)가 처량해 합니다. 이는 대개 이 무리들이 초록됨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겁을 내는 소치입니다. 이는 곧 전(前) 현감(縣監) 윤징하(尹徵夏)의 소위라고 하는데, 윤징하의 형제는 본래 송준길에게 따라 붙은 자였는 데도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 더욱 사대부(士大夫)의 용심(用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정하를 파직(罷職)케 하라.” 하였다. (□□숙종실록□□ 권5, 숙종 2년 8월 20일(경오))

라하여 김석주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호서의 양정(良丁)을 사정(查正)할 때 조가(朝家)의 친서얼(親庶孽)은 양정으로 사정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윤정하가 강학년(姜鶴年)의 첨자와 송준길(宋浚吉)의 첨자 2인을 사정하여 양정으로 편입하였다. 특히 윤정하는 송준길의 문인 이면서도 이와 같이 하였으니, 사대부의 마음 씀이 아니라고 아뢰어, 파직을 당하였다.

윤징하(尹徵夏:1629-?)는 사마방목에 의하면 자는 문경(文卿), 본관 파평(坡平), 부는 전행배천현감(前行白川縣監) 윤겸(尹廉)이다. 현종(顯宗) 1년 (166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22위로 입격후 사로에 나갔다.

### 63. 반윤기(潘潤沂)

반윤기(潘潤沂:1617-?)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는

- ① 이비(吏批), …(중략)… 반윤기를 회덕 현감으로 삼았다(潘潤沂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 일기□□ 숙종 2년(1676) 5월 5일 (병술))
- ② 하직하다(下直), 회덕 현감 반윤기(懷德縣監潘潤沂). (□□승정원일기□□ 숙종 2년(1676) 5월 18일 (기해))

①에서처럼 반윤기는 숙종 2년(1676)년 5월 5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고, ②에서처럼 같은 해 5월 18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반윤기(潘潤沂 1617-?)가 회덕현감에 재임했던 사실은 □□설봉유고(雪峯遺稿)□□ 권21, 「성남록(城南錄)」, ‘반회덕윤기(潘懷德潤沂) 만(挽)’에서도 알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반윤기(潘潤沂)의 자는 도원(道源), 본관은 광주(光州), 아버지는 유학(幼學) 반명익(潘溟翼)이었다. 인조(仁祖) 24년 (1646) 병술(丙戌)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40위로 입격하였고, 인조(仁祖) 26년 (164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7위로 급제하였다.

## 64. 조순원(趙淳源)

조순원(趙淳源)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이미(吏批), …(중략)…, 조순원을 회덕현감으로 삼다(趙淳源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6월 22일 (정묘))

라하여 숙종 3년(1677) 6월 22일이었다. 그리고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것은

시간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김수홍(金壽興)을 서용하라는 명을 환수 하시고, …(중략)… 회덕 현감 조순원(懷德縣監趙淳源,)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사무에도 어두워 수령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하물며 호서우도에 크게 흉년이 들어 진휼의 대책이 필요하니 더욱 이 같은 사람이 가당치 아니하니 청컨대 회덕현감 조순원을 체차 하소서。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7월 12일 (정해))

라하여 현감으로 자질 부족등의 이유로 숙종 3년(1677) 7월 12일에 회덕현감에서 체자되었다.

## 65. 홍진(洪璡)

홍진(洪璡)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사은하다. …(중략)… 회덕 현감 홍진(懷德縣監洪璡)。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7월 15일 (경인))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홍진(懷德縣監洪璡),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8월 4일 (무신))

라하여 ①에서처럼 홍진은 숙종 3년(1677) 7월 15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고, 같은해 8월 4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홍진(洪璡: 1629~)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현가(獻可), 아버지는 학생 홍준일(洪俊一)로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효종(孝宗) 5년 (1654) 갑오(甲午) 식년시 (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32위로 입격하였다.

## 66. 이중현(李曾賢)

이중현(李曾賢)이 회덕 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 ① (전략)… 이중현을 회덕 현감으로 하다(李曾賢爲懷德縣監)。 (□□승정원일기□□ 숙종 4년(1678) 8월 16일 (갑신))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이중현(懷德縣監李曾賢),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4년(1678) 8월 27일 (을미))

①에서처럼 숙종 4년(1678) 8월 16일이고, 같은해 8월 27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 67. 이동백(李東白)

이동백(李東白)이 회덕 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0비(吏批), …(중략)…; 이동백을 회덕 현감으로 하다(李東白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5년(1679) 4월 19일 (계미))  
② 하직(下直), 회덕 현감 이동백이 하직하다(懷德縣監李東白)。 (□□승정원일기□□ 숙종 5년(1679) 5월 22일 (을묘))。

①에서처럼 숙종 5년(1679) 4월 19일이고, 같은해 5월 22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 68. 윤추(尹推)

윤추(尹推)가 회덕 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0비(吏批), …(중략)… 윤추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 (尹推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8년(1682) 6월 21일 (정유))

라하여 숙종 8년(1682) 6월 21일이다. 그리고 파출 된 것은

② 공홍감사 서목(公洪監司書目), 회덕 현감 윤추는 병이 중하고, 청산현감 이지겸(李之濂)은 벼슬을  
버렸으니 아울러 파출할일。(□□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8월 23일 (임술))

라하여 윤추의 병이 중하여 숙종 9년(1683)년 8월 23일에 파출되었다.

그런데 윤추(尹推)의 회덕현감으로 재임시 행적에 대해서는

① 또 기억하건대, 저번에 생원(生員) 신 송상민(宋尙敏)이 그의 스승 송준길(宋浚吉)을 위하여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신원(伸冤)을 했는데, 적신(賊臣) 윤휴(尹鑄) 등이 그를 장살(杖殺)시켰습니다.  
뒤에 윤휴 등이 복주(伏誅)되자, 전하게서 즉시 가상히 여겨 장려하는 말씀이 계셨고, 인하여  
관직을 추증하고, 아들을 벼슬시키라는 교서가 계시므로, 유생(儒生)으로 있는 자들은 성교(聖敎)를  
봉독(奉讀)하고서 모두 흠흥(欽仰)하고 감격하여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영부사(領府事) 신 민정중(閔鼎重)이 송상민(宋尙敏)의 문자(文字)를 써서 간행 반포하였고,  
고 판서(判書) 신 이민서(李敏叙)가 한 문자를 지어 성덕(聖德)을 찬송(讚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제사의 일을 위하여 공사(工事)가 시작되자 윤선거(尹宣擧)의 아들 윤추(尹推)가 그 땅의  
군수가 되어서 참혹하고 각박한 말로 저지하였습니다. 윤증(尹拯)과 윤추의 뜻을 살펴보건대,  
대체로 절의(節義)있는 선비를 포양(褒揚)하면 자기 아버지는 더욱 부끄러운 것이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절의 있는 선비를 온갖 방법으로 막고 공격했습니다. (□□송자대전(宋子大全)□□ 제20권  
소(疏) 기사년 1689 1월)

② 편지를 보니 놀랍고 기쁘다. 이는 밤낮으로 내가 바라던 바다. 즉시 소제(蘇堤) 당시 수령으로  
있던 곳임)로 돌아가서 중기(重記 관리가 사무를 인계할 때 전하는 문서)를 마련하도록 하여라.  
내 들으니 영동 현감(永同縣監)을 지낸 한명윤(韓明胤)은, 돌아갈 적에 체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옥천(沃川) 지경으로 옮겨 있으면서 중기를 정리해 두었다고 한다. 그 분은 숙부(叔父)께서  
경중(敬重)하던 분이었다. 대체로 체직된 뒤에 한 시각이라도 머뭇거린다는 것은 매우 구차스런  
일이다. 그리고 피직된 관리가 쇄마(刷馬)를 타려면 민간에서 차출해야 하는데 하룻길도 안 되는  
거리에 무엇이 괴로워 종들까지 도보로 가지 않고 모두 말을 사용하겠느냐. 윤 회덕(尹懷德 회덕  
현감을 지낸 윤증의 아우 윤추(尹推))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의 부인이 관마(官馬)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노비들이 이용했겠느냐. ‘당(唐)의 정승 한휴(韓休)의 부인 행차에 종  
두 사람이 도보로 따라갔다.’는 고사가 《소학(小學)》에 실려 있으니, 승상(丞相)의 부인도 그러  
한데 일개 군수 천첩(賤妾)의 시비(侍婢)들이야 도보로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은 매우 간결하게 하도록 하되 김여랑(金汝亮)이 빈 상자를 싣고 가면서  
까지 명성을 얻은 것과 같은 짓은 하지 말아라.(□□송자대전(宋子大全)□□ 제125권, 서(書),- 무진년

(1688, 숙종 14년, 선생 82세) 7월)

③ 경신년 겨울에 내가 서산(西山)의 선묘(先墓) 아래 있었는데, 서울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모였다. 그중의 한 후생(後生)이 ‘윤추(尹推 윤증의 아우)가 회덕 현감(懷德縣監)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송모(宋某 송시열을 가리킴)가 나를 시켜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하였는데, 이 말이 어찌하여 나왔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미처 말을 하기도 전에 아우 수보(秀甫)가 급히 ‘나 같으면 아내를 죽이는 일은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고 말하겠다.’ 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아우를 책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말은 입 밖에 나와 버려서 어쩔 수 없었다.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31권, 잡저(雜著), 연거잡록(燕居雜錄))

①에서 처럼 송상민의 사우를 건립할 때 회덕현감 윤추가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②에서는 회덕현감 윤추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의 부인이 관마(官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③ 회덕현감 윤추가 그만두고 돌아와서 “송시열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②번 글만 제외하고 윤추를 비난하는 글이다. 이는 윤추가 윤선거의 아들이요 윤증의 동생으로 노소론의 당쟁으로 인한 비난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종실록보궐정오□□의 윤증 출기에 부기되어 있는 윤추의 평은

그 아우 윤추(尹推)는 돈후(敦厚)하고 청엄(清嚴)하여 집에 있어서는 순독(純篤)한 조행(操行)이 있었고 고을을 다스리매 특이한 치적(治績)이 있었으며, 만년에 장령(掌令)으로 징소(徵召)를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숙종실록보궐정오□□ 숙종53년(1714, 강희 53), 1월 30일(임신))

라하여 돈후하고 청엄하였고, 집에 있어서는 독실한 조행이 있었으며 고을을 다스리매 특이한 치적이 있었다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도 □□숙종실록보궐정오□□의 간행시기가 소론의 집권기 이었기 때문이다.

□□회덕읍지□□「명관」조에는 “윤추 마애비(磨崖碑)가 있다. 한성보(韓聖輔) 비 아래에 있다.”라 되어 있다. 한성보의 불망비도 마애비로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으므로, 이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가되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윤추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윤추(尹推:1632(인조 10)~1707(숙종 33),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자서(子恕), 호는 농은(農隱)이다. 조부는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윤황(尹煌)이며, 아버지는 윤선거(尹宣擧)이다.

풍양조씨(豐陽趙氏) 군수(郡守) 조진양(趙進陽)의 딸과 결혼하여 두 아들, 윤자교(尹自敎)와 윤가교(尹可敎)를 낳았다. 둘째 부인은 전의이씨(全義李氏) 이우(李□□)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가학으로 학덕을 닦았다. 나이 30세에 병에 걸려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1668년(현종 9)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전시(殿試)에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모친상을 당하여 출사하지 않고, 스스로 농은(農隱)이라는 호를 짓고 전야에 파묻혀 일생을 보내려 하였다. 이후 조정에서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으려 하였다.

1681년(숙종 7)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정산현감(定山縣監)에 제수되었다. 그 이듬해인 1687년 선친이 무고를 당하자 벼슬을 버렸다. 1689년 다시 석성 현감(石城縣監)에 임명되었으나 우계(牛溪)와 율곡(栗谷)이 문묘에서 퇴출되자 곧 다시 벼슬을 버렸다. 1694년 용담현감(龍潭縣令)에 제수되었다. 1695년 청렴 근신한 수령으로 뽑혀 예빈시정(禮賓寺正)으로 승진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696년 청송부사(青松府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706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임명되었으나 곧바로 공격(公格)으로 체직되었다.

1707년(숙종 33)에 죽리(竹里)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그 이듬 해 1월 25일 공주(公州) 남목동(南木洞) 향두산(鄉斗山)에 묻혔다. 저서로는 문집인 □□농은유고(農隱遺稿)□□가 전한다.

## 69. 심력(沈櫟)

심력(沈櫟)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전략)... 심력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 (沈櫟爲懷德縣監) ...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8월 24일)

에서와 같이 숙종 9년(1683) 8월 24일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조에서 아뢰어 말하기를, 어제 도목정사에서 회덕 현감 심력을 수점으로 비의하였다. 오늘 듣건데 력(櫟)인즉 본조판서 이상익의 동성 4촌 처남으로 법에 마땅히 상피하여야 한다. 신이 살피는 것을 다하지 못하여 어리석게 비의하였습니다.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심력을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전하여 말씀하시길 허락한다.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8월 25일 (갑자))

라하여 심력의 회덕현감 제수는 이조의 판서 이상익의 동성 4촌 처남이어서 상피조에 위배되어 개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심력은 개차되지 않고 회덕현감에 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명제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권(卷)39, 「묘갈명(墓碣銘)」, ‘창평 현령심공묘갈명(昌平縣令沈公墓碣銘)’의 묘갈명에 “계해(1683) 가을에 회덕현감에 보임되었다(癸亥秋。補懷德縣監)”라하여 회덕현감에 보임되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남계선생박문순공문외집(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 권 14, 「묘지명(墓誌銘)」, ‘창평현령 심공묘지명(昌平縣令沈公墓誌銘)’에도 “계해(1683) 가을에 회덕현감으로 나아갔다(癸亥秋出 監懷德縣)”라하여 심력이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력의 자는 무경(茂卿), 본관은 청송(青松), 아버지는 심지택(沈之澤)이고, 어머니는 영월엄씨 엄열(嚴悅)의 딸이다. 처음 관직은 사신감역으로 출사하여 현감 등을 지냈다.

## 70. 정정양(鄭正陽)

정정양(鄭正陽)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전략)... 정정양을 회덕 현감으로 하다 (鄭正陽爲懷德縣監).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8월 27일 (병인))

라하여 숙종 9년(1683) 8월 27일이었다. 그러나 현감으로 도임한지 얼마 되 않아

이조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회덕현감 정정양(鄭正陽)은 요사이 이조에 정장에 어릴적 고질로 거의 사경에 이르러 백가지 의약으로 겨우 조금 효험을 얻었으나 기력을 겨우 잊고, 외양이 살이 많이 빠졌다. 본임(회덕현감)에 제수됨에 미치어 강한 질병이 더하고, 한기를 쏘이며 과다하여 숙환이 도리어 극에 이르렀다. 여러달 내에 기동하기를 바랄수 없으니 이는 속히 입계하여 처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세가 비록 이와 같으나 스스로 부임을 먼저 물러나야 할 것이다. 금일 또 증장하기를 병세 계속 더해져서 부임이 쉽지 않으니, 바야흐로 가을 바쁜 철을 당하여 가히 차차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 정정양은 근례의 예에 의하여 파출하는것이 어떻하겠습니까. 전하여 가로대 허락한다.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9월 18일 (병술))

라하여 어릴적에서부터 계속된 질병으로 수령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어, 현감으로 제수 된지 20일만인 9월 18일에 파출되었다.

## 71. 최세경(崔世慶)

최세경(崔世慶)이 회덕 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최세경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 (崔世慶爲懷德縣監).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9월 18일 (병술))

라하여 숙종 9년(1683) 9월 18일이었다.

## 72. 이지렴(李之濂)

이지렴(李之濂)이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제수 된 것은

한태동(韓泰東)을 집의(執義)로, 권두기(權斗紀)를 사간(司諫)으로, 한구(韓構)를 장령(掌令)으로,  
이국방(李國芳)을 정언(正言)으로, 이지렴(李之濂)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이지렴은  
본디 학문하는 선비로 일컬어졌다. 갑인년의 사화(士禍)가 일어났을 때에 송시열(宋時烈)이 멀리  
귀양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 중도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게 하였는데, 그 아들이  
전일에 예(禮)를 논하여 왕복한 글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청하였으므로 송시열이 속으로 더럽게  
여겼고, 이 말을 들은 사우(士友)들이 모두 그가 화(禍)를 두려워하는 것을 비웃었으나, 그 아들이  
한 일은 반드시 이지렴이 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에 천거되어 박세채(朴世采)가 대망(臺望)에  
주의(注擬)하려 하였으나 물의가 언짢게 여기기 때문에 그만두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읍재(邑宰)에  
제수되었다.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25일(신묘)).

라하여 1684년(숙종 10) 3월 25일이다. 그리고 이지렴과 우암 송시열과 그의 사우들과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다. 즉 이지렴이 학문하는 선비로 갑인년의 사화로 송시열이 멀리 귀양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들을 보내어 위로하게 하였는데, 아들이 이지겸과 우암 송시열과  
예를 논한 글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청한 일로 송시열 사우들의 비난을 산일을 적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지렴이 시킨 일이 아니라 아들이 한 일로 여기는 것으로 보아, 이지렴과  
우암 송시열 비롯한 사우들과의 관계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지렴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지렴(李之濂:1628(인조 6)~1691(숙종 17).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함풍(咸豐). 자는 양이(養而), 호는 치암(恥菴). 부위(副尉) 초옥(楚玉)의 아들이다. 김집(金集)의 문인이다. 학문에 뛰어나 이름이 떨쳐져 송준길(宋浚吉)·민진원(閔鎮遠) 등의 추천으로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을 사퇴하고, 뒤에 부수(副率)를 잠시 지내고 광릉참봉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였다. 1682년(숙종 8) 청산현감(青山縣監)으로 부임하여 굽주린 백성의 구제에 힘쓰고, 1687년 흉곡현령(歙谷縣令)이 되어 교학과 풍속의 순화에 노력하였다. 학문뿐만 아니라 시와 글씨도 뛰어났다. 유저로 □□치암집(恥菴集)□□이 있다.

### 73. 정익주(鄭翊周)

정익주(鄭翊周)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정익주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鄭翊周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10년(1684) 4월 12일 (정미))
- ② 사은하다, …(중략)… 회덕 현감 정익주(懷德縣監鄭翊周),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10년(1684) 4월 14일 (기유))
- ③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정익주(懷德縣監鄭翊周)。 (□□승정원일기□□ 숙종 10년(1684) 5월 25일 (경인))

라하여 ①에서처럼 숙종 10년(1684) 4월 12일이었고, ②③에서처럼 같은해 4월 14일에 사은하였고, 5월 25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정익주의 체직일은

회덕 현감 정익주(懷德縣監鄭翊周), …(중략)…, 차사원(差使員)으로 올라왔다。 이상조보이다(以上朝報)。 (□□승정원일기□□ 숙종 12년(1686) 2월 7일 (신묘))

라하여 숙종 12년(1686)년 2월 7일에 정익주가 차사원으로 상경하면서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익주(鄭翊周)가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은 □□송자대전(宋子大全)□□ 권3, 「시(詩) 오언율

(五言律))」, ‘정회덕익주 대부인 만(鄭懷德翊周 大夫人挽)“이라하여 송시열(宋時烈:1607 ~1689)이 지은 만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정익주(鄭翊周;1643-?)의 자는 익경(翊卿), 본관은 해주(海州), 거주지는 경(京)이다. 숙종(肅宗) 1년 (167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17위로 입격하였다.

## 74. 심정기(沈廷耆)

심정기(沈廷耆)가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전략)... 심정기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沈廷耆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688) 12월 22일 (신유))

라하여 숙종 14년(1688) 12월 22일이었다. 심정기(沈廷耆)가 회덕현감에 재임과 관련하여 □□회덕읍지□□ 「명관」조에는 “심정기(沈廷耆) 잘 다스려 승진해 다른 군으로 제수받았다. 마애비(磨崖碑)가 있다.”라하여 잘 다스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심정기의 마애비가 있다고 하나 현재 옛 회덕현(현 대전시 대덕구) 지역에서 심정기의 마애비 위치를 알 수 없다. 심정기에 대해서는 그의 묘지명에 자세하다. 즉

나의 큰외삼촌 심공(沈公)의 휘는 정기(廷耆), 자는 태수(台叟)이다. …(중략)... 할아버지의 휘는 지원(之源)으로 영의정이고, 호는 만사(晚沙)로 효종과 현종 양조를 도와 덕업이 모두 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휘는 익선(益善)으로 풍덕부사(豐德府使)이고, 어머니 남양홍씨는 증영 의정충정공화포(贈領議政忠正公花浦) 휘 익한(翼漢)의 따님이다. 공은 숭정후(崇禎後) 24년 신묘(辛卯:1651) 10월 23일 출생하였다. 태어날 때 기이하고 뛰어났으며, 4세에 능히 책을 받아 글자를 써서 만사공이 매우 사랑하였다. 경신(庚申:1680)에 처음 익능 참봉(翼陵參奉)에 제수되었고, 3년을 지나 승진하여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되었다. 이로부터 차례를 밟으면 내직으로는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사도시 주부(司道寺主簿), 돈령부 판관(敦寧府判官), 익위사 위솔(翊衛司衛率), 장예원 사평사의(掌隸院 司評司議), 외직으로는 회덕 현감(懷德縣監), 온양삭녕군수(溫陽朔寧郡守)을 지냈는데 모두 음직사로(蔭路)로 공이 즐겨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곳 저곳 관직생활 16년에 마침내 을해년(乙亥:1695)에 4월 25일 삭령(朔寧) 임소에서 돌아가셨다.(염헌집(恬軒集) 권18(卷之十八) 묘갈명(墓誌銘) 백구삭녕군수심공묘지명(伯舅朔寧郡守沈公墓誌銘))

라하여 심정기의 자는 태수(台叟)이고, 할아버지은 유명한 만사 심지원이었다. 생년은 1651년 10월 23일에 출생하였고, 몰년은 1695년(乙亥)이다. 심정기가 1680년에 처음으로 익능참봉에 제수되어, 이후 내직으로는 익위사 부솔(翊衛司衛率), 장예원사평·사의(掌隸院 司評司議) 등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회덕 현감(懷德縣監), 온양삭녕군수(溫陽朔寧郡守) 등을 지냈다. 심정기는 1695년에 삭녕군수로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심정기는 홍익한(洪翼漢: 1586~1637)의 외손(□□염현집(恬軒集)□□ 권29, 서(序), 화포시고서(花浦詩稿序))이고, 해원군(海原君) 건(健)의 사위이다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권31, 묘표(墓表), 해원군 건 묘표(海原君 健 墓表)).

## 75. 이인망(李仁望)

이인망(李仁望)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하직하다, 회덕 현감 이인망(懷德縣監李仁望).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6월 16일 (신사))

라하여 숙종 15년(1689) 6월 16일이었다. 그리고 이인망은 회덕현감으로 재임시 숙종에게 대동전세(大同田稅) 작목(作木) 척수(尺數)의 강감(降減), 가사(各司) 도망노비로 이미 사망한 노비의 감제(減除),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을 서로 교환할 것 등 당시 시폐의 문제에 대한 안목 높은 계책을 건의 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 숙종 16년(1690) 1월 10일 (임인))

## 76. 권태시(權泰時)

권태시(權泰時)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권태시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權泰時爲懷德縣監), …(중략)…

이상은 춘방보조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16년(1690) 10월 27일 (갑신))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권태시(懷德縣監權泰時) (□□승정원일기□□ 숙종 16년(1690) 11월 17일 (갑진))

- ①에서 처럼 숙종 16년(1690) 10월 27일이고, 숙종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도임한 것은  
②에서 처럼 같은해 11월 17일이었다. 그리고 권태시가 회덕현감에서 파출된 것은

충청감사 서목에, 회덕 현감 권태시(懷德縣監權泰時)가 병이 중하여 파출할 일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윤5월 17일 (계미))

라하여 숙종 20년(1694) 윤5월 17일에 병이 중하여 파출되었다.

권태시(權泰時)가 회덕현감으로 재임한 것은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권26,  
묘갈(墓碣銘), ‘승훈랑생회덕현감공묘갈명(承訓郎行懷德縣監權公墓碣銘)’와 □□밀암선생  
문집(密菴先生文集)□□ 권2, 시(詩), ‘만권회덕태시(輓權懷德泰時)’와 □□옥천선생문집(玉川先  
生文集)□□ 권1, 시(詩), ‘만권회덕태시(挽權懷德泰時)’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권태시가 회덕현감에 재임시 치적에 대하여 묘갈명에는

얼마 안있어 회덕현에 현감으로 나아갔다. 현은 거족(巨族)이 많아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불리  
었으나 지금히 공정하니 호강(豪強)들의 횡포가 그치었다. 과부와 어린 사람에게는 따뜻하였고  
한결같이 공정하였다. 큰 흉년을 만나 창고를 열고 녹봉을 덜어서 식구를 계산하여 쌀을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 해 봄에 쌀값이 뛰어서 한 말에 백전(百錢)을 하니 가난한 백성들이 부호들에게  
곡식을 가을에 갚기로 빌리는데 이자가 10배에 이르렀다. 공은 방백에게 보고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배로 갚도록 하였다. 방백이 타군에도 관문으로 다스리니 무릇 빛을 진 자들이 이것을 보고 한 도의  
백성 모두가 기뻐하였다.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권26(卷之二十六), 갈명(碣銘), 승훈랑행  
회덕현감공묘갈명(承訓郎行懷德縣監權公墓碣銘))。

라하여 선정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권태시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태시(權泰時:1635~1719).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형숙(亨叔),  
호는 산택재(山澤齋). 아버지는 창업(昌業)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충의위  
(忠義衛) 늑(勒)의 딸이다. 장홍효(張興孝)의 문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였다. 예학에  
관한 선유(先儒)들의 훈해와 변례절문(變禮節文)을 모아 □□가례 家禮□□의 전주(傳註) 아래에  
붙여놓는 한편, 의심스러운 바를 고증하는 등 연구를 깊이 하였다. 관직에 뜻이 없어 세거  
지인 진보현(眞寶縣)에 집을 지어 산택재(山澤齋)라 이름하고 은거하던 중, 1690년(숙종 16)  
학행으로 천거되어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에 임명되었으며, 그 뒤 회덕현감(懷德縣監)이

되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지방수령으로 일하면서 예악(禮樂)을 정비하고, 흉년에 백성들을 구휼하며, 송사와 옥사를 공평무사하고 신속하게 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으며 청렴결백한 관리생활을 하였다. 또한, 학사(學舍)·학전(學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의 개선에 힘쓰고, 지방수령으로서 목민대책(牧民對策)에 필요한 항목을 모아 《거관요람 居官要覽》이라는 책을 엮었다. 홍여하(洪汝河)·이현일(李玄逸) 등과 학문적인 교유가 깊었다. 그는 남인에 속했던 사람으로, 1694년 갑술옥사 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 저서로 □□산택재문집□□ 4권이 있다.

## 77. 안세징(安世徵)

안세징(安世徵)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중략)… 안세징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安世徵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윤5월 21일 (정해))
-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안세징(懷德縣監安世徵),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6월 21일 (정묘[정사])).

①에서처럼 숙종 20년(1694) 윤5월 21일이었고, ②에서처럼 같은 해 6월 21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안세징(安世徵)이 회덕현감에 제수되게 된 사유는

권천장(權天章)의 갑술일기(1694)에 구옹선생(丘翁先生)이 이미 대간의 계(啓)로 흥원에 유배를 갔다. 장령 안세징이 선생께서 폐비하여 별궁에 처하자고 상소한 말을 주워 모으니 보기 가 흉악하고 참혹하였다. (선생을) 불러 사로잡아 죄를 헤아려 물으려고 해서 마침내 유배 중에 잡히어 마주하기에 이르렀다. 세징이 대간으로 참석하여 선생의 덕용(德容)과 사변(辭辨)을 보고 비로소 그 무고함을 깨달았다. 명백히 실정을 회피하여 말하기를 모(某)가 원래의 말한 것을 보니, 그 본 뜻은 반드시 펍박 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세징이 이로 말미암아 출척되어 회덕현감에 보임되었다. (□□밀압선생문집(密庵先生文集)□□ 권11(卷之十一), 잡저(雜著), 금수기문(錦水記聞)).

라하여 안세징이 1694년에 민비를 폐비하여 별궁에 처하고자 상소한 구옹선생의 말을

모아서 다시 죄를 물으려 한 일에 대간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출척되어 회덕 현감에 보해 졌다는 것이다. 즉 회덕현은 음관 출신자가 현감으로 오는 고을이었으나, 안세징은 문과 출신자로 장령직에 있다가 출척되었기 때문에 회덕현감에 제수되게 된 것이다.

안세징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안세징(安世徵:1639(인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원(子遠), 호는 환성재(喚醒齋). 아버지는 여종(汝宗)이다. 송준길(宋浚吉)의 문인이다.

1675년(숙종 1) 진사가 되고, 그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학유로 기용되어 송준길의 복작(復爵)추증을 상소하였다. 지평을 거쳐 1684년 장령이 되어 허견(許堅) 등 남인들이 복선군(福善君) 남(楠)을 추대, 반역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경신대출척을 일으키게 한 김환(金喚)의 추국을 주장하였다. 정언·필선 등을 거쳐 1694년 다시 장령이 되어 민비(閔妃)의 폐비를 주동한 장희빈(張禧嬪)의 오빠 장희재(張希載)를 규탄하였다. 그 뒤 진주 목사를 거쳐 1700년 종성부사가 되고 이어서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에 의하면 안세징은 숙종(肅宗) 1년 (167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57위로 입격하였다. 숙종(肅宗) 1년 (167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1위로 급제 하였다.

## 78. 강석범(姜錫範)

강석범(姜錫範)이 회덕 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강석범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姜錫範爲懷德縣監)。이상 조보(朝報)이다。(□□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8월 19일 (갑인))
-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강석범(懷德縣監姜錫範)。(□□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9월 19일 (갑신))

①에서처럼 숙종 20년(1694) 8월 19일이고, ②에서처럼 제수된지 한달후인 9월 19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강석천이 회덕현감에서 파출된 것은

충청감사의 서목, 회덕 현감 강석범은 부모님의 70세여서 법에 의거하여 정장하였는데, 신병 또한 중하여 임지에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 부득이 파출할 일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7) 4월 8일 (정사))

에서처럼 숙종 23년(1697) 4월 8일에 어버가 난노하고 병이 중하여 회덕임지로 돌아올 기약이 없어 파출되었다.

## 79. 이수만(李綏晚)

이수만(李綏晚)이 회덕현감에 도임한 것은

하직하다. 회덕 현감 이수만(懷德縣監李綏晚),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7) 5월 11일 (경인))

라하여 숙종 23년(1697) 5월 11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이수만의 본관 광주(廣州), 자 유안(幼安), 1648년에 출생하였고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부친은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 이후징(李厚徵)이었다. 숙종  
(肅宗) 15년 (1689) 기사(己巳)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2등(二等) 13위로 입격하였다.

## 80. 유만령(柳萬齡)

유만령(柳萬齡)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전략)… 유만령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柳萬齡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6월 19일 (임술))

② 이사영(李思永), 이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회덕 현감 유만령의 정장에 본도병사 이택(李澤)과 혼인한 집안이므로 상피(相避)에 해당하니 속히 입계하여 처치하여야 한다 하니 법전에 의하여 개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전하여 가로대 허락하였다.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6월 22일 (을축))

①에서처럼 숙종 24년(1698) 6월 19일이었다. 그러나 ②에서처럼 유만령은 병사 이택과 혼인한 집안으로 상피에 해당하여 불과 3일만에 개차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새로 수령에 제수된 사람이 제수되고,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임지에 도임하는데에는 약 한달 가량이 걸리었던 관행으로 보아 유만령이 실제로 회덕현에 도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81. 이연(李縛)

이연(李縛)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도정정사를 행하다. …(중략)… 이연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綱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 일기□□ 숙종 24년(1698) 6월 24일 (정묘))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이연(懷德縣監李綱).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7월 27일 (기해))

①에서처럼 숙종 24년(1698) 6월 24일이고, ②에서처럼 7월 27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이연이 회덕현감직에서 파출된 것은

충청감사 서목에 회덕 현감 이연(懷德縣監李綱), 부친의 병이 과중하여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 갔으나 임지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 삼삭(삼삭)이나 관청을 비워두는 것은 백성의 일이 가희 염려 되니 파출할 일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3월 13일 (갑오))

라하여 숙종 28년(1702) 3월 13일에 이연이 부친이 병이 과중하여 휴가를 받아 귀가 후 3달이나 임소인 회덕현에 돌아오지 않아 파출되었다.

## 82. 이정천(李挺天)

이정천(李挺天)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회덕 현감 이정천(懷德縣監李挺天),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3월 18일 (기해))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이정천(懷德縣監李挺天),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4월 23일 (갑술))

라하여 숙종 28년(1702) 3월 18일이었고, ②에서처럼 4월 23일에 숙종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이정천이 회덕현감직에서 파출된 것은

총청감사서목에, 회덕 현감 이정천(懷德縣監李挺天)이 휴가를 받아 귀가하였는데 병세가 괴중하니 파출할 일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9일 (정사))

라하여 숙종 28년(1702) 9월 9일에 휴가를 받아 귀가하였다가 병세가 심하여 파출되었다. 이정천(李挺天)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곤륜집(昆崙集)□□ 권4(卷之四), 시(詩), 이회덕정천 만(李懷德挺天 輓)이라 만사에서도 확인 된다.

### 83. 임명원(任命元)

임명원(任命元)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전략)… 임명원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任命元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10일 (무오))

라하여 숙종 28년(1702) 9월 10일이다. 그리고 회덕현감에서 개차(改差)된 것은

금일 주강시에 회덕 현감 임명원의 개차를 …(중략)… 탑전(榻前)에서 하교하다。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12일 (경신))

라하여 숙종 28년(1702) 9월 12일이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임명원(任命元)의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낙부(樂夫), 1653년에 출생하여 서울에 거주하였다. 부는 통덕랑(通德郎) 임견(任堅)이었으나 생부는 진사(進士) 임재(任在)이다. 숙종(肅宗) 1년 (167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9위에 입격하였다.

## 84. 남반(南磬)

남반(南磬)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남반을 회덕 현감에 제수하다(懷德縣監南磬),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13일 (신유))

에서처럼 숙종 28년(1702) 9월 13일이다.

## 85. 이제설(李齊說)

이제설(李齊說)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회덕 현감에 이제설을 제수하다(懷德縣監李齊說), …(하략)。 (□□승정원 일기□□ 숙종 28년(1702) 9월 24일 (임신))

라하여 숙종 28년(1702) 9월 24일이다.

## 86. 허전(許塚)

허전(許塚)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허전을 회덕 현감에 제수하다(懷德縣監許塚), …(하략)。 숙종 28년 (1702) 9월 29일 (정축))

② 사은하다. …(중략)… 회덕 현감 허전이 사은하다(懷德縣監許塚)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0월 5일 (임오))

③ 하직하다. 회덕 현감 허전이 하직하였다。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10월 27일 (갑진))년

①에서 처럼 숙종 28년(1702) 9월 29일이고, ②에서처럼 10월 5일에 사은하고, ③에서처럼 숙종 28년(1702) 10월 27일 (갑진))에 숙종에게 하직하고 회덕현에 도임하였다.

그런데 허전은 회덕현감에 재직하면서 숙종 30년(1704)의 춘하(春夏) 포폄에서 중(中)을 받았다. 허전의 회덕현감 파직일은,

충청감사 서목에 회덕 현감 허전(懷德縣監許塏), 금년 (8월) 14일에 사망한 일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31년(1705) 8월 19일 (경술)).

라하여 숙종 31년(1705) 8월 19일에 사망하여 파직된 것이다.

허전(許塏)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손와선생유고(損窩先生遺稿)□□ 권4(卷之四), 시(詩), 허회덕전 만(許懷德塏 挽)에서도 알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허전(1636~?)의 자는 경수(耕叟),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아버지는 행한성부서윤(行漢城府庶尹)을 지낸 허윤(許峯)이고,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숙종(肅宗) 5년 (1679) 기미(己未)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11위로 입격하였다.

## 87. 남궁제(南宮塏)

남궁제(南宮塏)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남궁제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南宮塏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1년(1705) 8월 19일 (경술))

② 지난 추·동(秋冬) 등의 포폄, …(중략)…, 회덕 현감 남궁제(懷德縣監南宮塏), …(중략)… 상중(以上中).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3년(1707) 5월 5일 (병진))

①에서처럼 숙종 31년(1705) 8월 19일이었다. 회덕현감 남궁제는 숙종 33년(1707) 5월 5일의 지난 가을과 겨울의 포폄에 상중의 평가를 받았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남궁제(1644~?)의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평중(平仲)이고, 부친은 경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慶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을 지낸 남궁燮(南宮燮)이며, 거주지는 한양이었다. 숙종(肅宗) 13년 (168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70위로 입격하였다.

## 88. 조기지(趙紀之)

조기지(趙紀之)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하곡집(霞谷集)□□ 권7(卷七), 만사(挽辭) 습유(拾遺), ‘만조회덕기지(挽趙懷德紀之)’라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하곡집의 저자는 유명한 하곡 정제두(鄭齊斗)로 그의 생년은 1649년이고, 몰년은 1736년이다. 따라서 조기지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700년 전후로 생각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 89. 최침(崔沈)

최침(崔沈)이 회덕현감에 제수 된 것은

- ① 이비(吏批), …(중략)… 최침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崔沈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9월 10일 (갑인))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최침(懷德縣監崔沈),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9월 24일 (무진))

①에서처럼 숙종 39년(1713) 9월 10일이고, ②에서처럼 같은해 9월 24일에 숙종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최침(崔沈:1654~?)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중묵(仲默), 부친은 전행 내자시봉사(前行內資寺奉事)을 지낸 최세익(崔世益)이고, 거주지는 해주이었다. 숙종(肅宗) 8년 (1682) 임술(壬戌)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2등(二等) 11위로 입격하였다.

## 90. 구창주(具昌柱)

구창주(具昌柱)가 회덕현감에 제수 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구창주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具昌柱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41년(1715) 1월 17일 (갑인))

라하여 숙종 41년(1715) 1월 17일이다.

## 91. 조정강(趙正綱)

조정강(趙正綱)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이비(吏批), …(중략)… 조정강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趙正綱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41년(1715) 1월 23일 (경신))

② 하직하다(下直), …(중략)… 회덕 현 조정강(懷德縣監趙正綱),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41년(1715) 2월 15일 (임오)).

①에서처럼 숙종 41년(1715) 1월 23일이고, ②에서처럼 같은해 2월 15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조정강(趙正綱)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회덕읍지□□「명관」조에 “조정강(趙正綱) 폐단을 고치고 쇠잔한 것을 소생시켰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라 하여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덕구 읍내동 동사무소 앞에 전면대자가 ‘현감조정강영세불망비(縣監趙正綱永世不忘碑)’로 되어 있는 거사비가 있다. 그리고 신정하(申靖夏)(1681-1716)의 문집인 □□서암집(恕菴集)□□ 卷8, 서(書)에 숙부 조정강이 회덕 현감 재임시 보낸 척독(尺牘)이 3편이나 있다.

조정강의 학문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농암農巖)이 “서울의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즉 조정강이다(所云京中學者。卽趙正綱也) (□□농암집(農巖集)□□ 권12, 서(書), 답권치도(答權致道))”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조정강(趙正綱:1666-?)의 자는 기지(紀之), 본관은 임천(林川), 아버지는 수원진관병마동첨절제사(水原鎮管兵馬同僉節制使)를 지낸 조현기(趙顯期)이다. 숙종(肅宗) 22년 (1696) 병자(丙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49위로 입격하였다.

## 92. 강찬(姜纘)

강찬(姜纘)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전략)..., 강찬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姜纘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1718) 8월 11일 (정해))
-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강찬(懷德縣監姜纘),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44년(1718) 9월 9일 (갑신))

①에서처럼 숙종 44년(1718) 8월 11일이고, ②에서처럼 같은 해 9월 9일에 숙종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강찬이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것은

충청감사 서목(書目), 회덕 현감 강찬(懷德縣監姜纘), 금월(5월) 초 2일에 모친상을 만났다. (□□승정원 일기□□ 숙종 46년(1720) 5월 11일 (정축))

에서처럼 숙종 46년(1720) 5월 11일에 모친상을 만나 체직되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강찬(姜纘:1674~?)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계이(繼而), 부친은 학생(學生) 강제익(姜齊益)이었고, 거주지는 거창(居昌)이었다. 숙종(肅宗) 25년 (169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68위로 입격하였다.

## 93. 조명국(趙鳴國)

조명국(趙鳴國:1676~1746)은 이조의 구전정사(口傳政事)에

이조 구전정사(吏曹口傳政事)가 있었다, …(중략)... 회덕 현감 조명국으로 하다(懷德縣監趙鳴國). (□□승정원일기□□ 숙종 46년(1720) 5월 11일 (정축))

에서처럼 숙종 46년(1720) 5월 11일에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다. 그러나 제수된 바로 2일 뒤에

이조 계달(啓達)에 말하기를 새로 제수한 회덕현감 조명국의 정장(呈狀)에, 본도병사 이태망(李台望)인 즉 처동성삼촌숙모부(妻同姓三寸叔母夫)로 법에 당연히 상피(相避)하여야 하니 속히 계달하여 처치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미 상피가 있는 즉 부임하는 것은 불가하니 회덕 현감 조명국을 개차 하는 어떠하겠습니까. 명령하여 말씀하시길 그렇게하라. (□□승정원일기□□ 숙종 46년 (1720) 5월 13일 (기묘)).

라하여 충청도병사 이태망이 처동성삼촌숙모부(妻同姓三寸叔母夫)이어서 상피조에 해당되어 개차(改差)되었다.

그런데 조명국(趙鳴國)의 체직에 대하여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1681~1767)가 찬한 조명국의 묘갈명에는.

경자(庚子:1720)에 또 형조로 옮기고, 동료들의 죄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공이 자백치 않았으나 아는 사람들이 다 많아 공공연한 것이었다. 즉 회덕 현감을 벼슬이 내리었으나 어버이의 혐의로 체직되었고, 다시 감찰 벼슬이 내렸다. (□□병계선생집(屏溪先生集)□□ 권49(卷之四十九), 묘갈(墓碣), 군수조공명국(郡守趙公 鳴國) 묘갈명(墓碣銘)1720년(경자)

라하여 조명국이 경자년(1720)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의 혐의로 체직되었으나 되어 있어 □□승정원일기□□와는 다른 내용을 전한다. 그러나 □□승정원일□□ 기록의 신빙성으로 보아 윤봉구가지은 묘갈명에 서술된 것처럼 아버지의 혐의로 체직된 것이 아니라, 상피(相避)에 해당되어 개차(改差)된 것이다. 따라서 조명국은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다가 바로 개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덕현감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인물이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조명국(趙鳴國)의 자는 화지(和之), 본관은 양주(楊州), 아버지는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을 지낸 조이병(趙爾炳)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며, 1676년(병진)에 출생하였다. 숙종(肅宗) 25년 (169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43위로 입격하였다.

## 94. 민창하(閔昌夏)

민창하(閔昌夏)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이조 구전정사(吏曹口傳政事)에서 민창하를 회덕 현감으로 하다。(懷德縣監閔昌夏) (□□승정원 일기□□ 숙종 46년(1720) 5월 15일 (신사))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민창하(懷德縣監閔昌夏),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46년(1720) 6월 2일 (정유))

①에서 처럼 이조의 구전정사에서 숙종 46년(1720) 5월 15일이었고, 6월 2일에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민창하(1662~?)의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형숙(亨叔)이고, 부친은 유학(幼學) 민자(閔鑑)이며, 거주지 양주(楊州)이다. 숙종(肅宗) 17년 (1691) 신미(辛未)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31위로 입격하였다.

## 95. 서종일(徐宗一)

서종일(徐宗一)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① 또 아뢰기를, …(중략)… 서종일을 회덕 현감으로 삼았다(徐宗一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 일기□□ 경종 3년(1723) 3월 25일 (갑진))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서종일(懷德縣監徐宗一), …(하략)。(□□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 4월 18일 (정묘))

라하여 경종 3년(1723) 3월 25일이고, 4월 18일에 경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그런데 서종일이 회덕현감직에 과직된 것은

어영정의 유수(柳綏)가 아뢰기를, 일전의 등대(登對)시에 본청 각읍이 납부한 계미조 신봉미포(新捧米布)는 경자년에 대여하여 유치된 진미(賑米)인데, 오히려 미납이 많으니 극히 놀라운 일이다. 쌀(米)인즉 78석이상 포는 일동(一同)이상 미납수령을 먼저 무겁게 추고하여 전에 납부와 불납을 살펴서 초기(草記)로 죄를 논하고 해당 감색이 본도를 쫓아서 죄를 무겁게 과할 일이라 진달하였다. 전교에 새로 부임한 사람의 추고인즉 이미 전에 납입하지 못한 자와 같이 일체를 추고하는 것은 부당하니 파직은 가하다고 아래에 명하셨다. 마땅히 곧바로 거행할 것이다. …(중략)… 계묘미포(癸卯米布)을 미납한 충청도 문의현령 윤동형(尹東衡) 회덕현감 서종일 …(중략)… 정탈에 의하여 먼저 무겁게 추고하여 그 전의 납입과 미납을 보아 초기로 처치하라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1724) 10월 8일 (무인))

에서처럼 영조 즉위년(1724) 10월 8일에 계미조의 신봉미포(新捧米布)을 납입하지 못하여 과적되었다.

## 96. 이간(李東)

이간(李東)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또 아뢰기를, …(중략)… 이간을 회덕 현감으로 삼았다(以李東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 일기□□ 영조 원년(1725) 1월 26일 (을축))
-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이간(懷德縣監李東), …(하략)。 영조 원년(1725) 2월 19일 (정유 [정해]))

①에서처럼 영조 원년(1725) 1월 26일이었고, ②에서처럼 2월 19일에 영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회덕현에 도임하였다.

그런데 □□영조실록□□에는 이간이 영조에게 사조하는 기사가

드디어 사조(辭朝)하는 수령을 인견하였는데,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간(李東)이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그가 초선(抄選)됐다는 말을 듣고 전교하기를, “산림(山林)에서 독서(讀書)하였으니, 반드시 학문하는 요점을 알 것인데, 내가 듣고자 한다.” 하니, 이간이 말하기를, “신은 듣건대, 학문하는 본말(本末)은 지(知)와 행(行)이라고 합니다. 지행(知行) 가운데 각기 큰 이치가 있고, 한 물건 한 일의 이치는 모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나 심신(心身)에 일용(日用)하는 윤상(倫常)-기강(紀綱) 상에는 반드시 먼저 곧바로 결단하여 이해해야 하니, 이것이 치지(致知)의 큰 이치입니다. 행(行)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선(善)과 하나의 행실을 진실로 마땅히 극진하게 해야 하나, 수기(修己)상에 나아가 말하면 천인(天人)-이욕(理欲)의 나눔에서 곧바로 판단하여 구별해 내어야 하며, 치인(治人) 상으로 나아가 말하자면 선을 선하게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겨 진실되게 힘을 쓰면 이것이 역행(力行)의 큰 이치입니다. 학문을 하면서 그 큰 이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학문하는 요점이 아닐까 싶으니, 맹자(孟子)가 이른 바 ‘먼저 그 큰 것을 세워야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을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을 어찌 많이 해야 되겠는가? 의리(義理)의 대체는 한 마디면 다 된다. 듣건대 노모(老母)가 있다 하니, 지금은 우선 내보내나, 강학(講學)하는 사람을 얻기가 매우 쉽지 않다. 조만간 올라와 강론하여 내가 미치지 못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라.”하였다. (□□영조실록□□ 권3 1년 1월 26일(을축)).

라 하여 1725년(영조 1) 1월 26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영조실록□□과 같은 기사가 □□승정원일기□□에는 영조 원년(1725) 2월 19일 (정유[정해])조의 기사로 실려 있다. 따라서 위 □□영조실록□□의 기사는 이간이 ②에서처럼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할 때 영조와 회덕현감으로 도임하는 이간과 대화이다. 그러므로 □□영조실록□□의 연월일이 잘못된 것이다.

어째든 영조가 산림으로 회덕현감으로 제수되어 출사하는 이간에게 학문하는 요체를 물었는데, 이간은 “학문하는 본말(本末)은 지(知)와 행(行)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이간이 회덕현감직에서 체직된 것은

도목정(都目政)1908) 을 행하여 이병상(李秉常)을 판윤(判尹)으로, 홍석보(洪錫輔)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재(李緯)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중략)... 박필주(朴弼周)·이간(李柬)·윤봉구(尹鳳九)·한원진(韓元震)·채지홍(蔡之洪)·이이근(李頤根)은 경연관(經筵官)으로 초계(抄啓)하였으며, 권성(權聲)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으니,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의현(李宜顯)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도빈(趙道彬)의 정사(政事)였다. (□□영조실록□□ 8권, 영조 1년( 1725 을사) 12월 27일 경인)

라하여 1725년(영조1) 12월 27일에 이간·한원진·윤봉구 등이 경연관으로 초계 되었으므로, 이 때에 체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간은 회덕현감 재임시 회덕의 군정과 전정의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였던 자료가 □□외암집□□에 실려 있다. 이 자료는 당시 회덕의 실정을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지방사 자료의 하나이다.

이간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간(李柬:1677(숙종3)~1727(영조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공거(公舉), 호는 외암(巍巖)·추월헌(秋月軒). 부호군 태형(泰亨)의 아들로서, 권상하(權尙夏) 문하의 팔학사(八學士) 중 한 사람이다. 1710년(숙종36) 순무사 이만성(李晚成)에 의하여 장릉 참봉(莊陵參奉)으로 천거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6년 뒤인 1716년에 다시 천거되어 세자시강원 자의가 되었는데, 이 때 그의 나이가 적은데도 계급이 뛰어오름을 논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717년 종부시정을 제수받고, 1725년(영조1) 회덕현감·경연관을 거쳐 충청도도사 겸 해운관·익위사익위를 제수받았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호락논쟁은 권상하의 문하에서 야기된 것인데, 그들은 처음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오상(五常)을 금수(禽獸)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문제, 즉 금수와 오상의 관계와 또 사람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정(情)이 발동하지 아니하였을 때(未發)의 상태,

즉 심체(心體)에 기질(氣質)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의견의 대립이 생겼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논쟁은 권상하의 문하 팔학사 중에서 이간과 한원진(韓元震)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권상하가 한원진의 설에 찬동하자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전국의 석학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인물성동론 이간의 설을 지지하는 이재(李緯).박필주(朴弼周).어유봉(魚有鳳) 등 낙하(洛下:서울)학자들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 같이 오상을 가진다는 인물성구동론(人物性俱同論)과, 미발한 마음의 본체는 기질의 선악이 없으므로 본래선(本來善)이라 하여 미발심체본선론(未發心體本善論)을 주장하였다. 이것을 낙론(洛論) 또는 낙학(洛學)이라 부르게 되었다.

인물성이론 한원진의 설을 찬동하는 권상하·윤봉구(尹鳳九).최징후(崔徵厚).채지홍(蔡之洪) 등 호서학자(湖西學者)들은 인성은 오상을 가지지만 물성은 그 오상을 모두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인물성상이론(人物性相異論)과, 미발한 마음의 본체에도 기질의 선악이 있다는 미발심체유선악론(未發心體有善惡論)을 역설하였는데, 이것을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간은 온양의 외암서원(巍巖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외암유고□□가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 97. 최중정(崔重鼎)

최중정(崔重鼎)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1725(乙巳) 9월 11일 오시 상이 시민당(時敏堂)에 어거하여, 주강(畫講) 윤대(輪對)를 위해 입시할 때 …(중략)… 최중정이 나아가 없드리니, 임금이 직성명(職姓名)을 물으셨다. 중정아뢰기를 형조정낭 최중정입니다. 임금이 이력을 물으셨다. 중정이 아뢰기를 강릉참봉(康陵參奉).종묘봉사(宗廟奉事).선공직장(繕工直長).군자주부(軍資主簿),감찰(監察)에 이르렀고, 회덕 현감이 되었다가 중간에 상을 당하였습니다. 금번 도목정사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9월 11일 (을사))

라 하여 영조 원년(1725) 9월 11일 이전에 회덕현감을 지내다가 상(喪)을 당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중정의 회덕현감 재직은 영조 원년(1725) 9월 11일 이전의 기간 중에, 전임 회덕현감 들인 민창하(1720.5.15~?), 서종일(1723.3.25~1724.10.8), 이간(1725.1.26~1725.12.27)의 제수일과 체직일 볼 때 민창다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1720년(숙종46)년 5월 15일 이후에서부터 서종일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시기인 1723년(경종3) 3월 25일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최중정(崔重鼎)이 회덕현감으로 재임하였던 사실은 □□회덕읍지□□ 「명관」조에 “청렴하고 근신하며 잘 다스렸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라하여 알 수 있다. 이 거사비는 현재 대덕구 읍내동에 있고, 전면대자는 “현감 최중정 영세불망비(縣監 崔重鼎 永世不忘碑)”라 되어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최중정(崔重鼎·1660-?)의 자는 여구(汝九), 본관은 경주(慶州), 아버지는 진사 최적봉(崔商鳳)이고, 거주지는 충원(忠原)이고, 사마시 입격시 년령은 25살이었다.

숙종(肅宗) 10년 (168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27위로 입격하였다.

## 98. 조이숙(趙爾翻)

조이숙(趙爾翻)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송시열이 찬한 행장(行狀)에 의하면 1659년 6일이다. 송시열의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劄)□□에서 “현태수조이숙이 회덕임소에서 사망하였다. 현 사람들이 비를 세우고 그를 기렸다(賢太守趙爾翻卒於懷德任所。縣人立碑而頌之。四十四板(□□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劄)□□ 권4, 권33, 43판)라하여 회덕임소에서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망한 시기는 송시열이 지은 묘갈에 의하면 1660년(경자) 10월 23일이다.

따라서 조이숙이 회덕현감으로 사망한 시기가 이임일인 셈이다.

조이숙의 과거 경력은 효종(孝宗) 1년(1650) 경인(庚寅)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25위로 입격하였다. 조이숙이 처음 사환은 신독재 김집이 전랑으로 있던 1650년(효종 원년)에 전설사별검(典設司別檢)으로 천거되었고, 그 해 겨울에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조이숙이 회덕 임소에서 사망하여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조이숙에 대해서 □□회덕읍지□□에 그 설명이 자세하다.

조이숙(趙爾翻) : 효종조 기해(己亥:1659)에 부임해서 청백함을 스스로 힘썼다. 일찍이 인묘대상

(仁廟大喪)에는 밖에 기거하며 나물죽만 먹으며 3년을 마쳤고, 효묘상(孝廟喪)에도 역시 전과 같이 하였다. 나이들어 쇠약해지고 질병이 들어 관사에서 죽으니, 나라에서 증직(贈職)하고 정려(旌閨)를 세워 주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거사비명(去思碑銘)에 이르기를.

맑은 지조는 얼음을 닮은 듯하고,

은혜로운 정은 봄 흐르는 듯 하도다.

방금 잃어버린 지극한 행실이여!

전사(前史)에 드문 일이었네.

옛적에 공이 와서 의지하면서

아이나 늙은이가 기쁘게 노래하더니,

지금은 널(柩)로 하여 돌아가시니

울부짖어 불든들 만류할 수 없구려

슬픔을 어디에다 의탁할까 하여

비는 도로 곁에 있는데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이 썼고, 그 아들 명세(鳴世)가 양송선생(兩宋先生)에게 배우고 이로 인하여 현 남쪽에 살게 되었는데 효우(孝友)와 행의(行誼)로 향리에서 칭송받았다.

라 설명되어 있다.

조이숙에 대해서는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이숙(趙爾肅): 1616(광해군 8)~1660(현종 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경휘(景翬). 참봉 상우(相禹)의 아들이다. 1648년(인조 26) 예빈시 참봉에 제수되었으며, 효종 초에는 김집(金集)의 청으로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에 임용되었다. 이후 효종(孝宗) 1년 (1650) 경인(庚寅)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25위로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651년(효종 2)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에 임용되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으로 조지서(造紙署)·귀후서(歸厚署) 등의 별제로 승서(陞敍)되었다. 이후 장례원 사평·호조 좌랑·정읍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 99. 유신(柳紳)

유신(柳紳)이 제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유신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柳紳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1월 14일 (정미))
- ② 신무일(慎無逸)이 아뢰어 말하기를, 금일 하직 수령·변장으로 유대(留待)하고 있는 자를을 인견하기 위하여 입시시 하직하지 않은 수령에 대하여 물으시는 일로 아래에 명령하다. …(중략)… 회덕 현감 유신은 사현부는 이미 서경을 하였으나, 사간원은 서경치 않았습니다.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2월 2일 (을축))
- ③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유신(懷德縣監柳紳),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2월 10일 (계유))

①에서처럼 영조 2년(1726) 1월 14일의 도목정사에서 였으며, 그러나 ②에서처럼 도목정사가 있은후 약 18일 지났음에도 사간원의 서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③ 2월 10에서야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유신이 회덕현감에서 파직된 것은

이중협(이중협) 의금부 언계(言啓)로써 말하기를 회덕현감 유신을 나문(拿問)하여 처치할 일이다. 전지(傳旨)로 계하하였다. 유신이 지금 충주땅에 있다 하니, 예에 의하여 본부의 나장(羅將)을 보내 잡아오는것이 어떠합니까. 허락한다.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윤3월 6일 (임술))

에서처럼 충주땅에 일로 영조 3년(1727) 윤3월 6일에 파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충주 땅에 일이란 “회덕현감 유신이 공세차사원(貢稅差使員)으로 충주 가흥창(可興倉)에 있을 때, 마침 왕명을 받들어 그 앞을 지나가던 김치후(金致垕) 일행의 사령(使令) 및 반상(伴尙)을 잡아서 장차 형장을 가하려 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윤3월 5일 (신유))”라한 일 때문이었다.

## 100. 조정속(趙廷凍)

조정속(趙廷凍)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병비(兵批), 조정속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趙廷凍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6월 13일 (무술)).
-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조정속(懷德縣監趙廷凍).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7월 8일 (임술))

①에서처럼 영조 3년(1727) 6월 13일이었고, ②에서처럼 약 20일이 지난 7월 8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조정속이 회덕현감에서 파직된 것은,

홍경보(洪景輔), 의금부의 언계로서 말하기를 회덕 현감 조정속을 사로잡아 정죄할 일이다. 전지에 의하여 계하(啓下)하였다. 조정속이 지금 임소에 있으니 예에 의하여 (의금부관원)을 보내어 사로잡아오는 것이 어떨하겠습니까. 전하기를 허락한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7월 25일 (갑술))

라하여 영조 4년(1728) 7월 25일에 파직당하였다. 조정속이 파직당하게 된 사건은

간원(諫院) 【정언(正言) 박필재(朴弼載).】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태원(李太元)을 멀리 귀양보내는 일은 아뢴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조정속(趙廷凍)은 역적의 관문(關文)을 전하여 보냈으니, 나문(拿問)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조실록□□ 권18, 영조 4년 7월 23일(임신))

라하여 조정속이 역적의 관문을 전하여 보냈다는 것이었다.

## 101. 이흡(李瀉)

이흡(李瀉)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전략)… 이흡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瀉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7월 25일 (갑술))

라하여 영조 4년(1728) 7월 25일이었다.

이흡이 회덕현감에서 파출된 것은

또한 아뢰기, 새로 제수된 회덕 현감 이흡의 정장(呈狀)에 중환과 독점(毒店:학질)로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거기에 이질이 더하여 병증으로 고통이 극에 달하여 먹는것을 전폐하여 원기가 없어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을 보건데 실로 월내로 부임하기는 어려우니 속히 입개하여 처치할

일이다. 신병이 과연 이와 같이 위중한즉 강제로 부임하는 것은 불가하니 회덕현감이 흡을 파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허락하다.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8월 16일 (갑오))

라하여 이흡은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조 4년(1728) 8월 16일에 중병으로 현지에 부임하지도 못하고 파출되었다.

## 102. 이구휴(李龜休)

이구휴(李龜休)가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이구휴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龜休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8월 16일 (갑오))

에서처럼 영조 4년(1728) 8월 16일이었다. 그러나 이구휴는 회덕현감에 제수된 이후

또한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회덕 현감 이구휴 정장(呈狀)에 학질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중병을 얻어 근력이 없고, 병의 정황이 극히 위험하고, 두통과 해수와 천식이 겸하여 발생하여 월내 기동할 수 없으니 속히 입계하여 처치할 일이다. 이구휴 병세의 경증을 비록 어떠한지 알지 못하나 년분이 박두한 이때에 오래 수령직을 비워두는 것을 허락하기는 불가하니 부득이 파출하는 것이 어떻하겠습니까? 허락하다.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8월 23일 (신축))

라하여 학질과 유사한 중병을 얻어 실제로 회덕현감직에 도임하지 못하고, 7일만에 파출되었다.

## 103. 송국위(宋國緯)

송국위(宋國緯)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전략)… 송국위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宋國緯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8월 28일 (병오))년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현감송국위(懷德縣監宋國緯)。(□□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10월 9일 (병술))

①에서처럼 영조 4년(1728) 8월 28일이고, ②에서처럼 10월 9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송국위가 회덕현감직에서 체직된하게 된 것은

미시(未時)에 제신들이 다시 들어왔다. 석명(錫命)이 말하기를 회덕현감 송국위를 발송(發送)하는 일을 재촉하여 분부하셨습니다. 도신(道臣)이 진정(賑政)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은 연유로 연이어 사직을 하였습니다. 끝내 하거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이미 하교하였다. 지난번 황정(黃鋗)이 계달한 것을 들으니, 이미 잘 다스린것을 알 수 있다. 도신(道臣)이 과연 이와 같이 말을 하였다면 그간에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다. 정(鋗)이 말하기를 신이 도신에게 들은 즉 송국위의 치적은 뛰어나나 환곡과 군포를 독촉하기를 느슨하게 하는 등 그 임무에 과오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듣기로 (송)국위 이일로 허물을 깨달아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도신이 여러 차례 제사(題辭:사직서에 대한 도신의 결정문)로 돌이켜 퇴송하였고, 신 또한 수령직을 살필것을 재촉하는 서신을 도신에게 주었고, 도신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신관이 거행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들리는 것은 이는 다행이 아니라 국위가 자못 서리들에게 엄하게 한 까닭으로 반드시 중간의 유언비어가 된 것입니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도신이 만약에 신관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은 즉 조가(朝家) 또한 재촉하기 어려우니 대신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치중(致中)이 말하기를 이는 혹 하리배들이 중간에 전하는 것이 이르는것을 지나 치게 하니 지금 도신이 이어서 장계로 재촉한즉 하송(下送)을 재촉하는 것이 미땅하다. 재노(在魯)가 말하기를 도신이 이미 체직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찌 신관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었느냐? 근사치 아니한것 같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같은 일이 있으나 조가인즉 하송을 재촉하는 것이 가하다. 이미 신칙한 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애(撕撻:서로 自己의 主張을 고집하여 決定짓지 못함)치 못하니, 송국위를 나추(拿推)하는것이 가하다. (□□승정원일기□□ 영조 7년(1731) 12월 13일 (임인))

라하여 송국위가 회덕현감으로 치적이 있었으나 환곡과 군포를 독촉하기를 느슨히 한것과 아전들을 엄하게 다스린것에 대한 아전들의 반발로 결국 영조 7년(1731) 12월 13일에 나추되었다.

송국위(宋國緯)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회덕읍지□□ 「명판」조에 “송국위(宋國緯) 명쾌한 결단이 있고 잘 다스렸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라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사비는 현재 대덕구 읍내동 동사무소 앞에 있으며, 비의 전면 대자는 “현감송국위청

덕선정비(縣監宋國緯清德善政碑)”라 되어 있다. 이러한 □□회덕읍지□□「명관」조의 기록과 “현감 송국위청덕선정비(縣監宋國緯清德善政碑)”가 위의 승정원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송국위가 선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송국위(宋國緯; 1686-?)의 자는 지세(持世), 본관은 진천(鎮川), 아버지는 송정립(宋廷立), 생년은 1686년(병인) 이었다. 숙종(肅宗) 43년 (171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7위로 급제 하였다.

## 104. 조화벽(趙和璧)

조화벽(趙和璧)이 회덕 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조화벽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趙和璧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8년(1732) 윤5월 29일 (갑인))

라하여 영조 8년(1732) 윤5월 29일이었다.

## 105. 이상요(李相堯)

이상요(李相堯)가 회덕 현감에 제수 된 것은

① (전략)…, 이상요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相堯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9년 (1733) 6월 11일 (경신))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이상요(懷德縣監李相堯),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9년 (1733) 7월 12일 (신묘))

①에서처럼 영조 9년(1733) 6월 11일이었고, ②에서처럼 영조 9년(1733) 7월 12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이상요(李相堯)가 회덕 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회덕읍지□□「명관」조에 “이상요(李相堯) 충실하고 부지런해 고을을 잘다스리니 이민(吏民)이 다 편안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그리고 거사비는 현재 대덕구 읍내동 동사무소 앞에 있으며, 그 비의 전면대자는 “현감 이상요애민선정비(縣監李相堯愛民善政碑)”라 되어 있다.

## 106. 이홍모(李弘模)

이홍모(李弘模)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전략)…, 이홍모를 회덕 현감으로 하다(李弘模爲懷德縣監), …(하록).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735) 8월 23일 (기축))
-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이홍모(懷德縣監李弘模).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 9월 19일 (을묘))

①에서처럼 영조 11년(1735) 8월 23일이고, ②에서처럼 9월 19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이홍모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정사책□□ 을묘 8월 23일(영조11,1735)의 도목정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때 수망에는 부호(副護) 이홍모(李弘模:蔭,折衝)이었고, 차망에 감찰(監察) 민신영(閔宸英), 말망에 금도(禁都) 조개(趙階)이었는데, 이홍모가 낙점을 받았다.

## 107. 서종협(徐宗浹)

서종협(徐宗浹)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이조의 구전정사(吏曹口傳政事), 서종협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以徐宗浹爲懷德縣監), …(하록). (□□승정원일기□□ 영조 14년(1738) 9월 25일 (갑술))
-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서종협(懷德縣監徐宗浹), …(하록).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1738) 9월 27일 (병자))

①에서처럼 영조 14년(1738) 9월 25일이고, ②에서처럼 9월 27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 서종협(徐宗浹)이 회덕현감에 재임하다 파직된 시기는

의금부에서 회덕 현감(懷德縣監) 서종협(徐宗浹)을 파직하기를 계청하였다. 서종협이 부례(府隸)가 열읍(列邑)에서 폐해를 일으킨다 하여 장치(杖治)하였는데,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나졸(羅卒)이 비록 미천하더라도 이미 왕차(王差)이고 보면 수령으로서 어찌 감히 장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따랐다. 사신은 말한다. “나졸이 왕차라 할지라도 수령은 어찌 왕인(王人)이 아니겠는가? 그 일이 마땅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파직하면 뒷 폐단이 장차 어떠하겠는가?” (□□영조실록□□ 권49 영조 15년 6월 25일(경자))

라하여 1739년(영조15) 6월 25일이다. 회덕현감 서종협은 부례(府隸)가 열읍에 폐해를 일으킨 문제로 장으로 다스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파직되었다. 그러나 이후 영조 실록을 찬수한 사관의 논찬은 ““나졸이 왕차라 할지라도 수령은 어찌 왕인(王人)이 아니겠는가? 그 일이 마땅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파직하면 뒷 폐단이 장차 어떠하겠는가?”라고 하고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서종협(徐宗浹:1695-?)의 자는 여화(汝和), 본관은 대구(大丘), 아버지는 행광홍창주부(行廣興倉主簿)를 지낸 서문택(徐文澤)이다. 숙종(肅宗) 45년 (1719) 기해(己亥)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68위로 입격하였고, 이 때 거주지는 경(京)이었다.

## 108. 정석범(鄭錫範)

### 정석범(鄭錫範)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것은

사헌부 【장령 신겸제(申兼濟)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고, …(증례)… 또 아뢰기를, “전최(殿最)는 얼마나 근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홍 감사(公洪監司) 이보혁(李普赫)이 포폄(褒貶) 한 가운데에, ‘제천 현감(堤川縣監) 박필중(朴弼重)은 인기(人器)가 적합하지 않으니 마땅히 반작(盤錯)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회덕 현감(懷德縣監) 정석범(鄭錫範)은 우도 할계(牛刀割鷄) 하였으니 어찌 또한 부지런하게 힘쓴 것이 아닌가?’ 하였는데, 구어(句語)가 서로 어긋나고 문세(文勢)가 모호하니, 이보혁은 마땅히 종종 추고해야 합니다.” 하니, 아론대로 하게 하였다. 사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영조실록□□ 권47 영조 14년 1월 18일(신미)).

라하여 1738년(영조 14년) 1월 18일(신미)이다. 즉 위 사료에서 처럼 공홍 감사(公洪監司)

이보혁(李普赫)이 포폄(褒貶)한 가운데에 “회덕현감 정석범이 “우도 할계(牛刀割鷄) 하였으니 어찌 또한 부지런하게 힘쓴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으나, 이 문세가 모호하여 이보혁을 추고하여야 한다고 사헌부 장령 신겸제가 아뢴 내용이다.

정석범(1685-?)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자는 사숙(師叔), 본관은 동래(東萊), 진사시 응시 때 거주지는 경(京), 아버지는 수황해도관찰사(守黃海道觀察使)를 지낸 정시선(鄭是先)이다. 경종(景宗) 1년(1721) 신축(辛丑)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37위로 입격하였다.

## 109. 이덕항(李德恒)

이덕항(李德恒)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① 0비(吏批) …(중략)…, 이덕항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德恒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7월 2일 (병오))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이덕항(懷德縣監李德恒)。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7월 27일 (신미))

①에서처럼 영조 15년(1739) 7월 2일이고, 7월 27일에 영조에게 하직하고 도임하였다.

## 110. 황호원(黃顥源)

황호원(黃顥源)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전략)… 황호원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黃顥源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9월 6일 (경술))

라하여 영조 15년(1739) 9월 6일이었다. 그러나 회덕현감에 제수되고 나서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회덕현감 황호원의 정장(呈狀)에 “이몸의 승중조모께서 나이가 70세가 되셨는데, 풍담(風痰)의 증세가 근심되는데 갑자기 추위가 극열함을 당하여 설사의 근심까지 더 하였는데, 이몸이 형제가 없어 홀로 스스로 부호(扶護)한다” 합니다. 이와 같은 정세로 조모곁을

떠나 부임을 바랄 수 없으니 속히 입계하여 처치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의 병이 이와같이 위독 하니, 강제로 명하여 부임하는 것을 끝지 못하니 예에 의하여 파출하는것이 어떨겠습니까. 허락 한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10월 12일 (을유))  
라하여 황호원이 회덕현감에 제수된지 35일 만인 10월 12일에 승증조모의 병환으로 부임할 수 없어 파출되었다.

## 111. 이익현(李益炫)

이익현(李益炫)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전략)..., 이익현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以李益炫爲懷德縣監), …(하록). (□□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10월 16일 (기축))

라하여 영조 15년(1739) 10월 16일이다.

## 112. 홍성규(洪聖揆)

홍성규(洪聖揆)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이비(吏批) …(중략)..., 홍성규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洪聖揆爲懷德縣監), (□□승정원일기□□ 영조 17년(1741) 7월 25일 (정해))
-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홍성규(懷德縣監洪聖揆), …(하록). (□□승정원일기□□ 영조 17년(1741) 8월 15일 (정미))

①에서처럼 영조 17년(1741) 7월 25일이고, ②에서처럼 8월 15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홍성규의 파직일은

또 이조에서 언계로 아뢰기를 금일 본조에서 좌기(坐起)하여 개탁(開坼)한 각도 포폄 계본(啓本)을

상고하니, 언양현감 조정우는 근신함이 가상하나 피잔(疲殘)하여 마땅히 경(警)을 조목으로 하고, 회덕현감 홍성규는 비록 스스로 면려 하나 우유(優柔)로 조목을 삼아 하고(下考)에 두는 것이 마땅하나 중고(中考)내에 두었다. 이 양읍수령은 혹 피잔하여 능히 백성에 다다를 수 없거나 혹 비록 스스로 힘쓰고자 하나 우유부단하여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모두 계속두는 것은 불가 하니 아울러 피출하는것이 어떠합니까? 허락하다. (□□승정원일기□□ 영조 18년(1742) 9월 15일 (신미))

라하여 영조 18년(1742) 9월 15일에 다스리기를 힘쓰나 우유부단하여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 피출되었다.

### 113. 이언환(李彦煥)

이언환(李彦煥)이 회덕 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 ① (전략)..., 이언환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彦煥爲懷德縣監), ...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1742) 9월 21일 (정축))
- ② 하직하다, ... (중략)..., 회덕 현감 이언환(懷德縣監李彦煥), ...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1742) 10월 24일 (기유))

①에서처럼 영조 18년(1742) 9월 21일이고, ②에서처럼 10월 24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이언환의 파직일은

정희량 의금부의 언계로 말하기를 회덕현감 이언환, 진잠현감 박필렴, 회인현감 정희태 등을 나처하라는 전지를 계하하셨다. 박필렴·정희태는 지금 본부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곧 나수(拿囚)되었으나 이언환은 임소에 있다고 하니 예에 의하여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허락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1월 21일 (정미))

라하여 영조 23년(1747) 11월 21일이었다. 그런데 이언환이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되게 된 사유는

같은날 오시에 임금께서 희정당에 어거하셨다. 대신·비국의 여러 재신이 인견을 위하여 입시 할시에 ... (중략)... 재노(在魯)가 말하기를, 공홍감사 이종성이 지난 겨울 군량과 환상미 봉납하지

못한것에 대한 치계에 환상은 회덕 현감 이언환이 거말(居末:꼴찌)이었고, 진천현감 정석휘가 다음이었습니다.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4월 5일 (무자))

라하여 영조 19년 4월 5일의 공홍감사 이종성의 치계에 회덕현감 이언환의 환상미봉납의 성적이 거말(居末)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언환(李彦煥)이 회덕현감에 재임 사실은 □□운평선생문집(雲坪先生文集)□□ 권5(卷之五), 서(書)에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이 “여이회덕언환(與李懷德彦煥)”라는 서찰을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다.

## 114. 정운유(鄭運維)

정운유(鄭運維)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이▣(吏批), …(중략)…, 정운유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鄭運維爲懷德縣監),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748) 4월 18일 (신미))

라하여 영조 24년(1748) 4월 18일 이었다.

정운유가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된 것은 그의 신도비명에

숙종 갑신(甲申:1704) 공이 출생하였고, 영종(英宗) 을묘(乙卯:1735)에 생원에 입격하였고, 계해(癸亥:1743)에 능침랑(陵寢郎)에 제수되었고, 무진(戊辰:1748)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서 회덕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정사를 보매 호우배들을 단속함이 심히 준엄하여 읍민들이 비로소 공법(公法)이 있음을 알았다. 경오(庚午:1750)에 파직되어 돌아갔다(□□번암선생집(樊巖先生集)□□ 권48 (卷之四十八), 신도비(神道碑), 자헌대부공조판서겸지의금부사정공신도비명(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事鄭公神道碑銘))

라하여 정운유는 사마시에 입격 후 1748년(영조24)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고, 1750년 (영조26)에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정운유는 1750년(영조26)에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되었다. 그리고 정운유는 회덕현감 재임시 “호우배들의 단속을 엄하게 하여 읍민들이 나라의 법이 있음을 알았다”라는 기사로 보아 선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운유(鄭運維)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운유(鄭運維) 1704(숙종 30)~1772(영조 4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시국(時國). 지국(持國). 참판 필녕(必寧)의 아들이다. 1735년(영조 11) 생원시를 거쳐 1756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장령·승지를 지냈다. 그뒤 여주목사로 이속(吏屬)과 결탁하여 전세를 포탈하는 자를 응징하고, 흥년이 들자 징세를 감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기민(饑民)에게 나누어주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치적이 높았다.

이어 대사간·한성부우윤·도승지·대사헌을 지내고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정(翼靖)이다.

## 115. 이준(李浚)

이준(李浚)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전략) …, 이준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浚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2월 2일 (경오))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이준(懷德縣監李浚)。(□□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2월 28일 (병신))

①에서처럼 영조 27년(1751) 2월 2일이었고, ②에서처럼 2월 28일에 영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이준이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된 것은

이규채 의금부 언달로 말하기로 …(중략)… 회덕 현감 이준(懷德縣監李浚), …(중략) 등은 아울러 해부에 헤아려 처리하도록 명령한 휘지(徽旨:王世子가 임금의 代理 중에 내리는 命令)를 하달하였다. …(중략)… 이사조·이준·홍유보 등은 모두 임소에 있고, 임경관은 하거하여 경기도 광주 땅에 있습니다. 예에 의하여 부의 나장(羅將)을 보내어 잡아오는것이 어떠합니까. 명령하기를 그렇게 하라。(□□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2월 27일 (계축))

라하여 영조 29년(1753) 2월 27일이었다.

## 116. 임지호(林志浩)

임지호(林志浩)가 회덕현감에 제수 된 것은

(전략)... 임지호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林志浩爲懷德縣監), ...(하락)。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753) 5월 21일 (병자))

라하여 영조 29년 5월 21일이다.

임지호가 회덕현감직에서 파출된 것은

임순(任珣), ...(중략)... 또한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회덕 현감 임지호의 정장에, 이몸이 평소 담벽(痰癖)의 증세가 있고, 더위가 더해져서 10달이내에 기동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신병이 이와 같이 위중한즉, 강제로 명령하여 부임토록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에 의하여 피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락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7월 18일 (신미))

라하여 영조 29년(1753) 7월 18일에 신병으로 파출되었다.

## 117. 정완(鄭完)

정환(鄭完)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전략)... 정온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鄭完爲懷德縣監), ...(하락)。 영조 29년(1753) 7월 18일 (신미))

라하여 영조 29년(1753) 7월 18일 (신미))이었다. 그리고 회덕현감에 도임한 것은

○ 같은달 26일 진시(辰時), 약방(藥房)이 들어와 진료시, 임금께서 회정당에 어거하셨다. ...(중략)... 또 아뢰기를, 회덕은 즉 본도 식년 도회관(都會官)인데, 새로 제수한 현감 정환이 서경(署經)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험기한이 이미 닥쳐서 거행하는 일이 급하게 되었다. 회덕 현감 정완은 서경을 하지말고 몇칠안에 보내는 것이 어떻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 ...(하락)。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7월 26일 (기묘))

에서와 같이 대간의 서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회덕현감이 공도시 식년의 과거의 도회관

이었기 때문에 영조 29년(1753) 7월 26일에 회덕현감으로 도임을 하였다.

정온이 회덕현감에서 파직된 것은

또한 이조가 아뢰기를 금일 본조의 개탁(開拆)하여 좌기(坐起)시에 각도의 전최(殿最·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 성적을 考查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次例)에 걸쳐 시행했음.) 계본(啓本)을 보니 …(중략)… 회덕현감은 정완 재해를 보고하는 조목으로 (중략) 하고(下考)에 두어졌다. …(중략)… 제도 감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꾸직고 추고를 하여 팔읍(八邑)의 수령을 파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허락한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12월 21일 (을축))

라하여 감사에게 재해를 보고하는 것을 위배하여 영조 30년(1754) 12월 21일에 파출되었다.

## 118. 오숙(吳璣)

오숙(吳璣)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친히 도목정사에 임하였다. …(중략)…, 오숙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吳璣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12월 28일 (임신))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오숙(懷德縣監吳璣)。(□□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2월 5일 (기유))

①에서처럼 영조 30년(1754) 12월 28일이고, ②에서처럼 영조 31년(1755) 2월 5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 119. 김윤승(金允升)

김윤승(金允升)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김윤승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金允升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0월 9일 (기유))

② 하직하다, …(중략)... , 회덕 현감 김윤승(懷德縣監金允升) (□□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2월 23일 (임술))

①에서처럼 영조 31년(1755) 10월 9일이었고, 12우러 23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그리고 □□정사책(政事冊)□□에도 김윤승이 1755년(영조31) 10월 9일에 회덕현감으로 낙점되었다.

김윤승(金允升)이 회덕현감에 재임과 관련하여 □□송애선생문집(松涯先生文集□□ 권5 「부록」의 ‘송애선생연보’에

“丙子(1756) 129년 4월 예관을 보내어 지체(致祭)하고, 명하여 사손(嗣孫)을 녹용케 하였다. 예조 좌랑 이현급, 회덕 현감 김윤승, 연기현감 임덕환, 진잠현감 권담이 제집사를 겸하여 행하였고, 회덕현감이 대축(大祝)을 하였다. (□□松崖先生文集□□ 권5 「附錄」‘松崖先生年譜’□□”)

라하여 병자년(1756) 4월에 김윤승이 회덕현감으로 송애 김경여의 치제에 대축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윤승이 회덕현감에서 개차(改差)한 사실은

임금이 통명전(通明殿) 여차(廬次)에 나아가 충청도 안집 어사(安集御史) 홍경해(洪景海)와 회장관(會葬官)인 이천 부사(伊川府使) 채제공(蔡濟恭)을 소견하였다. …(중략)...승지에게 명하여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를 읽게 하고, 임금이 물기를, “어떻게 안집(安集)하였느냐?”하니, 홍경해가 대답하기를, “두 고을의 궁민(窮民)이 비록 많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소가 없어 경작(耕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읍(列邑)에서 돈을 빌려 영외(嶺外)에 가서 소를 사 가지고 단양(丹陽)에 23두(頭), 회인(懷仁)에 13두를 소가 없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수령(守令)들의 능부(能否)를 물으니, 홍경해가 대답하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김윤승(金允升)과 청안 현감(淸安縣監) 구덕훈(具德勳)은 잔민(殘民)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제거할 만한 재질이 못 될 듯 합니다.” 하니, 모두 개차(改差)하고, 그 대임자(代任者)를 가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전교를 쓰라고 명하였는데, 이르기를, “어사(御史)는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안집시켜 위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비록 가상하기는 하나, 두 고을에 돌아오지 않은 자가 아직도 1백 명이 넘는다고 하니, 아! 저 단양·회인의 백성은 나의 적자(赤子)들인데, 비록 한 사람이 못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어찌 밥을 달게 먹겠는가? 어사는 감히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왔다고 하겠는가? 홍경해를 종종 추고(從重推考)하고 곧 다시 내려가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 7월 2일(임진)).

라하여 충청도 안집어사(安集御史) 홍경해(洪景海)가 회덕현감 김윤승이 “잔민(殘民)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제거할 만한 재질이 못된다”고 보고로 체직되었다. 즉 김윤승이 1755년(영조31) 10월 9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다가, 1757년 7월 2일에 체직되었다.

김윤승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사책□□ 을해 10월 9일(영조31, 1755)조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때 수망은 군판(軍判) 김윤승(金允升)이었고, 차망은 현릉령(獻陵令) 박시진(朴時晉), 말망은 금도(禁都) 홍유정(洪有徵) 이었는데 김윤승이 낙점을 받았다.

김윤승(金允升: 1693-?)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자는 사진(士晉), 본관은 광산(光山), 영조(英祖) 2년(172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23위에 입격하였고, 입격 시 거주지는 경(京)이었다.

## 120. 정경순(鄭景淳)

정경순(鄭景淳)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이비(吏批),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정경순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以鄭景淳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 7월 18일 (무신))
-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정경순(懷德縣監鄭景淳)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 8월 1일 (경신))

①에서처럼 영조 33년(1757) 7월 18일이고, ②에서처럼 8월 1일에 영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그리고 정경순은 회덕현감으로 도임이후

- ① 무인 7월 5일 진시(辰時). 임금이 공묵합(恭默閣)에 어거하셨다. 대신·비국당사를 입시을 인견할시, …(중략)… 출거조에 말하기를, 회덕 현감 정경순은 도임하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도신(道臣)이 병상으로 파하였는데 정경순이 봉공하기를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그 풍문에 듣기에 새로 도임한 초에 이미 잘 다스린다는 소리가 있었고, 양반들이 쌓인 포효를 자진해서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과 읍의 많은 일도 거의 수습될 전망이 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그 이론것을 보건데 장차 탁용하는 것이 또한 사람을 쓰는 도리입니다. 개체하는 것은 진실로 가히 애석하니 정경순을 계속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허락하다…(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758) 7월 25일 (기유)

② (전략)… 회덕 현감 정경순을 임임하다(懷德縣監鄭景淳仍任事), …(하락)。(□□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8월 12일 (을축)).

①에서처럼 백성을 잘드려, ②에서처럼 영조 34년(1758) 8월 12일에 회덕현감직에 임임하였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정경순(鄭景淳:1721~?)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시회(時晦), 부친은 성균생원(成均生員) 정석경(鄭錫慶)으로 진사시 응시시 거주지는 한양이었다. 영조(英祖) 20년 (174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1등(一等) 2위로 입격하였다.

## 121. 김리복(金履復)

김리복(金履復)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① (전략)… 김리복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金履復爲懷德縣監), …(하락)。(□□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758) 7월 13일 (정유))

②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회덕 현감 김리복의 정장(呈狀)에, 나에게 본읍에 노비 10여구가 있으니 법을 무릅쓰고 부임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속히 개체(改遞新)해 주십시오 하였다. 수령이 본읍에 전(田)이 십결(十結)이 있거나 혹은 노비가 10이상인 자는 계문(啓聞)하여 개체하는 일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회덕현감 김리복을 예에 의하여 개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허락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7월 17일 (신축) )

①에서처럼 영조 34년(1758) 7월 13일이었다. 그러나 ②에서처럼 김리복은 회덕현에 노비 10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법전에 개체의 사유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개체 되었다. 즉 김리복은 회덕현감직에 제수만 되었을 뿐 실제 도임하지는 않은 인물이다.

## 122. 민백분(閔百奮)

민백분(閔百奮)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이조의 구전정사(口傳政事), 민백분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以閔百奮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12월 30일 (임오))

②이기경(李基敬), 이조에서 언달(言達)로 말하기를 새로제수한 회덕현감 민백분의 정장(呈狀)에 나에게 본현에 전 10여결 정도가 있으니 법을 무릅쓰고 부임하는것은 옳지 않으니, 예에 의하여 입달(入達)하여 처치해 달라는 것이다. 수령이 본읍에 전(田)이 십결(十結)이 있거나 혹은 노비가 10이상인 자는 계문(啓聞)하여 개체하는 일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회덕 현감 민백분을 예에 의하여 개체하는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허락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월 22일 (갑진))

①에서처럼 영조 34년(1758) 12월 30일 이었다. 그러나 ②에서처럼 민백분이 회덕에 전이 십여결 있었으므로, 이는 법전에 수령이 본읍에 전이 십결이 있거나 노비가 10구이상인 자는 개체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영조 35년(1759) 1월 22일에 개체되었다. 따라서 민백분도 실질적으로 회덕현감에 도임하지 않은 인물이다.

## 123. 윤동철(尹東喆)

윤동철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① (전략)… 윤동철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尹東喆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759) 1월 24일 (병오))

② 정월 26일 오시 임금이 공목합(恭默閣)에 어거하셨다. 추판(秋判)·대신·호판·혜당동이 입시 하였을때, …(중략)… 척기가 말하기를 백성들의 곤궁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구제의 길은 수령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선인 일이 없습니다. 저번에 회덕 현감이 거의 년한이 찬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비국에서 망단자를 내려 보냈는데, 이에 십고(十考) 십상(十上)중에 해아려 삼망(三望)을 들이었는데 민백겸이 수의(首擬)로 수점(首點)되었었으나 본현에 전답이 10결이 있어서 체차되었다. 그 대신 또한 마땅히 십고(十考) 십상(十上)이상 인자를 들이되, 10고 10상중에 무고한자 4인 여를 비의(備擬·官員을 임명할 때 吏曹·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推薦)하던 일)하니 부족할 근심이 없습니다. 거듭된 앞서의 정사에 윤동철이 비록 나이가 63세이나 수의(首擬)로 수점(受點)되었습니다. 또한 전에 회덕현감이 되었을시 전최(殿最)가 거중(居中)이어서, 이조의 계로 인하여 파출 되었는 즉 소잔기폐(蘇殘起弊)로 책하는 것은 불가하다. 심히 특별한 교령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 당해 정관을 무겁게 추고하고 회덕 현감 윤동철을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씀하시길 이것인즉 전관의 잘못이 아니니 그렇게 하라. 그 대신 구전으로 택차하는 것이

가하다。…(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월 26일 (무신))

①에서처럼 영조 35년(1759) 1월 24일이었다. 그러나 ②에서처럼 윤동철은 나이가 63세로 수이로 수점되었으나, 전에 전최(殿最)가 거중(居中)이어서 과출된 적이 있는 등으로 해서, 개차되었다.

즉 윤동철도 회덕현감에 제수만 되었고, 도임하지 않은 인물이다.

## 124. 조재우(趙載遇)

조재우(趙載遇)가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① 비변사천망(備邊司薦望), …(중략)… 이조구전정사(吏曹口傳政事)에 조재우를 회덕 현감으로 삼았다(以趙載遇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월 27일 (기유))

②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조재우(懷德縣監趙載遇)。(□□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2월 19일 (경오))

①에서처럼 영조 35년(1759) 1월 27일이었고, 2월 19일에 영조에게 하직하고 도임하였다.

조재우가 파직된 것은

성주천(成天柱)이 의금부 언달로 말하기를 함경·충청양도감사의 장계로 이르른 것과 형조의 점목(粘目)의 안에 의거하여 전북병사 이주국, 회덕현감 조재우 등은 본부에 옮겨서 처치할일이라고 하였다. 이주국·조재우 등은 지금 본부에서 명령을 기다린즉 붙잡아 가두라는 뜻이 이르렀다. 명령하기를 알았다고 하셨다。(□□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0월 22일 (기해))

라하여 영조 35년(1759) 10월 22일에 어떤 사유에서 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붙잡아 가두라는 것으로 보아 이때 파직된 것이 아닐까 한다.

## 125. 윤득홍(尹得弘)

윤득홍(尹得弘)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윤득홍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尹得弘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1월 29일 (을해))  
라하여 영조 35년(1759) 11월 29일이다.

## 126. 정극순(鄭克淳)

정극순(鄭克淳)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이비(吏批) 구전정사(口傳政)에서, 정극순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以鄭克淳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2월 5일 (신사) )

라하여 영조 35년(1759) 12월 5일이었다. 그런데 정극순이 회덕현감에 제수되고 나서

② 이복원이 이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어제 입시하였을 때 회덕현감을 구전차출하여 당일내로  
사조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새로 제수된 회덕 현감 정극순은 몸에 병이 있다고 이르고 연이어  
사직하는 정장(呈狀)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교지하셨는데 즉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즉 그 사체가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회덕현감 정극순을 해부로 하여금 잡아서 문초하는것이 어떨하겠습니까.  
임금이 허락한다 하였다。(□□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2월 6일 (임오))

에서처럼 12월 6일에 정극순은 몸에 병이 있다고 연달아 사임하는 정장을 내어서, 의금부에  
잡혀서 문초를 받게 되었다. 문초이후 정극순은 회덕현감에 도임하여 근무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극순(鄭克淳)의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과 관련하여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경상 감사 김상철(金尙喆)이 입시하고, 삼사가  
뒤따라 입시할 때에 현납 이흥종(李興宗)이 아뢰기를, “평양 서윤(平壤庶尹) 정극순(鄭克淳)은 조태구  
(趙泰耆)의 사위로서 전임지인 회덕에 있을 때에 그 장인의 묘소에 가서 절하기를 마치 소분(掃墳)

하는 의식처럼 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세변(世變)에 관계됩니다. 또 오랫동안 기름진 고을에 재임하면서 오로지 불법(不法)만을 일삼았으니, 이런 사람은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평양 서윤 정극순을 멀리 찬배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단지 찬배에 그쳐 서는 안되니,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라.”하였다. (□□영조실록□□ 권99 영조 38년(1762) 6월 21일(임자))

에서와 같이 1762년(영조 38)에 6월 21일에 평양서윤 정극순이 조태구의 사위로 회덕에 수령으로 있을시 “장인 묘소에 가서 절하기를 마치 소분하는 의식처럼 하여 거리낌이 없었다”고하여 처벌을 받고 있다. 즉 정극순은 회덕현감직에 제수를 받고 몸에 병이 있다고 기피하다가, 문책을 받고 회덕현감에 도임하여 근무하다가 체직하여 평양서윤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극순이 회덕현감직에서 체직한 시기는 1762년(영조 38)년 6월 21일 이전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정극순(鄭克淳:1709-?)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자는 경인(景仁), 본관은 동래(東萊), 아버지는 행광홍창봉사(行廣興倉奉事)을 지낸 정석부(鄭錫敷)이다. 영조(英祖) 5년 (172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22위로 입격하였고, 입격시 거주지는 경(京)이었다.

## 127. 김명노(金鳴魯)

김명노(金鳴魯)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임금께 친히 도목정사에 임하였다. 이비(吏批), …(중략)…, 김명노를 회덕 현감으로 삼았다(金鳴魯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6월 25일)

라하여 영조 36년(1760) 6월 25일이었다. 그리고 회덕현감직에서 파출된 것은

신사(辛巳) 4월 17일 진시(辰時), 임금께서 경현당에 어거하였다. 대신비국당상으로 입시(입시) 한자를 인견(引見)할시, …(중략)… 흥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중략)… 회덕 현감 김명노는 구환상(舊還上)을 거두는 것이 거말(居末)이었다. …(중략)… 신구환상(新舊還上) 거말(居末)는 결장(決杖)하고, 거이(居二)자는 추고(推考)하고, 사사로인 진곡을 원환(元還)한 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떨하겠습니까. 상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37년(1761) 4월 17일 (병술))

라하여 영조 37년(1761) 4월 17일에 구환상을 거두것이 거말(居末)이어서 결장(決杖)의 처분을 받았다. 아마도 이때에 파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 128. 이득영(李得永)

이득영(李得永)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이득영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李得永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1월 16일 (경술))  
② 하직하다(下直), …(중략)…, 회덕 현감 이득영(懷德縣監李得永),…(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2월 11일 (을해))

①에서처럼 영조 38년(1762) 1월 16일 이었고, ②에서처럼 2월 11일에 영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회덕현감에 도임하였다.

이득영(李得永)의 회덕현감에 재임시 행적은

### 행현감이공득영유애비(行縣監李公得永遺愛碑)

옛날 임오(임오)년 공이 이 고을에 부임한 해에 큰 흉년을 만나 창고를 열어 진휼하여 백성들을 살리니 장차 비를 세워 기록했다. 공이 비를 빼앗아 아문의 정원에 감추었는데 후에 병벽(洴澼: 섬유를 물로 비래서 허게 함)하는 돌이 되었다. 내가 보고 감동하여 공의 실적을 찾아 보니 초백(髫白:젊은이와 노인)이 노래하고 외우고 있었다. 지금 분명하게 크게 탄식하는 자만이 그 어진 정치의 사무치고 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고을의 노인들과 서로 상의하여 공이 감춘 비를 취해 기록해 세워서 후자에게 권한다. 신묘(辛卯) 4월일 현감(縣監) 여동규(呂東奎)가 기록했다. (□□대전금석문□□, 대전시사편찬위원회, 1082-1084쪽)

에서와 같은 현재 대덕구 읍내동(옛 회덕현 치소) 동사무소 앞에 남아있는 “행현감이 공득영유애비(行縣監李公得永遺愛碑)”에서 알 수 있다. 즉 이득영이 회덕현감으로 큰 흉년을 만나 창고를 열어 진휼하여 백성들을 살리니 백성들이 비를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득영이 회덕현감직에 제수받게 된 사유는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새로 사은(謝恩)한 사람을 소견(召見)하였다. 정일상(鄭一祥)을 교리(校理)로 특별히 제수하고 이득영(李得永)을 직위에 합당하게 임용할 것을 명하니, 정일상은 고(故) 중신(重臣) 정형복(鄭亨復)의 아들이요, 이득영은 고 중신 이태중(李台重)의 아들인 까닭이었다. (□□영조실록□□ 123권, 영조 50년(1774) 12월 2일 신사)

라하여 중신 이태중의 아들이어서 회덕현감에 제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29. 유운(柳漸)

유운(柳漸)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정사책 갑신(정조 11:1787) 6월 30일조의 도목 정사에 수망으로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다. 이때 삼망은 수망(首望)에 영주(盈主) 유운(柳漸:蔭,通訓)이었고, 차망에는 빈도(賓都) 윤득림(尹得霖), 말망에는 공정(工正) 이덕보(李德溥)이었다.

## 130. 김상구(金相龜)

김상구(金相龜:~1791)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①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김상구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金相龜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6월 5일 (계묘))
- ② 하직하다, 회덕 현감 김상구(懷德縣監金相龜). (□□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6월 22일 (경신))

①에서처럼 영조 42년(1766) 6월 5일이고, ②에서처럼 6월 22일에 영조에게 하직하고 도임하였다.

김상구가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된 것은

이석재(李碩載) 의금부의 언계로 말하기를, 전의현감 이동빈과 연기겸임회덕현감 김상구를 아울러

잡와 와라, 경기감사 장계에 선혜청의 점목(粘目)에 의거하여 살펴서 처치할 일을 전지로 재가를 받았는데, 이동빈은 본부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곧바로 잡아 가두고, 김상구는 지금 임소에 있으므로 의금부의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라는 어떠하겠습니까. 허락한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8월 3일 (병자))

라하여 영조 46년(1770) 8월 3일에 의금부에 갇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 파직된 것이 아닌가 한다.

김상구(金相龜: ?~1791)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김군서갑(金君瑞甲) 그 휘(諱) 상구(相龜)이다. …(중략)… 영종 계유(1753)에 진사에 입격하였고, 1757년(丁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한 조모상을 승중하였다. 모든 행사를 독실하게 하여 사람들이 참아 볼 수 없었다. 마침 금상(今上)이 동궁으로써 입학 할 때 성균관에서 군을 천거하여 전달자가 되었다. 출생하여 비록 고향에 있는 것을 면하였으나 실상은 유림들의 지극한 가려 뽑은 것이다. 처음에 희령전참봉(徽寧殿參奉)에 제수되었고, 세자세마(世子洗馬)로 옮기었고,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에 옮았으며, 공좌좌랑으로 개차하고, 정랑으로 옮겼다. 나가서는 회덕현감이 되었고, 5년을 지내고 협천군수로 옮기었다. (□□풍양집(豐墅集)□□, 권11(卷之十一), 묘지명(墓誌銘), 김서갑묘지명(金瑞甲墓誌銘))

라하여 그의 묘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131. 박사흡(朴師欽)

박사흡(朴師欽)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경인(庚寅) 12월 29일 □時, 半行腐缺 당상 입시하여 인견할 시, …(중략)… 회덕 현감 박사흡(懷德縣監朴師欽), …(중략)… 임금께서 각기 수령칠사를 물으셨다. …(히략)。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12월 29일 (신축))

라하여 영조 46년(1770) 12월 29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 사료에서 영조가 ‘각기 수령칠사를 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새로 제수되어 하직하는 수령에게 묻는 것이므로, 이때에 박사흡이 영조에게 하직 인사를하고 도임한 것으로 보인다.

## 132. 이서규(李瑞圭)

이서규(李瑞圭)가 회덕현감에 제수 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 …(중략)… 이규서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以李瑞圭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47년(1771) 8월 17일 (을유))。

라하여 영조 47년(1771) 8월 17일이었다.

## 133. 조기현(趙基顯)

조기현(趙基顯)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갑오(甲午) 7월 9일 유시(酉時),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어거하였다. …(중략)…, 회덕 현감 조기현(懷德縣監趙基顯), …(중략)… 장성부사회덕현감 다 명일 사조하도록 명하였다(長城府使·懷德縣監, 皆令明日辭朝)。…(하략)。(□□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44) 7월 9일 (경신))

에서와 같이 영조 50년(1744) 7월 9일이다.

## 134. 윤득휘(尹得徽)

윤득휘(尹得徽)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전략)…, 윤득휘를 회덕 현감으로 삼다。(尹得徽爲懷德縣監), (□□승정원일기□□ 영조 51년(1755) 6월 20일 (병신))

라하여 영조 51년(1755) 6월 20일이었다.

## 135. 이수빈(李壽彬)

이수빈(李壽彬)이 회덕 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하직하다, …(중략)…, 회덕 현감 이수빈(懷德縣監李壽彬),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1776) 5월 11일 (계미[신사]))

라하여 정조 즉위년(1776) 5월 11일에 이수빈이 정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136. 심정진(沈定鎮)

심정진(沈定鎮)이 회덕 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① (전략)… 심정진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沈定鎮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1777) 10월 9일 (신축))

② 하직하다(下直), …(중략)…, 회덕 현감 심정진(懷德縣監沈定鎮)。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1777) 11월 4일 (병인))

①에서처럼 정조 원년(1777) 10월 9일이었고, ②에서처럼 11월 4일에 정조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도임하였다.

심정진의 회덕 현감 제수는

정호인(鄭好仁)을 좌윤(左尹)으로, 정일상(鄭一祥)을 동지돈녕부사로, 박사해(朴師海)를 순흥 부사(順興府使)로, 심지진(沈之鎮)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최치간(崔致侃)을 홍원 현감(洪原縣監)으로 삼았다.(□□국역일성록□□ 정조 1년 정유(1777) 10월 9일(신축))

라하여 □□국역일성록□□에도 등장하나 □□국역일성록□□에는 심정진이 아니고 심지진으로 되어 있으나 제수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초서로 된 성명을 오독한 것으로 보인다.

## 137. 한상묵(韓尙默)

한상묵(韓尙默)이 회덕 현감에 제수된 것은

도목정사가 있었다. …(중략)…, 한상묵을 회덕 현감으로 삼다(韓尙默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 일기□□ 정조 5년(1781) 7월 30일 (경오))

라하여 정조 5년(1781) 7월 30일이었다.

## 138. 박광회(朴光晦)

박광회(朴光晦)가 회덕 현감에 재임한 것은

전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광회(朴光晦)가 인신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홍충도 감사(洪忠道監司) 신대승(申大升)이 그의 죄를 계청(啓請)하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박광회를 대질시키니, 그의 공초(供招)에서 이르기를, “정월 중에 도끼를 가진 군사 수십 명이 성황단(城隍壇)으로 난입하여 생 소나무를 찍어내므로 그들을 잡아오고 보니, 나무를 찍은 사람들은 바로 전 승지 송재경(宋載經)과 송재위(宋載緯)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가에서 죄를 다스리도록 했더니, 공초를 받으려고 간 유리(由吏)를 번갈아 꾸짖기를, ‘나는 바로 너희 도선생(道先生)인데 너희 고을 원이 어찌 감히 나의 종을 잡아간다는 말인가? 나는 그 소나무를 모조리 다 찍어버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이튿날 1백여 명의 도끼를 든 군사들이 온 산판에 널려 마구 소나무를 찍으므로 이를 금지시켰더니, 송재위의 부자와 송재경의 아들 송익정(宋益鼎)은 힘센 종들을 많이 풀어서 심부름 간 아전을 구타하고 소나무를 베도록 독촉하였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형리(刑吏)들을 풀어 송재위를 잡으려고 하니 송재위의 부자는 중당(中堂)에 태연히 앉아 칼을 빼들고 대청을 치면서 으르렁거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송재경은 하례(下隸)를 잡아다가 공갈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송재위를 체포할 것을 독촉하고, 한편으로는 사유를 갖추어 감영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초경(初更)에 현(縣)의 군관(軍官) 방재관(房再琯)이 와서 말하기를, ‘송재위의 아들 송윤정(宋允鼎)이 칼을 빼어 칼날을 휘두르면서 곧바로 관청문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랍고 무서워서 다시 영문(營門)에 보고하였더니, 영문에서는 사관(查官)을 정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사관은 송기(宋哥)를 곡진히 보호하여 사실을 뒤바꾸어서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조사관을 정하여 재차 조사하게 하였더니, 방재관이 취중(醉中)에 잘못

보고했다고 영문(營門)에 보고하고 송가의 종을 가볍게 다스리고 말았습니다. 영문에서 판결한 뒤에 송재경은 그의 아들을 시켜 다시 신소하는 글을 바쳐서 저를 얹어 모함했습니다. 저는 실로 관아에 앉아서 백성을 대할 낮이 없습니다. 여섯 번이나 사직서를 바치고 직접 감영에 가서 인장과 부절(符節)을 바쳤습니다....”하였다. (□□정조실록□□ 권15, 정조 8년 7월 9일(임술))

라하여 1784년 7월 9일 이전에 재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료는 박광희가 회덕현감으로 재직시 회덕의 토성인 송재경과 별목 문제로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홍재전서(弘齋全書)□□ 권47 갑진(甲辰;1784)에는 의금부가 회덕(懷德) 전 현감 박광희(朴光晦)를 의논하여 처리하는 계목에 대한 판부(判付)와 회덕(懷德) 전 현감 박광희(朴光晦)를 조율하는 계목에 대한 판부(判付)가 실려 있기도 하다.

## 139. 이상기(李尙琦)

이상기(李尙琦)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는 알 수 없고, 회덕현감직에서 파직을 당한 시기는

삼남 암행 어사(三南暗行御史) 김이성(金履成)이 복명(復命)하였다. 서계(書啓)를 바쳐 창원 부사(昌原府使) 이동식(李東植)·김해 부사(金海府使) 민영철(閔永喆)·단양 군수(丹陽郡守) 조시순(趙時淳)·광양 현감(光陽縣監) 강침(姜忱)·회덕 현감(懷德縣監) 이상기(李尙琦)의 법을 어긴 정상을 논하였는데, 모두 잡아다 추문하여 감죄(勘罪)하였다. (□□정조실록□□ 권24 정조 11년(1787) 9월 30일(갑오))

라하여 1787년(정조11)에 9월 30일에 삼남 암행 어사(三南暗行御史) 김이성(金履成)의 복명(復命)으로 법을 어긴 회덕현감 이상기 등을 추문하여 감죄하였다. 이상기가 회덕 현감으로 법을 어긴 죄상은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상기(李尙琦)는 향리가 간특하고 교활하여 자연 그들에게 기만당하였으며, (□□국역일성록□□ 정조 11년(1787) 정미 9월 30일(갑오))라는 것이었다. 이상기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일시는 알 수 없으나 파직일은 1787년 9월 30일이다.

## 140. 홍경후(洪景厚)

홍경후(洪景厚)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 2차 정사를 하였다. 홍경후(洪景厚)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정준채(鄭駿采)를 창원 부사(昌原府使)로 삼았다. (□□국역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9월 30일(갑오))

에서와 같이 1787년(정조 11) 9월 30일 이었다.

홍경후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정사책□□ 1787년(정조11) 9월 30일의 도목정사에도 실려 있다. 이때 수망은 복판(僕判) 홍경후(洪景厚·進通訓 蔡弘覆薦)이었고, 차망은 익령(翼令) 심원지(沈原之), 말망은 한서(漢庶) 정재원(丁載遠) 이었는데, 홍경후가 낙점은 받았다.

## 141. 김박연(金博淵)

김박연(金博淵)이 회덕현감을 지낸 것은 송래희(宋來熙)의 문집 □□금곡선생집(錦谷先生集)□□ 권1 ‘시(詩)’에 “김회덕박연(金懷德博淵) 대부인(大夫人) 만(輓) 2수(二首)”가 실려 있어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박연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위 만사(輓詞)를 통해 알 수 있다. 송래희의 □□금곡선생집(錦谷先生集)□□ 권1 ‘시(詩)’에는 시(詩)가 간지(干支) 즉 시기별로 편집되어 실려 있는데, 위 만사(輓詞)를 지은 시기는 신유(辛酉)이다. 그런데 송래희는 동춘당 송준길의 후손으로 자는 자칠(子七) 호는 금곡(錦谷)이고, 생년은 1791년(정조15)이며, 몰년은 1867년(고종4)이다. 송래희는 1838년(현종4)에 경연관(經筵官)으로 출사하여 학행을 인정받아 1853년(철종4)에는 성균관 쇄주(成均館祭酒)를 지냈고, 1857년에는 대사헌 뒤에 벼슬이 찬선(贊善)에 이른 인물이다. 따라서 신유(辛酉)은 송래희의 생몰년으로 볼 때 1801년(순조1)이다. 그렇다면 김박연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801년(순조1) 이전의 시기이다.

## 142. 강세정(姜世靖)

강세정(姜世靖)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파직된 시기는

관학 유생 이근원(李近源) 등 7백 27인이 연명하여 상소하였는데, …(중략)… 그리고 충청도 회덕(懷德) 한 고을은 또한 우리 나라의 곡부(曲阜)·신안(新安) 같은 곳이므로, 향교(鄉校)에서 석전(釋奠)의 축문에 특별히 승정 연호를 쓴 것은 그 유래가 대개 오래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 지현(知縣) 강세정(姜世靖)은 또한 유독 무슨 마음으로 금년 추향(秋享)에 자신이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축문을 읽을 때에 승정 두 글자를 듣고 대축을 위협하여 제지하고, 그로 하여금 고쳐 읽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모두 평일에 품고 있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서, 의리를 원수로 여겨 반드시 오랑캐의 연호를 위하여 기치를 세우고자 하여 춘추(春秋)의 의리에 대해 난적(亂賊)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긴 것입니다. 화양서원(華陽書院)의 유생들이 회덕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강세정의 죄를 성토하고 고쳐 읽은 대축을 게시하여 벌을 주니, 강세정은 그 죄를 승복(承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도리어 대단한 기세로 장황한 말을 늘어 놓으며 감히 끌어댈 수 없는 자리를 감히 끌어대며 일세(一世)의 공의(公議)와 겨루어, 당시의 사대부들이 고첩(고誥牒)을 받은 것과 사신으로 갔던 것에 대해 두루 욕하였습니다. (□□순조실록□□ 5권 3년 12월 11일 (임신))

라 하여 1803년(순조 3) 12월 11일이다. 즉 “회덕향교(懷德鄉校)에서 석전(釋奠)의 축문에 특별히 승정 연호를 쓴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는데, 회덕현감 강세정(姜世靖)이 추향(秋享)에 초헌관(初獻官)으로 참여하였을 때에 대축이 축문을 읽을 때에 승정 두 글자를 듣고 대축을 위협하여 제지하고, 그로 하여금 고쳐 읽게 하고야 말았습니다.”라하여 강세정을 기장현에 내치도록 하였다.

강세정(姜世靖; 1743)은 사마방목에 의하면 자는 명초(命初), 본관은 진주(晉州), 아버지는 강필득(姜必得)이었다. 정조(正祖) 7년 (1783) 계묘(癸卯)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2등(二等) 6위에 입격하였고, 진사시 거주지는 서천(舒川)이었다.

## 143. 임중백(任重白)

임중백(任重白)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정사책□□ 무진 정월 27일(순조 8, 1808)조에 기록되어 있다. 수망은 시령(市令) 임중백(任重白: 蔭, 通訓 吳鼎源薦)이었고, 차망은 낙주

(樂主) 김경열(金敬烈), 말망은 한주(漢主) 엄재(嚴載) 이었는데, 수망인 임중백이 낙점을 받았다.

## 144. ° | 보한(李普漢)

이보한(李普漢)이 회덕현감에서 제수된 시기는 알 수 없고, 파직일은

장령 조직영(趙直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중략)… 하였으며, 이어서 홍양 현감(洪陽縣監) 신광식(申光軾)이 탐욕하여 마구 긁어들이는 일과,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보한(李普漢)이 유현(儒賢)을 모욕한 일을 논하고 모두 파직하여 내쫓을 것을 청하였는데, 비답을 내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순조실록□□ 권18 순조 15년 2월 11일(정묘)).

라하여 회덕현감 이보한이 1815년(순조 15) 2월 11일(정묘)에 유현을 모욕하였다하여 사헌부 장령 조직영(趙直永)의 탄핵을 받고 묘당에 품처된 것으로 보아 이 때에 파직된 것으로 보인다.

## 145. 유준(柳埜)

유준(柳埜)이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시기는

공충우도 암행 어사 이언순(李彦淳)이 서계를 올려, 공주 판관(公州判官) 이덕빈(李德彬), …(중략)… 회덕 전 현감(懷德前縣監) 송유재(宋儒載),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재범(金在範),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준(柳埜), 전 수사(水使) 신순(申純) 등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또 연산 현감(連山縣監) 남준응(南駿應), 은진 현감(恩津縣監) 이숙재(李肅在)의 치적을 논하니, 모두 승서(陞敍)의 은전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별단에 전결(田結)을 정리하고 두곡(斗斛)을 바로잡고 군향(軍餉)을 엄하게 하고 송금(松禁)을 신칙하고 청사를 수리할 것과 안흥(安興)에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할 것과 쌍수 산성(雙樹山城)에 우물을 팔 것 등을 개진하였는데,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 8월 24일(을축))

에서와 같이 유준이 1822년(순조 22) 8월 24일 이었다. 그리고 위 기사에 “회덕 전 현감(懷德前縣監) 송유재(宋儒載)”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준이 송유재의 후임으로 회덕현감에 부임한 것만 확인 할 수 있다.

## 146. 송유재(宋儒載)

송유재(宋儒載)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사책□□ 정축 9월 15일(순조17,1817)조의 도목정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수망은 금도(禁都) 송흡대(宋欽大)이었고, 차망은 익능령(翼陵令) 송유재(宋儒載: 蔭,通訓,李相璜等薦)이었으며, 말망은 현륭령(顯隆令) 박긍원(朴肯源)이었는데, 송재유가 차망이었으나 낙점되었다.

그리고 송유재가 회덕현감직에서 체직된 것은

공충우도 임행 어사 이언순(李彦淳)이 서계를 올려, 공주 판관(公州判官) 이덕빈(李德彬), …(중략)… 회덕 전 현감(懷德前縣監) 송유재(宋儒載),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재범(金在範),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준(柳燉), 전 수사(水使) 신순(申純) 등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또 연산 현감(連山縣監) 남준응(南駿應), 은진 현감(恩津縣監) 이숙재(李肅在)의 치적을 논하니, 모두 승서(陞敍)의 은전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별단에 전결(田結)을 정리하고 두곡(斗斛)을 바로잡고 군향(軍餉)을 엄하게 하고 송금(松禁)을 신칙하고 청사를 수리할 것과 안흥(安興)에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할 것과 쌍수 산성(雙樹山城)에 우물을 팔 것 등을 개진하였는데,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1822) 8월 24일(을축))

라하여 순조 22년(1822)년 8월 24일에 회덕 전 현감(懷德前縣監) 송유재(宋儒載)가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로 처벌을 받고 있다. 즉 송유재의 후임이었던 유준이 순조22년(1822) 8월 24일에 회덕현감에 재임하고 있던 사실로 미루어, 이 시기 이전에 이임하였던 사실만 확인 할 수 있다.

## 147. 전윤담(全允淡)

전윤담(全允淡)이 회덕현감을 지낸 것은

“현감전후운담애민선정비(縣監全侯允淡愛民善政碑)” (□□대전금석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091쪽)

라는 애민선정비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윤담은 1822년(순조22)에 식년시 갑과 3위에 급제한 인물이다. 생년은 1788년(정조12), 본관 전주, 부친은 전익방(全翼邦)이고, 거주지는 평양이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전윤담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822년(순조22)년 전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148. 홍리섭(洪履燮)

홍리섭(洪履燮)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사책□□ 계미 12월22(순조23,1823)조의 도목 정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수망은 의도(儀都) 홍리섭(洪履燮:進朝奉 李紀淵薦)이었고, 차망은 용판(用判) 이현삼(李憲三)이며, 말망은 한주(漢主) 이경회(李敬會)이었는데, 홍리섭이 수망으로 낙점되었다.

## 149. 조운구(趙雲龜)

조운구(趙雲龜)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사책□□ 무자 6월 24일(순조28,1828)조의 도목 정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수망은 묘령(廟令) 조운구(趙雲龜:進士 通訓 任星鎮薦)이었고, 차망은 건령(健令) 서유호(徐有皓)이며, 말망은 군주(軍主) 이정복(李正履)이었는데, 조운구가 수망으로 낙점되었다.

조운구가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된 것은

공청도 암행 어사(公清道暗行御史) 홍원모(洪遠謨)가 서계(書啓)하여, …(중략)… 회덕 현감(懷德縣監) 조운구(趙雲龜), 덕산 현감(德山縣監) 정세교(鄭世敎) 등의 불법(不法)의 죄(罪)를 논하고, …(하략)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1월 30일 (경신))

라하여 1829년(순조 29) 11월 30일이다. 즉 공청도 암행어사 이었던 홍원모가 조운구의 불법의 죄를 서계로 순조에게 알리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조운구가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된 것이 아닐까 한다.

조운구(趙雲龜)는 사마방에 의하면 자는 몽수(夢叟), 본관은 풍양(豐壤), 아버지는 해주진 관병마동첨절제사(海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를 지낸 조용진(趙用鎮)이다. 순조(純祖) 4년 (180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19위로 입격하였다.

## 150. 여동규(呂東奎)

여동규(呂東奎)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 행현감이공득영유애비(行縣監李公得永遺愛碑)

옛날 임오(壬午)년 공이 이 고을에 부임한 해에 큰 흉년을 만나 창고를 열어 진휼하여 백성들을 살리니 장차 비를 세워 기록했다. 공이 빼앗아 아문의 정원에 감추었는데 후에 병벽(洴澼섬유를 물로 바래서 희게 함)하는 돌이 되었다. 내가 보고 감동하여 공의 실적을 찾아 보니 초백(髫白: 젊은이와 노인)이 노래하고 외우고 있었다. 지금 분명하게 크게 탄식하는 자만이 그 어진 정치의 사무치고 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고을의 노인들과 서로 상의하여 공이 감춘 비를 촉해 기록해 세워서 후자에게 권한다. 신묘(辛卯:1831) 4월일 현감(縣監) 여동규(呂東奎)가 기록했다. (□□대전 금석문□□, 대전시사편찬위원회, 1082-1084쪽)

라하여 회덕현감을 지낸 이득영의 “행현감이공득영유애비(行縣監李公得永遺愛碑)”을 현임 회덕현감이었던 여동규(呂東奎)가 찬한 것이다. 그런데 여동규가 찬하여 비를 세운 시기가 신묘(辛卯) 4월이다. 여기서 신묘는 사마방목에 나오는 여동규의 생년을 통해 살펴 보면 1831년(순조31)이다. 즉 여동규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831년(순조31) 전후이고, 체직일은 알 수 없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여동규의 자는 약계(若啓), 본관은 함양(咸陽), 아버지는 여구영(呂龜永)이다. 순조(純祖) 10년 (1810)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53위로 입격하였다.

## 151. 윤희대(尹希大)

윤희대(尹希大)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송래희(宋來熙)의 문집 □□금곡선생집(錦谷先生集)□□ 권1 ‘시(詩)’에 “근차윤희덕희대운(謹次尹懷德希大韻)”가 실려 있어 알 수 있다.

그런데 윤희대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위 시(詩)를 통해 알 수 있다. 송래희가 지은 □□금곡선생집(錦谷先生集)□□ 권1 ‘시(詩)’는 시(詩)시를 지은 간지(干支) 즉 시기별로 편집되어 있는데, 위 시(詩)를 지은 시기는 계사(癸巳)이다. 그런데 송래희는 동춘당 송준길의 후손으로 자는 자칠(子七) 호는 금곡(錦谷)이고, 생년은 1791년(정조15)이며, 몰년은 1867년(고종4)이다. 송래희는 1838년(현종4)에 경연관(經筵官)으로 출사하여 학행을 인정받아 1853년(철종4)에는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를 지냈고, 1857년에는 대사헌 뒤에 벼슬이 찬선(贊善)에 이른 인물이다.

따라서 계사(癸巳)는 송래희의 생몰년으로 볼 때 1833년(순조33)이다. 그렇다면 윤희대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833년(순조33)경으로 보인다.

윤희대(尹希大)는 사마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성재(聖哉), 아버지는 행사복시 첨정(行司僕寺僉正)을 지낸 윤수정(尹守正)이었고, 한성에 거주하였다. 순조(純祖) 27년 (1827) 정해(丁亥)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2등(二等) 17위로 입격하였다.

## 152. 김고근(金敲根)

김고근(金敲根)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사책(政事冊)□□ 을미(乙未:현종원년, 1835) 12월 22일의 도목정사에서 회덕현감 윤희대(尹希大)의 천전(薦轉)으로, 김고근(金敲根)이 박윤영(朴潤榮)의 천거로 수망에 올랐다가 낙점되었고, 차망은 막령(慕令) 최황(崔璜)이었고, 말망은 건원령(健元令) 한용정(韓容鼎)이었다. 따라서 김고근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1835년 12월 22일이다.

## 153. 서원보(徐元輔)

서원보(徐元輔)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 진시(辰時). 상이 자경전에 나아갔다. 진강할 때에 입시하였다. …(중략)… 상이 이르기를,

“전 해백(海伯)은 앞으로 나오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편안히 갔다가 올라왔는가?” 하니, 서원보가 아뢰기를, “성상의 은혜로 편안히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신이 하찮은 읍관(蔭官)으로서 평소 학식과 재주가 없어 성상의 명을 잘 받들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드문 은혜를 전후로 받았으므로 송구스러워 앙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중략)…상이 이르기를, “참찬관은 누차 지방 수령을 거쳤는데 몇 곳이나 되는가?” 하니, 서원보가 아뢰기를, “회덕(懷德), 천안(天安), 무안(務安), 서흥(瑞興) 등 네 곳인데, 서흥에 있을 때에 특별한 은총으로 해백(海伯)에 제수되었습니다.” 하였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계유(1873, ) 5월 17일(갑오) 맑음)

라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제수일과 체직일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사마방목에 의하면 서원보는 1837년 식년시(式年試)에 진사(進士) 3등(三等)으로 입격하였다. 따라서 서원보가 회덕현감에 재임한 시기는 1837년(현종3) 이후 1873년(고종10) 사이 었던 것만은 알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서원보(徐元輔)의 자는 윤선(允善), 본관은 대구(大丘), 부는 서유순(徐有珣)이고, 생년은 1807년(丁卯)이고,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현종(憲宗) 3년 (183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48위로 입격하였다.

## 154. 홍신모(洪莘謨)

홍신모(洪莘謨)가 회덕현감을 지낸 것은 □□정사책□□의 갑인 5월 15일(철종5, 1854)의 도록 정사에 기록되어 있다. 즉 회덕현감에 수망으로 광주(廣主) 유영근(柳泳根: 進 通訓, 黃浩民薦)이 낙점되었다. 그런데 유영근은 “홍신모천전대(洪莘謨遷轉代)”라하여 홍신모의 천전으로 그 후임으로 회덕현감에 낙점되었다. 따라서 홍신모는 유영근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되었던, 철종 5년 (1854)년 5월 15일까지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 155. 유승근(柳承根)

유승근(柳承根)에 재임한 사실은 대전광역시 읍내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불망비(不忘碑)를 통해 알 수 있다. 불망비의 전면대자에는 “현감유후승근영세불망비(縣監柳侯承根永世不忘碑)”라되어 있다. 체직일은 불망비에 “무오(戊午)”라는 기년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승근은

현종·철종대의 인물이므로 무오는 철종 9년(1858)이다. 유승근이 회덕현감에서 체직일은 1858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유승근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일시와 체직일시는 아래의 □□승정원일기□□에서도 확인된다.

### ○ 오시(午時).

상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이갔다. …(중략)… 유승근이 아뢰기를, “광흥창수 신 유승근입니다. 이력은, 을미 8월 생원시에 급제하였고, 무신 3월 정사에서 공릉 참봉(恭陵參奉)으로 제수되었고, 기유 12월 도목 정사에서 서빙고 별검으로 옮겨 제수되었고, 경술 2월 정사에서 의금부 도사로 옮겨 제수되었고, 경술 6월 도목 정사에서 광흥창 봉사로 옮겨 제수되었고, 신해 6월 도목 정사에서 광흥창 직장으로 승진 제수되었고, 임자 12월 도목 정사에서 광흥창 주부로 승진 제수되었고, 갑인 5월 정사에서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옮겨 제수되었고, …(중략)… 임신 3월 정사에서 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담당은 백관들에게 녹봉을 나누어 주는 일인데, 1년에 올라오는 것은 쌀이 2만 석, 콩이 1만 석이며, 매달 초하루에 지출하는 것은 쌀이 1700석, 콩이 900석이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쌀이 7472석 3두 5합(合) 6작(勺)이고 콩이 1만 492석 9두 9합입니다. 소회는 없습니다.” 하였다. …(중략)… 김규홍이 아뢰기를, “윤대관들의 아름이 끝났으니, 먼저 물러가도록 합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어 사관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또 물러 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갑술(1874) 3월 11일 (계축) 맑음)

에서와 같이 유승근이 1835년(을미)에 생원시에 급제하였고, 이어 공릉 참봉(恭陵參奉)·서빙고·별검·의금부·도사·광흥창·봉사·광흥창·직장·광흥창·주부 등을 거쳐, 1854년(갑인·철종5) 5월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고, 1858년(무오) 5월에 흠흑현령으로 옮겨 제수되었다. 따라서 유승근은 1854년(철종9) 5월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어 1858년(무오·철종9) 5월경에 체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승근이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구체적인 일시는 □□정사책□□ 무오(철종9, 1858) 6월 14일의 도목정사에서 (철종9, 1858) 승능령(崇陵令) 서원보(徐元輔: 進 通訓, 李參鉉薦)가 수망으로 회덕현감에 낙점되었다. 그런데 서원보는 “유승근천전대(柳承根遷轉代)”라하여 유승근의 천전으로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승근은 철종 9년(1858) 6월 13일까지 회덕현감에 재임하다 천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후 유승근은 회덕현감직 외에도 맹산현감(孟山縣監), 수원부판관, 화성판관(華城判官), 수원 판관(水源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내직으로는, 사도시 첨정, 광흥창 수(廣興倉守), 장악원 첨정, 호조 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유승근(柳承根‘1813-?)의 자는 치간(致幹), 본관은 전주(全州), 아버지는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를 지낸 유화(柳誥)이고, 합격년령은 23세, 거주지는 경(京)이다. 헌종(憲宗) 1년 (1835) 을미(乙未)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47위에 입격하였다.

## 156. 김낙균(金樂均)

김낙균(金樂均)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① 말미를 받아 서울에 올라온 수령 예산 현감 서상옥 등이 내려간다는 이조의 계. ○ 이순익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정부의 초기(草記)에 따라, 경과(慶科)의 초시(初試)가 이미 지나갔고 가을일이 한창이니 입격(入格)한 사람 이외에 말미를 받아 서울에 올라왔거나 아직 하직하지 않은 수령을 모두 재촉하여 내려 보낼 것을 윤허하셨습니다. 신의 조(曹)에서 재촉하였더니, 말미를 받아 서울에 올라온 수령 …(중략)…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형집(金亨集)과 창평 현령(昌平縣令) 박제형(朴齊珩)과 영동 현감(永同縣監) 오건영(吳健泳)과 회덕 현감(懷德縣監) 김낙균(金樂均)과 청산 현감(青山縣監) 남정두(南定斗)와 태인 현감(泰仁縣監) 김연근(金延根)은 모두 오는 9월 2일에 내려간다 합니다. (□□승정원일기□□ 고종 1년 갑자(1864) 8월 28일(병신) 막음)

② 미시(未時). 상이 흥복현(興福軒)에 나아갔다. …(중략)… 김낙균(金樂均)이 앞으로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이력은, …(중략)… 경신년(1860) 12월의 도목 정사에서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제수되었고, …(중략)… 기묘년 6월의 정사에서 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맡고 있는 직무는 없고, 현재 남아 있는 물품은 없으며, 소회도 없습니다.”하고, 이어 물러나서 엎드려 있었다. (□□승정원일기□□, 고종 17년 경진(1880), 12월 28일(신유) 막음)

라하여 김낙균(金樂均)은 ②에서처럼 1860년 12월에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제수 되었고, ①에서처럼 회덕현감 김낙균 등이 말미를 받아 서울에 올라왔다가 1864년(고종 1년) 9월 2일에 내려간다고 하였으므로 이 시기 까지 회덕현감에 재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김낙균이 회덕현감 재임은 1860년(철종11) 12월에서 1864년이 9월 2일 이후까지이다. 김낙균은 회덕현감 재임시 치적은 회덕향교의 기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 김후낙군 사적

나라에는 태학(太學)이 있어서 풍속을 돋독히하고 인재를 교육하는 근원이 된다. 옛일을 살피면

하(夏)나라에는 상(庠), 은나라에는 서(序), 주나라에는 학(學)이 있었고 우리 동방의 학교의 설치에 미쳐서는 주(州)와 군(郡)에 두루 퍼져있어서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 삼대(三代)의 융성함을 밝게 뛰어나고 도를 전한 여러 현인(賢人)들이 차례로 배향되니 아! 성하도다! 열성조(列聖朝)가 문학과 덕을 숭상하고 사물의 벼리가 되는 것을 세우고 불들어 거의 남은 쌓임이 없었다. 무릇 학궁이 폐지되고 교법(敎法)을 닦지 않고부터 그 선성(先聖)을 존모해 받드는데 다만 일년에 두 번 제사(봄 가을 釋奠)와 달에 두번 분향(朔望 焚香)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회덕현에 이르러서는 명현(名賢)을 배출하고 오로지 유업(儒業)을 숭상해서 평소 추로(鄒魯)같은 곳이라고 칭송 하였는데 불행히 남긴 은택이 침체되고 경을 읽는 소리(絃誦)가 오래도록 폐지되니 제사를 받드는 자(縫夜)가 어찌 느껴 탄식함이 없겠는가! 관청이 본래 여유롭지 못하고(冷薄) 백성도 또한 가난하니(簡樸) 춘추대향( 석전제)에 제반 의절(의절)이 오히려 예를 갖출 수 없고 또한 여러 선비의 제사를 지내는데 본디 제상차림에 법도를 갖춤이 없고, 시속군정(柴束軍丁)은 또한 가난한 집(窮蔀殘戶)에 의지해서 거행하게 하니 이미 예에 어긋나기 지금까지 거의 얼마의 세월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김(金) 현감 낙균(樂均)이 부임한지 3년에 병통을 다스려서 제거하고 일을 종합하여 자세히 밝힘이 많았는데 규약(規約)이 어긋나고(駁駁) 부끄러운 부분이 있음(汶汶)을 듣고는 개탄하고 탄식해 말하되, “이곳은 한갓 백성들을 번거롭게 할 것이 아니니 대개 당당하고 맑고 엄숙한 곳이다. 늘 석채(釋菜)를 당해서 도리어 백성에게 폐를 끼치니 바른 선비가 추구해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향해 이끄는 뜻은 아닐 것이다.”하고는 특히 녹봉으로 주는 봉름(俸廩) 1결(結)을 내어 재중(齋中)에 구획해 부쳐서 제사를 받드는 비용으로 삼게하고 민간에 배분된 일체를 혁파하고 간소하게 마련해서 대략 절목(節目)을 이루니 오래도록 준수하게 하니 어찌 특히 성현을 받드는 정성이며 백성을 기르는 정사가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이에 따라서 교궁(校宮)에 가서 청정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모양이 갖추어지게 되니 회덕의 사민(士民)이 진실로 현감(明府)의 아름다운 은혜를 잊을 수 없어하고 그 정식(定式)을 지켜서 반드시 후세에 전하는 도로 하고자 하였다. 이에 장양에서 비를 세우고 연주(連州)에서 현판을 걸은 사실을 본받아서 내게 기문을 정하였다. 내 비록 보잘 것 없으나(鹵莽) 마침 재말(齋末)의 소임을 맡고 있어 감히 학식이 없다고 한사코 사양할 수가 없어 드디어 전말을 차례로 기록한다. 교약(校約)의 고침(鑄革)의 연유는 다 김후(金侯)의 베푼 은혜의 자취에 나타나기에 판에 새기고 벽에 걸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보여서 우러르고 공경하게 한다.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재임(齋任) 송혁로(宋赫老)이고 장시한 사람은 한 읍의 백성이다. 때는 계해(癸亥:1863) 3월 재생혼(哉生魄)이다.

## 157. 송재성(宋在誠)

송재성(宋在誠)이 회덕현감직에 재임한 시기는

또 계목에, “전 회덕(懷德) 현감 송재성(宋在誠)이 원정(原情)에 운운하였습니다. 전지 내의 죄상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遲晚)이라 하였으나, 나이가 70세라 법으로 볼 때 형추를 청해서는 안 됩니다. 의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4년 정묘(1867) 5월 9일(신유) 막음)

라하여 고종 4년 정묘(1867) 5월 9일이었다. 송재성이 회덕현감에서 체직한 시기는 □□정사책□□ 을축(고종2,1865) 12월 22일의 도목정사에서 “용판(用判) 홍만섭(洪萬燮)”라하여 홍만섭이 수망으로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는데, 홍만섭은 “송재성 거하 대(宋在誠居下代)”라하여 을축(고종2,1865) 12월 22일에 송재성이 포폄에서 거하(居下)를 받아 파직되고, 홍만섭이 회덕현감으로 제수 된 것이다. 따라서 송재성이 회덕현감직에서 파직된 것은 을축(고종2,1865) 12월 22일이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송재성(宋在誠)의 자는 성지(成之), 본관 진천(鎮川), 아버지는 행청풍도호부사(行清風都護府使)을 지낸 송문희(宋文晦)이다. 송재성의 생년은 1798년(무오)이고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순조(純祖) 19년 (181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23위로 입격하였다.

## 158. 이교선(李敎善)

이교선(李敎善)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사책□□의 을축(고종2,1865) 12월 22일일의 도목정사에 전임 송재성이 포폄에서 거하를 받아(宋在誠居下代) 파직되고, 수망에 용판(用判) 홍만섭(洪萬燮), 차망에 휘능령(徽陵令) 이교선(李敎善:通訓,李守曾薦), 말망에 명능령(明陵令) 윤영선(尹永善) 등 올랐다. 이 가운데 차망이었던 이교선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되었다. 즉 이교선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고종2년(1865) 12월 22일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종실록□□에

- ① ○ 도목 정사를 하였다. 이비(吏批)에, 행 판서 이의익(李宜翼), 참판 정건조(鄭健朝)가 나왔고, 참의 이재면(李載冕)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다. …(중략)… 이교선(李敎善)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하략)… □□고종실록□□ 고종 2년 을축(1865), 12월 22일(계축) 막음,
- ② ○ 이조 계목(吏曹啓目)에,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이 공충좌우도 암행어사 홍철주의

서계를 보건대, 전 서천 군수 유방주(兪邦柱)에 대해서는 서계에서 이미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고 청하였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고, …(중략)…,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교선(李敎善)은 서리의 포흡을 받아내지 못하고서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였고 기경(起耕)을 조사한 것이 균등하지 못하여 멋대로 상정(詳定)의 가격을 내었다. 잘 다스려지지 못하던 곳을 이어받은 것인데도 백성들이 도리어 예전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고을의 수령은 모두 파출(罷黜)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정원일기□□ 고종 4년 정묘(1867), 4월 24일(정미) 맑음).

라하여 이교선의 회덕현감 제수일은 1865년(고종 2) 12월 22일이었고, 파직은 이교선이 서리의 포흡을 받아내지 못하였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거두어 들였다는 등의 이유로 1867년(고종 4) 4월 24일에 파직되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이교선의 자는 관오(寬五), 본관은 우계(羽溪), 부는 이재승(李在升)이고, 생년은 1844(甲辰)이었다. 고종(高宗) 11년 (1874) 갑술(甲戌)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1등(一等) 4위로 입격하였다.

## 159. 홍재정(洪在鼎)

홍재정(洪在鼎)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정사책□□에 정묘(고종4,1867) 4월 24일 도목정사에 이교선이 파출되어(李敎善罷黜代), 수망에 경모령(景慕令) 홍재정(洪在鼎: 進士,通訓), 차망에 익능령(翼陵令) 이상선(李象準), 말망에 용판(用判) 홍우룡(洪佑龍)이 올랐다.

이 가운데 수망이었던 홍재정이 회덕현감으로 제수 되었다.

이는 □□승정원일기□□에도 홍재정이

홍재정(洪在鼎)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4년, 정묘(1867), 4월 24일(정미) 맑음)

라하여 1867년(고종 4) 4월 24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다. 홍재정(洪在鼎)이 회덕현감에 재임시 작성된 「교궁기문(校宮記文)」에도

「교궁기문(校宮記文)」

(전략)… 현감 홍재정(洪在鼎)이 현감이 된지 4년의 교화가 크게 일어나고 정사에 폐단을 없애니 문옹이 촉(文翁之蜀) 중국 漢나라 舒 사람인 文翁이 蜀郡을 맡아서 교화하고 학교를 일으켜 文風을 진작해 武帝때 郡國에다 학교를 세우게 했다는 것을 말함)이라 이를 만 하다. …(중략)… 경오(庚午:1870) 정월 일 장의(掌議) 송헌조(宋憲條)는 삼가 기록하노라. ( 양승률, □□대덕의 제영기□□, 「교궁기문」, 40-41쪽)

라하여 1870년 1월에도 회덕현감에 재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홍재정(洪在鼎)의 자는 공실(公實), 본관 남양(南陽), 부는 홍우섭(洪友燮)이었다. 홍재정의 생년은 1820년(庚辰)이고, 서울에 거주하였다. 현종(憲宗) 14년(1848) 무신(戊申)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54위에 입격하였다.

## 160. 이인익(李寅翼)

이인익(李寅翼)이 회덕현감에 재임하다 파직된 사실은

① 2차 정사를 하였다. 오인영 · 이조신(李肇信)을 정언으로, 유용함(柳龍鑑)을 병조 정랑으로, 도석훈(都錫勳)을 감찰로, 이인익(李寅翼)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전한에 이승우를 단부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8년 신미(1871), 1월 13일(계묘) 맑음)

② 이조 계목에,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충청우도 암행어사 박용대의 서계를 보니, 전 연산 현감(連山縣監) 서규순(徐圭淳)은 어사의 서계에 이미 유사를 시켜 품처하기를 청하였다 하니, 다시 논할 것이 없겠습니다. …(중략)… ‘전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인익(李寅翼)은 성질이 부드럽고 착하기만 하여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술 취한 사람 같으며, 방임(房任)의 태거(汰去)와 임임(仍任)은 오직 뇌물을 보아서 하고 송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청탁을 기다려서 판결합니다. 차임하는 값으로는 임상옥(任相沃)에게서 100냥, 임상현(任相賢)에게서 300냥, 박내풍(朴來豐)에게서 200냥, 박내춘(朴來春)에게서 70냥, 임정로(任貞魯)에게서 50냥, 임상림(任相林)에게서 50냥, 임시택(林時澤)에게서 100냥을 받은 것과, 송사의 뇌물로는 평촌(平村) 박치만(朴致萬)에게서 불효(不孝)하다는 죄를 꾸며 뇌물로 받은 돈 200냥과 송탄(松炭) 송중심(宋仲心)에게서 음행(淫行)하였다는 죄를 꾸며 뇌물로 받은 돈 300냥을 합한 돈이 1,370냥인데, 책객(冊客)이 폐단을 지은 것일지라도 실은 주관(主官)이 살피지 않은 것이니, 폄파(貶罷)하였다 하여 버려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갑술(1874) 11월 6일(을사) 맑음)

①에서처럼 1871년(고종8) 1월 13일에 제수되었다가, ②에서처럼 1874년(고종11) 6일 이전에 파직되었다. 이인익의 파직사유는 “이인익(李寅翼)은 성질이 부드럽고 착하기만 하여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술취한 사람 같으며, 방임(房任)의 태거(汰去)와 임임(仍任)은 오직 뇌물을 보아서 하고 송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청탁을 기다려서 판결합니다.”라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회덕현감 이인익에 대해서는 회덕향교에 많은 기문이 걸려 있다. 즉 「교궁중수관문」(校宮重修關文)(1871년 5월 10일), 「대성전중수기」(大成殿重修記)((1872년 7월)), 「명륜당 중수기」(明倫堂重修記)(1872년 8월), 「교궁중수관문(校宮重修關文)·「대성전중수기」(大成殿重修記)·「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회덕현학명륜당중수기」(양승률, □□대덕의 제영기□□, 42-49쪽) 등이다.

위 □□승정원일기□□ 기사와 회덕향교의 기문 등을 통해 이인익이 1871년 5월에서 1874년 11월 까지는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 161. 김현순(金獻淳)

김현순(金獻淳)이 회덕현감에 재임했던 사실은 대덕구 읍내동(옛 회덕현 치소) 동사무소 앞에 있는 불망비를 통해 알 수 있다. 불망비의 전면대자에는 “현감김후현순영세 불망비(縣監金侯獻淳永世不忘碑)”라 되어 있어 알 수 있다.

김현순이 회덕현감 재임시기와 관련해서는 회덕향교의 제영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 ○ 회덕향교 명륜당 중수기(懷德縣學明倫堂重修記)

우리 고장의 유생 이양래(李陽來) · 정기중(鄭器中) 등 70여인이 편지와 예물을 갖추어 래희(來熙)에게 알리기를, “우리 현의 향교가 오래되어 기울어져서 성좌(聖座:성현을 모신 곳)가 물에 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감 김후(金侯膺簡)가 부임해 일을 보는데 개탄 탄식하고 먼저 건물을 수리하고 기와 벗겨진 곳을 보충하고 기둥과 서까래가 기울고 썩은 것은 바꾸고 했습니다. 다음 해 임인년(1842)에 이르러 또 명륜당(明倫堂)을 고치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고 보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헤아리니 때도 아니고 일도 컸습니다. 현의 전 목사(牧使) 송계수(宋啓洙)가 조치할 방도가 있어 현감에게 고하고 현감이 따랐습니다. …(중략)…김후(金侯)의 이름은 현순(獻淳)이고 안동인(安東人)이다. 숭정기원후 198년 임인(壬寅, 1842, 현종 8) 9월 은진 송래희(宋來熙)는 삼가 기록하노라. (양승률, □□大德의 題詠記□□, 대덕구대덕문화원, 2006, 26-29쪽)

라하여 1842년(현종8)의 회덕향교 명륜당 중수시 현감이 안동인 김현순(金獻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회덕향교 포미감 복고기

옛날 주부자(朱夫子)께서 남강(南康)에서 벼슬살이 할 때, 흥화(興化)하고 폐단을 보수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으니 남강의 사민(士民)들이 다 칭송했었다. 이제 현감 김현순(金獻淳)이 이 고을에 부임한 지 5년에 또한 학문을 일으키고 폐해를 고치는 것을 다스리는 일의 근본으로 삼았고 추로향(鄒魯鄉)의 예속(禮俗)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개탄하고 비록 아주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도 반드시 대향(大享)에 참석하였고 몸소 학교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상전(常典)이 날로 무너지는 것을 익히 듣고 정성스런 힘을 다하여 먼저 전우(殿宇)를 보수하고 크게 방도를 계획하여 당재(堂齋)를 고치고 전(殿)의 자리와 떨어진 광주리(弊筐)에 이르기까지 수선하여서 훤히 다 새롭게 하니 원근에서 우러르고 공경하는 노랫소리가 다시 일어났다. …(중략)… 이에 조목(條目)을 본 향교에 귀속시키고 영구히 대대로 따라야 할 법규로 삼으니 사방 사민(士民)이 해를 두고 쌓인 한탄의 나머지 서로 붙들고 기뻐하며 크게 하나같이 이르기를 ‘성하도다! 우리 후(현감)가 어찌 늦게 왔는가’ 하였다. 마을에 글 읽는 소리 이어지고 학교 유제(遺制)가 이에 다시 보게되니 영원히 상고해 따를 도를 보여주는데 기록이 없을 수 없다. 내가 학문이 없어 망령되게 한 말씀 엮어 그 사실을 싣고 몇 행의 절목을 다 문미 끝에 걸어서 백대 사림이 우러러 숭모하게 불일 따름이노라.

승정 기원후 199년 계묘(癸卯:1843) 5월 연산(連山) 서용중(徐龍中)은 삼가 기록한다. (□□大德의 題詠記□□, 대덕구·대덕문화원, 2006, 31-33쪽)

라하여 회덕향교 포미감 복고기에 1843년 5월이 김현순이 회덕현감에 부임한 지 5년이라 하고 있다. 실제 김현순이 회덕현감에 재임한것이 5년인지 확인 할 수 없지만, 1843년 5월 까지 회덕현감으로 재임하였던 사실은 확인 할 수 있다.

## 162. 홍용주(洪用周)

홍용주(洪用周)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권철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중략)… 홍용주(洪用周)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승정원

일기□□ 고종 10년 계유(1873, 동치 12) 1월 13일(계사) 맑음  
라하여 1873년(고종10) 1월 13일이다.

그리고 홍용주의 체직은 □□정사책□□ 을해(고종12,1875) 9월 3일의 도목정사에 홍용주천 전대(洪用周遷轉代)로 수망 광령(廣令) 안영식(安榮植: 成載玉薦), 차망 훈도(勳都) 남정익(南廷翊), 말망에 선능령(宣陵令) 심동찬(沈東贊) 등이 올라있다. 즉 홍용주가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것은 고종 12(1875)년 9월 3일 바로 이전임을 알 수 있다.

### 163. 안영식(安榮植)

안영식(安榮植)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는 □□정사책□□의 을해(고종12,1875) 9월 3일의 도목정사에 홍용주천 전대(洪用周遷轉代)로 수망 광령(廣令) 안영식(安榮植:成載玉薦), 차망 훈도(勳都) 남정익(南廷翊), 말망에 선능령(宣陵令) 심동찬(沈東贊)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영식이 수망으로 제수 되었다. 이는 □□승정원일기□□에도.

7차 정사를 하였다. 안영식(安榮植)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을해(1875) 9월 3일(병신) 맑음)

라하여 1875년(고종 12) 9월 3일에 안영식이 회덕현감으로 제수 되었다. 그리고 안영식이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회덕현감 남정린의 첨정과 관련된 □□승정원 일기□□ 기사가 1880년(고종 17) 2월 11일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1880년(고종17) 2월 이전까지 재임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안영식이 회덕현감으로 재임시

충청 감사 조병식이, 회덕 현감(懷德縣監) 안영식(安榮植)이 첨정(牒呈)으로 보고한 산림(山林) 송병선(宋秉璿)의 정단(呈單)을 장계로 아뢰었다. 장계 안의 정단에 아뢰기를,  
“보잘것없는 천박한 자가 외람되어 은혜로운 명을 받아 화려한 직함에 헛되이 매여 있은 지도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이 두려워 감히 다시 사정을 아뢰어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움츠리고 엎드려 이에 대해 침묵한 채 기꺼이 오만을 떠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상의 유시가 다시 내려와 이에 담긴 뜻이 더욱 간절하고 은혜로운 예우는 더욱 용성하였으니, 이는 실로 우리 조정이 나이 든 유학

자와 덕이 높은 이들을 대우하는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우가 지극히 우매하고도 용렬한 부류인 신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실로 어쩌다 이러한 예우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 너무도 두려운 심정에 몸 둘 바 조차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로 실정을 다시 아뢰어 파직의 은혜가 내려지길 청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재야에서의 운신은 결국은 성상을 번거롭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에 감히 외람되어 미천한 뜻을 아뢰어 이 답답하고도 두려운 정상을 현감을 통해 감영에 보고해 조정에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신에게 파직의 은혜를 내리시어 편안하게 이 미천한 분수를 지켜 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를 입계하자 계(啓) 자를 찍어 내렸다. (□□승정원일기□□ 고종 15년 무인(1878, 광서 4) 2월 11일(신묘) 맑음)

라하여 회덕 성남에 거주하던 산림 송병선의 정사소지(呈辭所志)를 첨정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송병선은 당시 노론의 핵심인물로 1905년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현재의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순국한 인물이다. 송병선이 순국한 장소에는 그를 배향하는 문충사가 창건되었다.

## 164. 남정린(南廷麟)

남정린(南廷麟)이 회덕 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충청 감사 이명응(李明應)이 장계하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남정린(南廷麟)의 첨정(牒呈) 안에, ‘산림 송병선(宋秉璿)의 정단(呈單)에 「보잘것 없는 미천한 자품으로 오래도록 잘못된 은혜를 입어 포만(逋慢)한 죄를 짓고 집에서 근신하며 견책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6품으로 올린다는 은혜로운 제수가 특별히 내전(內殿)에서 나왔습니다. 신은 명을 듣고 당황스러워 며칠 째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또 춘방(春坊)의 관원이 전해 준 소식을 받으니, 세자궁의 천연두 증세가 회복되어 기쁨을 나누기 위한 은혜로운 예사(例賜)가 미천한 신에게까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은 초야의 미천한 몸으로 의리상 감히 받을 수가 없으니,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사유를 갖추어 우러러 아뢸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황공하고 민망한 글을 즉시 감영에 보고하여 전달되도록 해서 면직되고, 분수에 넘는 상을 환수하게 하여 미천한 분의를 편안케 해 주소서. 천만번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첨보의 연유를 가지고 치계(馳啓)합니다.……” 하였는데, 계자인

(啓字印)을 찍었다. (□□승정원일기□□ 고종 17년 경진(1880) 2월 11일(기유) 맑음)  
라하여 회덕현감 남정린이 첨정으로 1880년(고종 17)년 2월 11일에 연제 송병선의 정사  
단자를 충청감사에게 보고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정린의 정확한 제수일과 체직일은 알 수 없다. 다만 1879년(고종16) 2월 1일에  
안영식이 회덕현감이었고(□□승정원일기□□ 고종 16년 2월 1일), 김주현이 1882년(고종 19) 3월  
17일에 회덕현감에 체직되어 새로 응교로 제수되는 것(□□승정원일기□□ 고종 19년 임오  
(1882) 3월 17)으로 보아 1879년(고종16) 2월 1일 이후에 제수되어, 1881년(고종18) 어느  
시기에 체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65. 윤영현(尹永顯)

윤영현(尹永顯)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회덕향교의 기문에

○ 현감 윤후영현(尹侯永顯)이 향교 폐단을 막은 사실 기록(縣監尹侯永顯鄉校防弊事實記)  
학교의 설치가 본조(本朝)보다 성한 적이 없고 도를 전한 여러 현인들은 차례로 배향하고 열성  
(列聖)의 덕과 문(文)을 숭상하는 데 거의 남김이 없으니 무릇 유관(儒冠)을 쓰고 유복(儒服)을  
입고 성인(聖人)의 글을 읽는 자 중에 누가 우러러 숭모하고 경양하지 않으랴! …(중략)… 오직  
우리 윤후영현(尹侯永顯)은 충효(忠孝)를 대대로 이어왔고 밝게 닦고 높이어 숭상하여 부임하고는  
대성전에 배알하고 두루 건물과 기와가 떨어지고 갈라진 것과 용마루와 서까래가 부러지고 썩은  
것을 보고 또한 재생(齋生)이 연호(煙戶)의 역에 괴로워하는 것을 가련하게 여기고 개탄 탄식하  
고는 거듭 새로할 것을 도모하는데 특히 얼마 안되는 녹미를 덜어서 조처하는데 방책이 있어  
보수하여 쓰고 완비하는 방책을 쓰니 이는 실로 근래의 성사라 족히 문옹(文翁)의 교화(중국  
漢나라 때 文翁이 蜀郡에서 한 教化)한 것보다 아름다운 베품을 잊지 않으리니 그 처음을 지키고  
쫓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중략)… 숭정기원후 네 번째 계미(癸未:1883) 6월 덕은(德恩)  
송면로(宋勉老)는 기록한다. (양승률, □□대덕의 제영기□□, 회덕현학명륜당중수기, 51-52 쪽)

라하여 1883년에 재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에도

충청 감사 남일우(南一祐)의 장계에, “회덕 현감(懷德縣監) 윤영현(尹永顯)의 첨정(牒呈) 내에, ‘산림  
(山林) 송병선(宋秉璿)의 정단(呈單) 내에 「저는 분수에 벗어난 은총을 오래 받아서 평소에 두려워  
움츠리고 오직 꾸짖어 물리치시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일전에 춘방 서리가 알린 것을 받으니,

세자궁께서 《동몽선습》의 강독을 끝낸 뒤에 반사한 상전(賞典)이 혼동하여 천신에게까지 미쳤으나,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도리상 감히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실정을 우러러 호소하며, 특별히 감영에 알려 조정에 전달하여 도로 거두도록 하여 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하여 주시면 다행하기 그지 없겠습니다.] 하였으므로 첩보합니다.' 하였으므로 연유를 치계(馳啓)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것은 기쁜 일을 당하여 반사한 것이다. 이처럼 사양할 것 없으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지방관을 보내어 다시 전유(傳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갑신(1884), 2월 20일(병인) 막음)

라하여 회덕현감 윤영현이 1884년(고종21) 2월 20일에 관내 산림 송병선의 정사소지를 충청감사 남일우에게 첩정으로 아뢰고 있다. 그리고 윤영현은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을유(1885) 3월 21일(경신) 막음의 기사에도 윤영현이 회덕현감에 재임하고 있고, 1885년(고종22) 8월 8일에 이준하(李遵夏)가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제수되는 것으로 보아, 윤영현의 회덕 현감 체직시기도 이 때로 보여진다.

## 166. 이준하(李遵夏)

이준하(李遵夏)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민영환(閔泳煥)을 이조 참판으로, 이호준(李鎬俊)을 판돈녕부사로, 조동면(趙東冕)을 대사성으로, 황선경(黃善卿) · 백채진(白采鎮) · 엄석진(嚴錫晉)을 돈녕부 도정으로, 이준하(李遵夏)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을유(1885, 광서 11) 8월 8일(갑술) 막음)

에서와 같이 1885년(고종 22) 8월 8일이었다. 체직일은 정기찬(鄭基贊)이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제수된 것이 1886년 3월 10일(□□승정원일기□□ 고종 23년(1886) 3월 10일(계묘) 막음)이므로, 이 때 체직된 것으로 보인다.

## 167. 정기찬(鄭基贊)

정기찬(鄭基贊)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전략)... 정기찬(鄭基贊)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한용원(韓龍源)을 아산 현감(牙山縣監)으로, 배익영(裴翼永)을 연천 현감(漣川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병술(1886) 3월 10일 (계묘) 막음)

라하여 1886년(고종 23) 3월 10일이었다. 정기찬이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것은

이조가 아뢰기를, “청하 현감(淸河縣監) 송병필(宋秉弼)이 신병 때문에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정기찬(鄭基贊)과 서로 바꾸라.”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정해(1887) 3월 18일(병오) 막음)

라하여 1887년(고종24) 3월 18일임을 알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정기찬(鄭基贊)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성칠(聖七), 아버지는 행간성군수(行杆城郡守) 정구용(鄭龜容)이고, 1819년(기묘:己卯)에 출생하였고,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철종(哲宗) 12년 (186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66위로 입격하였다.

## 168. 송병필(宋秉弼)

송병필(宋秉弼)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政事冊) 무자(戊子:고종25,1888)년 1월 29일의 도목정사에 송병필이 회덕현감에서 천전(遷전)되어 수망에 순흥(順興) 김병휴(金炳休), 차당에 박제억(朴齊億), 말당에 이보인(李輔仁)이 올랐으나 김병휴가 낙점되었다. 따라서 송병필의 회덕현감 제수일은 알 수 없으나, 체직일은 1888년(고종 25) 11월 29일이다.

## 169. 김병휴(金炳休)

김병휴(金炳休)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2차 정사를 하였다. 김병휴(金炳休)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진성령(秦成濂)을 은율 현감(殷栗縣監)으로, 이용의(李用儀)를 함창 현감(咸昌縣監)으로, 석태연(石泰淵)을 흥해 군수(興海郡守)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5년 무자(1888) 1월 29일(신사) 맑음)  
라하여 1888년(고종 25) 1월 29일 이었다. 그리고 □□승정원일기□□ 고종 26년(1889) 3월 5일  
맑음의 기사에도 김병후가 옥천 겸임 회덕현감에 재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구호(任龜鎬)가  
1889년(고종 26) 3월 9일에 (□□승정원일기□□ 고종 26 기축(1889) 3월 9일(갑인)) 회덕현감으로  
제수 된 것으로 보아, 김병휴도 이 때에 회덕현감직에서 체직 된 것으로 보인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김병휴(金炳休)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 주언(周彦), 아버지는 행영  
유현령(行永柔縣令)을 지낸 김준근(金俊根), 1831년(신묘) 생으로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철종  
(哲宗) 10년 (1859) 기미(己未)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29위로 입격하였다.

## 170. 임구호(任龜鎬)

임구호(任龜鎬)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사책□□ 기축(고종26,1889) 3월 9일의 도목  
정사에 김병휴 천전대(金炳休遷轉代)로 수망에 춘천(春川) 임구호(任龜鎬), 차망에 신용(申榕),  
말망에 이주필(李周弼) 등 중에서 수망인 임구호가 제수 되었다. 이는 □□승정원일기□□에도

이비(吏批)가 3차 정사를 하였다. 임구호(任龜鎬)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이철우(李徹愚)를  
원주 판관(原州判官)으로 삼았다. 충청 중군 조기택(趙基澤)과 횡성 현감(橫城縣監) 홍종우(洪鍾雨)를  
서로 바꾸었는데, 서로 바꾸리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승정원일기□□ 고종 26년 기축(1889) 3월 9일)

라하여 임구호가 1889년(고종 26) 3월 9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되었다. 그런데 임구호의  
후임으로 보이는 이승우(李承愚)가 회덕현감에 1890년(고종 27년) 1월 29일에 제수되었다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경인(1890) 1월 29일). 따라서 임구호의 회덕현감 재임시기는  
1889년(고종 26) 3월 9일부터, 1890년(고종 27년) 1월 29일까지 임을 알 수 있다.

## 171. 이승우(李承愚)

이승우(李承愚)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사책□□에는 경인(고종 27, 1890)의 도목정사에  
단망으로 올라 제수 되었다. 이는 □□승정원일기□□에도

민영국에게 전교하기를, “기기국 사사 이승우(李承愚)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제수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경인(1890) 1월 29일(경오) 막음)

라하여 이승우가 1890년(고종 27) 1월 29일에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체직일은 이승린의 회덕현감 제수일이 1892(고종29) 1월 27일인 것으로 보아 이때 체직된  
것이라 생각된다.

## 172. 이승린(李承麟)

이승린(李承麟)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불망비(不忘碑)을 통해  
알 수 있다. 불망비의 전면대자에는 “현감이후승린영세불망비(縣監李侯承麟永世不忘碑)”라 되어  
있고, “계사삼월 일립(癸巳三月 日立)”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사마방목에 이승린(李承麟)이  
고종 19년(1882) 증광시 진사 3등에 입격한 인물이 맞는다면, 출생년이 1845년(乙巳)이다.  
따라서 계사년은 1893년이고, 이승린이 회덕현감에서 체직한 시기는 1893년 3월 임을 알 수 있다.  
이승린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시기는

좌목. 김병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중략)… 이승린(李承麟)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조우영(趙祐永)을 거제 부사로, 남희덕(南熙德)을 영회원 수봉관으로 삼았다.(□□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임진(1892, 광서 18) 1월 27일(정해) 막음)

라하여 1892년(고종 29) 1월 27일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이승린은 회덕현감에 1892년 1월  
27일에 제수되였다가, 1893년 3월에 체직되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이승린(李承麟; 1845-?)의 자는 주선(周善), 본관은 벽진(碧珍), 아버지는  
학생 이효준(李孝峻)이고, 거주지는 군위(軍威)다. 고종(高宗) 19년(1882) 임오(壬午) 증광시  
(增廣試) 진사(進士) 3등(三等) 39위에 입격하였다.

이승린은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고종 7년(1870)에 “정서 충의(正書忠義)의 취재에 입격한  
…(중략)… 이승린(李承麟), …(중략)… 이국원(李國遠) 등을 모두 교정 충의(校正忠義)를  
가설하여 이에 차하하고 차차 거두어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하여 교정  
충의로 사환을 시작하였다. 그후 남부도사, 가감역관 등을 역임하였고, 1906년(고종 43, 병오,

광무 10)에는 육군 보병 부위(陸軍步兵副尉) 등을 지낸 인물이다.

### 173. 황종현(黃鍾玄)

황종현(黃鍾玄)이 회덕 현감에 제수된 것은

- 황종현(黃鍾玄)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민영수(閔泳壽)를 영광 군수(靈光郡守)로 삼았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2월 24일(정축) 막음)

라하여 1893년(고종 30) 2월 24일이었다. 그리고 체직일은

- 또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중학 교수 이병호(李秉昊), 서학 교수 이병성(李炳城), 남학 교수 이병옥(李炳鍛), 회덕 현감(懷德縣監) 황종현(黃鍾玄)이 모두 신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2월 28일(신사) 막음)

라하여 1893년(고종 30) 2월 28일 이었다.

### 174. 노응우(盧應愚)

노응우(盧應愚)가 회덕 현감에 제수된 것은

- (전략)… 노응우(盧應愚)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2월 28일(신사) 막음)

라하여 1893년(고종 30) 2월 28일이었다. 그리고 체직일은

-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남학 교수(南學教授) 윤긍주(尹兢周), 경주 부윤(慶州府尹) 심상찬(沈相贊), 회덕 현감(懷德縣監) 노응우(盧應愚),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 신광오(辛光五), 통례원 가인의(通禮院 假引儀) 곽기현(郭岐鉉)이 모두 신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3월 10일(임진) 막음)

하여 1893년(고종 30), 3월 10일 이었다.

## 175. 김준근(金俊根)

김준근(金俊根)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것은

(전략)…, 김준근(金俊根)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안윤명(安潤明)을 사천 현감(泗川縣監)으로, 유계환(渝啓煥)을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권석희(權錫熙)를 평구도 찰방(平邱道察訪)으로 삼았다. 종정경(宗正卿)에 이현영(李永)을 단부하고, 수(守) 의주부윤 통상사무(義州府尹通商事務)에 조만승(曹萬承)을 단부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 3월 10일(임진) 맑음)

라하여 1893년(고종 30) 3월 10일이었다. 김준근이 회덕현감에서 체직된 것은

윤정구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통례원 좌통례 이병옥(李炳鍾), 사복시 정 윤두병(尹斗炳), 동학 교수 송정섭(宋廷燮), 경주 부윤(慶州府尹) 김용원(金容元), 회덕 현감(懷德縣監) 김준근(金俊根)이 모두 신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3월 13일(을미) 맑음)

라하여 1893년(고종 30) 3월 13일 이었다.

## 176. 박용석(朴容奭)

박용석(朴容奭)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전략)… 박용석(朴容奭)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중략)…, 삼았다.(□□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3월 13일(을미) 맑음)

라하여 1893년(고종 30) 3월 13일이다. 그런데 박용석의 체직일은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충청 감사 조병호(趙秉鎬)의 장계 내에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용석(朴容奭)을 먼저 파출하고 그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박용석이 현재 임소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羅將)을 보내어 잡아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나수(拿囚)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4월 13일(기미) 맑음)

라하여 1894년(고종 31) 4월 13일에 파출되었다. 그런데 다시

○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용석(朴容奭)은 전에 도신(道臣)의 계사로 인하여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나수(拿囚)하라는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특별히 임임시키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대명하기를 기다려 나수하라.’고 전에 행회(行會)했던 것을 시행하지 말도록 해도의 도신에게 분부하겠습니다. 김히 아립니다.”하니, 일았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4월 21일(정묘) 맑음)

라하여 특별히 임임하여 1984년(고종 31) 4월 21일까지 회덕현감에 재임하고 있다. 그런데 박용석의 임임기사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이조가 구전 정시를 하여, 장덕근(張德根)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4월 17일(계해) 흐림)

에서와 같이 1894년 4월 17일에 정덕근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되었다. 그렇다면 박용석이 회덕현감으로 임임한 시기와 정덕근이 회덕현감으로 제수된 시기와 약 5일 정도가 중복된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박용석의 본관 밀양(密陽), 자 성기(聖暨), 1855년 생으로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아버지는 행정산현감(行定山縣監) 박세병(朴世秉)이다. 고종(高宗) 13년 (1876) 병자(丙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2위에 입격하였다.

## 177. 이규서(李圭瑞)

이규서(李圭瑞)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것은

이비(吏批)가 2차 정시를 하였다. 정인희(鄭寅羲)를 청양 현감(淸陽縣監)으로, 이규서(李圭瑞)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중략)…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개국 503) 11월 17일(기축) 맑음

라하여 1894년(고종 31) 11월 17일이다. 그리고 체직일은 외부 협판 윤치호(尹致昊), 회덕 군수(懷德郡守) 이규서(李圭瑞), 신녕 군수(新寧郡守) 권재기(權載紀), 한산 군수(韓山郡守) 백낙형(白樂亨)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2년 을미(1895, 개국 504) 11월 8일(갑진) 맑음)

라하여 1895년(고종 32) 11월 8일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895년 칙령(勅令) 제98호로 회덕현이 회덕군으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규서는 회덕군수이었다. 즉 회덕현이 회덕군으로 개편된 후 처음으로 군수로 도임한 인물이 이규서(李圭瑞)임을 알 수 있다.

## 178. 장덕근(張德根)

장덕근(張德根)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이조가 구전 정시를 하여, 장덕근(張德根)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4월 17일(계해) 흐림

라하여 1894년(고종31) 4월 17일에 제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직일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규서(李圭瑞)가 1894(고종31) 7월 14일에(무자) 회덕현감에 제수 되었다. 그렇다면 정덕근은 1894년(고종31) 7월 13일에 회덕현감 직에서 체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179. 신재림(申載臨)

신재림(申載臨)이 회덕군수에서 면직된 시기는

○ 회덕 군수(懷德郡守) 신재림(申載臨), 부여 군수(扶餘郡守) 한재익(韓在益)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병신(1896) 4월 15일 맑음)

라하여 1896년 4월 15일이다. 그리고 신재림이 회덕현감에 제수된 일은 이규서가 회덕현감직에서 1895년(고종 32) 11월 8일에 체직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제수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80. 조용희(趙用熙)

조용희(趙用熙)가 회덕군수로 재임하다가 면직한 시기는

○ 궁내부 종목과 주사(宮內府種牧課主事) 이유관(李有觀), 의릉 참봉(義陵參奉) 정세구(鄭世龜), 태인 군수(泰仁郡守) 이병익(李秉翼), 회덕 군수(懷德郡守) 조용희(趙用熙), …(중략)… 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5월 6일(갑오) 막음)

라하여 1897년(고종34) 5월 6일이었다. 조용희가 회덕현감에 제수된 일자는 신재림이 회덕현감직에서 체직된 날자가 1896년(고종 33) 4월 15일이었던 점으로 보아, 1896년 4월 15일 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181. 노사엄(盧士儼)

노사엄(盧士儼)이 회덕현감에 재직하였던 것은 남계서원(瀘溪書院) □□부보록(袁寶錄)□□의 좌목에

회덕 군수(懷德郡守) 노사엄(盧士儼) 자(字) 여경(汝敬) 풍천인(豐川人) 租九斗三升 太一斗 함양지 곡급함양읍(咸陽池谷及咸陽邑)

라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수령에 대한 현감호칭이 군수로 바뀐 것은 1895년 1월 11일이다. 따라서 노사엄이 회덕군수로 있었던 것은 1895년 1월 이후라는 사실만 알 수 있다.

## 182. 조철하(趙哲夏)

조철하(趙哲夏)가 회덕군수에 재임하였던 사실은

탁지부 대신 조병직(趙秉稷)이 삼가 아뢰기를, “결전(結錢)의 납부를 지체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논주(論奏)를 거쳤습니다…(중략)… 무술년 분을 많이 체납한 전 회덕 군수(懷德郡守) 조철하

(趙哲夏), …(중략)…은 이미 체차되었다고 해서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형률에 비추어 징계 처리하고, …(중략)… 이론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발들었다.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기해(1899) 12월 17일(경인, 양력 1월 17일) 맑음)

라하여 1899년(고종36) 12월 17일까지 재임하다가 체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183. 민병성(閔丙星)

민병성(閔丙星)이 회덕군수에 임용된 것은

(전략)… 회덕 군수(懷德郡守)에 민병성(閔丙星)을 임용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기해(1899) 6월 25일(신축, 양력 8월 1일 맑음).

라하여 1899(고종36) 6월 25일이다.

### 184. 김윤환(金閨煥)

김윤환(金閨煥)이 회덕군수로 제수된 사실과 체직 사실은 □□승정원일기□□에

- 좌목 ○ 이두희(李斗喜)를 의릉 참봉에 임용하고, …(중략)… 김윤환(金閨煥)을 회덕 군수(懷德郡守)에 임용하고, …(하략)… 홍봉관(洪鳳觀)을 고원 군수(高原郡守)에 임용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9년 임인(1902, 광무 6), 7월 23일(신사, 양력 8월 26일))
- 영희전 영 민영완(閔泳完), …(중략)… 회덕 군수(懷德郡守) 김윤환(金閨煥), …(중략)… 고성 군수(固城郡守) 이완수(李完洙)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40년 계묘(1903, 광무 7) 6월 28일(경진, 양력 8월 20일))

라하여 1902년(광무6) 7월 23일에 제수되었고, 1903년 6월 28일에 의원면직되었다. 면직 후 소경원 참봉, 한산 군수, 정산 군수(定山郡守), 만경 군수 들을 지냈다.

김윤환의 회덕군수 재임시 행적과 관련해서는 □□조선환여승람□□에 기록이 보인다. □□조선

환여승람□□ 「누정□□ ‘침벽정(枕碧亭)’조에

“김윤환 위 수비편에 보인다.

고종 계묘(1903)에 회덕군수로 부임해 정자에 올라 시를 지었는데,

‘벼슬길 돌아서 비풍(比豐;懷德)을 맡게 되어 먼저 이 루(樓)에 오르니,

홍련(紅蓮)과 흰 달은 맑은 가을과 함께 하는 구나.

천 층 계족산은 그림 중에 서 있고,

십리 용호(龍湖)는 주렴 밖에서 흐르는구나,

문물(文物)이 살아 빛내어 함께 기뻐하니,

술과 시는 더욱 흥을 내어 소주(韶州)로부터 나오는 구나,

침벽(枕碧) 유래한 인연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작은 둑의 대나무와 담의 소나무 푸르러 그윽하구나.’하고 하였다.

그리고 김윤환의 송덕비가 진잠면 학하리에 있다. 명(銘)에 이르되,

‘단양(丹陽)에서는 보리에 부쳤고,

청주(淸州)에서는 백성을 살렸으니

공의 어진 덕 아니라면

누가 그 같은 인(仁)이라.’

라고 하였다.

## 185. 조동준(趙東濬)

조동준(趙東濬)이 회덕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대덕구 읍내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불망비(不忘碑)을 통해 알 수 있다. 조동준 불망비의 전면대자에는 “군수조후동준영세불망비(郡守趙侯東濬永世不忘碑)”라 되어 있고, 입비일은 “갑진 9월 일립(甲辰九月 日立)”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조동준의 회덕현감 제수일과 관련해서

동궁이 하례를 받고 선온하고 사찬할 때의 춘방과 계방 이하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시강원 첨사 민영린(閔泳璘)에게 반숙마 1필을 사급(賜給)하라. 예모관인 부첨사 윤우식(尹雨植)은 가자(加資)하라. 시독관 이범석, 윤허영(尹夏榮), 신성균(申性均), 박재황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시종관 정인현(鄭寅獻), 김용완(金容完), 홍난유(洪蘭裕), 조동준(趙東濬), 김택진(金宅鎮), 조남익(趙南益), 김황진(金璜鎮), 정재덕(鄭在惠)은 모두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

(調用)하라. (□□승정원일기□□ 고종 40년 계묘(1903, 광무 7) 2월 8일(계사, 양력 3월 6일)라는 기록으로 보아 고종 40년(1903)년 2월 8일 이후 언제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조동준이 회덕군수를 지낸 조동준과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광무개혁 이후에 회덕은 현이 아니고 군(郡)이었고, 조동준의 불망비에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갑진은 1904년이다. 그리고 체직일과 관련해서는 조동준 불망비에 새겨진 “갑진 구월 일립(甲辰九月 日立)”이 주목된다. 여기서 갑진은 조동준의 활동시기로 보아 1904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동준은 1903년 2월 8일 이후에 회덕 현감에 제수되었다가 1904년 9월에 체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동준의 체직일과 관련하여 □□승정원일기□□는 다른 사실을 전한다.

학부 편집국장(學部編輯局長) 채범석(蔡範錫)을 겸임 사범학교장에 임용하고, …(중략)… 회덕 군수(懷德郡守) 조동준(趙東濬)을 태안 군수에 임용하고, 정3품 유봉근(柳鳳根)을 회덕 군수에 임용하고, 종2품 방한덕(方漢德)을 남양 군수(南陽郡守)에 임용하고, 창원감리서 주사(昌原監理署主事) 남상칠(南相七)을 용안 군수(龍安郡守)에 임용하고, 정3품 김형두(金亨斗)를 연풍 군수(延豐郡守)에 임용하고, 전라남도관찰부 주사 김정기(金正基)를 익산 군수(益山郡守)에 임용하고, 6품 이종석(李種奭)을 서천 군수(舒川郡守)에 임용하고, 정3품 이시재(李時宰)를 김제 군수(金堤郡守)에 임용하고, 정3품 이승우(李承宇)를 순천 군수(順川郡守)에 임용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43년 병오(1906, 광무 10) 2월 14일(신해, 양력 3월 8일) 막음)

에서 처럼 1906년(고종 43) 2월 14일에 회덕군수 조동준을 태안군수로 임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동준은 1906년 2월 14일까지 회덕군수에 재임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불망비□□ 기사와 □□승정원일기□□의 내용중 어느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 할 수 없다.

## 186. 구주현(具周鉉)

구주현(具周鉉) 회덕 현감에 재임한 사실은

회덕 군수(懷德郡守) 구주현(具周鉉)과 관리 집안의 선비 57인을 소견(召見)하였다. 대전역(大田驛)에 잠깐 머물렀을 때에 폐하(陛下)를 일현하였기 때문이다.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1909 기유) 1월 7일)

라하여 1909년 1월 7일에 회덕 군수 구주현 등이 고종황제를 소견한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187. 강원노(姜元魯)

강원노(姜元魯)가 회덕현감에 재임하였던 사실은

융희 3년 3월 병진(1916) 황제가 보내신 신 회덕군수강원노 송준길에게 치제한다(隆熙 年 3月  
丙辰(1916) 皇帝遣臣懷德郡守姜元魯 致祭于宋浚吉云云)

라하여 1917년(융희3)에 회덕군수로 재임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덕문화총서제11호

## 회덕현감 관련 자료





### III. 회덕현감 관련 자료

#### 1. 박성치(朴成治)

- 懷德縣監朴成治、文義縣令趙悟、海美縣監 金徑辭，引見曰：“今京都有小童失所飢困，郡邑豈無如此者乎？其往賑濟。且刑罰至重，慎勿因怒過刑。”(□□世宗實錄□□ 50卷, 世宗 12年(1430庚戌) 閏12月 12日 戊申)

#### 2. 박염(朴恬)

- 義禁府啓：“木川縣監朴容盜本縣官物十五貫，懷德縣監朴恬盜本縣官物十貫，請皆依律科罪刺字。”命皆免刺。(□□世宗實錄□□ 88卷, 世宗 22年(1440庚申) 3月 28日 庚午)

#### 3. 노진해(盧晉諧)

- 知瑞山郡事鄭公愼、竹山縣監宋重孫、伊川縣監洪寶、慶山縣監曹變興、文義縣令金時霆、懷德縣監盧晉諧、松禾縣監韓自邇、彥陽縣監卞宗悌、永春縣監吳倜辭，引見曰：“勸農桑省刑罰，字民者之先務也。汝其念哉！且今北方虛弱，徙南民以實之，群情騷動，予甚慮焉。汝等體予之懷則可以無弊矣。”又謂洪寶曰：“今農務方興，而行幸擾民，於心未安。然予疾未痊，聞伊川溫井甚好，故予將幸焉。已遣人修治，擇汝爲守，往盡乃心，無弊措置，以副予意(□□世宗實錄□□ 93卷, 世宗 23年(1441辛酉) 7月 22日 丙辰)

#### 4. 윤위인(尹爲仁)

- 知金山郡事文汝忠、懷德縣監尹爲仁辭，引見曰：“勸農省刑，守令之急務。近者下三道因入居推刷，以致騷擾，往就乃職，務盡其任。”(□□世宗實錄□□ 95卷, 世宗 24年(1442壬戌) 2月 15日 丙午)

## 5. 황의현(黃義軒)

○ 掌令趙孜啓：“今於未行貢法各道，發遣損實敬差官。今年當耕種時旱乾及長盛時又旱，至於今月雖雨，然風氣不調，禾穀之實，亦未可知。況平安、咸吉、黃海等道，失農尤甚，若遣敬差官，則或有騷擾之弊，請以首領官兼掌損實之任，勿遣敬差官。且前日啓泗川郡事金叔旛、懷德縣監黃義軒潛招京妓，留置衙內，請罷職事，上以赦前所犯，俾勿推劾。今者奉常直長河紀地、錄事康義山，俱以清齋衙門，恣奸媚妓，吏曹皆罷其職。此亦赦前所犯，而亦且罷之，況叔旛、義軒，今爲一邑之標準，所係甚重，雖奸隣官之妓，尚且不可，而況招致京妓，久留衙內，恣情無忌，莫此爲甚。此四人所犯之罪一，而蒙赦有異，臣等以爲未便。請罷叔旛、義軒之職。且今年凶歉，式例詳定所各司官吏及諸百工供億之費，亦不小矣。前所詳定者，亦纖悉備具，今雖改定，亦無可減可加之事，請姑停之。”上曰：“或請遣敬差官，或請停之，議論紛紜，予不知孰是孰非，姑從衆議。且叔旛、義軒所犯，此乃外方之事，不可以京中例論也。若式例詳定則予當停之。”孜更啓曰：“平安、咸吉道全失農，而既遣奉安使，又遣敬差官，雖云無弊，豈實無弊？若此損實之事，臣既目擊，雖不遣敬差官，當道首領官，亦足兼任。且自古損多而受責者有之矣，未聞實多而受責者。今之受敬差之任者，先懷免責之計而率不能兩便於公私，莫若停之爲便。且守令，一邑之標準，民之視聽係焉。今叔旛、義軒招引京妓，放恣已極，此雖爲外方之事，義軒、叔旛在京之時，固皆恣行奸妓之徒，非特在外之時耳，與河紀地等無異，請罷職以懲其後。”上曰：“敬差官則議論紛紜，予當從衆議。叔旛、義軒所犯則是赦前事，爾等，其勿更言。”(□□世宗實錄□□101卷, 世宗 25年(1443 癸亥) 7月 29日 壬午)

## 6. 흥계생(洪繼生)

○ 宣川郡事南薈、鐵山郡事洪致敬、懷德縣監洪繼生辭，上引見曰：“守令之任，不過兵、農兩事。武備，宜常加訓練，不可踈虞。還上，當趁時，斂散，不可稽緩。堤堰，則雖不能新築，如有舊堤，不可不修。(□□文宗實錄□□ 8卷, 文宗 1年(1451 辛未) 7月 19日 乙卯)

## 7. 유맹지(柳孟智)

○ 嘉善大夫忠清道兵馬節度使李公墓碣銘

公姓李氏。諱允儉。字子文。陝川人。高祖。嘉善大夫戶曹典書諱云皓。曾祖。奉順大夫知永州諱斯芳。祖。宣略將軍達梁萬戶贈兵曹參議諱智老。喜賑施人。咸賴之。考。贈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諱順生。好學不仕。教授鄉里。學徒坌集。多有著名者。娶懷德縣監柳孟智之女。先生四男二女。最後生公。景泰辛未。始生。…(하략)… (□□慕齋先生集□□ 卷之十三, 墓碣銘)

## 8. 강순(姜循)

○ 司憲府啓：“文義縣令崔汝激、懷德縣監姜循，聽營吏河圖之請，令代納司宰監船隻，發公差收布貨及米九十九石九斗，侵督窮民，轉輸圖家，汝激、循已收告身。圖雖以自備船代納，已爲非法，況借人之船，詐稱己物，冒受文引，實不充納，而剝民收價，悉以米布輸家，不可以赦前置之。請以圖永屬殘驛吏，米布還主。”從之。(□□世祖實錄□□ 6卷, 世祖 3年(1457 丁丑) 1月 22日 丁亥)

## 9. 흥군(洪君)

### 萬休亭記

吾友洪君。以忠清懷德縣宰落職。居衿之別墅。有林泉勝致。歲壬午夏。僕以鄉隣。忝在鄉射列。酒數行。洪君揚觴而請曰。吾世居茲土。亭木旣喬。尙無扁額。詎不爲斯文二三子之羞歟。希孟曰。噫。人有至樂。而不以爲樂。人有至病。而不以爲病。子知之乎。洪君曰。未也。希孟曰。人病不休耳。世以不休爲樂。何哉。夫人壽無幾。得百年之齊者。萬無一二焉。設使有之。除其幼蒙老疾之年。強剛莅事之時。不過四五十年。其間復除其昇沈榮辱。哀樂利害。爲吾病而害吾眞者。得遁然而樂。快然以休之日。亦不過數旬焉。况以非百之年。應無窮之憂患者哉。此世人所以役於憂患。而終無休息之期也。昔司空圖世居王官谷作亭。以三休名之曰。量才一宜休。揣分二宜休。耄而聳三宜休。然則古人亦嘗有取於此者矣。雖然。人生一世。事幾萬端。所可休者。豈特三者而已。今吾子曾守百里。染指世味。不識貪戀五斗。置身禍地。孰與於休。斂版磬折。強顏媚俗。孰與於休。偃蹇從事。勞心焦思。企其不逮。孰與於休。心計利害。矯情防關。老死後已。孰與於休。人世之樂。莫過於休。而反以爲病。惑矣。

衿陽雖小。有山林焉。有江湖焉。田疇足以辦資。賓朋足以爲娛。此吾與子之所共適也。請與子徜徉乎山水之間。睥睨乎宇宙之內。不與物競。不與事爭。凝神精慮。塌然忘我。以至於萬事都休。則吾病自祛。吾樂自至矣。其視司空氏之三休。不亦多乎哉。亭以萬休請焉。洪君反禪於坫。洗盞更酌。爲壽而爲之歌曰。衿山蒼蒼兮。漢水之悠。陸可行車兮。水可舟。投簪解紱兮。樂且休。攀援虬枝兮。聊淹留。衿山蒼蒼兮。漢水之悠。桑麻蔽野兮。禾麥盈疇。力民代食兮。無其憂。諧所願兮。復焉求。歌闋。無爲子請書以爲記(□□私淑齋集□□ 卷之八, 記, 萬休亭記)

### 만휴정기(萬休亭記)

강희맹(姜希孟)

내 친구 홍군(洪軍) 아무개가 충청도 회덕 현감(懷德縣監)에서 면직되어 금양(衿陽)의 별장에서 사는데, 산수의 경치가 좋았다. 임오년 여름에, 내가 동향 사람으로 향사(鄉射)의 옆에 끼이게 되어 술 두어 순배를 나누는데 홍군이 술잔을 쳐들며 청하기를, “내가 대대로 이 땅에 살아서 정자의 나무가 교목(喬木)이 되었는데, 아직도 편액(扁額)이 없으니, 어찌 사문(斯文) 사림(士林) 몇몇 분의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서글프다. 인생이 지극한 낙이 있어도 낙으로 여기지 않고 지극한 병이 있어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하니, 홍군은 “모른다.” 하므로 나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인생이 휴식할 줄을 몰라서 병인데, 세상은 휴식하지 않는 것을 낙으로 여기니 어쩌자는 것인가. 무릇 사람이 생명이 얼마 길지 않아서 백 년을 사는 자는 만에 하나 둘도 없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어릴 적과 늙고 병든 햇수를 제외하면 강건하여 일자리에 다다른 때가 4·50년에 불과하며, 그 사이에 또 승침(昇沈)·영욕(榮辱)·애락(哀樂)·이해(利害)가 내 병이 되고, 내 진기(眞氣)를 해롭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연히 즐기고 쾌활하게 휴식 할 수 있는 날은 역시 몇 달에 불과한데, 하물며 백 년도 다 못 사는 몸으로 무궁한 근심 걱정을 감당함에 있어서랴. 이러기에 세상 사람이 우환에 골몰하여 마침내 휴식할 기약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옛날 사공도(司空圖)가 왕관곡(王官谷)에 세거(世居)하여 정자를 짓고 그 정자 이름을 삼휴(三休)라 하며 말하기를, “첫째는 재주를 요량해 보니, 쉬는 게 마땅하고, 둘째는 분을 헤아려 보니 쉬는 게 마땅하고, 셋째는 귀먹고 노망했으니 쉬는 게 마땅하다.” 하였다. 그렇다면 옛사람도 또한 일찍이 이 휴식을 취하는 자가 있었다. 비록 그러나 사람이 한 세상에 나서 사단(事端)은 만 가지인데, 쉬어야 할 것이 어찌 특히 이 세 가지 뿐이겠느냐. 지금 그대가 일찍이 백리의 지방에 수령이 되어 세상 맛에 손가락을

물들였으니[染指] 모르겠지만, 닷말[五斗]의 녹봉을 탐내어 몸을 위태한 땅에 두는 것이 쉬는 것과 비해 어느 것이 나오며, 수판(手版)을 공손히 쥐고 허리를 굽히며 얼굴빛을 강작하여 세속에 아첨하는 것이 쉬는 것과 비해 어느 것이 나오며, 몸을 숙여 일자리에 들어가 노심초사하며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 쉬는 것과 비해 어느 것이 나오며, 마음으로 이해를 따지고 보통 생각을 벗어나 스스로 높게 가져 늙어 죽은 뒤에야 마는 것이 쉬는 것과 비해 어느 것이 났다 하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건만 도리어 병되게 여기니 의심스런 일이다. 금양(衿陽)이 비록 작은 고을이나 산림이 있고, 강호가 있어서, 전토(田土)는 족히 생활을 유지할 만하고, 손님과 친구가 있어 족히 즐길 만하니, 이는 나나 그대가 모두 적합하게 여기는 바이다. 청하 건대, 그대와 더불어 산수의 사이에 노닐고 천지의듯이 자아(自我)를 잊고 만 가지 일을 모두 쉬게 되면, 내 병이 저절로 물러가고 내 낙이 저절 안을 옆눈질하며, 사물과 더불어 경쟁하지 않고 정신이 영기고 생각이 고요하여, 죽은 로 이르러 올 것이니, 저 사공(司空)씨의 삼휴(三休)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많지 아니한가. 청하건대, 정자 이름을 만휴(萬休)로 하려 하였다.

홍군이 술을 돌려 놓고 잔을 썻어 다시 부어 축수하며 노래하기를,

금산은 푸르고 푸른데 한강수는 유유하구려 / 衿山蒼蒼兮漢水之悠  
물은 수레로 가고 물은 배로 가서 / 陸可行車兮水可舟  
잠불을 벗어 던지고 즐겁게 쉬리 / 投簪解紱兮樂且休  
술가지를 어루만지고 그곳에 머무련다 / 攀援虬枝兮聊淹留  
금산을 푸르고 푸른데 한강수는 유유하구나 / 衿山蒼蒼兮漢水之悠  
뽕과 삼은 들을 덮고 벼와 보리는 밭을 메웠으니 / 桑麻蔽野兮禾麥盈疇  
힘을 다해 밥 먹으매 무슨 근심 있으리 / 力民代食兮無其憂  
소원에 맞섰거나 다시 무얼 구하랴 / 諧所願兮復焉求  
노래를 마치자 무위자(無爲子)는 써서 기(記)를 하였다.  
(□□속동문선□□ 제13권, 기(記))

## 10. 홍계생(洪季生)

○ 司諫院獻納崔漢禎來啓曰：“鄭徽若正大，則必禁人爲非，徒安得行詐於其家乎？古人云：‘左右前後罔非正人，不正之人，豈可近侍？’請改經筵官。又咸平縣監洪季生，嘗爲懷德縣監，

以三中見罷，已數三年，年今六十七，致仕之期不久，吏曹薦用，必有情由，請鞫之，竝罷季生職。”皆不聽。（□□成宗實錄□□ 26卷，成宗 4年(1473 癸巳) 1月 8日 己亥）

## 11. 이달손(李達孫)

○ 義禁府啓：“前懷德縣監李達孫在任時，潛取官藏匹段寢帳一，綿布九匹，絳布半匹，席子六張，自家持來罪，律該決杖八十、奪告身三等，依《大典》錄案。”從之。（□□成宗實錄□□ 98卷，成宗 9年(1478 戊戌) 11月 5日 壬戌）

## 12. 정일보(鄭一寶)

○ 洪原縣監姜精、懷德縣監鄭一寶，辭，上引見曰：“守令之職，字民爲重，其勿橫斂，一遵邦憲，各勤乃職。”（□□成宗實錄□□ 114卷，成宗 11年(1480 庚子) 2月 13日 癸亥）

## 13. 이성생(李誠生)

○ 司憲府啓：“前懷德縣監李誠生，枉刑官婢德只致死罪，依《大典》，杖一百永不敍用。”從之。（□□成宗實錄□□ 119卷，成宗 11年(1480 庚子) 7月 11日 己丑）

## 14. 문걸(文傑)

襄陽府使文侯墓誌

侯諱[傑]。安東府甘泉縣人。曾祖某。某官。祖某。某官。考諱[崇質]。學書不成。終于鄉。妣安康[盧]氏。有婦德。侯生而骨骼異凡兒。幼有志于學。從婦翁李司成[文興]。受聖賢經傳。通大義。又能爲文辭。一舉連捷生員進士試。尋擢科第。授館職。選補議政府司錄。出爲懷德永同縣監。蓋爲親屈也。棲遲不振者數十年。執政憐其滯。薦爲司諫院獻納。司贍宗簿禮

賓寺司饔院僉正。又出爲襄陽都護府使。我上卽位之六年。弘治己未也。翼年某月。病卒于任所。闔境哀之。明年某月日。返葬于某邑某面某原。侯初名彬。嫌與逆臣姓字混。御書賜今名。侯天資和夷。孝友出於性。居官清慎。處家淡然。平生無嗜好。遇杯酒。露天機。眞君子人也。有二子二女。子皆襲箕裘。長曰[瑾]。捷科。今爲承政院注書。次曰[璫]。成均生員。女皆有家。侯之妣。與吾母同出也。其葬也。吾爲文以誌之。不銘。哀之至。未暇也(□□虛白亭文集□□ 卷之四, 碑誌)

## 15. 우계노(禹繼老)

○ 承旨姜龜孫將戶曹所啓懷德縣徵逋欠事以啓曰：“成宗朝諫院於經筵，啓懷德殘弊，逋欠甚多。緣此，邑守相繼見貶。成宗顧問左右，臣備知其弊，一一陳啓。成宗特命該曹商議，未收田稅，使直納本縣。然是縣凋弊已甚，人吏奴婢亦少。爲邑宰者知施措無策，纔上官旋即辭去。三十餘年考滿者，惟一禹繼老，而拘於解由，廢不復仕。後雖有良吏，振救無由。今督徵則弊益甚，而終難畢徵。請議諸大臣，蠲除逋欠，使之蘇復。”遂議于大臣蠲之。(□□燕山君日記□□ 21卷, 燕山君 3年(1497 丁巳) 2月 5日 丁丑)

## 16. 강희신(姜熙臣)

○ 臺諫合司啓前事，且曰：“故參議沈灝妻李氏奴呈狀云：‘延昌府院君金勘在廢朝，依勢奪其主家。’此非士大夫所爲也。勘非三公，故已斂問矣，然請亟罷其職。閔孝曾邪誣殘酷，而爲禁府堂上，鄭光世煩濫不正，而爲刑曹判書。請遞之。正言金淨前年八九月間，以病親呈辭事詣闕，報恩縣監延九齡，亦來肅拜，而內官成胤引九齡及淨於慶會南門，而饋酒，謂九齡曰：‘凡事多由我而成。前日閔蕃，擬懷德縣監首望，而蕃不欲爲，故吾啓之曰：‘蕃今爲嘉禮都監郎官，雖受點，必還推。’遂落點于姜熙臣。今政，蕃入報恩縣監望，欲爲而囑我，我不應曰：‘旣圖懷德，勢難更啓。’及啓望單子，上曰：‘延九齡何如人也？’吾啓曰：‘文臣而可人也，遂落點于爾。’臣等以爲，報恩前後皆文臣也，上必無是教也，但外人聞之，豈不致疑？請治成胤罪，且治閔蕃阿附宦官罪。”傳曰：“成胤、閔蕃竝下禁府推之，餘皆不允。”臺諫又以原從族親加、閔子芳等事，四啓，皆不允。(□□中宗實錄□□ 5卷, 中宗 3年(1508 戊辰) 4月 17日 甲申)

## 17. 오황(吳滉)

○ 御夕講。…(중략)… 諫院又啓：“司饔院判官吳滉，丙子年，爲懷德縣監，戊寅年，以災傷見錯罷職。若不罷職，今當仍在懷德，不可陞品也。都摠府都事柳尙齡，爲部將送西未久，爲尙衣主簿，又未久授本職。若邊方則可陞而送之，在平時不須陞也。請改正。”皆不允。(□□中宗實錄□□ 40卷，中宗 15年(1520 庚辰) 閏8月 18日 癸卯)

## 18. 정승주(鄭承周)

○ 憲府啓曰：“掌樂院官員等，已令推之，提調亦當推也。但左議政李惟清，亦在推列，故敢啓。懷德縣監鄭承周貪汚虐民，請罷黜。”…(하략)。(□□中宗實錄□□ 56卷，中宗 20年(1525 乙酉) 12月 19日 癸卯)

## 19. 양의(梁儀)

懷德縣感舊葵軒公昔宰此縣。余時童子。今三十有一年。

古木槎牙挾道周。小溪依舊懸前流。當時戲伴迎青眼。昔日齠童半白頭。陳跡杳茫重掩涕。客懷蕭瑟強登樓。分明記得趨庭處。歲月悠悠三十秋(□□青溪集□□ 卷之一，[詩])。

## 20. 김사수(金師秀)

懷德縣監金公墓碣銘

金生九鼎狀厥大父行。來叩某曰。今將石于墓。敢請銘。蓋致其父節度公之意也。某於節度公舊。欲辭而未。公諱師秀。字公彥。金氏籍安東。古也。有曰方慶。翊麗朝。爲公上洛。入國朝。益精以文學顯。參判于吏曹。參判生進士潤。進士生贈判事司導寺富寧。寔生皇考。曰龜年。贈刑曹參議。妣李氏。國姓。誼成君宋。其考也。公少志學。舉不中。晚補禮賓別坐。遷直長宗簿。主簿繕工。由監察出監懷德。民歌其惠。卽閑于全義鄉之郊者餘十年。公奉先考。

嘗曰。吾不忍死吾親。吾當生事之于廟。晨昏見而朔望享。出入而告面之。生在弘治庚戌。歿于癸丑三月。葬于全之鴨谷先塋側。後贈嘉善戶曹參判。以子貴也。夫人趙氏。長端府使世禎女。端直且嚴。家有式。誠于祀。手紡績不老倦。福可德對。子旣貴。孫至曾玄熾。年九十二而逝。當萬曆乙酉四月。是年九月。葬與公合。有男四。長節度使鍇也。次鎧。監察。鍊。禦侮將軍。銅。建功將軍。節度男長。卽九鼎。次治鼎。台鼎。女適評事柳拱辰。監察男曰大鼎。寶鼎。禦侮男曰潤鼎。中武科。次周鼎。建功男曰安鼎。應鼎。女長嫁忠義衛李夢軫。次爲進士趙德年妻。某嘗目節度公動止中度。心偉之。今見九鼎狀。始信家有訓。而餘慶有自。銘曰。家孝官謹盡所職。克婦克母配以德。齊美獲隲大厥慶。壽躋于石子亦令。(□□拙翁集□□卷之十，碑銘·碣銘)

## 21. 권덕린(權德麟)

### 陝川郡守龜峯權公墓碣銘

花山權氏之宗祀其鼻祖高麗太師公于東都之雲谷。以太師子孫之賢者二人配食。其一龜峯公也。獻慶因其來請。撰祝嘏之詞。旣又以龜峯墓銘來屬。獻慶竊計今距太師歲殆千。雲仍甚蕃。且多譽髦。惟是一二賢得配太師食。餘不與焉。以是知龜峯賢遠乎人。遂樂爲之序曰。公諱德麟字君瑞。英陵名相軫之弟。文科官寺正。實爲公六世祖。曾祖諱孝忠司直。祖諱命錘尙衣院直長。考諱繼中軍資監僉正。妣陽城李氏。儒學敎導世柱之女也。公早孤。母夫人敎督甚嚴。使小奚奴守公側。誦讀少懈則撻奚以愧之。由是文理驟進。稍長受業於晦齋李先生。時己卯士禍新作。世以學問爲諱。先生深自韜晦。不欲任師道。獨愛公之才引諸門。妻以從妹。每稱問難經旨。有警發人處。已而先生謫西塞。公遂隱龜峰下。杜門讀書。仍以龜峯爲號。親老故勉治舉業。癸丑登文科。是冬聞先生訃。中路迎柩而還。其後天心悔禍。師道復伸。然猶士氣消沮。畏忌尚多。無敢顯言尊祀者。公獨倡議建玉山書院。以爲先生俎豆之所。遠近壯而義之。崇德象賢。有功斯文。故許草堂暉玉山記盛稱其美。朴南溪世采東儒師友錄。至晦齋門徒。獨稱公一人。歷官兵禮曹郎。朝廷擬以臺閣處之。公爲便養求出外。懷德。河東。皆有聲績。□川以家近避嫌棄歸。後莅陝川。治益有名。旋除昆陽。未赴任病卒。癸酉月日也。距生年己丑。得年僅四十五。惜乎。始而不卒師敎。中而久勞吏事。終又不永其年。天不欲使公成才而福斯民歟。公事母至孝。友愛一弟甚恩。成政於家。奚不邦國也。英宗戊午。士林齊議。建祠於雲谷。後以邦禁撤止。今配于太師祠。地仍其舊云。墓在府北

頭流洞先兆。淑人驪州李氏祔公墓後。李氏廸順副尉苾之女。生長詩禮之家。有女士行。生一男一女。男士毅參奉。女適安大海。側室三男。士敏以孝行及倡義討賊功贈承旨旌閭。士訥，士毅。生應生縣監。是生三男。恁，恁參奉，壽。恁生三男。垓，▼(土+郁)，埈。恁生五男。仲均，仲坦，仲垕，仲培，仲增。燾生三男。塾及第，奎，望。曾玄以下多不盡錄。系以銘曰。

孰尊儒宗。訓惠一方。玉山之祠。龜峯之功。斯文有賴。永世其光 (□□良翁先生文集□□ 卷之十七，碣，陝川郡守龜峯權公墓碣銘)。

## 22. 안경빈(安敬賓)

### 送安懷德敬賓之任

承綸綺彩雲中。遠領山河百里封。鈴牒正須敷聖化。教條要必驗民風。治非有奧宜居敬。政不多方只在公。此道分明君記否。片言相贈意無窮 (□□栢潭先生續集□□ 卷之三，七言律詩，送安懷德敬賓之任)

## 23. 윤응지(尹應之)

### 楊根郡守尹君墓碣銘

故楊根郡守尹君諱應之。字時卿。既亡之二年秋。其妻洪氏以書走湖西之新昌。告于君之異姓兄前判書趙某曰。吾夫亡。且再葬矣。吾獨悲其才與行非下於人者。既不得顯榮于時。晚而得下位。僅至郡縣。而又不能久於其官。卒困以死。其生世可謂不遇。而年又不至老壽。無兄弟無子。取同宗爲後。是其平生無一幸焉。惟念得名人筆碣于墓。庶識於後世。而如得親者。尤可信。惟公視吾夫如親兄弟。吾夫常所戀慕。敢以告。嗚呼。余雖非名文章者。於吾弟身後計。何忍忽焉。亦不計其文之能否也。顧自有家禍。連喪子女孫。悲傷病心。無意筆硯。蓋諾而不能就者久之。惟我外族。本出於嶺南之海平。麗朝。累世至大官。爲東方望族。曾祖諱忭。文科仕止軍資監正。贈領議政，海澄府院君。生五男。吾外祖。牙山縣監。贈左贊成。諱春壽。其第三子也。領議政，海原府院君文靖公諱斗壽。爲第四。海平府院君文貞公諱根壽。其季也。公兄弟自少登朝。出入華顯。位俱至崇秩。文靖公以相業。文貞公以文行。皆爲世所尊。而文靖公四男。又皆至達官。其長諱昉。又位上相。父子仍大拜。當世數盛門。在一二。

而文貞公文章。直學西漢。爲高古。主盟詞壇。論文者皆謂世所莫及。君。文貞公之長孫也。考諱旼。僉知中樞府事。君爲人端方良順。生長於公卿家。而略無驕傲奢華之習。在家爲良子弟。在士類爲良友。其於文。熟家庭耳目。不刻苦而能之。蓋取舉者累。而竟無所成。年四十。始爲繕工監監役。以章陵董役。陞司導寺主簿。遷司憲府監察。爲懷德縣監。其後又爲監察。轉軍資監判官。丙子亂。以漢城判官。扈駕南漢。還都。陞軍器寺僉正。爲楊根郡守。逾年罷。辛巳十一月五日。以疾卒。年六十。妣。某州李氏。父成均生員磐。洪氏。父進士淹。其堂弟縣監說之子垿爲後。君少吾五歲。自表叔僉知府君愛我異於他親戚。而與君特相愛思。累日相與留連。飲酒談謔。窮日夜相樂。森然如昨日事。而計已數十年。君又已古人矣。悲夫。銘曰。卿相之門。文章之胤。奈何至君。厥緒不振。端良和遜。宜福于神。奈何不然。困而莫伸。生無一兒。壽止於耆。天耶人耶。我將尤誰。煥煥賢婦。獨念永久。刻銘墓前。可識萬年(□□浦渚先生集□□ 권 32, 墓碣銘 九首 楊根郡守尹君墓碣銘)。

## 24. 민천부(閔天符)

### 민천부묘갈(閔天符墓碣)

여홍민씨는 동방에 큰 성씨이니 그 근원은 실상 고려(高麗) 상의봉어(尙衣奉御) 칭도(稱道)에서부터 나왔으니 10여 대에 소문난 사람과 현달한 벼슬이 서로 이어 끊어지지 않았다. 조선조에 호례(好禮)는 문과하여 현감(縣監)으로 증자찬성(贈左贊成)이요, 그 아들 오(悟)는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로 증 영의정(贈領議政)이요, 그 아들 효순(孝舜)은 현감이요, 그 아들 장(璋)은 벼슬하지 않았으며 이가 광주(光州)의 큰 성씨 김백균(金百鈞)의 따님에게 결혼해서嘉靖 신묘(辛卯:1531)에 공을 낳으니 공의 이름은 천부(天符)이요, 자는 응명(應明)이다. 몇 달도 되지 않아 아버지를 잃고 외가에서 길러지니 나이 14세에 처음으로 글 읽음을 알게 되었다. 공은 기억하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서 반씨(潘氏)의 역대총서(歷代總敍)는 세상에 큰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글인데 공이 두 번 열람하자 문득 외우니 선비들이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 얼마 안되어 문장이 급히 이뤄지니 임자(壬子)년에 생원(生員)이 되고 무오(戊午:1558)년에는 향시(鄉試)에 장원하고 드디어 대파에 급제하였다.

봉상시 봉사(奉常寺 奉事)로 말미암아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에 오르고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과 형조 좌랑(刑曹 佐郎)을 역임하였다.

이때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니 봉양을 위해 회덕현감(懷德縣監)에 나갔다가 을축(乙丑:

1565) 정월 9일에 관아(官衙)에서 돌아가니 진잠(鎭岑) 동쪽 백아동(白鶴洞) 병좌(丙坐)한 언덕에 장시지냈다.

공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몸소 스스로 분발해서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오르고 또한 본래 성품이 통달하고 활발하며 기상이 호탕하니 보는 사람들이 문득 흄모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원대한 기대를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하늘이 그 나이를 막으니 친구들이 모두 슬퍼하고 아까워 했다. 공이 서로 사귀어 놀던 사람은 윤월정 근수(尹月汀 根壽) 형제와 권판서 징(權判書 徵)과 이대간 제민(李大諫 齊閔)이 모두 공의 지기(知己)였다. 공이 회덕에 있을 때 이조(吏曹)에서 두 번이나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에 추천하였으니 한 세상에서 명망을 중하게 여겼음을 볼 수 있도다.

배위는 유씨(柳氏)니 태사(太師) 차달(車達)의 후손으로 학생(學生) 경방(景芳)의 따님이요, 박공 팽년(朴公 彭年)의 외손이다. 성질이 유순하고 부인의 도리를 집행하였다. 공보다 6년 뒤에 낳고 같은 해 10월에 돌아가서 묘는 합평하였다. 1남 1녀를 두었으니 남은 재문(在汶)이니 그 덕망이 훌륭하여 산림에 매이지 않고 글과 술로 스스로 즐기었다. 따님은 직장(直長) 김시량(金時亮)에게 출가하였다. 손자 여기(汝耆)는 진사(進士)로 참봉(參奉)이고 여질(汝耋)은 문학예능에 재질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다. 여로(汝老)는 문과급제하여 대시(臺侍:사헌부와 승정원의 벼슬)에 출입하였다.

따님은 유성하(柳成夏)의 아내가 되었다. 직장(直長)은 7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 계(繼)는 판관(判官)이고, 약(約)이고 기(紀)는 첨사(僉使)이며 강(綱)이고 신(紳)은 생원(生員)이며 유(紐)는 현감(縣監)이며 세(總)는 선전관(宣傳官)이고 따님은 윤유정(尹惟鼎)의 아내가 되었다. 여기(汝耆)는 3남 2녀니 아들은 원재(元才)이고 명재(明才)는 여질(汝耋)의 뒤를 이었다. 성재(聖才)이고 사위는 김진(金震)이고 정진웅(鄭晉雄)은 증참의(贈參議)이다.

여로(汝老)는 3남 3녀이니 아들은 광재(光才), 양재(亮才), 세재(世才)이고 사위는 김상우(金尙羽) 생원이고 김규(金珪), 박태건(朴泰建)이다. 내외에 증손 현손은 많아서 모두 기록하지 못한다. 한자유(韓子愈)가 이르되 ‘그 몸에는 넉넉지 못했으나 그 후손에게 더해 주었도다’하였으니 아마도 공을 두고 한 말인가 한다. 명에 이르되,

기상이 활달하고 재주도 영리하니 수명은 짧았으나 후손들은 창달되었네,  
사람들은 어찌 몸은 영화로우면서 후손이 끊어짐을 선택하리오?

승정(崇禎) 후 42년 기유(己酉:1669)에 장령(掌令) 종조(從祖)께서 명문(銘文)을 우암 송선생에게 받았는데 힘이 없어 세우지 못하고 을사(乙巳:1725)년 봄에 이르러 전 감사 홍공(前監司 洪公)에게 글씨를 받았다. 3대에 걸쳐 경영해서 이제야 준공이 되었으니

기다림이 있는 듯 슬픈 마음과 다행스러움이 서로 얹히도다. 이 해 5월 일에 현손(玄孫) 정상(挺商)은 삼가 기록하다. (이성우 번역)(민천부묘갈, □□대전금석문□□, 대전광역시사편찬 위원회, 1995. 642~6647쪽)

## 25. 고옹적(高應陟)

杜谷先生高公言行錄

公諱應陟。字叔明。其先安東人。中葉。移居本府西面。有諱仁祐。仕麗朝。官至監務。是生諱汝謹。不仕。是生諱碩全。中武科官至萬戶。公之高祖也。萬戶移居海平文良洞。生諱識。業詩書不仕。娶成均司藝金克柔之孫女。生諱夢聃。娶尙州求道谷教授鄭世亨之女。生六男。皆就學。公第四也。嘉靖辛卯。生于文良洞。天資英秀。意趣不凡。見字輒記。父母貧而多子。難於養育。又以商山。素稱詩書之藪。求道谷。有金后溪範。柳進士霽。皆一時知名士。欲令觀善而就益。遂於辛丑歲。挈諸子寓贊家。…(중략)…。庚午。爲親乞縣。拜懷德縣監。到官上封事。大略言殿下與君子不和。君子與君子不和。上優答之。時東西黨議始行。公憂之曰。鷄鶴易分。鴻雁難辨。宋朝川朔之爭。甚於牛李之黨。自非在我之權度精切不差。則纔有偏倚。傾覆立至。陳瓘載舟之喻。正謂此也。遂及於疏中。而又作銓人寶鑑一部。將欲上達而不果。又上書監司。朝夕供具。去傍案。禁屠生禁革鞋。官婢皆着藁鞋。竟以迂闊罷。講學方。中庸體用解等書。作於此。皆失於兵火。…(중략)…。時天啓丙寅冬。門人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巡察使崔峴。謹識。(□□認齋先生文集□□ 卷12, 行錄, 杜谷先生高公言行錄)

## 26. 김복억(金福億)

○ 김복억(金福億)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현재 위치는 불명이다)(□□회덕읍지) 명판

## 27. 이간(李幹)

僉知李公幹墓誌銘

惟李氏系出王室。孝寧大君諱補。卽恭定大王第二子。於公五代祖也。孝寧生誼城君諱宗。誼城生雲林都正諱偪。雲林生把城君諱哲同。卽宗室。母論嫡庶。而把城以上。皆嫡孤也。把城生豐德郡守諱光胤。豐德娶慶州李氏司饔直長夏臣之女。以丁亥三月六日生公。公諱幹。字幹之。生未十歲。失怙恃。養於王母家。自其兒時喜慍已不遽。儼若成人。及長。謹厚平恕。不置畦畛。有長者風。庚申春。蔭補典設司別提。辛酉秋。移北平館。癸亥又移禁火司。皆仍別提。乙丑陞內贍寺直長。丁卯夏。陞司宰監主簿。俄遷司憲府監察。未幾出監抱川縣。一歲中詔使前後至。供頓之具。便宜措設。民不知擾。適避監司。換授江原之金化縣。抱民銜公惠政。至立碑追慕。在金化莅事。凡九閱月。以病免。庚午。除井邑縣監。五年而遞。民之思公。一如抱民。會懷德缺知縣。觀察忠清者。啓請擇授。以責蘇民。廷議以非公莫可。遴除是邑。在官六載。政清民殷。治最一道。壬午夏。陞慶山縣令。以治民第一。賜表裡。褒典也。考滿。又陞溫陽郡守。郡在兩湖孔道。公始至。繕甲兵廣儲峙。常若有事者。人莫喻公意。及壬辰之亂。南軍之勤王者。率取辦於此。始服公之見。時一郡吏民。泣且進曰。公無兵守。賊至近境。奚恃而在郡。公曰吾知死於封疆而已。不知其他。毅然不動。吏民莫敢去者。褒嘉仍任半載而遞。甲午秋。除司僕寺僉正。乙未。陞典設司守。其年秋。特陞通禮院相禮。公以年至乞退。命付軍職。不失其祿。丁酉夏。恩命特加折衝。除五衛將。以長子牧使。治濟有勳故也。衛將未久。以老病申前請。退于黃海之鳳山。戊戌春病斂。以三月三日歿于其地。得年七十有二。公居平聞人善。欣然若有所得。如聞過尤則默如也。尤不喜與人爭辨。以是人無怨惡之者。其在家。篤於親故而不遺疏遠。居官廉白奉職而勤恤民胥。故從官四十年。廷無貶議。履歷六邑。考常居最。非有過人者而能若是乎。公凡再娶。初娶通政晉州牧使金泓女。金。慶州望族也。後娶漣川縣監張景良女。領議政順孫之曾孫也。有丈夫子四人女子一人。慶祿。慶福。卽金出。慶裕以下皆張出。慶祿嘉善。見任濟州。慶福儒士。慶裕靈岩郡守。慶祺亦儒士。先公早沒。女適繕工監役朴承黃。牧使娶司憲府監察李學曾女。生三男。暉。曜。昕。三女。長適黃瑩中。義州府尹璡之子。次適李義培。內資正洽之子。一女幼。慶福娶陰竹縣監安璵女。無嗣。靈岩娶朴文佐女。生一子尙幼。慶祺娶造紙署司紙洪潤先女。生一女。監役無后。公柩之自鳳山返墓山也。又特命所過各邑津送。而七月一日。葬于楊州松山里子坐之原。卽豐德公塋側云。公旣壽踰七旬。位躋顯秩。差若無憾而牧使以盛年至二品。靈岩紓郡紱。諸孫秀異。將見頭角。所謂來之以德者耶。慶祺之女。卽歸于余之子尹。其家間銘於不佞。義有不得辭者。銘曰。

太支於今。不替有聞。公由陪屬。涖職以勤。巖邑纍印。通班拖紫。七袞享壽。諸男趾美。楊州一域。松梓蒼然。寔公攸寧。君子之阡。(□□月汀先生集□□ 卷之六 墓誌)

## 28. 최세해(崔世灝)

○ 최세해(崔世灝) 거사비(去思碑)가 있다.(현재 위치는 불명이다). (□□회덕읍지□□「명관(名官)」)

甲戌下

十九日。朝詣昌慶宮。問安於懿聖殿。答曰。一樣矣。適見醫女善福。聞玉候彌留。咸懷憂悶。退食于玉堂。聞黃海監司李珥。判官崔世灝善政啓聞。同僚皆以爲公論之發久矣。

○ 黃海監司書狀略云。海州居民金應斗等千餘人連名所志。…(중략)… 請牧使，判官善政啓聞。牧使李遴段。素以善於撫字著名爲白在果。判官崔世灝。素無名聞。有意觀其所爲。則清謹自持。小無泛濫之失。科歛甚輕。節用蓄積。誠如居民呈狀。前監司閔起文。年老性柔。不能拒絕私行。雜客雲集。糜費不資。同崔世灝用度不足。私自憂慮之際。起文聞知。深以爲未安。營上魚物。移入官廳。實非世灝之自請。大抵世灝之門地卑微。人所輕侮。性又拙直。不能厚接。過客之人。無不嫌嫉。已曾聞知。衆口鑠金。傳于都下。言官風聞。亦所當然。惟只民生休戚。係於守令。如得其人。則一境知樂。不得其人。則百里愁苦。所關甚重。道內守令中。世灝者罕有其比。無罪見罷。實爲曖昧。本州居民。滿庭號悶。各盡其情。閭里相弔。氣象愁慘。臣目睹厥狀。不敢不達。第念近日言路甚窄。臺諫一言之誤叱分以。百千直言。皆歸撫虛之地。今臣所達。增長聖明輕視臺諫之習。後弊無窮乙仍于。惶恐待罪。臣矣職乙良寵黜。以重臺諫體貌事。啓下吏曹。傳曰。物待罪事。監司處下諭。可也 (□□眉巖先生集□□卷之十二, 日記刪節 甲戌下)

## 29. 박광전(朴光前)

墓誌銘

世子翊衛司翊衛朴公墓誌銘

蓋當我康陵穆陵之世。上方隆推儒術。山林抱道之士。蔚然輩出。于時珍原朴公。亦以學行鳴。其諱光前。其字顯哉。其號竹川。其居湖南之寶城。其先曰直提學熙中。事我恭定王顯名。公六代祖也。曾祖胤原。祖衍。考而誼。俱不仕。妣崔氏。習讀命鑒女。公質美而夙悟。詞藻溢發。華譽藹鬱。然公已知有向上事。意殊不屑也。父兄念門衰。勸使赴舉。公不敢違。而私取性理全書。蚤夜研鑽。間游膠庠。所與友必學問士。已束脩退溪先生門。先生一見。

卽心許之。贈詩五章。期勉切至。授以所修朱子書節要。公終身服習。心體而力行之。戊辰。中進士。壬申。用柳眉巖希春薦。拜慶基殿參奉。轉獻陵。奉職惟謹。已除冰庫別提。一謝而歸。時極擇師傅教王子。公膺命。輔導以正。遷監察。出監咸悅縣。還爲掌苑。出懷德縣監。兩邑俱著治化。壬辰倭寇至。列郡瓦解。公方里居。倡募義兵。得七百餘人。以任啓英爲將。而方略皆出於公。任以聞錄勸。除軍資正。公力辭不受。拜世子翊衛司翊衛。亦以老病辭。丁酉寇再逞。衆推公爲義將。應募者雲集。有逋守忌其功。沮撓之。亡何疾卒。是年十一月十八日也。享年七十二。配文氏與公隔月而終。合窆于本郡沙谷之先兆。子根孝縣監。根悌參奉。春秀。春長長出。春豪季出。肅宗朝。多士建祠上聞。特賜額。遣官致祭。公之世遠矣。如不佞陋見。何敢妄論。惟其自奮於孤寒。歸依碩師。克有成就。志氣可謂不羣。而安處士邦俊至以比挈於一齋。高峰諸公間。此可以徵公也歟。銘曰。

貞城倡道。若宋徽婺。公聞而興。早受厥鑄。處夷尚志。當難奮義。有守有爲。儒迂焉比。龍山之廟。沙谷之原。邊儼苾馨。後人攸尊 (□□陶谷集□□ 卷之十八)。

#### 縣監朴公墓碣

退陶門人之賢者。在湖南則有曰朴公光前。字顯哉。竹川其號也。其先出珍原縣。國初有直提學熙中。其子暉。贊于寶城。子孫仍家焉。曾祖胤原生員。祖衍宣敎郎。考而誼進士。公少善文辭。父兄命以科業。而意殊不樂。間取性理全書。潛心玩索。欣若有得。自己卯士禍以來。士大夫諱言道學。公能奮發自立。其志固已卓然。而晚始請業於退陶之門。先生方手抄朱子書。顧語公曰此爲學根基也。臨別贈詩五章。獎勉甚至。隆慶戊辰進士。柳眉巖希春爲監司。搜訪人才。以公應命。除慶基殿參奉。移獻陵。旣而棄歸。復除冰庫別坐。時國無儲嗣。以輔導王子爲急。公及河洛爲師傅。每講。河務多公務精。上考王子所讀而曰。多則不精。當從朴師傅。秩滿遷監察。出爲咸悅縣監。慈良樂易。民皆親之。公暇詣鄉學。引邑子與講。以事忤方伯罷。後由掌苑爲懷德縣。其決獄訟。不畏權勢。又不苟循上官意。旋罷歸。壬辰之難。同任公啓英倡義兵討賊。及光海以世子監軍南下。公進見。陳時事十餘條。亂定用募粟勞拜軍資正。公蹙然曰無功。敢安其賞。因任公以實自列。遂寢不行。識者義之。除翊衛。一謝而歸。丁酉寇又犯湖徼。鄉人推公爲義將。公曰吾雖老。敢愛一死。室文氏卒於亂中。公疾亦甚。猶能以忠義自勵。軍聲稍振。守宰之鳥獸竄者忌其成功。反沮撓之。未幾卒。時十一月十八日也。壽七十二。葬于同郡沙谷坐艮之原。後贈左承旨。公內行純備。事父母未嘗少違其志。老而執喪愈固。篤於奉先。厚於親族。平居矩度甚嚴。而誠心接物。和氣藹然。無賢不肖。皆不厭焉。其學專務爲己。積之既厚。晦而益章。敎人先以小學。喪祭悉從家禮。蓋一以朱門爲準。而先生嘗授節要一帙。公終身讀誦而不怠。有質疑一冊行

于世。文氏僉使亮之女。男根孝縣監。根悌參奉。孫曰春秀，春長，春豪。曾孫曰震亨，益亨，賁亨，同亨，濟亨，有亨，世亨，蔓亨。婿之顯者判書李光迪。餘不盡載。公沒既百有餘年。其造德淺深。有未易窺測者。而門人敘述。猶可徵信。安牛山邦俊之論湖南名儒。以河西爲首。高峰一齋眉巖及公次之。其言非阿好者。而其稱公則又曰踐履篤實。嗚呼。若公者。豈古所謂可知爲先生弟子者耶。銘曰。

退陶之學。實本朱子。一部節要。乃其宗旨。誰當授者。曰汝爲己。公起且拜。小子無似。積誠單心。庶幾於是。造次顛沛。斃而後已。我考其用。孝有終始。義無後君。忠不惜死。人道之大。要不外此。不負所學。嘻其賢矣。惟公德行。有源有委。我徵牛老。以揚厥美(□□陶菴先生集□□ 卷三十一)。

### 行狀

先生姓朴。諱光前。字顯哉。竹川其號。系出珍原縣。高麗門下侍中，益陽伯，諡忠義諱瞻之後也。至本朝。益陽曾孫藝文館直提學諱熙中。工草隸。名滿皇朝。嘗使日本。能敷信義。大爲恭定大王所器重。以直見。忤於執政河演。退老子珍原縣城上洞。其長子生員諱暉生。娶寶城居宣綾城時中之女。因居郡地。遂爲寶城人。是先生之玄祖也。高祖司醴直長諱文基。曾祖成均生員諱胤原。祖宣教郎諱衍。考成均進士諱而誼。妣儒人崔氏。講隸院習讀命變之女。以嘉靖丙戌正月十六日寅時。生先生。先生生而有美質。醇粹溫柔。自幼遊戲不凡。及年八九歲。已有成人儀度。性又穎悟。時洪相公暹。謫在興陽縣。進士公令先生受業于洪相。先生寓舍。去洪相所居幾十餘里。而先生隆寒盛暑。徒步往來。不廢日課。洪相嘉其篤志。訓誨益勤。又使夫人梳洗。如撫已兒。一日。進士公使先生占一聯。自道字止爲字。先生卽應聲曰。道自天命豈人爲。又使自爲止道。先生卽又應聲曰。爲一大成孔子道。父兄大奇之。及年十餘歲。進士公急於科業。責先生以詞章。先生日課之餘。私取性理大全。潛心探赜。頗有所得。年十三。文理通曉。讀書不賴師友。時去己卯土禍不遠。人人諱言理學。爭尚浮華。先生獨於舉業中。知有爲己之學。玩繹深思。所就日兼進。二十以後。始念悅親之道。無出科名。遂從事科場。於發解無不中。人皆以巨擘許之。肽猶不專意於舉業。與韓胤明討論古義。共榻一年。兀狀端坐。夜分明燭。雞鳴盥洗。相與警責。做鍊工篤。己未夏。與諸友棲于天鳳山。講習之暇。築臺鑿池。以爲藏修遊觀之所。依仙家三清境界。作一別區。升降黜陟。皆有程式。其居常嬉戲。亦不妄雜。皆類此。丙寅冬。始執贊于退溪先生之門。退溪一見。許以相知。時退溪方抄朱子書節要。謂先生曰。立腳根基。專在朱門。許令受業。業旣卒。先生以定省久曠辭歸。臨別。退溪以節要一秩贊之。又贈詩五章曰。

勿爲外人道也。別後。累寄簡牘。以寓戀戀不忘之意。且教以自樹立。不爲流俗所奪。先生亦留心訓誨。潛究節要。老而不衰。嘗有質疑一卷。士多贊行。戊辰秋。中進士第二榜。未唱。聞先妣病重。徑爲南下。躬自湯藥。晝夜不離。及沒。喪葬祭祀。一依家禮。先生自少多疾。人皆危之。既服闋無恙。鄉隣皆以爲誠孝所感。庚午。柳眉巖希春爲監司。自上引見日。本道。士子之窟。卿其搜訪以聞。眉巖到界。先令各邑薦其學行才德之士。進士宣應直等。以先生事親盡孝。居喪盡禮。持身有法錄上。眉巖拔一道之尤五人啓聞。而先生居首。應直等以薦得其人受賞。壬申。除全州慶基殿參奉。殿在州內。後院多花果。娼妓雜類。日夕遊戲。其來已久。先生以爲殿上有先王遺像。不當亵慢。一切禁抑。齋中靜肅。癸酉。除獻陵參奉。前此。邑宰例與參奉。相約田獵。分其所獲。一日。邑宰使人來請。先生曰。陵寢非田獵之所。利之所在。尤不可從也。不許。未幾。棄官而歸。是年秋。進士公病沒。先生執喪。一如戊辰。先生既失雙親。無意於仕宦。誘掖爲己任。嘗見小子。輒勸讀書。以小學爲先。庚辰秋。除東冰庫別坐。遂赴闕肅拜而還。時王子將就學。朝廷以中殿無嗣。擇謹慎純正之人。以責輔導之任。遂薦先生爲師傅。以河洛爲副。河進講務多。先生以精明爲主。上考王子所讀。王子以是告之。上曰。貪讀不明。當從朴師傅講。癸未夏。秩滿。遷拜監察。冬。除咸悅縣監。到縣之後。儉素節用。倉儲盈滿。嘗書視民如傷四大字於壁上。慈祥樂易。民皆親之。公退之暇。躬往學校。與諸生講論經史。先生自少喜怒不形於色。居家。未嘗罪一奴僕。及在官。幸有濫出門外者。嚴杖不貸。衙中肅狀。親戚謂家與縣。有二道也。丙戌秋。監司某惑於營婢。所言皆從。列郡贈賂爭先。時某爲全州府尹。多賂營婢米穀。其事聞于御史。先生與御史相切。監司。府尹。疑先生傳說。遂啓罷。先生卽日治行。計程裹糧。餘無所犯。倉穀元數外。羨餘多至萬餘斛。人以爲無所管攝。似歸於虛。請報監司。以作國儲。先生曰。後倅何敢私用。且近於矜誇。前日梁君子激之赴居昌也。余贐以餞詩曰。要民倡支離。和者循其私。叩馬聳御史。頌德刊雲螭。見此輒泚額。蹙蹙如躬罹。余豈敢忘此語哉。不從。旣歸。高臥故山。怡狀自樂。家用累乏。不以爲念。丁亥。除掌苑。途中又除懷德。爲縣殘弊。用慮營畫。倍於咸悅。有一宗親與村民爭訟奴婢。積年不決。已歷十一官。而又移懷德。前倅亦怯於勢力。故爲延拖。先生閱其文籍。考其情狀。排衆論。決許其民。宗親自恃權勢。構呈憲府。憲府取見文案。曲直顯狀。宗親沮怛而退。又有一女。無後寡婦之婢也。族姪交爭不得者。仗監司之威。名以大惡。必欲殺焉。先生曰。豈畏監司。殺一不辜。累報冤枉。監司激怒。巡到招先生詰責。先生舉其首末。畫地分疏。監司愧服。居縣未幾。見忤於災傷御史禹俊民。罷歸。歲時伏臘。會父老宗族。以邀以遊。多得江湖之趣。又招門族而謀曰。先祖塋域。在水多院山谷。年代已久。子孫疏遠。各豐

于私。力未追遠。草木茂鬱。若更數歲。永無尋處。深可恨也。以書相通。無少長。各備奠具。與之展省。祭畢。移坐于廣灘川上。共飲饅餘。兼以修睦。人人欣慕。異姓之族。亦有來參者。壬辰。倭變猝起。列郡望風奔潰。國勢汲汲。莫保朝夕。先生與任公啓英。倡募鄉兵。得精兵七百餘人。先生以病不行。遂推任爲義將。把截錦、茂、守禦星、開。皆有功。及明兵大來。兇賊退屯嶺南。東宮監軍於完府。先生力疾趨拜。且陳時事之可言者十餘條。東宮嘉納焉。因命本道監司曰。朴某於子。有甘盤之恩。別加優恤。食物題給。留數日辭歸。宣餧以送。甲午。任公以義兵論功。除軍資正。先生曰。虛受國恩。至於三品。心實未安。將欲陳疏。人皆言非但同受賞職之人有所未安。於任公有害。先生令任公上疏自明。而備局寢不舉行。狀識者義之。乙未春。拜翊衛。以老病乞歸。東宮引見。情意懇至。先生拜曰。臣老且死矣。願講學修德。以致玉成之地。東宮惻狀曰。師傅非不多也。始學三年。輔益實多。情意倍它云。及歸。以腹冷。動輒倍痛。常掃一室。讀周易及朱子書節要。小不間撤。晚好琴。常寓懷焉。一家問老何苦也。先生答曰。我自樂此。不爲疲也。丁酉。賊又犯本道。南原陷沒。路塞不通。隱於天鳳山谷間。或云。賊已入京城。大駕不知所在。人心洶懼。至於附賊屠戮者有之。多士等推先生以爲義將。應募者雲集。軍聲稍振。列邑守令投竄山海者。忌其成功。竟沮撓之。誣訴于監司黃慎。慎招先生詰問。往還珍原。未幾病卒。同年十一月十八日也。配淑人文氏。贈戶曹參議行僉使亮之女。性溫柔塞淵。事舅姑以孝。御僮僕以和。親戚則盡其愛。窮乏則極其恤。人皆謂眞先生之配也。不幸與先生相繼隔月而終。兵亂孔棘。趁不能葬。己亥秋。東宮令侍講院。諭本道監司。致賻甚優。合葬于沙谷良坐坤向之原。榮寵極矣。有男二。長根孝。成均進士。因左義兵功。除軍資正。後又除長水縣監。以持服不赴。次根悌。以左義兵功。除軍資參奉。根孝有子二女二。春秀始就學。春長在孩提。一女適前府使崔慶長之子弘有。次女適同郡前府使任百英之孫喜。根悌有子春豪。娶軍資正梁山抗之女。女適石川林億齡之孫曠。次適同郡進士朴弘仁。噫。吾湖南。素號文獻之地自。麗末。至于本朝。以學名世者。唯金河西。奇高峯。李一齋柳眉巖及我先生而已。河西之學問操行。節義文章。卓乎其不可及。高峯之議論明快。一齋之剛毅不屈。眉巖之博識多聞。亦世所罕見。而至論其踐履篤實。則彼三賢。其與我先生未知其孰優。只以名位不逮。世無知者。寧不爲之慨歎。此可爲知者道。難與俗人言者也。噫。先生之世系出處。今因長水公家藏舊草。更加刪潤。略敍其大概。至於言行。則非淺見薄識所能形容其萬一。故廣灘宣丈所著遺事。竝付于下。以俟也日知言之君子云耳。年月日。門人通政大夫。工曹參議安邦俊。謹狀(□□竹川先生文集□□卷之七, 附錄 行狀)。

## 30. 정효성(鄭孝誠)

公清道觀察使鄭公墓碣銘

湖西觀察使鄭公諱孝成。於吾先君契最厚莫逆。先君簡穆罕交遊。方鄭公居親喪。三年哭不絕聲。先君月再三過。歸則必泫然曰。孝哉孝哉。人誰無父母。蓋公之先恭戴公諱陟起晉陽。位脩文殿太學士。傳于承旨諱誠謹。孫博士諱舟臣。曾孫贈參判諱元麟兄弟。逮公四世。竝以孝表閭。而公歿後子若婦用義烈受旌相繼。棹楔櫛比。雖至性實根天品。亦家法脩飭。載籍所無云。公字述初。號休休子。妣南原尹氏。將仕郎正元女。妊身九朔而參判公亡。公既生。尹夫人奉以告靈筵。其夜夢先公來命名。公幼而凝遠。長取重土類。陞己丑上庠。除寢郎不就。朝廷舉才謂。擢懷德縣監，咸興判官，戶曹正郎。至丁未。守朔寧郡。其冬。尹夫人下世。公以鉅孝發聞。事具三綱行實。服闋。歷刑曹正郎，司僕僉正。監恩津縣。及瓜又借一年。公藏充物。道臣言狀。司農取以佐經用。特進秩通政。戊午。廷臣徇光海指。請廢母后。公守死不預庭論。時公長督參判君以內翰觸忌諱。放逐田野。公胥命六歲危辱極矣。而無幾微發於言貌。及聞光海遜位。却食涕泣曰。舊君爲奸兇所誤。聖上撥亂。使舊君得終天年。實盛德事也。公初出爲忠州。入參議地部。丙寅。尹江華府。其明年。上避兵江都。公所以上下責應。周贍有裕。事定。加嘉善階。晉號留守。戊辰。由判決事牧清州。越三年。拜公清道觀察使。陞嘉義。又三年。牧羅州。乙亥秋。參判君按折輔。暴疾不起。公哀傷之。病不損。丙子冬。兵鋒內逼。公遵朝旨入江都。翌年正月。闔島敗而公亦卒。壽七十有八。時烈焰燐廬舍俱盡。獨公所處室幸全。殆默護者存焉。其孫善興奉喪就廣州先塋。葬坐亥原。推丙子從勳。再贈至議政府左贊成。公至行純篤。世無異言。奉先罄其誠敬。展廟不廢風雨。人人所刻意自勵者。在公不待勉而至焉。歷典州藩。臨下以嚴。雖時嬉笑之言。吏咸股慄。毫欺髮隱。無敢萌意。緝治奸盜有方略。境落謐如。然潔手守法。一介絕濡染。人皆敬而慕之。始居郡。吏民或不安其政。及治成令行。乃帖然信服。必立碑紀德。尤能制節省浮費。卽豆區不增而官貯流溢。承代者用之不竭。少治舉子業。嘗魁發解。亦捨去不進取。然喜讀經傳小學朱子書。行身動遵禮法。酒戶甚洪。至數斗不亂。時從親懿樂飲。表裏軒豁。嗟乎何可得也。公凡再娶。元嬪白氏。左尹惟儉之女。無后。繼妣南陽洪氏。郡守義弼之女。婉嫕無違德。公既事偏慈。深愛盡倫。而夫人又佐公爲養。世以尹夫人唯一子而有二孝子之奉云。舉二子一女。長百昌。兵曹參判。次百亨。侍講院弼善。女適通禮金以鏡。參判娶西平府院君韓公浚謙女。生二子一女。長善興。尙衣院正。次善弘。女適府使金震標。弼善娶判書李公時發女。生女適奉事權儒。通禮生三子。禧，祥，祺。善興二子幼。其餘子姓不盡載。公有

庶出子。百崇，百隆。女適金斗漸。銘曰。

鄭氏世孝。其姓不繁。公閔在腹。迓續者天。公侍其慈。婉婉其容。公享于廟。列鼎以供。  
移忠事國。有確其守。藩鉞州符。揚先導後。我瞻其門。朱扁載嫩。過者不式。爾頰有泚  
(□□東州先生文集□□ 卷之十 碣銘)。

## 31. 양응춘(楊應春)

重峯先生文集附錄卷之七

祠院

義徒

幕佐門生同日死節錄

先生子贈持平完基。行狀從玄孫煥撰曰。府君姓趙諱完基。字德恭。白川郡人。始祖諱之遴。  
佐高麗穆顯二宗朝。以左僕射卒。謚恭和。厥後簪組輝赫。九葉連爲侍中。至諱琪。當恭讓朝。  
與鄭圃隱夢周，李牧隱穡。共濟王室。贊揚君德。位至領三司事銀川府院君。逮我朝開國。  
遜于栗原雉岳山中。及卒。謚文忠。是爲府君八代祖。魯祖諱世佑。號黔浦。以趙文正光祖  
門徒。目覩己卯之禍。不赴舉子之業。築室山間。日講經書。祖諱應祉。號坎菴。考重峯先生。  
先生妣寧越辛氏。大提學德齋先生藏之冕孫。通德郎世誠之女。府君以大明穆宗皇帝四年庚  
午夏六月日。生于金浦縣西坎井里第。府君狀貌奇偉。性度超倫。家居素有至行。自幼不逐  
群兒之遊戲。弄玩之具。不近於手。人以大器目之。及壬辰倭寇之日。先生傳檄倡義討賊。  
府君裹足從之。先生曰。汝何勉留。善養吾母。府君曰。父往死所。子何忍不從。遂終始不  
離次。卽鑿西原據城之賊。將赴錦溪之役。先生又止之。府君又不聽。知其兵將敗。先生曰。  
汝兄弟中擔當大事者。惟完堵。完堵頃將捷書。西赴行在。而歸期杳然。然父子俱死。吾母  
疇依。汝可歸保吾母。府君泣而再拜。且對曰。父爲忠臣。子獨不爲忠臣子乎。故華其冠服。  
蘄代其死。賊認爲主將而斫其屍。屍不得收。死時年二十三。娶恭人密陽朴氏贊成事忠簡公  
時庸之後大護軍彪之女。無嗣。府君兒時。自號道谷。萬曆三十二年甲辰。命給復役減租。  
四十三年乙卯。旌表門閭。顯宗四年癸卯。配享于錦山從容祠。十四年祭丑。特贈司憲府持平。  
今上十年甲寅十一月丁亥。配食于沃川表忠祠。…(중략)…

縣監楊應春。字仁卿。號道洞。石城人。主簿忠伯之子。高麗名臣天壽之後也。廉直慷慨。  
壬辰。以懷德縣監丁憂。見先生倡義之檄。墨衰從軍。贈吏曹參議。旌門。恩津人立祠祀之。

贈持平李旺。字絳之。號馬山。咸安人。大諫霖之孫。襄簡公世應曾孫。有文章行誼。豪爽慷慨。居在林川。見先生檄。奮袂而起。進薄清州之賊。勇冠一軍。所向無敵。先生拊背噴舌曰。汝家討紅巾之勇。傳在汝矣。蓋其遠祖芳實。於恭愍王時。與先生八代祖忠顯公天柱討紅巾賊故也。是日大捷。至錦役時。先生枕籍而死。年才踰三十。今上丙辰。(□□贈職旌門重峯先生文集附錄□□ 卷之七，祠院，義徒，幕佐門生同日死節錄。)

## 32. 남경성(南景誠)

黔潤先生文集辰巳日錄，[日錄]，壬辰，[十二月]

○十九日。早發。朝飯于孤峯具德容亭舍。則鄭景任昨夕來宿。時未發行。仍顛打話。助戰將宣義問亦方留陣此地。向晚。偕助戰將赴馬來里。諸陣帥俱會約束。尙州牧使金澥。忠報將金弘敏代以召募官趙翊。善山府使丁景達。助戰將宣義問。尙州判官鄭起龍。尙義將金覺。報恩縣監具惟謹。昌義將李逢代以佐幕趙靖。忠義將李命百。崇義將盧景任。以右九陣爲左衛。以鄭起龍。宣義問。具惟謹爲將以屬之。助防將。永義將。永同縣監韓明胤。黃義將朴以龍。懷義將姜節。青義將南忠元。鎮岑縣監邊好謙。懷德縣監南景誠。黃潤縣監朴夢說。以右七陣爲右衛。以南景誠。朴夢說爲將以屬之。將以今月二十五日。與下道義兵將金汎合勢。謀擊甘文。善山兩邑之賊。此事尙義軍與永義將韓明胤主議也。(□□黔潤先生辰巳日錄□□ 卷之一)

## 33. 노세준(盧世俊)

○司憲府啓曰：“懷德縣監盧世俊。爲人庸劣。目不知書。委政下吏。徵斂無藝。闔境嗷嗷。請命罷職。庭鞫之事。至嚴至重。不可一刻稽緩。而前日罪人安國推鞫時。大臣及禁府堂上。兩司。齊會已久。承旨趁不進參。使叛逆大罪。不卽推鞫。物情駭愕。色承旨遞差。都承旨以一院之長。不能檢察。竝命推考。”答曰：“依啓。承旨竝推考。”(□□宣祖實錄□□ 90卷。宣祖 30年(1597 丁酉) 7月 28日 丁巳)

## 34. 양억(梁翼)

○以元虎智爲司藝。李德溫爲正言。沈諱爲典籍。李策爲軍器僉正。權悟爲監察。金公輝

爲坡州牧使, 高曠爲豐川府使, 洪畯爲昌城府使, 梁嶷爲懷德縣監。(□□宣祖實錄□□ 179卷, 宣祖37年 閏9月 26일 癸卯)

### 35. 유계룡(柳季龍)

① 사간원이 아뢰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계룡(柳季龍)은 고을살이를 삼가지 않아서 절도 없이 거두어들였으며, 형벌을 씀이 잔혹하여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광해군일기□□ 권114, 광해군 9년 4월 4일(무술)).

②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계룡(柳季龍)이 법도 없이 긁어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비록 들은 바가 없으나, 자신을 배반한 노비를 잡아서 너무 잔혹하게 형벌을 가한 데 대해서는 도내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개 수령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봄에 별로 볼 만한 점이 없으며 경내의 백성들이 몹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간이 아뢴 바가 어찌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광해군일기□□ 권114, 광해군 9년 4월 22일(병진))

③ 공홍도 감사가 조사하여 보낸 장계에 대해 전교하였다. <“유계룡(柳季龍)은 파직하라.”> (□□광해군일기□□ 114권, 광해 9년 4월 25일 기미)

### 36. 윤효생(尹孝生)

비변사가 아뢰기를, “회덕(懷德)에 사는 유학 송원조(宋元祚) 등 30명이 연명으로 본사에 정장을 하였는데 ‘현감 윤효생(尹孝生)은 자상하고 청렴하며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였으므로 전 감사가 이미 포장할 것을 장계하였는데, 지금 도적이 달아난 일 때문에 파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쌀 1백 석을 바치겠으니 유임시켜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광해군일기□□ 권131 광해군 10년 8월 17일(계유))

### 37. 심적(沈惕)

송군희갑지요(宋君希甲之墓)

공의 이름은 희갑(希甲)이요, 자는 전하여지지 않으며, 은진(恩津) 사람이다. 조부는 가선 대부(嘉善大夫) 첨사(僉使) 세옥(世勗)이요, 부친은 인의(引儀:예의를 맡아 보던 通禮院의 종육품 벼슬) 수(璲)이다. 동춘선생(同春先生)과 우리 조부 우암선생(尤庵先生)이 그의 높은 재주와 색다른 거동을 특히 칭찬하였고 그의 처지가 한미(寒微)하고 또 요사(夭死)하여 묻여서 일컬어지지 않은 것을 아깝게 여겼다. 그리하여 누차 말씀에도 나타내었고 슬퍼하여 탄식하고 그 묘소에 표를 하려고 여러 일가들과 상의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러 일가 어른 참판공(參判公) 규렴(奎濂)이 여러 일가들로 더불어 두 선생님의 유지를 달성하려 생각하였다. 이미 조그만 비석을 다듬어 나, 주석(疇錫)에게 말씀하기를 ‘이 일은 동춘선생과 그대의 조부 우암선생께서 일찍이 권권(眷眷:간절하게) 생각하여 사모하는 모양)히 여기시던 바니 어찌 한 마디 말을 써서 선세의뜻을 베풀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내가 손을 재고 사항하여 말하기를 ‘문중에 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적을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들은 바에 의하면 대학사(大學士) 남공용익(南公龍翼)이 우리 동방의 시를 모아서 기아(箕雅)라고 명명하고 공의 절구(絕句) 1수를 수록하고 인하여, 공의 평생을 서술하여 말하기를 송희갑(宋希甲)은 역시 쌍청당(雙清堂) 후손인데 측출(側出:서자)이다. 어려서 신동이라고 일컬었고 선풍도골(仙風道骨:신선 같은 풍채와 도인 같은 골력)이라는 말을 들었다.

또 용력이 무리를 뛰어넘어 나이 겨우 이를갈 무렵 쌍청당의 주인 송담공(宋潭公)이 당뒤에 있는 설죽(雪竹:눈이 않은 대)을 가르키면서 운자(韻字)를 부르면서 네가 이에 대하여 시를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말이 떨어지지자마자 “竹夜今朝喪父翁 子孫千百素衣同 晚來鳥雀弔 清淚闌于日下風-대나무가 오늘 아침에 부친 상을 당하니, 자손들이 천이고 백이 모두 소복을 입었구나! 늦게사 새와 참새가 와서 조문하니, 맑은 눈물은 난간에 떨어지고 태양 아랜 바람이 이네”라 하였다.

좀뒤에 권석주(權石洲:權驛의 호, 유명한 시인. 송강의 제자)가 와서 쌍청을 보고 크게 칭찬하고 “넉넉히 나의 의발(衣鉢)을 전할 만하구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테려다 가르쳤다. 희갑(希甲)이 항상 강화도에 있으면서 식량도 운반하고 멜나무도 운반하여 그 근로함이 노복과 같았다. 하루는 석주가 말하기를 “사람이 천하를 널리 보지 못하면 시도 또 국한되고 마느니라. 나는 이미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운 너는 근골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하다. 다만 압록강 이북은 청의 경계가 삼엄하니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길로 숨어서 수로를 만나면 떴다가 잠수하였다가 하여 건너야만 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또 수영을 익혀라.” 희갑이 듣고 용약(踊躍)하여 기뻐하여 매일 앞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기를 오리처럼 하였다. 그러나 바닷물이 짜서 기혈이 삭아 창백하게 되어 병을 얻어 드디어 요사하게 되었다. 이는 사람들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희갑(希甲)이 산에 놀기를 좋아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도보로 가서 삶살이 다훑어 보았다. 일찍이 속리산에 놀았는데 조그만 암자가 절벽에 임하여 있었다. 희갑(希甲)이 뭄을 날리어 기와에 의지하여 한 손으로 연목(椽木)을 붙잡고 한 손으로 봇을 쥐고 성명을 적어 놓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마치 나는 신선 같았다. 지금도 노승들이 말하고 있다. 아! 이는 족히 없어지지 않은 군이여, 어찌 저의 사족(蛇足)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라 하였다.

군이 만력(萬曆) 갑진(甲辰: 1584)에 출생하였다. 스스로 신분상 결합으로 공부에도 지장이 있었고 또 2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다. 22세에 하세하였으니 묘소는 회덕현 남쪽 5리 지점인 허수평(虛受坪) 곤향의 언덕에 있다. 심후척(沈侯暢: 후는 군수 또는 방백의 칭호)은 공과 동문이다. 일찍이 이 고을에 현감으로 왔을 때 제문을 지어 그 묘에 제사 지냈다.

이후로는 다시는 한 사람도 술 한잔 따라 놓는 사람이 없었다. 묘도 허물어져서 다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아! 한 조각 짧은 비석으로 백세에 이름을 펴뜨리니 후세의 사람들이여! 그 무덤 밟지 말지니라.

종인(宗人) 통운대부(通訓大夫) 전행홍문관교리(前行弘文館校理)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송주석(宋疇錫)은 짓다.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남평현감(行南平縣監) 송병익(宋炳翼)은 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64년 신미(辛未: 1691) 월 일에 세우다(宋恪憲譯)  
(□□대전금석문(大田金石文□□,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534-539)

○ 吏曹啓曰：“廢朝十餘年間，賊臣當朝，群兇布列，曾仕於宣廟朝清明之時者，皆見擯棄，存者無幾。今當蕩滌邪穢，以清仕路，而舊人殆盡，賢士之在下者，拘於格例，本曹不敢注擬，許多窠闕，無以填差。竊念，癸丑以後，有志之人，憤惋時事，或抗章力爭，投竄遐裔；或不樂進取，退伏田園者不少。此人等，其志與守，實爲可尚，誠得拔而用之，不患乏人。善類登庸，爲益不細。癸丑以後，上疏直言之士及潔身自守之人，搜訪書啓，六品敍用，隨闕注擬，以廣用人之路，允爲便益。”上從之。吏曹，以直言被罪儒生趙慶起、李安眞、鄭復亨、權澮、金孝誠、洪茂績，有學行儒生成文濬、柳袗、金集、洪百順、朴應善、姜鶴年、趙絅、金嶽、李有謙、李有養、許暉、趙恭立、沈暉、李榮元、趙亨生、金堉、朴知讓等啓請。竝擢拜六品職。(□□仁祖實錄□□ 1卷, 仁祖 1年(1623 癸亥) 3年) 4月 8일 丁卯)

## 38. 노희천(盧希天)

○ 吏批, …(중략)…, 盧希天爲奉正大夫行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인조 4년 (1626) 7월 18일 (무자))

○ 下直, 林川郡守李敏求 懷德縣監盧希天。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8월 12일(신해))

○ 府啓, 請全羅兵使朴瑞寵職事。請扈從蔭官賞加, 及參下超出六品者改正事。懷德縣監盧希天, 爲人泛濫, 今因處女揀擇, 率其女上來, 至出四十匹刷馬, 或捧木疋於民, 民稱乾刷馬, 請命罷職。答曰, 不允。盧希天事, 風聞, 未必盡實, 更爲詳聞論之, 可也。以上朝報。 (□□승정원일기□□ 인조 5년(1627) 7월 24일 (무자))

○ 府前啓, 請扈從蔭官賞加, 及參下超出六品者改正事。請懷德縣監盧希天罷職事。答曰, 不允。 (□□승정원일기□□ 인조 5년(1627) 7월 25일 (기축))

○ 府前啓, 請扈從蔭官賞加, 及參下超出六品者改正事。請懷德縣監盧希天罷職事。新啓, 新經亂離, 閭里愁歎, 請發遣暗行御使, 以察吏治能否·民間疾苦。答曰, 依啓。賞加改正事, 不允。以上朝報((□□승정원일기□□ 인조 5년(1627) 7월 26일 (경인)))

## 39. 유면종(兪勉曾)

杞溪兪勉曾尙魯 乙亥十月念日/懷德縣監 (□□尋院錄□□/忠賢書院)

## 40. 지봉수(池鳳遂)

○ 甲寅/憲府啓曰: “新授懷德縣監池鳳遂、金化縣監李震行, 曾在丙子之亂, 以廟社官員, 有不謹陪奉之罪, 無一事可紀之功, 而得免譴罰, 反蒙超秩, 人言藉藉, 至今未已。不料今者, 有此特除之命, 物情尤以爲未妥。請竝遞差。” 答曰: “其時侍衛以來者, 只此兩人, 故予甚嘉之。特除守令, 未爲不可也。” (□□仁祖實錄□□ 37卷, 仁祖 16年(1638 戊寅) 12月 26日 甲寅)

○ 執義朴啓榮, 掌 …(중략)…。新除授懷德縣監池鳳遂, 金化縣監李震行等, 曾在丙子之亂,

以廟社陪奉官員，有汚穢之罪，無可紀之勞，幸免譴罰，反加超秩，人言藉藉，至今猶激，而天聽愈邈，一向曲貸，臣等之惑滋甚焉。若使鳳遂等，不致廟貌污穢之慘，少有侍衛周旋之功，則殿下雖寵而超秩特除，而臣庶聽之無疑議，兩人受賞無愧色，殿下固得以專之矣。今此二臣，徒以跋涉之行，得蒙侍衛之任，既逭罪責，疊承恩典，則豈所以當於公議礪世勸善之意乎？夫上有無功之授，則下多不勸之嫌，故古之人，深藏弊袴，必待有功，況此百里之重，豈特嘵笑之微哉？除目之下，物議甚譁，刻印鎖印，漢祖美事，今日可法，莫大於此，請勿留難，亟命。本月二十九日，永寧殿春享大祭受誓戒時，薦俎官實預差，皆不進參，事極駭愕。請當該薦俎官實預差，亟命推考。答曰，依啓。池鳳遂等事不允。（□□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1월 3일 (신유))

○ (전략)…。新除授懷德縣監池鳳遂，金化縣監李震行等，曾在丙子之變，以廟社陪奉官員，有汚穢之罪，無可紀之勞，幸免譴罰，反加增秩，人言藉藉，至今猶激，而天聽愈邈。以下一文缺(□□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1월 4일 (임술))

○ 正言李禕啓曰，…(중략)…。懷德縣監池鳳遂，亦於其時，以宗廟奉事，陪奉以來，則其跨人裹物，不敢不謹之罪，與震行無異。請竝命拿鞫定罪。答曰，依啓。(□□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3월 19일 (병자))

○ 大司憲金壽賢，掌令崔繼勳，持平朴守文啓曰，金化縣監李震行，曾爲社稷參奉時，陪奉社主，自江都還也，不敢不謹之罪，已不可言，而及其臺論追發也。將跨人裹物兩件事，自上下問，則震行，以尹昉五寸姪，不避其嫌疑。擔當發明，指天爲誓，而至于今日，實狀昭著，其負國罔上之罪，不可不痛懲。懷德縣監池鳳遂，曾爲宗廟奉事時，陪奉廟主，自江都還也，不敢不謹之罪，與李震行無異，請竝命拿鞫定罪。答曰，依啓。(□□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3월 19일 (병자))

## 41. 조송년(趙松年)

○ 吏批，…(중략)…；趙松年爲懷德縣監，…(중략)…。吏曹贍錄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4월 4일 (신묘))

○ 行大司諫李明漢，正言李哲·李行源啓曰，…(중략)…。懷德縣監趙松年，以先賢之裔，朝廷既授字牧之任，則所當十分畏慎，而到任之後，恣行貪虐，多定束伍，受布還減，平和民間，勒令

納米，聽訟之際，公然受賂，其他醉酖淫虐之事，不一而足，傳聞騰播，莫不駭憤，請命罷職不敍。  
答曰，依啓。黃灘遞差。(□□승정원일기□□ 인조 19년(1641) 5월 17일 (신묘))

- 己卯季冬 二十六日 趙松年，懷德縣監(忠賢書院 □□尋院錄□□)

## 42. 장귀한(張歸漢)

- (전략)…，張歸漢爲懷德縣監，…(하략)。(□□승정원일기□□ 인조 19년(1641) 5월 20일 (갑오))。
- 下直,…(중략)…，懷德縣監張歸漢。(□□승정원일기□□ 인조 19년(1641) 6월 11일 (을묘))

## 43. 안경심(安景深)

○ 吏批啓曰：“戶曹應辦色正、佐郎各一員，當爲差出。臣挺與館伴官李爾瞻同議，則鄭鑑、安景深最爲勤幹，可合此任。而但安景深前爲懷德縣監時，解由未出云，何以爲之？敢稟。”傳曰：“未解由人除職似難，非徒勤幹，必擇清謹者，以授此任。”(□□光海君日記□□ 82卷, 6年(1614 甲寅) 9月 14日 癸亥)

## 44. 조장우(曹昌宇)

○ 有政。吏批，…(중략)…，曹昌宇爲懷德縣監，李三俊爲成均直講。(□□승정원일기□□ 인조 23년(1645) 11월 23일 (신미))

## 45. 김향(金嚮)

- (전략)…，金嚮爲懷德縣監，…(하략)。(□□승정원일기□□ 인조 26년(1648) 12월 19일 (기유))

## 46. 김자희(金自晦)

○ 有政。吏批, …(중략)…, 金自晦爲懷德縣監, …(중략)…, 吏批, 政事。(□□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1649) 12월 26일 (경술))

## 47. 박린(朴麟)

○ 吏曹啓目, 粘連洪清右道暗行御史書啓云云。…(중략)… 懷德縣監朴麟, 公山縣監李泰淵,  
鎮岑縣監成玗, 燕岐縣監李復一, 林川郡守李雲裁, 石城縣監吳挺垣, 扶餘縣監李浚等, 政績各  
有優劣, 而其中公山縣監李泰淵, 治效最著, 民歌來暮, 合有褒獎之典, 係于恩命, 伏惟上裁。  
瑞山郡守李有昌, 溫陽郡守徐弘履, 到任日淺, 姑勿舉論, 扶餘縣監李浚段, 政尚嚴明, 而衙中  
貿易, 民多怨言, 罷黜, 何如? 啓依允。李泰淵乙良, 表裏一襲賜給…(중략)…。 啓依允。(□□승정원  
일기□□ 효종 즉위년(1649) 12월 28일 (임자))

## 48. 조옥(趙沃)

○ 下直守令, 鐵原府使許穡, 懷德縣監趙沃…(하략)。(□□승정원일기□□ 효종 2년(1651) 7월 9일  
(갑신))

### 佐郎趙侯墓誌銘

記昔丙申冬。趙侯七而。與同鄉諸老。共修七十禊會。屬余作序以張大之。余備述其承繼先  
武之盛。以寓歆艷之意。後三歲己亥。侯棄世。侯之胤揆輔。銜哀抱狀。叩余於樓巖之江舍而  
請曰。前既序吾先人壽禊之會。今不肖不幸遭大故。敢乞誌墓之文。子烏得無情。余屢辭不獲。  
遂感而爲之敍曰。侯諱義耘。七而其字也。豐壤之趙。以麗朝開國功臣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  
事孟。爲鼻祖。入我朝。世襲冠冕。至吏曹參判益貞。罹戊午史禍。左遷而卒。後贈禮曹判書。  
謚恭肅。策翊戴勳。封漢平君。至諱宗敬。弘文館典翰贈都承旨。嘗疏斥金安老。雅望重一時。  
號獨菴。有詩集。寔侯高祖。曾祖諱廷樞。成均館司藝贈禮曹參判。豐原君。祖諱守彝。蔭補  
殿郎。壽職嘉善。封漢豐君。考諱沃。懷德縣監。壽秩資憲。伯氏止齋公瀨。當光海朝。抗疏

扶倫。時公年纔弱冠。奮然有同事意。止齋公以親老。兄弟不可同禍不許。及止齋受刑被竄。公奉親歸養鄉廬。妣淑人安東權氏。判官悌之女。陽村之後也。崇禎辛巳八月初九日生侯。十二歲。隨先公之任懷德。詣尤庵宋先生門下請業。及長往來從事。亦嘗出入於同春宋先生之門。戊戌。丁內憂。喪禮一遵禮制。丁巳。中司馬。自後重嬰奇疾。己未。先公易簷于漢城宗家。時侯在鄉廬。疾勢危劇。未卽奔喪。以是終身痛恨。遂廢舉業。己卯。筮仕。爲社稷參奉。庚辰冬。換璿源殿。辛巳。移陞廣興奉事。壬午。陞司礮直長。癸未。陞典獄主簿。尋移禮賓寺。甲申。移司僕寺。又移工曹佐郎。凡所莅。祿俸之外。不以絲毫自累。同僚無不敬憚。秋出除連山縣監。廢置利害專心撫摩。科外徵斂。一切蠲除。獄訟聽斷。不撓私囑。乙酉。有啓下大訟。侯當查官之任。守正不屈。忤方伯。竟遭遞罷而不悔。歸居于忠州舊莊。構數椽屋。爲終焉計。揭其堂額曰百宜。與仲氏處耘。時同壽禊諸老。爲眞率會。其晚年。優閑之樂。人皆艷之。己亥十一月二十七日考終。壽七十九。葬于忠州高柞洞嘉羅山辛坐之原。與宜人李氏。同塋異穴。侯性聰悟。長身美髯。儒雅慈善。夙遊大賢之門。不以學問自處。而孝友之行。出於天賦。奉先追遠之節。必盡其誠。大小宗祀。雖非自主。而必殫心助供。至老不懈。至於內外族黨。無論疏昵。敦睦周恤。平日景慕其伯父止齋公。族叔滄江公之居家遺範。爲之準則。言語莊重。一出眞實。好善嫉惡。裏襍無間。見人之善。稱美如不及。或有作非。規責不少撓。從宦六七年。迹不到權要之門。常曰。士之任職居官。無愧此心可也。嘗往候尤庵先生於長鬢謫所也。先生贈一絕曰。朔風吹雪急。之子遠來尋。沈吟還別去。相贈歲寒心。其期待之重如此。余與侯同居一鄉。而各在一隅。嚮往之誠。非不深矣。而俱以老病。不得源源相從於講廁之場。恒以爲恨。豈料子先觀化。遺我以徵後之重乎。悲夫。侯前配李氏。宗室中山君演之女。成宗大王五代孫也。生於庚辰。終於己酉四月十二日。有女一人。適士人李衡佐。繼配茂州金氏。通德郎應望之女。禮賓寺正德瑜之曾孫也。有婦德。事夫子助先祀。極其誠敬。每當前配忌日。親自具饌。殫心潔淨。又前期行素。或問其故則曰。我不知禮意何如。我爲此家婦。家衆皆行素。我獨常食。豈安於心乎。只此一事。亦槩其平日懿行之出常矣。終於癸巳二月十四日。距其生己丑。得年六十五。祔葬侯墓。子孫錄缺。銘曰。姿稟既美。早服師訓。志在求道。心絕媒進。晚仕爲貧。惟職是殫。寵官歸家。田不添畝。周窮恤乏。不翅飢渴。任眞尚質。推以接物。子諒厚德。可敦薄俗。銘以納壙。有來必式 (□□丈巖先生集□□ 卷之十三, 墓誌銘, 佐郎趙侯墓誌銘)。

## 49. 유지화(柳志和)

○ (전략)…, 柳志和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효종 4년(1653) 10월 0일 (-))

### 縣監柳侯墓表

余幼時聞長老言。有柳侯志和按吾邑。土民服其簡。既去而碑之。至今數十年。荒墟一片石。猶可識認其姓名。而余固不知柳侯爲何如人也。一日。有踵門謁余者。揖而進之。卽柳侯之子新也。叙數語袖狀。起而曰。吾父之沒而葬也餘二紀。墓道尙無文。吾兄翊、靖、端。皆先吾死。今吾亦老矣。大懼死在朝夕。含恨無窮。聞子職太史。論譏人事行表於世。抑其事也。願得一言以不朽吾父。其言質而其意甚悲。余不獲終辭。遂按其狀。則侯字後聖。晉州人。麗朝密直提學彥琛之後。曾祖別坐埠。祖僉知喜春。父主簿光復。妣南陽洪氏。承旨致祥女。以萬曆己亥生。侯性孝。幼失怙恃。執喪如成人。廬墓致哀。及長。事繼母。人無間言。朝廷嘉其行。癸酉。薦授昌陵參奉。遷繕工奉事。尚衣主簿。丙子虜警。扈入南漢。已出監通津。安集流亡。民忘其燹。坐微文謫去。蒙宥叙復主軍資簿。  
拜報恩，懷德二縣。報則未赴。懷政視通益清。卽吾邑也。自是退歸鄉里。不復求進。今上庚申。追錄侯扈駕勞。特陞通政階。命下。侯已卒。墓在連山治東亥向之原。配羅州羅氏。  
參奉汝紀之女。事君子無違德。後十二年沒而祔焉。女二。適進士南宮。主簿趙邦安。翊男仁栽。仁培。女金世行。韓柱。金致堯。靖男仁茂。仁居。仁夏。女閔以鼎。僉知趙夏鼎。端男仁恒。女全潛。新之男女。仁蔓。仁根。仁成。郭茂績。洪周錫。鄭萬容也。余於侯。聞其名而昧其實久矣。今以其言與狀徵之。亦約略可知矣。蓋侯孝於親廉於吏。以自食于躬而優遊。晚暮享清閒之福。身無咎譽。壽登大耋。庶幾所謂寬樂令終者焉。又其子姓繩繩。守先業不替。天所以報其善如此。而新之拔貧樹表。以圖永久。亦可謂能子。是皆足以書也。顧余言不能不朽人。其傳於後也。與邑人之碑。果孰短孰長也耶。姑識之。俾刻諸石。(□□玉吾齋集□□ 卷之十四， 墓表 縣監柳侯墓表)

## 50. 김단(金湍)

○ 有政。吏批。…(중략)…, 金湍爲懷德縣監, …(중략)…。已上朝報政事。 (□□승정원일기□□  
효종 7년(1656) 1월 16일 (을미))

○ 忠清監司書目, 懷德縣監金湍罷黜事。 (□□승정원일기□□ 효종 7년(1656) 10월 19일 (계사))

金新寧 湏 挽 辛亥

雨述分憂日。丙申。公監懷德縣。未幾。忤按使罷。雨述卽懷之古號。延英辨奏時。丁酉。先大王召對便殿。余以講官入侍。語及守令黜陟事。爲陳公治理清謹見罷甚冤之狀。前時按使。適同入侍。愧謝不已。仁恩婦孺頌。清德聖明知。往事渾如夢。浮生祗可悲。天南一掬淚。重爲善人垂。(□□春堂先生文集□□ 卷之二十四, 詩)

## 51. 박명우(朴明宇)

○ 有政。…(중략)…, 朴明宇爲懷德縣監, …(중략)…。政事。(□□승정원일기□□ 효종 7년 (1656) 10월 21일 (을미))

## 52. 심강(沈樞)

“심강(沈樞) 거사비(去思碑)가 있다.”(□□회덕읍지□□ 「명관」).

典簿權公墓表

公諱訖。字无妄。安東人。高麗太師幸之後。吏曹判書克禮之孫。考諱得已。爲季父繕工監役贈左承旨諱克寬後。光海時擢魁科。拜禮曹佐郎。卽遜跡不仕。號晚悔。贈吏曹參判。妣贈貞夫人李氏。宗室龜城君諱瞻之女。公以萬曆庚子六月十一日生。年五十七。始筮仕。爲童蒙分教官。俄補實內職。歷尙衣別提, 司贍主簿, 宗廟令, 儀賓都事, 宗親府典簿。外職調長水縣監, 松羅察訪。癸丑三月十九日。卒于驛館。是年五月二十八日。葬于廣州素谷里先山直丙之原。壽七十四。公愿謹敦確。有至性。七歲遭貞夫人喪。哭擗如成人。稍長。若值生日。不御酒食。嘗頗耽嬉戲。晚悔公有深憂語。公立變舊習。不復有子弟過。旣省事。昏定晨省必以禮。出必以期返不差。得美味。雖遠必致之。不先嘗。其侍疾。晝夜不解衣。出輒號泣祈天。其丁憂。凡事一遵遺旨。卜葬得二處。輒爲人所梗。親黨咸欲理于官。公泣曰。先君平日未嘗與人較。今欲奉體魄。而尚可訟乎。遂改卜他所。啜粥終三年。柴毀

僅全。平居整衣冠。端坐終日。廳廬屢空。處之晏如。惟訓誨後生。孜孜忘疲。雖稚蒙甚。至誠導掖。期於有成。所在子弟。皆歸焉。或有移家就近者。其教以勿欺心爲主。以孝經小學爲本。次及四子五經。循循有序。自口讀從公學。以至知名者甚多。當官。秋毫不以私撓法。不循舊襲謬。其爲長水。廉約自持。蠲除民役。而不使民知。曰。吾恤民隱而已。其知不知何關。邑俗舊樸鹵。公擇置訓長。躬勸課不怠。朞年。一境從化。遇人無親疏。一以憫惄。雖下賤至愚。莫不諄諄教戒。導之以善。或言其無益。則曰。人性本善。若祛其蒙蔽。這是一般人也。其與人爲善之意類如此。若公可謂篤行厚德君子矣。蓋晚悔公嘗戒公曰。吾不願汝及第做官。但願作善人。又曰。所謂善者。無他法。只是一箇是字而已。公之教人。每曰。爾等一步一言。不忘爾親。則可以爲善人矣。於此。可見公家傳之學。躬修之方矣。恭人原州邊氏。處士好誼之女。有淑德。先公十年卒。葬同塋。有二男憲。恃業儒。六女適宗室綾安守儀。土人黃羽漢。縣監李得然。土人李尙郁。主簿李留。生員李奎錫。憲男以銖。恃男以錫。餘幼。綾安男。進士昌蕃。壻縣監沈樞。武科鄭泰國。黃羽漢男權。杜。壻李遠紀。朴洪。生員李澆。李得然男。埈。垍。李尙郁男。益慶。壻崔德英。李留男。泰鎮。餘幼。以銖男。舜徵。禹徵。商徵。周徵。餘不盡載。噫。自世教衰。士惟言語文詞是尚。公乃用力於內。與時俗異趣。孰復知其可貴哉。余嘗以童子。登公門。表公之墓。不可以文爲。謹與同門之士。略敍其平日所識于心者。爲記(□□睡谷先生集□□ 卷之十二。墓表。典簿權公墓表)。

### 53. 유성오(柳誠吾)

- 謝恩。司諫趙龜錫。懷德縣監柳誠吾。(□□승정원일기□□ 현종 원년(1660) 11월 7일 (무오))
- 下直。懷德縣監柳誠吾。瓮津縣令李廷。(□□승정원일기□□ 현종 원년(1660) 11월 22일 (계유))
- 元萬石啓曰。頃日榻前陳啓。守令陞資官敎及表裏。勿送政院。吏曹書吏。送于本道監司。使之傳給事定奪矣。今此御史褒啓善治茂長縣監鄭始大。扶餘縣監朴由常。懷德縣監柳誠吾。…(中략)…。大表裏。當爲都送于各其道。數字缺使之分傳。慶尙·全南·忠清三道監司處。以此意四字缺府使俞綰。昌寧縣監金尙重。既已遞來。五字缺。何如? 傳曰。允。(□□승정원일기□□ 현종 2년(1661) 7월 19일 (병인))
- 忠公監司書目。懷德縣監柳誠吾。今月初六日父在喪事。牙山縣監李挺岳。今月初九日父在喪事。(□□승정원일기□□ 현종 2년(1661) 9월 18일 (갑오))

## 贈左參贊柳公墓碣銘

高麗氏初基。文化柳大丞車達大顯。自後凡以柳爲氏者。皆本於大丞。有諱寬。本朝右議政。號夏亭。公其八世孫也。諱誠吾。字近夫。公寬裕朴素。外若無能。而內實辨哲。居家與官。惟理之視。事所後考縣監公諱渢。妣洪氏。情禮無闕。所生考判官公諱浚沒時。公年已衰。而持制不怠。妣李氏前卒壯歲。益可觀其愛焉。及其爲官。惟奉法愛人是務。民愛之如父母。負訟者亦退無一言而厭於心。故觀察使李公泰淵一以人所難蔽者委之。御史呂公聖齊褒以其政專在蠲役。盡誠賑饑。頌譽無異口。而同春宋公浚吉至聞於筵席。上嘗賜品服以寵之。德山時。給倭縞鶴。以後期當免。民老少男女畢出。至齋沐禱神。奔走畢羅。竟得無事。在燕岐。飢民襁屬。日以千數。其疾疫者。雖夜必問其死生。以故無不感動。時朝家以民之立碑。多出於諛而禁之。燕民不敢違。則磨崖而紀公惠。後聞公訃。相聚其下。三日哭奠焉。公嘗惟曰。庶人在官者。古有常祿。後世無是。而欲其無邪私難矣。故到官。必爲之制其產而嚴禁其舞弄要索。民亦賴之。公少績文。中癸酉進士。旣屢舉不第。則歎曰。白首場屋恥也。不復赴公車。三爲寢郎。一爲督郵。而內資奉事。典設別檢。皆其所歷也。公以賢能。久困於調遷。朝廷嘗錄夏亭公清白。超陞公六品職。在內爲翊衛司衛率。刑曹佐郎。外則德山。懷德。和順也。末爲燕岐。則又不欲屈首吏役。卽歸廣州之栗峴里。公治績既著。朝廷將畀以大州牧。崇禎甲寅五月十二日。卒于京第。春秋六十七。葬于陽川東面坤坐艮向之原。祖諱夢翼僉正。曾祖諱用恭監察。後以子尙運貴。贈公議政府左參贊。夫人朴氏封贈視公命。夫人考錦溪君東亮。宣廟朝名臣。夫人婦德克備。三男。長卽尙運。今平安道觀察使。尙載文科翰林。尙輿夭。女適別坐申暹。次適李徵善。觀察生鳳瑞。鳳輝。鳳逸。鳳協。鳳采。翰林生鳳廷。鳳齡。申別坐男志華。處華。夢華。李徵善有繼子德邵。余懷德人。懷實公之桐鄉。而余偏受習池好。今觀察奉玄石朴公世采狀。以幣請銘。余與邑人久碑於口。不但以石而已。奚敢辭。公之善行。不可勝紀。而有一羽觀鳳者。公有駿馬。隣人以善價鬻之。纔數日而斃。卽盡以其價還之。此古人之或難者。其所存心如此。宜其無往而不善也。銘曰。

事修於家。職得於官。何必今人。在古亦難。而終下僚。君子攸歎。遂尙後人。以佐興運。是謂天定。勉哉嗣訓 (□□宋子大全□□ 卷一百八十)。

## 刑曹佐郎贈戶曹參判柳公行狀

公諱誠吾字近夫。文化人。有諱車達佐麗祖有功。官至大丞。其鼻祖也。八世祖諱寬。入我朝左議政號夏亭。以廉白著名。自是世載清顯。曾祖諱用恭監察。祖諱夢翼僉正。考諱

涇縣監。質厚材良。人目以長德君子。晚登文科。值昏朝政亂。退處鄉園。仁祖反正。爲養得海南縣。蒞任數月。一境父母之。俄卒于官。妣羅州朴氏。都正應寅之女。繼妣南陽洪氏。郡守龜祥之女。無子。公遂以第幾弟判官諱浚之伯子爲之後焉。以萬曆戊申六月六日生。天啓癸亥丁縣監公憂。崇禎癸酉中司馬試。明年除慶基殿參奉。丙子移拜昌陵參奉。虜亂作。奉親避兵于湖南。甲申復除章陵參奉。丙戌陞內資寺奉事。未幾忤權貴罷。明年除典設司別檢。戊子丁洪夫人憂。壬辰除青巖察訪。遭生母李氏喪。丙申復除典設別坐。旋以夏亭公遺蔭陞六品。除翊衛司衛率。明年除德山縣監。己亥坐事罷。庚子由刑曹佐郎出爲懷德縣監。繡衣以治績聞。命賜表裏而以獎之。辛丑遭判官公喪。甲辰除和順縣監。秩滿而歸。明年拜燕岐縣監。癸丑棄官寓于廣州栗峴里。爲終老計。至甲寅春得疾。昇歸崇禮門外舊第以卒。時五月十二日也。以其年七月七日葬于陽川東面坤坐艮向之原。公素性寬裕。濟以嚴重。廉約。平居談笑。與人款曲。若無甚異於人者。及其臨政裁處。一切視事理民情以爲準。未嘗有偏私撓貸也。始任章陵。守卒懷惠。爲立石頌之。其在德山。自奉甚約。廚供之外。雖服御微細。不以官物相浼。終始不役一工。朔望例納亦多委積。則遂盡蠲之。御下愈嚴。使不敢一跡村閭。而曰吏隸長在公門。又無常俸。將何以禁其侵暴小民乎。乃命於農時。分番立役。得業畎畝。吏更便之。李方伯泰淵聞公治。以他訟之難決者歸焉。公爲立折之。人亦不冤。時朝廷例送縞色鶴日本。德在當捕中。設網而無所獲。法且坐罷。於是邑民老儒男婦俱齋沐出捕。乃能兼程及期。其得於民如此。及歸行李蕭然。惟衾枕書籍而已。民聚觀無不歎息泣下。至有失聲者。在懷德適值歲歉。餓莩相望。公至誠救活。捐俸以給之。且下令五家爲一統。其係飢民之不能自達。與奸宄之竊發者。皆使統長訪問糾察。以時告官。俾無所闕。聞者多之。至於同春堂宋公入朝侍講。遂以此法甚便於民白上云。在和順。邑有冶爐山。田歲納稅工戶二曹。本邑所徵又倍之。民將不堪。比公下車。詮知其故。遂定恒式。納京司者不復納官。第以餘數從輕收稅焉。在燕岐。歲又大侵。流民至者襁屬日以千數。公終日坐衙待而哺之。其疾病者投藥而救之。死者葬之。若民之土著不願就糜者。計口而食之。如是半年。所以憂恤惻怛之意。形於辭氣。雖夜深必問某人將死。其病今如何。由此傍人爲之感動。所全活甚衆。及棄歸。邑民咸曰。朝家雖禁立碑。不於我侯而頌德。其誰爲之。遂磨崖石而刻之。及聞公歿。又聚石下設奠三日。號慕甚哀焉。公之爲治。大抵約己便民。不撓法不興事。一心奉職。久而靡懈。呂御使聖齊嘗有褒啓曰。衙眷既少。自奉甚簡。治聲籍籍。聞於四隣。其政專在便民蠲役。至於賑恤。盡誠爲之。闔境稱譽。如出一口。殆所謂實錄也。時吏部已擬州牧。而言路持之。竟使止於監縣。蓋公內不識權貴門牆。外不爲訊饋要結之計。孤立無助。遂至孝廟。聖旨闕而不行。識者歎之。然常曰。

吾以清白後裔。濫叨國恩。自得一命以來。唯以無忝先祖自厲。官如是亦足矣。又曰士不可以白首赴圍。五十以後則當廢科。且尤不可以無事竊祿。筋力不逮則當休官。卒皆如其言。少居外艱。已以善喪稱。事洪夫人數十年。情禮兩至。及與二弟昌吾，亨吾。守判官公廬。時將耆艾。能以禮制自持。奠哭之餘。與客語未嘗見齒。以及他事。服闋析產。悉推與弟姪爲生。唯占一老僕數畝薄田焉。平生不喜爲家人生產。舊業頗饒。而匱乏與貧者等。其在官。莊收僮使。一任宗黨之所取資。迨其解綏。而猶不免屢空。然亦終不改度也。辛丑在鄉。會歲荐凶。家奴以役煩爲慮。謀諸邑吏。遂以田之免蓄者混入於蠲役。公怒重笞其奴。吏大恐從實改錄。隣族服之。亦不敢有欺。偶蓄一健馬。里人買以重價。數日而死。公乃盡歸其價。其所以行之一家者又如此。配羅州朴氏。右參贊錦溪君東亮之女。性慈惠爽朗。事公甚謹。侍姑夫人終無私藏。賙恤窮族。雖值家用告罄之際。未嘗少斂。絕嫋飾屏奢華。出言制事。多有男子所難能者。生於萬曆丁未。先公十九年卒。葬與公同原異塋。後公以子尙運貴贈戶曹參判同知義禁府事。朴氏之贈亦視公焉。有三男二女。男長卽尙運文科江界府使。次尙載進士。次尙輿早夭。女長適申暹別坐。次適李徵善。尙運生五男二女。男鳳瑞，鳳輝，鳳徵，鳳岳，鳳彩。女幼。尙載生一男二女。男鳳庭。女幼。申暹生三男。志華，處華，夢華。李徵善早歿無子。側室有一男三女。公於世采姑夫也。家又俱在城南。自我少壯。承誨周旋。固非一日。其違拜久者。惟公在官時爲然。洎自燕歸。竊謂從此數得候公於田里。以畢舊義。孰謂世采方滯秋曹。而公已遽歿耶。今尙運以善狀見屬。俯仰疇昔。奚啻一涕。顧此神耗筆澁。不能有發於公。是爲私媿。惟冀當世之任述作者。特加財察焉 (□□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 卷第十六)。

## 54. °|수익(李壽翼)

○ 謝恩, …(중략)..., 懷德縣監李壽翼…(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2년(1661) 9월 22일 (무술))

○ 下直, 懷德縣監李壽翼, 橫城縣監俞榮. (□□승정원일기□□ 현종 2년(1661) 10월 16일 (임술))

雪汀李公行狀

本貫。慶尙道慶州府。

曾祖殷臣。義興衛司果。妣草溪鄭氏。

祖興。桃源道察訪。妣東萊鄭氏。

考天一。折衝將軍副司果。贈兵曹判書。妣貞夫人南陽洪氏。

公諱忼。字尙中。…(중략)…夫人。翼成公喜之七代孫。判尹孟獻之曾孫。護軍協之孫。秉節校尉禮元之女也。夫人恭遜潔直。言語之聲。常不出戶。校尉公愛之。二十。擇對以歸于公。常執婦道。事公甚謹。遭亂家敗。夫人拔貧成業。皆有其道焉。嘗隨公之郡。尤嚴內外。未嘗有因緣請託之事。辛丑七月。以免乳得疾。十九日終。壽三十五。後屢贈至貞敬夫人。生一男二女。男明翼。蔭仕階折衝將軍。爲五衛將。女長適生員金元健。次適沈儒珍。繼夫人崔氏。別有狀。生四男一女。男昌翼。早夭。壽翼今爲懷德縣監。光翼。商翼。皆爲齋郎。女適直長安世考。明翼。昌翼皆無子。…(중략)…公嘗自號雪汀。公平生任真推分。不逐時好。及奉使出疆。則同朝共愍其衰耗。控實免行。於義何慊。而乃不憚惄。如赴樂地。涉鯨波並虎穴。九死一生。遂達帝庭。以伸國冤。其心可謂偉矣。使其無恙東還。復命聖朝。則超資錫馬。有不足言。而遽乃奄忽。復於公館。重爲骨肉無窮之痛。抑獨何哉。雖然。人未有生而無死者。等有一死。則如公之死於王事。以酬許國之心。而特蒙皇上恩榮。龍亭。黃傘。掩映天日。鴻臚。光祿。奔走奠酌。金牌煌煌。道路感涕。雖使中國尊貴得此。亦足以誇耀於千載。況於海外陪臣。雖並輸三緣之債。以僥倖於萬一。何可冀哉。此非獨公之一身。凡我東偏之人。皆得與其榮光矣。豈公德厚不嚮用於世。故天以是報之歟。其後幾年。復自燕山有以柩歸者。雖使得其優渥如公之爲。不足以爲榮。而適足以爲羞。況其羯羶而無是耶。俛仰之際。世道之變。至於如此。益令人羨公之死而不能已也。余先人。游公父子間。情好甚密。公常爾汝先人。而衛將公則呼之以丈也。余以童子獲嘗隅坐。而承公顏。其時雖未省事。猶知其長者風度也。公不以幼少而猥賜問名。且問所學幾何。而頗有期許之意。仍謂先人曰。公之諸子名皆從火。而宋朝人物之盛。莫如熙豐。此兒改命以熙。而公長子之名。是用朱子之諱。盍且改之。先人應曰。熙字正好。而是從兄所行。故不敢也。且我朝文明。亦莫如己卯之盛。而其時有名賢朴世熹。故嘗以爲無妨也。至今追思正如昨日事。而倏已四十年矣。今者承公諸胤之託。僭狀公行。而孤露之懷。哽愴不暇。顧何敢爲溢辭諛言。以誣公之醇德也。覽者其察焉可也。時崇禎壬寅四月日。恩津宋時烈。謹狀。(□□宋子大全□□ 卷二百十，行狀，雪汀李公行狀)

## 55. 이운(李耘)

- 有政。…(중략)…; 李耘(穆)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4년(1663) 11월 10일)
- 典簿李公墓碣銘

栗谷先生有侄孫曰耘。字公實。居海州之仙巖村。因自號焉。公歿身誦慕先生不衰。每晨起盥櫛。必敬對要訣讀一遍。其見之行者。自夫事親祭先。以至接人應事。鮮不以之取準。居前後憂。哀毀盡制。捐婦家及外氏田財。均諸庶弟三人。性又清白。居官秋毫無所犯。其自懷德歸也。不欲使取官物。賣女奴以給行道費。尤齋宋先生時烈以書別之。有山陰一錢孤負遠送之語。同春宋先生浚吉則書詩禮清白四大字以爲贐。與白軒李相國景頤。松谷趙判書復陽友善。後進如靜觀齋李公端相。文谷金相公壽恒亦雅重。公皆待以丈人禮。文谷嘗念公白首屢空。欲授公康翊。而公以去家未百里辭之。公嘗之關西。與姜監司瑜登統軍亭。極目感慨。有詩曰。百尺危樓送目遙。中原王氣久蕭條。書生白首心猶壯。落日江天倚大刀。兩西士子皆傳誦。公以肅廟癸亥正月初二日歿。前三日爲壬戌除夕。公謂子弟曰。明日吾且八十有二。在世直無幾。欲省先墓及栗谷祠。爾輩勿止之。遂遍往拜之若辭訣。然歷謁石潭院。少坐聽溪堂。朗誦宋龜峯翼弼明月隔輕烟之句。愴然出涕。謂栗谷諸後孫曰。爾曹力學力農。上無忝先德。下無飢妻孥。則老夫雖死。無恨矣。乘昏還家。招集一家內外。命酒談笑。歡如也。自鷄鳴後有微感。翌日遽卒。其亦異矣哉。公德水人。德水之李。自以高麗中郎將敦守爲上祖。考諱景恒。司瞻寺參奉。祖諱璿。南部參奉。卽栗谷先生之伯兄也。妣丹陽禹氏。璉之女。參奉世績之孫也。光海朝。隨考參奉公謫居於槐山。以爲崔參議沂緣坐故也。凡八年。至仁廟改玉。始還海鄉。累魁鄉解。辛卯。始成進士。癸巳。拜長陵參奉。歷宗廟署奉事。司饔院直長。宗簿寺主簿。司憲府監察。其爲懷德縣監則在癸卯居一年。忤官長罷歸。丁未。復除監察。歷社稷署令。宗親府典簿。軍資監判官。追坐懷德時微眚謫坡州馬山驛。未幾放還。辛亥。叙拜造紙署別提。而以老病未仕。姪安東權氏生貞莫之女。正郎末卿之孫。後公一年繼歿。祔公葬于治西高山大寺洞負癸之原。一子原徵宣敎郎。五女。土人吳煥翼。金自鳴。正郎朴乃章。土人李益昌。及第柳虎吉其婿也。孫男三緬。紘。纵。二女婿。土人黃順長。申命龜。緬之子華翼。謁公墓銘於余。余惟公行誼修整。詞學優長。不愧爲老先生家子弟。而當世名賢如二宋及玄石朴先生世采。皆稱賞公甚至。玄石則以公天資之近道。每舉以語人。公之賢於是而益可知也。已是爲銘(□□黎湖先生文集□□ 卷之二十四, 墓碣銘, 典簿李公墓碣銘)

## 56. 허잔(許纘)

- 下直, …(중략)…; 許纘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현종 5년(1664) 11월 3일 (경인))
- 下直, …(중략)…, 懷德縣監許纘。(□□승정원일기□□ 현종 5년(1664) 12월 2일 (기미))

## 同中樞許公墓誌銘 甲辰

鶴巖許公諱纘。字季昌。陽川人。上世在麗朝大顯赫。累載史乘。本朝有諱衛左參贊。諱稠。諱亨孫兩世兵曹判書。有偉績。四世而諱思益別座。諱恒文科文學。諱欽薦孝行。仕至縣監。三世以公俱贈顯官。公生質穎達清秀。幼有奇譽。稍長。淹貫經史。凡性命之奧。治亂之要。已能沉潛而總會之。十八。委禽於崔默守有海之門。崔公有博雅名。叩所學歎賞曰。年少已透性理如此。其進不可量。事親甚孝。冠帶終日侍側。怡愉容色感人。父母每稱吾家孝子。人無間焉。侍疾不解衣。居憂啜粥盡禮。菜果亦不御。篤於兄弟友悌。因心推之。親戚甚厚。濟窮困如不及。未嘗勉強爲也。教子姪。必令以勤讀書爲本。嘗謂富貴在天。不可覬非分也。從仕時非公故不出門。玩心墳典。遠交遊守恬靜。老而在野。遇災異。必色憂曰。君心正則和氣致祥。何天之示警如此。值國恤忌辰。輒素食。謹於禮曰。我家世祿也。此公稟質惇行之懿也。少業功令。詞儼俱長。屢發解元。壬午。始登上庠。聲名出流輩。卒局於甲乙。丁酉。補廣文官。以經學名也。羣蒙摵衣者殆數百。灑掃應對。至於誦詩學禮。蔚有教法。成就甚多。時稱近古所罕。敍陞別提都事。或棄或復。八年而監懷德縣。一期而治化行。值顯廟湯泉之行。州縣多徵發。公方便周旋。民不告病。數年以親益老。職事妨於服勤。謝去之。專誠致養。旋遭艱。服闋。復殿中官。社稷令。工曹正郎。永平縣令。縣以山水名。嘯咏玩樂。而政務皆舉。有兄弟訟財者。心傷曰。爲土主。乃使境內有此事。立自責若延壽故事。訟者流涕出。邑人傳誦。前後在官。一物不私用。諸子亦輪侍。不許齊會。節公費焉。癸酉。朝家優老錫緋。又以門生多顯。陞亞卿秩。皆國典也。尋拜樞密府同知事以終。此公科宦始終之槩也。晚謝仕。歸湍上之眠鶴洞舊庄。自號鶴巖老叟。專心誨育人才。語學子曰。讀書體行。心地自正。不必外求矣。又曰。聖賢之學。惟在敬直操存而已。甚矣其心之似洛閩也。居久之。嫌折徇紛囂。謝歸湖南之方丈山下。先塋也。遠近問業者日造門。公諄諄教告。不知年數之已至也。壽益高行益著。南方之士咸仰德儀。蔚然有晉鄙薰善之美。此公修己及人之效也。壬午夏。得末疾。語子孫曰。吾受氣不甚厚而致損於劬勞之勞。今九耋矣。眞乘化歸盡。復何憂乎。竟卒於正寢。乃七月五日也。距生之年萬曆甲寅。壽八十有九。以其年十月。葬于府東蛟龍山負庚之原。杜浦尹相公趾善挽之曰。南天昨夜德星空。奄失人間九十翁。頂玉初蒙優老典。腰金更獎育才功。此可以見公始終矣。配貞夫人海州崔氏。葬祔公墓左。育四男一女。男長。次琡進士正郎。得縣以養公。次琡。琬。女適韓配命。男濂。洙。洵。女適金魯參。琡男溥進士參軍。涑。女適申命華。琡男湛進士。濬。汲同中樞。女適府使姜啓溥。琬取從子洵子之。長孫濂無嗣。取洵子植繼宗。生員。男倪生員。昇。焞。暎。昌。女適尹光濟。洙取再從子樸爲後。女適進士李廷夔。洵男植。女適李大年。溥取再從子柄爲後。

女適判官尹尙遠。凍男權。湛取從子櫻子之。女適進士朴師祖。濬男櫻。汲男繁。餘不盡載。此公生卒子姓之略也。尹判官之男校理曄。述公行狀。如淵明之傳孟府君。嗣玄孫倪。奉以請銘於光紹。辭不獲。謹取以爲誌。系之銘曰。

凡可尊三。曰德位齒。壽係于天。位人德已。我觀鶴翁。于三其庶。懿厥文德。名行孔著。九耋寬樂。眉壽永介。其在人者。再綰墨佩。雖若可歎。終亦金紫。有淺深殊。仰達尊次。無不足兮。寧此樂丘。我辭短兮。休韻千秋 (□□素谷先生遺稿□□ 卷之六, 墓誌銘, 同中樞許公墓誌銘)

## 57. 황진구(黃震耆)

○ (전략)…, 黃震耆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7년(1666) 7월 26일 (을사))

○ 下直, 仁同府使李時彬, 懷德縣監黃震耆,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7년(1666) 8월 19일 (정묘))

○ 院啓, …(중략)…。漢城判官黃震耆, 爲人昏劣, 性品貪鄙, 曾爲懷德縣監時, 用度無節, 官庫掃如, 至於他朔廩米, 公然取用, 終爲敗露, 久被囚繫, 因赦幸免, 既不足以懲礪, 而復溷仕路, 濫陞本職, 其在物議, 莫不爲駭, 請漢城判官黃震耆, 削去仕版。…(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14년(1673) 8월 14일 (신해))

### 因黃震耆供辭引嫌疏

伏以頃臣待罪湖臬。因懷德縣監韓聖輔所報。始知本縣大同米虛錄之事。別定查官。按得實狀。臨遞之時。移牒於宣惠廳。而未聞其後處置之何如矣。比得人傳。伏見前縣監黃震耆供辭。則舉巡營監司而爲言者三。而其中石役糧饌墳山奠床云者。正爲指臣而發也。臣不勝瞿然之至。茲敢不避猥越。略陳其實。以俟鉄鋏之誅。伏念臣之九代祖母貞夫人宋氏。八代祖司憲府執義某墓。在公山。七代祖藝文館應敎某。六代祖成均館典籍某墓。在懷德。遠至二百餘載。近亦百有數十年矣。臣以不肖後裔。幸蒙聖明休澤。建節本路。榮極一身。而目見丘墳所在。蕪廢不治。深恐世代寢降。失其處所。以重不孝之罪。心悸顙泚。恍惕不安。乃於去秋。鳩工給糧。爲辦墓道所設若干石物。此卽巡營帖下糧饌米云云者也。臣之亡舅觀察使李袞墓。在文義。故臣於巡歷之路。迤入展省。奠沃薄具。令懷德備送。而仍給營米以

償其費。此卽隣邑墳山奠床卜定云云者也。至於所謂監司來留幾至一旬。獨當支供者。經年之後。雖未能詳記。臣之留彼似不過六七日。而他邑來供者二日。則本縣獨當者。應是四五箇日子。只緣臣有事於先隴。留滯累日。則宜震考執言於私事。歸咎於供饋。而然監司行縣。乃其職耳。經過淹速。元無所拘。而且其一行支供。皆以大同米計減。則尤非守令之所可得以指議也。槩觀震考之用意。以臣前後帖下。在於營米旣散之後。那移用下。以致欠縮於大同米。外若辨擇已犯。內實構斥臣身。如使臣初無是事。則震考雖有所增怨於臣。亦安得憑依侵謔。若是之爲哉。然向臣所爲。實出於情理之所不能已。雖以此重被譴罰。固所甘心而不辭者。故於震考之言。受以爲罪。不敢自恕而自辯。而所可怪者。營米無儲誠如所云。則其時何不以貸下難便之勢。直陳於臣耶。此不可知也。臣猥以庸陋。屢忝藩闈。絲毫無補。罪戾徒積。及至今日。遭此噴言。咎實由臣。何敢尤人。廉隅甚重。職名不輕。冒沒仍據。決無是理。伏乞聖慈俯賜諒察。亟遞臣職。仍治臣罪。以礪朝紳。以安私義。不勝幸甚（□□文貞公遺稿□□ 卷之八，疏劄，因黃震考供辭引嫌疏）

### 黃懷德震考 挽

我事爲兄公蓄弟。義均群從自髫年。一顛驥足青雲隔。再把牛刀墨綬■。龜鵠遐齡八旬近。箕裘遺業二郎傳。追遊往迹空回首。舊日兒童雪滿巔（□□醒齋遺稿□□ 冊二，挽）

## 58. 이군섭(李君燮)

### 留別李懷德君燮

禍福終誰問。榮枯且莫論。平生湖海氣。可惜此沈淪（□□芝湖集□□ 卷之一，詩，留別李懷德君燮）。

### 與申叔弼 翼相 別紙 庚申三月二十八日

尤齋私書。元非與弟書。而於丙午年間。以史官往懷德時。還到公州監營。則任方伯義伯令公。出示其書曰。兒子墮往懷德時贍來。弟亦倩人贍來。置諸箱篋間矣。頃年自陟州。因事上京。則其時鄭載嵩子高以大諫立異於時論。重被臺劾。弟往唁其家。則鄭令乃能開懷款接。異於常時。還官後。披閱箱篋。其書隨手而出。仍念鄭相一聞四種之說。卽料今日之禍。其所以掉頭揮手者。極其警敏。人所難及。其家子弟。不可不見。故遂送子高曰。尤齋此書。豈曾見之乎。如不曾見。則贍後還送。子高答書以爲別紙。贍後還送云。而別無

他說矣。不多日。臺閣請罷鄭相配享之論出。而繼有走肖之疏矣。弟意仲鄭相公之外孽孫。卽積相之庶姪也。必從此路傳積相。又自積相傳播彼輩。而子高兄弟。則又意弟之爲尤齋分謗計。一邊廣布諸處。一邊送示渠家。深以爲怨。其所疑惑極爲無據。亦甚可笑。而走肖之得見。又未知何從而得之也。其後見某人與尤齋書。則以爲聞沈檀家有禮訟一大冊。傳贊議禮間章疏。其中錄此日記數語。作與李某書。無乃此日記。由擇令而出耶云。又莫測其所以然。尋常爲怪。上京逢着李思永慎甫言此事。則慎甫曰。令其不記乎。此書曾於洪得禹疏廳時。自令所覓來傳看。忽然見失。其後聞守僕輩與彼類相親者。偷竊而去矣。弟於是始覺得其時疏廳人。果來從弟所而贊去也。此非與人往復之書。只是當初日記中文字。而不免流入彼輩。終爲構誣之一段。今日事孰非構誣。而此則因弟不密。辱及長者。此所以重自悔恨。而不安者也。承問之及。聊此布聞。幸一覽而付丙。勿掛人眼也。○似聞趙疏之初。有一南人蔭官。言於鄭金山載岱曰。李某下去懷德時。宋也以其文字。納諸李某袖中。使之廣布於世。故李某無人不示云云。鄭君以此致怨於弟不細。彼輩之倣作言語。白地陷人之態。已不足言。而鄭君之信聽而致怨者。豈非可怪之甚乎。分謗有何所利而爲之耶。非但尤齋之決無此事。雖尋常人。亦不爲之也。尤齋聞鄭君之疑如此。而答弟書有曰。大浸稽天。雖有溝渠之導。寧有所損。人雖至愚。必不爲此云云。大槩弟則以爲尤齋分謗計。廣示諸人。旣被鄭君憾恨。又以漏泄私藏文字。見辱時流。不無長者家子弟所咎責。彼此皆受謗。亦一好笑處也(□□芝湖集□□ 卷之四, 書, 與申叔弼 翼相 別紙 庚申三月二十八日)

## 59. 한성보(韓聖輔)

- (전략)…, 懷德縣監韓聖輔。(□□승정원일기□□ 현종 9년(1668) 12월 26일 (경인))
- 下直, 懹德縣監韓聖輔, 宣沙浦僉使金學萬 …(중략)… (□□승정원일기□□ 현종 10년(1669) 1월 28일 (임술))
- □□현감 한성보 몰세불망비 경술 이월 일(縣監韓聖輔沒世不忘碑 庚戌二月 日)□□ (대전 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 戒子雜儀序  
棠村韓公聖輔汝碩喬木世臣。而又沙溪文元公先生之外曾孫也。嘗宰吾父母之鄉。專以教化爲政。旣去而民追思之不已。公性好田園。務耕種以奉先祀。眞楚茨信南山之風也。嘗依晦

齋李先生奉先雜儀。手輯一卷書。以示余。大抵主於朱子家禮。而間以諸家說及俗禮參焉。余敬爲跋文以附其後矣。今又以所編一冊子名曰戒子雜儀。遺其庶弟聖毗投寄山間曰。願復爲一言也。余惟朱子嘗病學者專以編書爲務。至舉范淳夫爲戒。其微意可知也。今觀公意則專欲以此授之家庭。耳提面命。輔翼匡直。使自得之而已。非敢欲求多於古人也。記昔我文成公先生以聖學要語獻于宣祖大王曰。假使此書出於臣手。亦不以人而廢言。況聖賢之言乎。噫。文成公之欲忠於君父者。其誠懇至。故其言若是。況愛子之心。雖禽獸亦有之矣。今公以大家子孫。爲眞儒之彌甥。其欲以格言至論。日陳於前。使之盈耳充腹。使不撓惑於邪說謬行者。爲如何哉。嗚呼。三代之學。皆所以明人倫也。舜命契曰百姓不親。五品不遜。敬敷五教在寬。自我聖祖受命。列聖相承。所以教民者。一切不出於此。又自圃隱以後諸賢。以朱子之道。闡明而敷施焉。是以化行而俗美。幾乎三古之風矣。不幸有尹鑄者出。而專以悖謬之心。攻斥朱子。有同繼祖之黨。而彼名家之黨助者。方且思有以易天下。自是之後。風教大變。子而不子。臣而不臣。弟而不弟。妻而不妻。以至侮辱先聖之言。乃爲試士之題目。將以嚇走孔夫子而極矣。其爲禍。甚於洪水猛獸矣。公於此。大愕而小怪。隱憂而浩歎。亟爲此書。要以牖迷回惑。其意可謂切矣。又公於其家。以招納不孝不悌爲悖德。欲其拒門而不納。其意可謂厚矣。然是不知其源實起於起處矣。李同甫見其家所記右鑄之說而曰。若使朱子見之。豈止於今日宋某之爲而已哉。其言是矣。噫。以眇然孤根。犯衆怒冒大禍。以斥謬淫者。豈得已哉。公之此書。分門立例。凡可以警俗者。靡有所遺。愚願公並取孟子好辯章及朱子與汪尚書。程允夫論蘇學數書於編末。以示公諸子。則必渙然棄舊而圖新矣。時崇禎著雍執徐仲秋日。德殷宋時烈序。(□□宋子大全□□ 卷一百三十九, 序)

당촌(棠村) 한성보 여석(韓聖輔汝碩 여석은 자)은 대가 세신(大家世臣)이고 또 사계(沙溪) 문원공 선생의 외증손(外曾孫)이다. 일찍이 우리 고향 원이 되어 오로지 교화(敎化)로써 정사의 근본을 삼았으므로, 공이 갈려간 뒤에도 백성들이 사모해 마지않았다.

공은 성품이 전원(田園)을 좋아하고 농사짓기를 힘써서 선대(先代) 제사를 받들었으니, 참으로 초자(楚茨 《시경》의 편명) · 신남산(信南山 《시경》의 편명)의 풍습이었다. 일찍이 회재(晦齋) 이 선생(李先生)이 지은 《봉선잡의(奉先雜儀)》를 모방, 손수 한 권의 글을 모아 나에게 보였는데, 대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주로 하고 가끔 여러 사람의 학설과 속례(俗禮)를 참고한 것이었다. 내가 삼가 발문(跋文)을 지어 그 끝에 붙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책을 편집해서 그 이름을 《계자잡의》라 하고는, 그의 서제(庶弟) 성비(聖毗)를 이곳 산속까지 보내어 ‘다시 한 말을 적어 주기 바란다.’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주자가 일찍이 배우는 이들이 오로지 책 엮기만 힘쓰는 것을 병통으로 여기면서, 범순부(范淳夫)를 들어 경계하기에까지 으르렀으니, 그 은근한 뜻을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 공의 뜻을 보면 오로지 이 글을 가정(家庭)에 주어 친절히 가르침으로써, 삿되고 굽은 것을 바르고 곧게 하여 스스로 그 본성(本性)을 체득하게 하려는 것일 뿐, 감히 옛사람보다 저술을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옛적에 우리 문성공 선생(文成公先生 문성은 이이(李珥)의 시호)이 성학요어(聖學要語)를 선조대왕에게 올리면서,

“가령 이 글이 신의 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이 부족하다 하여 그 글까지 버려서는 안 될 텐데, 하물며 성현의 말씀이겠습니까.” 하였으니 아, 문성공은 그 임금에게 충성하려는 정성이 간절했기 때문에 말이 이와 같았는데,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 금수(禽獸)에게도 있음이랴. 지금 공은 대가(大家)의 자손이요 진유(眞儒)의 외손으로, 날마다 격언 지론(格言至論)을 들어 아뢰어서, 귀와 배에 충만하게 함으로써 삿되고 비뚤어진 말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한 공로가 어떠한가. 아, 삼대(三代) 적의 학문은 모두 인륜(人倫)을 밝히는 것이었다. 순(舜)이 설(契)에게 명하기를,

“백성이 친목(親睦)하지 않고 오품(五品)이 순조롭지 못하니, 삼가 오교(五敎)를 펼치되, 너그럽게 하라.” 하였는데, 우리 성조(聖祖)가 천명(天命)을 받은 아래로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받아 백성을 가르친 바가 일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또 포은(圃隱) 이후 여러 현인(賢人)이 주자(朱子)의 도(道)를 밝혀 널리 시행함으로써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져, 거의 삼대의 옛 풍속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불행하게 윤휴(尹鑄)란 자가 나와서는 오로지 어긋나고 그릇된 마음으로 주자를 공박하여 마치 송 나라 심계조(沈繼祖)의 당파와 같았고, 저 명가(名家)로서 당파를 돋는 자는 바야흐로 천하를 한번 뒤바꾸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풍교가 크게 변하여 자식은 자식 노릇을 않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않고 아우는 아우 노릇을 않고 아내는 아내 노릇을 않으며, 심지어는 선성(先聖)을 모욕하는 말로써 선비를 선발하는 제목(題目)으로 삼아서 장차 공부자(孔夫子)가 놀라 달아나도록 만들고야 말게 되었으니, 그 화(禍)가 홍수(洪水)나 맹수(猛獸)보다 더 심할 것이다.

공이 여기에 놀라고 걱정한 나머지, 바삐 이 글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의 미혹을 깨우쳐 주려하였으니 그 뜻이 간절하다 이를 만하고 또 공이 집안에 불효(不孝)한 자와 부제(不弟)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덕에 어긋난다 하여 문을 닫고 거절하였으니, 그의 뜻이 깊다 이를 만하다. 그러나 이는 그 근원이 사실 일어날 곳에서 일으난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었다.

이동보(李同甫 이희조(李喜朝))가 공의 집에서, 윤휴(尹鑄)를 지지하는 데 대한 공의 논평을 보았는데 그 내용에, “만약 주자가 보았더라면, 어찌 오늘날 송모(宋某)의 배격에서 그칠 뿐이겠는가.” 하였는데, 그 말이 옳다. 아, 그러나 고단한 처지로서 여러 사람의 노여움을 범하고 큰 화변(禍變)을 무릅쓰면서까지 비뚤어지고 방탕한 설(說)을 배격하는 것은, 어찌 자신을 위해서이겠는가.

공의 이 글은 부문(部門)이 나눠지고 예규(例規)가 세워져서, 풍속을 깨우칠 만한 것은 빠짐이 없다. 그런데 나는, 공이 《맹자(孟子)》의 호변장(好辯章)과 주자가 왕 상서(汪尙書 송 나라 왕응신(汪應辰)을 말함) · 정윤부(程允夫 송 나라 정순(程洵))와 더불어 소학(蘇學 소식(蘇軾)의 학설)을 논한 두어 글을 이 책 끝에 넣어서 공의 여러 자제(子弟)에게 보였던들, 반드시 의혹이 확 풀려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도모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승정 기원 후 무진년 8월 일에 덕은 송시열은 쓴다.(□□송자대전(宋子大全)□□ 제139권, 서(序), 《계자잡의(戒子雜儀)》 서)

## 60. 이정기(李鼎基)

○ 吏〈批〉, …(중략)…, 李鼎基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현종 10년(1669) 12월 26일 (을유))

○ 吏曹啓曰, 近來新除授守令, 呈狀請遞, 甚爲紛紜。懷德縣監李鼎基, 則八十三歲老母, 重患霍亂之餘, 又添感寒, 症勢極重, 食飲全廢, 氣息奄奄, 無兄弟獨子, 決難捨去云。金君錫李鼎基, 非但狀辭如此, 其病狀之的實, 情理之迫切, 衆所共知, 勢難赴任, 索性改差, 而此兩邑, 雖非人所厭避之地, 亦不可循例許遞, 依近例罷黜,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현종 11년(1670) 1월 24일 (임자))

### 李懷德鼎基 挽

清江猶自有遺風。近喜諸孫得此翁。材力龍騏輕萬里。精神霜鵠睨層空。泥塗下邑曾嗟屈。瘴癘南溟竟歎窮。故許優游終壽命。休煩回首問蒼穹 (□□西溪先生集□□ 卷之四, 詩, 石泉錄 下)

## 61. 이민정(李敏政)

- 有政。吏批, …(중략)…, 李敏政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현종 11년(1670) 1월 25일 (계축))
- 謝恩, …(중략)…, 懷德縣監李敏夏, …(하략)。(□□승정원일기□□ 현종 11년(1670) 1월 28일 (병진))
- 下直, 懷德縣監李敏政。(□□승정원일기□□ 현종 11년(1670) 2월 15일 (계유))

與李懷德敏政 辛亥五月五日

夜晝間侍履若何。竊伏聞城主有歸計。板輿將先發。未知信否。未知不樂於意者曲折如何。而仄聞道內守令無非不樂者。豈將人人皆歸耶。目今兩麥未黃而先盡者滔滔。將來人死。必甚於已往矣。豈忍棄去而不念耶。居官之道。在我無失則便自泰然自在。以堠倘來之如何而已。何必先爲形迹。授人以執言之資耶。且新頒令式甚嚴。以家兄事言之。則實病之狀甚著。故監司之狀該曹之啓如許其根據。而自上猶特下准期之命。萬一城主或遭新令之所定者。則豈不貽慈闡之憂耶。幸加商量。徐觀事情之歸宿。如何如何。所懷不敢不盡。並望諒察。不宣(□□宋子大全□□ 卷一百十七 書 與李懷德敏政)。

## 62. 윤정하(尹徵夏)

- 下直, 懷德縣監尹徵夏, 仁遮外戶吳斗山。(□□승정원일기□□ 현종 12년(1671) 8월 18일(병신))

懷德縣新洞社倉記

上之十一年庚戌。歲適大侵。人民之死者填街溢巷。至於翌年而尤甚。上下憂遑。莫知所以如何也。吏曹參議李公端夏。上疏請頒朱子社倉法於邦內。俾民漸有儲積。其意蓋謂三年之艾。雖已晚於七年之病。尚有愈於終不蓄者。上以爲然。事既下。縣監尹侯徵夏以特命來莅是邑。適數月矣。卽以詢於邑中曰。願行者聽。其不願者不必強也。縣之南儒生朴世振。世輝等。以問於余。余曰朱子嘗論社倉而歎曰。有生之類。莫非同體。惟君子無有我之私。故其愛利之心無窮。而特窮而在下。則有非其分之所得爲者。而又言社倉之法。公私陰受

其賜。又嘗請於朝。頒行其法於天下。而凡有社倉處。無不記其事以美之。今吾儕讀朱子書。終不知一言爲可用。已犯侮聖言之罪者多矣。今因民生之困急。聖上之德意。得行其法。則猶可愈於全不用一言者矣。朴生以告於宋殿中國叢前參奉李相吉，前參奉李德老諸人。是皆一邑之望也。諸人旣許之則閭氓無不願從。遂令各出五斗租。以爲之本。其不能出者甚多。方以不克濟爲憂矣。觀察使南公二星聞之。亟出營米二十石屯田租六十餘石以助之曰。聖上以愛民之心。旣下社倉之命。而無有應之者。今懷之民獨行焉。甚可嘉尙。於是同社之人無不喜躍曰。不惟吾身而已。將及吾之子孫。世受其賜矣。遂築倉於縣南之新洞里。使數人者蠲其役典守之。余惟是法本起於周官。而昉於隋唐。而備見於朱子之書矣。今聖主賢臣以不忍人之心。而頒下此命矣。然寒土貧民。雖欲應募而亦不能自遂矣。今南公之惠乃如此。必將有聞風而興起者矣。是則公之惠將不止於一方而已。然公豈無所受而爲哉。昔朱子爲社倉於崇安也。知府徐公嘉勗粟六百斛。溯源而助之。魏良齋爲之於長灘也。常平使者袁侯復一亦以米助之。今公以財力罄竭之餘。乃及徐公之十一。是難也。而又令營米之外。其所謂屯租者則永給勿還其本。是則又優於徐公之惠矣。又念宋時因朱子所請。朝命旣下。而吏惰不共。不以布於下。故江浙近郡。至三十年。而民猶有不知者。此朱子之所甚歎者。倘靡尹侯卽以募於民間。則聖上德意。將只作一幅故紙而止矣。今日同社諸人。幸毋忘忽。而俾有終始。則非惟不負所學於朱子。亦上不負聖上。下不負南公與尹侯。而公私果能陰受其賜矣。可不勉哉。又惟此事必須得土田。然後可爲久遠之圖。故宋之光澤縣宰。以民田僧田之入官者。與之社倉。而朱子亦記之。今亦以此而告於觀察公及縣侯。似亦一事。未知如何。幸社中諸人相與議之。崇禎壬子月日(□□宋子大全□□ 卷一百四十二, 記。)

### 63. 반윤기(潘潤沂)

- 吏批, …(중략)… 潘潤沂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숙종 2년(1676) 5월 5일 (병술))
- 下直, 懷德縣監潘潤沂。(□□승정원일기□□ 숙종 2년(1676) 5월 18일 (기해))

#### 潘懷德潤沂 挽

去秋公自雪鄉來。多少離懷病裏開。百里專城伸至惓。三年居壘尙餘哀。政期玉胤攀仙桂。誰謂風儀隔夜臺。追思平昔葭莩誼。不堪臨挽涕沾顴。(□□雪峯遺稿□□ 卷之二十一, 城南錄, 潘懷德潤沂 挽)

## 64. 조순원(趙淳源)

○ 吏批, …(중략)…, 趙淳源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6월 22일 (정묘))

○ 院啓, …(중략)…。懷德縣監趙淳源, 爲人庸闊, 專昧事務, 雖在當年, 必難堪字牧之任, 而況此湖右大無之歲, 賑救之策, 尤不可付諸此人, 請懷德縣監趙淳源, 遷差。…(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7월 12일 (정해))

## 65. 홍진(洪璉)

○ 謝恩, …(중략)…, 懷德縣監洪璉。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7월 15일 (경인))

○ 下直, …(중략)…, 懷德縣監洪璉,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8월 4일 (무신))

○ 辰時, 初四日上御熙政堂, 引見下直守令。入侍, 承旨李元祿, 假注書李世益, 記事官尹義濟·安如岳, …(중략)…, 懷德縣監洪璉, …(중략)… 懷德縣監洪璉, 進伏。上問莅歷, 又問七事。璉伏對。上曰, 湖西一路, 被災尤甚, 今將設賑, 以爲救活之地, 爾其盡心賑政, 傧無捐瘠之患。眞寶縣監金世弼, 進伏。上問莅歷, 又問七事。…(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8월 4일 (무신))

## 66. 이중현(李曾賢)

○ (전략)…, 李曾賢爲懷德縣監。 (□□승정원일기□□ 숙종 4년(1678) 8월 16일 (갑신))

○ 下直, 懷德縣監李曾賢, 加背梁僉使呂夢天。 (□□승정원일기□□ 숙종 4년(1678) 8월 27일 (을미))

## 67. 이동백(李東白)

- 吏批, …(중략)… 李東白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5년(1679) 4월 19일 (계미))
- 下直, 懷德縣監李東白。 (□□승정원일기□□ 숙종 5년(1678) 5월 22일 (을묘))

## 68. 윤추(尹推)

- 吏批, …(중략)… 尹推爲懷德縣監, …(하략)。姑罷。 (□□승정원일기□□ 숙종 8년(1682) 6월 21일 (정유))
- 公洪監司書目, 懷德縣監尹推病重, 青山縣監李之濂棄官, 竝只罷黜事。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8월 23일 (임술))

### 子恕墓表

嗚呼。此乃有明朝鮮司憲府掌令尹君諱推字子恕之墓也。君之先坡平人。祖諱煌。大司諫。八松先生。考諱宣舉。魯西先生。妣公州李氏。生員諱長白之女也。君以崇禎五年壬申五月五日。生于漢城。幼勁特不群。既長治舉業。再得解。未成名。年未三十。得疾在床褥者幾十年。戊申。始又赴科。屆於殿試。士論惜之。明年己酉。丁憂。辛亥。服闋。更不赴舉。自號農隱。服田食力。爲終焉計。連除繕工監監役。童蒙敎官。司饔院參奉。皆不赴。以薦剡有陞敍六品之命。辛酉。始除長興庫主簿。尋除懷德縣監。君既屢被除命。以漸得不仕之名爲懼。遂謝恩之官。居一年。有所不樂。棄歸。丙寅。除定山縣監。明年丁卯。遭先君子被懷川之誣詆。棄歸。己巳除石城。赴任未數月。遭牛。栗兩先生文廟輟享之厄。又棄歸。甲戌。除龍潭縣令。踰年而歸。乙亥。被廉謹之選。超敍準職。除禮賓寺正。赴謝而歸。丙子。除青松府使。不赴。丁丑冬。除金堤郡守。戊寅夏。棄歸。丙戌。始拜司憲府掌令。君時年已七十矣。陳疏辭。聖批申諭上來。再疏而遞。又拜掌令。旋以公格遞。丁亥十一月二日。終於竹里。以明年正月二十五日。葬于公州南木洞鄉斗山某坐某向之原。嗚呼。君爲人清峻明決。且有高才遠識。早以病廢。晚仍自屏於畎畝。竟不能有所展布而終。旣老

常自歎曰。當爲國家。少效材力。而白髮乃如許耶。世人以此。無有知其蘊者。其爲邑。絕異於人。自處如在家時。視官事如家事。未嘗以私惠小恩。响喚於民。唯有害則去之。有橫斂則除之。務令民無煩撓而已。待吏民。一以誠信無不愛而畏之。其欲歸也。命駕獨出。而家屬隨之。邑人亦不及知也。歸家則蕭然如舊。無一介官物之帶來者。未知古之范萊蕪。元魯山輩何如也。居家極簡儉。安貧守素。略無所厭。爲便於調病。多處齋庵。服食與老衲無別。人之見者。莫不以爲難堪。而常泰然也。無求於人。無慕於外。與古之隱居獨行者。實多暗合。非必學得於他也。少時峭直。好面折人。嬰病之後。變得氣質。口不言人之過。遇人恭謹。雖卑賤。不敢忽易也。然論人。其邪正虛實。洞然如見其肺肝。久而益信。論事無大小。其是非成敗。後多如其所料。古人所謂先見者無讓焉。與我爲兄弟。七十年懇切如朋友。遇有過失。直斥苦爭。至於變色。而既老猶未嘗偃息於前。吾每謂老人並臥無妨。而猶不敢也。雅性不喜芬華。不喜煩鬧。常以淡靜爲味。嘗曰。聖人每言命。所以曉衆人者。而人之信得及者渺矣。末年衰病鰥獨。苦惱無比。而一切任他。不以動其心。其定力。人不可及。此蓋君之本末。而吾不能盡之也。配豐壤趙氏。郡守進陽之女。浦渚先生之孫。繼室全義李氏。士人▼之女。俱淑人。子二人。長曰自教。質厚行醇。年纔半百。先君六年卒。少曰可教。才高志遠。不幸短命。二十四歲而夭。李氏生一子。不育。自教有一子四女。子曰東洙。以學行。薦內侍教官。有二子。光蘊。光謙。長女適李思齊。二子二女。次適李普元。二子一女。次適權在衡。生一男而夭。季適李弼聖。可教有遺腹一女而無子。以從弟行教之子東浚爲嗣。女適金時濟。二子二女。東洙請余題墓表。病惛不省。僅略述如右。而別爲遺事十餘條。使之以此求誌於作者云。(□□農隱先生遺稿□□ 卷之四, 附錄)

### 行狀 孫東洙述

王考諱推。字子恕。號農隱。尹氏籍坡平。高麗太師諱莘達之後。數世而有諱瓘。以平戎拓地功。位門下侍中。封鈴平縣開國伯。諡文肅。自是殊勳碩德相繼於勝國。入我朝。諱坤。事太宗大王。錄佐命勳。封坡平君。諡昭靖。其後簪纓亦輝赫。諱倬。在中廟朝。以道學名世。一時名賢多出其門。官至同知成均館事。訓導師法。大爲退, 栗兩先生所稱誦。於府君爲六世祖也。高祖諱墩。贈左承旨。曾祖諱昌世。贈吏曹參判。兩世有隱德不仕。祖諱煌。卽八松先生。考諱宣舉。卽魯西先生。以清名大節。正學儒宗。俱爲一世所仰慕。此不復詳。妣公州李氏。成均生員諱長白之女。明粹端潔。聰悟過人。又能曉達義理。如小學列女傳等書。亦皆通覽。丙子江都之難。知虜變將急曰。與其死於賊鋒。不如早自決。命二婢引經而絕。其後朝廷以貞烈旌閭。府君以崇禎壬甲五月五日生。氣宇俊偉。

性行剛方。自在齠齧時。卓犖英發。大異凡兒。歲戊寅。曾王考避地于錦山麻霞山之下。市南俞公。移家就之。府君與伯氏明齋先生。受業于市南。聰明穎敏。不煩教督。而文學日就。俞公大加愛重。以爲當成遠器。長而委禽于浦渚趙先生之門。先生亦甚期許。及遊場屋。文章贍敏雄健。屢居上流。聲名蔚然於儕流間矣。二十歲後。嬰奇疾。杜門墳菴。不出戶外者過十年。其間大肆力於經史。又淹貫洛閩群書。學識又非特曩時比也。三十後。病遂漸瘳。戊申。一入禮圍。因對策。譏切考官。時適有事端之可言故耳。時久堂朴公長遠。亦爲考官。後逢府君於松谷趙公之座。笑而謂曰。觀君程文。文識誠可服。諸考官憤其見譏。欲拔去。吾力爭以取。而其不能置之第一。乃吾之力弱也。因稱歎不已。與之款洽。己酉。丁曾王考憂。服闋。遂拋舉業。築書室于尼山縣西積巖山下。以書籍自娛。遠近士子多就而請業焉。乃以農隱扁其居室。又作詩以見其志。蓋無當世之念。而欲隱於農也。呂公聖齊某公某諸人。俱薦以學行。壬子癸丑年間。連除司甕院參奉。童蒙敎官。俱不就。庚申。朝廷命薦學行遺逸之士。監司以府君應命。直超六品。除某官。不就。壬戌。爲懷德縣監。府君以伯先生方膺旌招。而吾又屢官不拜。於義未安。遂黽勉赴任。清以律己。惠以臨民。莅官吏以明信。不數月而吏畏民懷。治化大行。時宋相居其地。頤指吏民如役奴隸。故吏民只知有宋相。而不知有官家。府君裁以道理。使不得如前。宋相甚憚之。必欲其去。府君已有歸意。作詩送于伯先生。有曰。已知多苦境何得望安居。家中不識意。怪我理行車。宋相又使邑子。立宋尙敏祠宇。府君抵書於諸人以難之。略曰。子慎冤死。固不可以凡人相待。於朝家既已贈職於身而官其子。則亦足以報其志耳。至於享以俎豆。誠爲過重矣。設使實有可貴之節。終不可泯沒。則自有後世公議。何必今日急急如不及。有若酬恩報功之爲者哉云云。宋相見而大怒。自製通文。嗾沃川人。詆辱府君。并及於曾王考府君。卽棄歸。宋相又欲加罪。據撫在官時事。靡不用極。而終不得可構之事。乃語人曰。某誠善居官矣。因此見枳數年。人亦畏宋之威。不敢檢舉。外至升沈。固府君之素所不屑。而人雖慕德。終不得伸其公議者。實由於懷邑之一行。見忤於彼人也。丙寅。始爲定山縣監。冰蘖之操。春陽之澤。民愛戴如父母。吏亦感畏而不忍欺。時宋相發怒於明齋先生之疑其本原。嗾其門徒。詆辱我曾王考。自甲子始至丁卯。親上一疏。其所爲說有不忍正視者。羅公良佐等上章辨誣而被竄。府君又卽棄歸。時宋奎濂爲監司。當府君之在官。深相敬信。隨事就議。及爲罷啓。多褒其清德惠政。府君之孚誠有以動人。而人心之難誣。亦可見矣。戊辰。爲石城縣監。赴官纔數月。而至己巳春。有牛。栗兩先生黜享之舉。又棄歸。甲戌。爲龍潭縣令。纔半年而歸。民立石四面以頌其德。乙亥。被抄於廉謹之選。初命陞資。旋以資格未準。改除禮賓寺正。肅恩而歸。丁丑。爲金堤郡守。府君以年限已過。呈吏曹

請遞。吏曹啓稟而不許。因令除。朝辭以赴。金堤地大物衆。務劇吏猾。而府君年近七旬。精力不衰。靜以制煩。誠以孚物。德惠所感。民生樂化。明信所動。吏胥革面。諸吏相謂曰。吾輩自此官來後。一文錢亦無從得。將何以保存乎。其中一老吏謂之曰。汝輩無用戚戚。值歉歲如辛亥。而猶能得生。今亦不可耐過耶。其無重刑亦德也。蓋辛亥是挽近大無。故取以自諭。而府君不任威刑。故其言如此。於此可見府君爲政之一端也。時值凶歉。而監司愈得一必使準捧麌糴。遂投紱而歸。監司以衰病啓罷。而盛稱廉白惠德之實。某年爲青松府使。青松以山水鄉。稱嶺南名區。退溪先生嘗求而不得。詠於詩句者也。府君初欲赴。而旋以衰境難於遠離伯先生。遂棄之。丙戌。拜司憲府掌令。再疏辭遞。丁亥。又拜掌令。又疏遞。以其年十一月二日。考終於竹山精舍。享年七十六。翌年正月。葬于公州斗山向午之原。府君天姿英明而俊豪。性質剛嚴而正直。風儀峻整。氣像莊肅。有確乎不可奪之志。毅然不可犯之色。而至於待人接物之際。則慈良之心。惻隱之實。藹然於辭氣之間。是以人始望之。若可畏而難犯。而及至承其顏接其言。則諄諄善誘之仁。溫溫卑牧之德。自不覺其心醉而誠服。蓋姿性之得於天賦。已有出於人者。而濡染於家庭。進修於平生。晚年成德。自造高厚純粹之域矣。孝友天至。事曾王考。盡色養之誠。以早失慈顏。爲至痛痛慕之心。終身不少。衰事伯先生。如事嚴父。其在官。自奉甚約。而所以奉伯先生者。則無不盡心。得一美味。未嘗先入口。卽走伴以送。數月不拜。不堪戀慕。匹馬以來。屢日乃還。暮年於西峯。隔岡相居。朝夕進侍。湛濡之樂。愛敬之誠。有感動人觀瞻者。常戒於伯先生曰。古人年彌高而德彌邵。伯氏晚景工夫。亦不可少懈。隨事進規。無小或忽。此則實有他人之所未知者矣。其爲學不拘拘於繩墨而資深居安。自不踰於規矩。讀書不甚究索而洞見頭腦。左右逢源。文章贍富敏速。操筆立就如寫誦言。伯先生每曰。君之文。非近世操觚者之所易及也。平日手不釋卷曰。少而病不能力學。老而知好而餘日已無多。年少者不可不及時自力也。晚年尤好易。逐日課讀。又曰。學問功程。無過於四書。所以訓誨後進。必以是爲先焉。伯先生爲作長短吟以示。時府君已休遊宦。家居讀易。不肖亦廢舉業故也。筆法亦甚高。而不自爲能。亦不爲人書之。接朋友以誠信。而見有過失。必加規切。故無不畏而敬之。待宗族以敦睦。而勉善責過。不少饒假。故宗中嚴憚。過於伯先生。或有過差。必自瞿然曰。豈某兄某叔知之乎。蓋自飭甚謹。自修甚篤。無一言之不出於正大。無一事之或涉於苟且。有諸己而求諸人。無諸己而非諸人。故其爲宗人之所畏服者如此。平居詢訥無疾言遽色。每與人對。溫恭爲主。謙遜自牧。各隨其人。施以教訓。而必援引古今。曉喻諄申。故感人者易。入人者深。如飲河而各充其量。而至有非義不正之事。則氣肅辭嚴。誨責切至。人皆竦然愧悔。若無所容焉。家甚貧寒。所居室不蔽風雨。弊衣疏縷。人所不堪。

而晏如也。蓋性本儉素。衣服之少華者。切不近體。常以綿布爲衣。而縱橫縷之。垢則瀝濯。弊則補綴。至不可服然後改之。早朝進粥。日午一飯。夕不復食。以爲常而饌有定數。無或兼味。尤於世利芬華泊如。而無一動其中者矣。清潔之操根於天性。無一分矯飾之意。官居時簡儉無異在家。及其歸也。行李蕭然。不以一毫自隨。或有朝歸家而暮貸米。凡爲五邑倅而家業不長尺寸。蓋其清德。實無愧於古人之畏人知者矣。其爲政也。莅官之初。必先問民之疾苦。邑之弊瘼。而或梳治之。或蠲去之。無名而斂於民。不義而利於官者。率皆革而釐之。先教化而後刑罰。敦信義而恥才能。至於綜覈之精。照檢之密。則有置水而不漏者矣。蓋常居外軒。悉開諸門。使百姓出入如其家。其接民也。平易以近。俾得以曲盡其情。聽訟也。不容私意。裁以至公。故未嘗一有誤決。而落者亦不敢有怨言。尤致謹於刑獄。不以私喜怒有所低昂。兵田邑之大政而治之有方。無滲漏煩擾之患。賦稅國之所重。而捧之有時。無欠縮違遲之弊。御官吏則蒲鞭罕用。而不威而嚴。廉明仁恕。能服其心而知所畏故耳。爲政大約如斯。而所以行之者。誠而已矣。及有不樂於心者。則朝決其歸。暮已登道。少不吝情於去留。是以所到之處。曾無一年之留。而治行俗變。獄訟自簡。民有懷惠樂化之美。吏無舞奸弄巧之習。去後之思。愈久而愈不能忘也。常曰。清慎勤三者。惟勤最難。懈意一生。闕漏隨至。又曰。人謂今之爲治。宜尚威刑。不可純用德教。此言不然。斯民也。三代所以直道以行。至誠行之。豈有不動得人。顧吾之誠不誠如何耳。其治道之大體。卽此而槩可見矣。平生見識甚高。觀人則明照其邪正。論事則洞究其本末。其娶繼室於馬橋也。尹鑄居在近處。欲其來學而終不往。及歸庭。曾王考問希仲在近。汝其從遊乎。對曰。觀其爲人。察其行事。多有不羈處。非可從之人也。曾王考頷之曰。雖然。少輩不可輕議長者也。初伯先生往師懷川也。府君屢告於曾王考曰。伯氏文學已達。不必有資於他人。學于家庭。亦足以成就。而今乃往來屑屑。恐其有後悔也。懷川亦屢欲其來從。而竟不一往。是時府君年尙少。而早有見於兩人心術之微者。已如見其肺肝矣。及自碣文事以後。府君之所嘗慮者。一一若合符契。噫。此實有係於斯文世道之一大運氣。難容人力於其間。而不能不追恨於今日也。伯先生雖兄弟之間。初有不能相悉者矣。及至經歷事變。深歎府君識見之高遠。晚年則一言一事。無不相議。文字書札之稍有說話者。亦必與之商確。府君有時就加點改。則又從府君之言。可謂兄弟間知己。外人亦何能盡知也。棲遑下邑。非其本志。蓋有微意存焉。此則難與不知者道也。末年又嘗曰。伯氏欲守屏山之節。吾則旣違素志。浮沈郡邑。又寧欲或逢事機之來。庶幾乎待制當日之志。而事與心乖。今已老矣。有詩曰。屏山兄弟各行藏。出不成功處固當。待制一生忠憤志。至今遺恨使人傷。又曰。挑燈看劍悲文相。閉戶終身愧屏山。天地悠悠人易老。不堪流涕滿衰顏。

皆所以自傷其志者也。蓋抱負不輕。所以自期者。亦不淺淺。而終身沈晦。不能得試其一二。此奚獨府君之不幸而已也。嗚呼。府君德學行義文章才識。實有古人所絕希。今人所難能者。而世鮮克知之。文章是顯於外。而猶無有知。則其他尙何言哉。惟從氏德浦公深知府君。而每稱道於儕友間。定齋朴公。是府君之甥也。嘗言於其母夫人曰。季舅氏之賢。不下於伯舅氏。而人莫知其如此。深可慨也。與其出入於門下。親炙其德義者。皆以爲伯先生之和仁。季夫子之莊嚴。眞如河南兩程夫子。噫。以二公之賢德高識。的見真知之言。非出於阿好之私。一時及門者之論。亦發於心誠悅服之餘。而知德者希。孰知斯言之稱情也哉。或謂府君言論過峻。噫。明於辨奸。嚴於斥邪。則又疑其峻於論議。無怪乎鄒聖之距詖闢溼。而人謂之好辯也。自古已然。在今何異。府君罕有著述。有若干雜著及書札。晚年好吟詠。又有詩集數卷。伯先生嘗語不肖曰。汝祖詩律。無一句間吟詠。俱不可湮沒。因加籤表。俾作日後刊本。祖妣豐壤趙氏。郡守諱進陽之女。左議政浦渚先生諱翼之孫。端粹明悟。有女士風。繼祖妣全義李氏。學生▼之女。婉順溫仁。無子女而撫愛前母子及諸孫。如其已出。有子二人。長先君諱自敎。次諱可敎。先君有長德仁風。叔父有美才遠志。不幸皆先王考早世。先君有一男四女。男東洙也。女李思齊。李普元。權在衡。李弼聖其壻也。叔父無子。取堂叔父留守公諱行敎次子東浚爲後。一女婿金時濟。曾孫內外男女十餘人。府君潛德幽光卓絕而可傳者。奚特如右所述。而不肖幼而迷昧。長而昏陋。今此狀草僅僅收錄。尙安能鴟鴞其萬一哉。又有略記遺事者。明齋先生作墓表。而又記遺事。願以此就懇於當世立言之君子。庶幾卒惠以碣陰之刻（農隱先生遺稿卷之四 附錄 行狀 孫東洙述）

## 69. 심략(沈櫟)

○ (전략)…, 沈櫟爲懷德縣監。出吏曹詹錄。(□□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8월 24일 (계해))

○ 吏曹啓曰。昨日政。懷德縣監沈櫟。備擬受點矣。今聞櫟。卽本曹判書李翊同姓四寸妻婢。法當相避云。臣未及致察。矇然備擬。不勝惶恐。沈櫟改差。何如? 傳曰。允。(□□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8월 25일 (갑자))

昌平縣令沈公墓碣銘

公諱櫟。字茂卿。姓沈氏。青城伯德符之十一世孫也。有諱光彥。左參贊。號鈍庵。生諱鎬。

大司憲。寔公之高祖也。曾祖諱宗敏。郡守贈判書。金文正公尙憲誌其墓。祖諱。郡守。考諱之澤。少志學早世。妣寧越嚴氏。郡守諱悅女也。公以天啓壬戌五月十八日生。自幼孝謹。年十二三。連丁內外艱。持制如成人。適華使入城。家傍路。諸少要與共觀。自以服衰。伏不應。見者稱之。服闋。值丙子之難。隨諸父流離鄉曲。就從祖恥軒公某。受學不輟。旣娶還京第。先是。恥軒公出守。權奉廟主至是。還奉家廟。修復舊業。起自孤苦。能有樹立。人以爲難。公旣夙遭喪亂。稍長。又纏家務。常以未能肆力於學業自歎。屢中解額。而卒無成。歲丁未。筮仕爲四山監役。奉公廉恪。所管地。爲譯舌市井輩北邙。犯禁居多。例以關節苞苴圖免。公一斷以法。請賂俱絕。京兆嘗以事。欲覈冢數。俾公詳摘。公卽令各植標冢傍。馳審拔取。日未暮還報。上官歎其敏。庚戌。陞軍資監主簿。當收稅分料。例有剩餘。以私用。公輒皆散諸下輩。莫不感服。辛亥。大饑。設賑廳。公以選爲郎。時加以癘疫。死者相屬。公略無難色。竭誠救濟。活民最多。壬子。授掌苑署別提。遷掌隸院司評。以親嫌遞。癸丑。復引儀兼漢城府參軍。府吏私相戒曰。是向監四山剛明者也。其秋。拜昌平縣令。以爲民社所寄。尤當盡心。夙宵一念。惟七事是務。修諸祀壇。時至必躬親致虔。當旱禱雨。屏蓋不張。得雨則不避沾濕。民感其誠。每月躬謁聖廟。點檢器用。有毀必修。邑舊有書堂久廢。卽令繕葺。且求能文者。以主之。村秀多興起。有貧不能嫁女者。招勸其家長。而助其需。每歲時。捐俸備饌物。存問境內老人。又嘗設宴以享。遠近來觀而歌詠之。凡有違官令者。雖豪右。未嘗饒假。民皆畏服。尤慎於獄。裁決無滯。湖人有訟者。方伯多屬於公。負者不能怨。當簽丁有一氓。扶杖託蹕疾自訴。公知其詐。命取其履詰之。氓卽伏。縣獲盜數人。公不自治。悉送討捕使。蓋不欲以捕賊受功也。丁巳。以公格遞歸。自官雇馬。民不知送故之費。人曰。官帑充盈。胡不報使曰。節用致羨。欲補民徭耳。有餘則留爲後人用可矣。何可效人希賞。及歸。邑人如失親戚。戊午。除司宰監主簿。罷勉就列。適有北使。公差都監。館伴。吳始壽。有所誤啓。歸咎於公。見遞。癸亥秋。補懷德縣監。又以公格不赴。丙寅二月十七日。以宿疾。終於京第。享年六十有五。公內行甚修。日必拜廟。祭必沐浴致潔。未嘗以俗忌拘廢。時新之物。雖翔貴。必登時備薦。墓祀之需。必監封領往。躬視熟設。朔望所用。必計日預具。未嘗臨時窘束。三世墓道碑誌俱闕。竭力營辦。猶以未及豎表。臨終。遺囑甚悉。常以早喪父母。不得致誠於終事爲痛。喪配之日。務從儉約。戒於身後亦然。其事諸父也。同居侍奉。嘗遘癘不離側。嘗久疾阽危。步尋醫藥。夜不解帶。遭其喪未葬。不去喪次。素食踰禮。有一妹。其嫁遣也。服飾饋具。無有不辦。舅家感歎。以爲雖親在。何加焉。旣寡無子。每悲憐之。其赴縣也。率去以養。與弟府使公。日輒相會。聯案共枕。又借以畿莊。俾贍其用。乙丑。府使公謫廣陵。公時寢

疾曰。病中睽離。何以慰懷。卽昇往同處數月。其篤於同氣如此。遇人困急。隨力救濟。有貸無償。亦置不問。親舊有喪。雖尺布斗粟。必有賻。或無以斂。爲解新襦而與之。平居。早起盥櫛。非有疾則不設惰容。服食不求甘美。雖上服。不嫌補綴。居處不求安樂。病時亦却屏簇。器用樸陋。不喜浮奢。未嘗藏蓄珍奇。顧嘗嗜書籍。家雖貧。有鬻必買教子孫。勿交雜客。勿設雜戲。惟專心於簡編。平生行已不苟。雖微細之物。未嘗有求於人。末年。居閑幾十載。無意求仕。雖相親者。若登顯。則不踵其門。於事每自稱足曰。官歷內外。壽比祖先。觀人之奔走衣食。多行苟賤。吾無是而能免飢寒。此皆吾足也。可又營求分外耶。自從仕。凡官物雖微。且例受者。輒感歎曰。罔非國恩。其何以報。彼貪饕負國者。雖滅身不足恤也。在縣。朔望望闕之禮。未嘗一廢。連遭國恤。露處地上。以至成服哭。必盡哀。當仁敬王后喪。公病方劇。強起促駕。扶人就班。見者咸歎其忠悃。性少許可。接人能辨其妍媸。見人非義。不面折之。則默而去之。知公者以爲某於人。如見肺肝。眞可畏也。最惡浮屠及巫覡。在縣痛禁神祀。獨孫遘危疾。家人欲事祈禳。不許。及公疾篤。妹欲潛禱。公知之。切責曰。壽夭有限。何可作怪。其達識又如此。此皆公之質行也。公娶驪興閔氏。贈參判震亮之女。德容並備。闢職咸修。公之奉先備禮。居家以治。友愛加厚。內助爲多。生於丙寅。卒於丙申。生一男。曰廷熙。繼娶延安金氏。士人敏成之女。亦有婦德。宗黨稱之。生於己卯。卒於丁未。公初葬于廣州。己巳十月。遷窆于利川屯知山後谷里負乾向巽之原。二淑人並祔焉。廷熙娶僉知李蕙女。生一男。曰峻。峻娶副提學尹摶女。生男。曰奎鎮。星鎮。昔亡友宋子文。公之姨弟也。拯初從子文識公。欽其悃愞。時吾先子方袁牛溪續集。公之曾祖郡守公。卽牛溪門人也。從公得牛溪手帖甚多。公之謹守舊家文獻。亦可徵也。公歿後七年。胤子來託墓文。以病陋辭不獲。謹敍而銘之。銘曰。

我觀於人。天賦爲最。加以濡染。其用亦大。嗟惟沈公。信美其質。矧爾淵源。德友攸述。于家于官。良心藹然。雖未顯揚。其行可傳。有子有學。有孫有才。我徵餘慶。用勸方來 (□□明齋先生遺稿□□ 卷之三十九, 墓碣銘, 昌平縣令沈公墓碣銘)

## 70. 정정양(鄭正陽)

○ 以李埜爲驪州牧使, 鄭正陽爲懷德縣監。出吏曹謄錄。(□□승정원일기□□ 속종 9년(1683) 8월 27일 (병인))

○ 吏曹啓曰，新除授懷德縣監鄭正陽，頃日呈狀于本曹曰，夙嬰痼疾，幾至死境，百般醫藥，僅得少效，而氣力綿綴，形肉大脫，及拜本任，強疾祇肅，而觸寒過多，宿患還劇，旬月之內，萬無起動之望，斯速入啓處置，而以病勢雖如此，調理自可赴任題退矣。今日又爲呈狀，病勢一向添加，赴任未易云，當此秋務方殷之日，不可等待其差復，鄭正陽，依近例罷黜，何如？傳曰，允。（□□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9월 18일 (병술))

## 71. 최세경(崔世慶)

○ 有政。以南宮壏爲平安都事，崔世慶爲懷德縣監。出吏曹。（□□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9월 18일 (병술))

## 72. 이지廉(李之濂)

○ 辛卯/以韓泰東爲執義，權斗紀爲司諫，韓構爲掌令，李國芳爲正言，李之濂爲懷德縣監。李之濂素稱學問之士，甲寅土禍作，聞宋時烈將遠謫，遣其子迎勞於中路，其子請推還前日論禮往復書札，時烈心鄙之。士友聞者，莫不笑其畏禍，然其子之事，非必李之濂所指教也。前歲被薦剡，朴世采欲擬臺望，因物議不快而止，至是乃授邑宰。（□□肅宗實錄□□ 15卷，肅宗 10年(1684 甲子) 3月 25日 辛卯)

## 73. 정익주(鄭翊周)

○ 有政。吏批，…(중략)…，鄭翊周爲懷德縣監，…(하략)。（□□승정원일기□□ 숙종 10년(1684) 4월 12일 (정미))

○ 謝恩，…(중략)…，懷德縣監鄭翊周，…(하략)。（□□승정원일기□□ 숙종 10년(1684) 4월 14일 (기유))

- 下直, …(중략)…, 懷德縣監鄭翊周。 (□□승정원일기□□ 숙종 10년(1684) 5월 25일 (경인))
- 懷德縣監鄭翊周, …(중략)…, 差使員上來。以上朝報。 (□□승정원일기□□ 숙종 12년(1686) 2월 7일 (신묘))

詩 五言律

#### 鄭懷德翊周 大夫人挽

杞室存儀則。陶闡著義方。三郎齊佩竹。一弁亦乘障。雨迹專城久。獐山左海忙。空餘舞彩地。稚老共悲傷(□□宋子大全□□ 卷三, 詩○五言律, 鄭懷德翊周 大夫人挽)。

## 74. 심정기(沈廷耆)

- (전략)…, 沈廷耆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14년(1688) 12월 22일 (신유))

“심정기(沈廷耆) 잘 다스려 승진해 다른 군으로 제수받았다. 마애비(磨崖碑)가 있다。  
(□□회덕읍지□□ 「명관」)

#### 伯舅朔寧郡守沈公墓誌銘

我舅氏沈公。諱廷耆。字台叟。青松之沈。爲我東大姓。高麗文林郎衛尉寺丞洪孚。其始祖也。入本朝。有諱德符。左政丞。封青城伯。自後圭組相襲。高祖諱宗忱。肅川府使贈左贊成。曾祖諱偰。四山監役贈領議政。祖諱之源。領議政。號晚沙。相孝顯兩朝。德業具在國史。考諱益善。豐德府使。妣南陽洪氏。贈領議政忠正公花浦諱翼漢女。以崇禎後二十四年辛卯十月二十三日生。生而奇邁。四歲。能受書作字。晚沙公甚愛之。庚申。筮仕。除翼陵參奉。越三年。陞敘爲掌樂主簿。自此甄叙隨續。內則通禮院引儀。司橐寺主簿。敦寧府判官。翊衛司衛率。掌隸院司評。司議。外則懷德縣監。溫陽朔寧郡守。蔭路非公所樂。而低徊沉淪凡十六年。竟以乙亥四月二十五日。卒于朔寧任所。享年纔四十五。公姿貌秀而豐。氣宇和而爽。天性孝友。篤於事親。府使公御子弟甚嚴。公在側。必爲之開顏。非有故。終日不離左右。前後以邑養。靡不盡其誠。得美魚。未可遠致。則輒不食。太夫人遘疾。公嘗糞刲指。丁憂廬墓。終三年。遵遺意。撰次花浦公行錄。又裒集遺藁。請於尤庵。而銘序之。設表石於墓道。自爲文以記。與諸弟同居一室。和氣藹然。有廩祿輒與分之。視諸姪

無間已出。居家作自警文。以事親刑妻訓子爲目。皆喫繁語也。從仕必盡心奉職。戊辰。差國葬都監郎。役甚鉅。時且猝急。人皆爲虞。而公能及期奏功。在隸院則聽斷公明。得都人譽。莅三邑也。以修舉節約爲務。尤致意於興學敦俗之政。搜隱結而補民賦役。捐餘俸而助民婚嫁。若其公廨之改觀。官庫之充溢。亦可見爲政之勤且廉矣。去後邑民。輒立石頌之。此蓋公平生之始末也。噫。古人求人。每患才與行之不相兼。而公乃並有之。如尤庵宋先生。老峰閔相國。皆少許可。目無勝人。而於公則或稱其言行。或獎其才識。二公豈阿私於公者哉。配淑人完山李氏。宗室海原君健之女。內行克備。有女士風。與公同年生。後公十四年而歿。公之喪。初葬於坡州分水院先山丑坐原。戊子。改窆于局內負寅之岡。與淑人同塋而異室。有一男一女。男師晚縣監。女夭。縣監一男二女。男東鎮。女李錫勉。任冕周。東鎮一男亨漢。余晚生。不及事舅氏。先君子語及公。必稱之曰。好丈夫。今於墓銘之託。有不敢以不文辭。遂泣涕而爲銘。銘曰。

晚沙之忠。花浦之節。爲內外祖。宜公之哲。孝友其行。廉勤其政。求古君子。厥美可倣。稟之何厚。拯之何忙。報善無徵。彼天茫茫。余敢有私。尤翁所譽。爲銘以藏。于墓之墟 (□□悔軒集□□ 卷之十八, 墓誌銘, 伯舅朔寧郡守沈公墓誌銘 幷序)。

## 75. 이인망 (李仁望)

○ 有政。…(중략)…, 李仁望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5월 14일 (기유))

○ 下直, 懷德縣監李仁望。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6월 16일 (신사))

○ 懷德縣監李仁望疏曰, 伏以君依於國, 國依於民, 國無是民, 則何以爲國? 是以, 自古明王聖主之御國蒞民也, 必先祛害民之政, 務施保民之惠, 苟可以利民, 則雖損於國, 而有所不顧矣。然而一人之聰明有限, 萬民之疾苦難聞, 故建置州縣之長, 界以字牧之任, 使之承流宣化以察民瘼, 爲守令者, 苟或莫念分憂之責, 徒思益上之地, 則夫豈所以置守令之本意哉? 今臣來守此邑, 目見民瘼, 而行之已久, 無由變革, 雖有牧民之名, 而實無惠民之政。殿下, 深居九重, 何以知民困之至於此極乎? 臣若以踈遠而爲嫌, 僭越而不敢, 心知其弊而猶復緘口, 則實非臣子奉職之道也。茲敢猥將愚魯之說, 仰瀆宸嚴之下, 伏願聖明, 試垂裁察焉。夫民生之苦樂, 惟在於賦稅之厚薄, 昔在先朝, 設立大同之法, 良以此也。設法之初, 其意甚美, 而立

法已久，弊端滋甚，一結十斗之米，猶難辦出，而今則更添二斗，一半作木之木，初爲五升三十五尺，而今則反作七升四十餘尺矣。朝家，雖以六斗折定其價，而比年以來，木花絕貴。故奔走丐貸，轉貿市上，而厥價甚騰，將至一石米，而不能貿得，或賣其田宅，或至於流離，怨讐載路，景象愁慘，哀我民斯，何以支保？及其艱辛貿備，運致京司之後，又有點退之患，改備更輸之際，其糧資夫馬之價，人情賂遺之費，皆出於民間，則糜資費穀之數，又將如何哉？竊伏聞廟堂之上，亦知此弊，依事目降升尺之議，間或有之，至經睿裁，行會列邑，而旋卽廢閣者，抑何故耶？議者，每以爲木品既降，則行用爲難，此甚不然也。當初創立之時，旣已各司通用，而國無乏絕之患，民有安保之樂，及其木品漸升之後，國不加富，而民困愈甚，以此觀之，則木品雖降，而難於行用，斷無是理。設或貢物下輩，嫌不如前，不爲願受，而豈爲此輩之不願，不念億兆之巨弊乎？若必以行用爲慮，而終難變通云爾，則抑有一焉。錢文，卽今日京外通行之貨也。竊聞京市一兩之錢，直米六七斗，正合六斗作木之數也。一端之木，代捧一兩之錢，行會各邑，以爲民例，則國無所失，而民蒙實惠矣。雖貢物下輩，亦不敢以行用之不便爲言，而至於輸納之時，又無點退之弊，豈不兩便於公私乎？至於田三稅作木之木，朝家，旣以一依大同木升尺之例，作爲事目，分付各邑，而卽今田稅之木，倍好於大同，因成謬規，其弊尤甚。六斗作木，猶且呼冤，況此田稅一疋之價，稅米則四斗二升也，收米則五斗也，稅太則六斗也。其所以折定者，比諸大同，其數尤小，以此作木，而無所變通，則其爲取怨於峽邑之民，當復如何？大同之木，儻蒙減升尺之惠，則田三稅之木，亦當視此而一體隨減矣。且窮民一族之侵困，其來已久，或因賦役之煩重，或因軍兵之逃故，其爲弊端，固非一二，而姑以臣所守之邑言之，各司奴婢，當其推刷之際，慟於威風，不忍刑杖，以無爲有，以死爲生，只存虛簿，指徵無處者，其數甚多，而朝廷，漠然不知，守令，莫敢陳達，侵徵之患，延及於一族之一族，切隣之切隣，逃逋相繼，怨聲徹天，事之寒心，莫此爲甚。夫各司奴婢，亦一殿下之赤子也。其所徵捧，比諸國家經用，輕重自別，而一向侵督，重取其怨苦，若此不已，則殿下之惠鮮，終無下究之日，而舉國之生靈，殆有盡散之勢，民將何恃，國將何依？今日嘯聚之徒，安知非飢寒之所致耶？爲今之計，莫若別遣御史，查出虛簿，物故逃亡之類，一併減除，俾無隣族侵徵之患，則嗷嗷之民，庶蒙一分之惠矣，此豈非救民之一大關乎？且我國水軍之痼弊，甚於陸軍，民之見充於水軍，如入死地，此實哀痛之意也。此則雖欲變通，事勢不易，而猶有可以少便於公私者。沿海之邑，亦有陸軍，山峽之郡，亦有水軍，以沿海之陸軍，換山峽之水軍，則其遺惠於峽民，不啻河海矣。雖以沿海之民言之，居於沿海，近於水營，則實無遠路往來之弊，必不以相換爲怨，而脫有緩急，其與陸邑之不習水勢者，功必倍矣。此非獨賤臣一人之私見，實一國公共之論也。嗚呼，國是殿下之國，民是殿下之民，以殿下治國之誠，推先王若保之心，大同田稅

之木，或升降尺，或捧錢文，各司流亡之民，去其虛簿，勿侵隣族，海邑之陸軍，陸邑之水軍，各以附近，許令相換，則民無愁恨之聲，國有安泰之象，而盜賊，化爲良民矣。臣旣有此區區之見，方爲構疏欲進之際，伏見聖上，特下求言之旨，一札十行，天語勤至，臣奉讀再三，有以見我殿下，敬天勤民之至意也。雖無求助之教，尙欲一獻蕪蕪之說，況此導之使言之日，豈敢泯默而已乎？伏願殿下，恕其狂妄，不以人廢言，而深思舒究，論及大臣，少加採用，則斯民幸甚，國家幸甚，臣無任云云。答曰，省疏具悉。所陳弊瘼，令廟堂稟處焉。正月十五日備邊司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上疏，則以爲民生之苦樂，在於賦役之厚薄，至於條陳一道弊瘼，以冀變通施行爲白有臥乎所，其一曰，大同田稅作木降減尺數之事是白在果，以五升三十五尺，定爲事目，行會各邑，則非不知民情甚便，而國家需用之處，各自不同，前後章奏請行者，非一而皆窒礙不得變通，則今不可輕議是白乎旂，其二曰，各司奴婢逃故，一併減除，俾無隣族侵徵之事是白在果，凡逃故之類，限年許除，限日立案之法，蓋爲此白骨隣族侵徵之弊而設也，則守令，所當着念舉行，而近來不究立法本意，玩愒遷就，不卽成給立案，故徵布於旣骨，以致害及隣族，而若欲行查，則終未免虛實相蒙之弊，前頭推刷時，精查變通事爲宜當是白乎旂，其三曰，水陸軍從便相換，緩急有須之事是白在果，峽民充定陸軍，海民充定水軍，則便於往來，習於水路，誠如疏內辭意，而但水陸軍苦歇懸殊，一朝相換，不無呼冤離散之弊是白乎等，以海西數邑，亦有是請，而不爲輕許，實慮此弊是白去乎，以此意分付之意，回移本道，何如？啓依允。以上出燼餘日記。（□□승정원일기□□ 숙종 16년(1690) 1월 10일 (임인))

## 76. 권태시(權泰時)

○ 有政。…(중략)… 權泰時爲懷德縣監，…(중략)…。已上春坊朝報。（□□승정원일기□□ 숙종 16년(1690) 10월 27일 (갑신))

○ 下直，懷德縣監權泰時。（□□승정원일기□□ 숙종 16년(1690) 11월 17일 (갑진))

### 承訓郎行懷德縣監權公墓碣銘

公諱泰時。字亨叔。姓權氏。號山澤齋。安東人也。自始祖高麗太師諱幸而蟬聯至國朝。資憲大夫吏曹判書諱輓。宣敎郎齊陵參奉贈嘉善大夫戶曹參判諱安世。啓功郎軍資監直長諱誌。爲公高曾祖三世。考諱昌業。號樊谷。蘊德不顯。妣南陽洪氏。唐城君諱常玄孫。

忠義諱勤女。公自兒時已端重。八歲。受小學。能解其義。稍長。益讀聖賢書。篤志嚮學。不屑爲舉子業。而樊谷公學問有師承。教子弟有法度。公既受性純美。薰襲有資。持心制行。循蹈繩墨。駿駿日有成就。又與木齋洪公汝河，孤山李公惟樟諸君子。從游講論。有麗澤之益。日晨興。拜家廟及朱子真像。退危坐。竟日取朱書節要，心經，近思錄。體驗研究。有所實得。襍古今禮家變節。參以朱子家禮。有所考據。構精舍江勝處。取易損之大象。扁以山澤。俯仰玩索。有以自樂。肅宗庚午。用大臣學行薦。除掌樂院主薄。李尙書觀徵，權相國大運。見公莫不敬重。至欲擬以南臺。尋出知懷德縣。縣多巨族。號難治。公至則戢豪橫。煦寡弱。壹出公正。值歲大無。捐廩蠲俸。計口分糶。其翌年春。米踊斗直百錢。貧氓所貸富戶穀。秋當償者。利至什。公報請方伯。令民得倍其償。方伯關勅他郡。凡償債者視此。一道胥悅。有與公相厚者。憑地部牒。欲規取郡內水徙生土處爲田。公曰。此皆本民田。豈可使民失業。弗許施。其人爲謝服。延陵君李公萬元。在座面歎曰。言而義與聞義而服。皆難。今日覩兩難事。律己廉白。無絲毫染官物。壹遵成法古訓爲治。郡中士民。凡有所爲。輒曰明府聞之。謂何如。旣歸。民鐫碑以頌德。家食空乏。而常晏如。每月會諸生講學。申呂氏鄉約。倡導鄉里。蓋公莅官制事之本原學問如此。公事親有至情。常冬月。親有病。須竹瀝。剖竹不待煨而瀝生滿節。取以進得效。人謂孝感所致。喪祭盡誠禮。值樊谷公忌日。時年八十有五。而猶齋沐將將事者。氣忽陷。伏枕悲泣不已。俄而卒。可謂終身慕者也。庶弟有過命答之。卽下堂撫而泣曰。吾不能教汝。致傷大人遺體。在郡自奉甚菲薄。而於窮交族周恤如不及。蓋公學問行義之本原孝友如此。公生仁祖乙亥八月二十九日。以肅宗己亥四月十日卒。是年十月十二日。葬于鶴鴛南麓負亥之原。士林議立社以祀。因朝禁不果。公前配昌原黃氏。尙衣院別提千一女。後配月城李氏。大司憲繩直孫塏女。男可貞，可常，可長，可徵。女金恒壽，金千重。前配出。男可聖，可正。女趙桂。後配出。可貞男善元。女盧德運。可常男命元，士元。女李長璉。可長男舜元。女南應周，鄭宜楫，申翼錫。可徵男處元，應元。女李以檀生員，朴增煥，李仁洞。可聖男復元。女金孝源，河龍翼參奉。可正出繼族叔份後。男壽生貞。曾玄以下不錄。公風儀偉然。平居寡言語。臨事若無所思度。而施設有條理。又本之以實學懿行。使發而爲世用。其利益豈微哉。而顧試一邑以終。其如時不耦何哉。公曾孫訪以其狀來。屬範祖銘公墓石。銘曰。  
所資于學。何施不堪。而枳一縣。如鍾而暗。非德或歎。在心則恬。有劖于石。無怍人瞻。  
(□□海左先生文集□□ 卷之二十六，碣銘)。

### 輓權懷德泰時 二首

敬堂門下士。樊老最推賢。嗣德元無忝。承家更有傳。時來擬黼黻。老去晦林泉。考造今餘幾。儒冠日索然。先友凋仍盡。惟公幸獨存。養閒兼齒德。編禮究根原。往跡今如夢。殘生欲斷魂。他年偶一醉。那忍過西門。(□□密菴先生文集□□ 卷之二, 詩)

### 挽權懷德泰時

蔚然林下見儒姿。養得真醇不自欺。鶴唳九臯聲有聞。牛刀百里政無疵。心平詎間難言處。行厲猶勤易倦時。八十五年安且順。滔滔今世更誰誰。(□□玉川先生文集□□ 卷之一, 詩)

### 祭權懷德泰時 文

維上之四十五年己亥十月庚子朔十一日庚戌。契家後生安陵李栽。謹具鷄架薨果之奠。敢昭告于前知懷德縣事永嘉權公之靈。嗚呼。栽嘗謂世之學士大夫優於德行者。或未必達於政。精於政術者。亦或有歉於德。惟公家學之傳。孝友之實。既有以成諸身而信乎友。及其名達九重。起應旋招。受社稷民人之寄。則其清慎仁愛。所以惠柔良而警奸細者。又卓然非今之從政者所可及。嗚呼。若公者。其才志行業之全。亦可謂無愧爲人之實矣。遭時不幸。未究厥施。廿載林泉。竟以天年下世。循始迄終。在公何憾。惟是鄉邦無所考德。善類舉切驚悼。矧余通家後生。感念先誼。當作何如懷耶。遠日已迫。姻好畢至。痛儀刑之永隔。愴孤露之靡託。一盃薦誠。尚監哀牘。嗚呼哀哉。尚饗。(□□密菴集瓶餘□□ 冊一, 密庵瓶餘)

## 77. 안세징(安世徵)

- 吏批啓曰, …(중략)…, 安世徵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윤5월 21일 (정해))
- 下直, 懷德縣監安世徵,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6월 21일 (정묘[정사]))

### 錦水記聞

(전략)…權天章甲戌日記曰。岳翁先生旣以臺啓謫洪原。掌令安世徵據撫先生爲廢妃請處別宮疏語。目以凶慘。請拿問勘罪。遂自謫中被拿。旣至置對。世徵以臺諫參坐。見先生德容辭辨。始覺其誣。遂以爽實引避曰。見某原辭。原其本情。未必有侵逼之意云云。世徵由是斥補懷德縣監。旋移拜晉州牧使。過山陰入衙軒。見主倅李敬以學標曰。使君識李某判

書乎。敬以曰鄰鄉耆長。素所親習。何但相識。安曰君子哉。李判書。敬以曰此老今日朝廷。以爲有大罪。桎梏而栴棘之矣。不意公之有是語也。安曰始吾亦誤聞人言。發論請拿。及鞫廳之坐。見其舉止。觀其容貌。聽其言辭。不惟知其無罪。斷斷乎可保其爲有道君子。吾遂以誤論引避。坐是補外。患難窮厄到頭。言辭舉止。不變其所守。自是得道者也。嘖嘖稱歎。蓋心服也。敬以爲余言之 …(中략)… 其墓表見慕齋金先生文集中 (□□密菴先生文集□□卷之十一, 雜著).

## 78. 강석범(姜錫範)

- 有政。…(中략)…, 姜錫範爲懷德縣監。以上朝報。(□□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8월 19일 (갑인))
- 下直, 懷德縣監姜錫範。(□□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9월 19일 (갑신))
- 忠清監司書目, 懷德縣監姜錫範, 以親年七十, 據法呈狀, 身病且重, 還任無期, 不得已罷黜事。(□□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7) 4월 8일 (정사))

## 79. 이수만(李綏晚)

- 下直, 懷德縣監李綏晚, 茂朱府使李東龜。(□□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7) 5월 11일 (경인))

## 80. 유만령(柳萬齡)

- (전략)…, 柳萬齡爲懷德縣監, 金…(하략)。(□□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6월 19일 (임술))
- 李思永, 以吏曹言啓曰, 新除授懷德縣監柳萬齡呈狀內, 與本道兵使李澤, 婚姻家相遇, 斯速入啓處置云, 依法典改差,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6월 22일 (을축))

## 81. 이연(李纁)

- 行都目政, …(중략)… 李綸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6월 24일 (정묘))
- 下直, 懷德縣監李綸。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7월 27일 (기해))
- 忠清監司書目, 懷德縣監李綸, 父病果重, 受由歸家, 無意還任, 三朔曠官, 民事可慮, 罷黜事。 以上朝報。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3월 13일 (갑오))
- 吏曹啓目粘連, 觀此忠清道暗行御史李東彦書啓, …(중략)… 懷德縣監李綸段, 勤於職務, 處事無差, 田政精詳, 保民無怨, 還穀捧上時, 各別擇捧, 公無逋欠, 恩威竝施, 譬言頗多是白乎矣, 在官既久, 懈意旋萌, 倦於奉職, 束吏漸緩, 受暇歸鄉, 久乃見遞, 如是之際, 害多及民爲白乎旂。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5월 23일 (갑진))

## 82. 이정천(李挺天)

- 有政。 …(중략)…, 懷德縣監李挺天,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3월 18일 (기해))
- 下直, 懷德縣監李挺天, 稷山縣監黃鏘。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4월 23일 (갑술))
- 忠清監司書目, 懷德縣監李(崔)挺天, 受由歸家, 病勢果重, 罷黜事。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9일 (정사))

### ○ 李懷德挺天 輓

一斗百篇今已矣。高亭閒月欲黃塵。老來蘿石從吾好。歸去淵明只許貧。積禍摧心猶曠達。沉痾消肺尙精神。青天有月來依舊。長憶當歌對酒人(□□昆侖集□□ 卷之四, 詩)。

## 83. 임명원(任命元)

- (전략)…, 任命元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10일 (무오))

○ 今日畫講時, 懷德縣監任命元改差,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12일 (경신)) 원본407책/탈초본21책 (6/22) 1702년

○ 午時〈壬午九月十二日〉, 上御興政堂。 畫講, 入待, …(중략)…。出舉行條件 金昌集曰, 戶部郎別禮房, 事多煩劇, 不可以人人而爲之。 故, 佐卽[佐郎]任命元, 頃除外邑, 旣已仍任矣。 今又除懷德縣監, 更請仍任, 實涉未安, 而卽今大禮將迫, 責應甚多, 決不可捨此人, 而付之生手, 任命元還爲仍任, 何如? 上曰, 仍任, 可也。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12일 (경신))

## 84. 남반(南磐)

○ 有政。 懷德縣監南磐,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13일 (신유))

## 85. 이제설(李齊說)

○ 有政。 …(중략)…, 懷德縣監李齊說,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24일 (임신))

## 86. 허전(許塚)

○ 有政。 …(중략)…, 懷德縣監許塚,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9월 29일 (정축))

○ 謝恩, 僉知黃渭龜, 懹德縣監許塚。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10월 5일 (임오))

○ 下直, 懹德縣監許塚。 (□□승정원일기□□ 숙종 28년(1702) 10월 27일 (갑진))

○ 今春夏等褒貶, …(중략)…, 懹德縣監許塚, …(중략)…, 以上, 中。 扶餘縣監朴聖漢, 石城縣監金泓, 鎮川縣監李蘊, 以上, 下。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8월 10일 (정축))

○ 忠淸監司書目, 懹德縣監許塚, 今月十四日身死事。 (□□승정원일기□□ 숙종 31년(1705) 8월 19일 (경술))

### 許懷德塚 挽

半音游君伯仲間。幾回相對笑開顏。高才局束封雷地。薄宦蹉跎列宿班。萬事紫荊花已謝。千年華表鶴無還。傷心淚水新歸後。贏得西風滿袖潛。(□□損窩先生遺稿□□ 卷之四, 詩)

## 87. 남궁세(南宮塚)

○ 有政。吏批, …(중략)…, 南宮塚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31년(1705) 8월 19일 (경술))

○ 去秋冬等褒貶, 泰安府使尹摘, 陰城縣監金泰重, 懷德縣監南宮塚, 牙山縣監李萬始, 金井察訪李箕錫, 所斤僉使金三翼, 以上中。溫陽郡守閔最重, 清安縣監金研, 馬梁僉使申應箕, 以上下。(□□승정원일기□□ 숙종 33년(1707) 5월 5일 (병진))

## 88. 조기지(趙紀之)

### 挽趙懷德紀之

才子年來劇運傾。忽聞摧玉倍堪驚。談論每自千人廢。經業奚祗一藝精。河縣初回遺雅蹟。衡門掩沒惜前盟。徐君先後同隨化。白首長憐感舊情(□□霞谷集□□ 卷七, 挽辭 拾遺)。

## 89. 최침(崔沈)

○ 吏批, …(중략)…, 崔沈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9월 10일 (갑인))

○ 下直, …(중략)… 懷德縣監崔沈,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9월 24일 (무진))

### 崔懷德沉 輓

五馬行時枉弊廬。別來消息一封書。纔聞惠澤流花縣。忽報鄉山返柳車。六袞添籌年尚短。雙珠傳緒慶猶餘。溫溫風味難重接。題寄哀辭淚滿裾 (□□謙齋集□□ 卷之十一, 詩)。

## 90. 구장주(具昌柱)

○ 有政。吏批, …(중략)…, 具昌柱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41년 (1715) 1월 17일 (갑인))

## 91. 조정강(趙正綱)

○ 吏批, …(중략)…, 趙正綱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41년(1715) 1월 23일 (경신))

○ 下直, …(중략)…, 懷德縣監趙正綱,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41년(1715) 2월 15일 (임오))

○ 誣告罪人權盡性伏誅。盡性，故相臣尙夏從孫也。持身悖惡，多行不義，以僞造御寶，被繫邑獄，稱以上變，故逮囚設鞫。以其告變書中語發問曰：“逆謀者是何人，凶人書二張，是何人書，而書中辭意何如？名錄是何許名錄，而何故見奪於刑吏及衙奴？衙奴是何倅之奴？竝一一直招。”盡性供以爲：“丙戌十一月，清風府使沈廷輔，使金武貞請見言：‘老論預爲遠禍安身之策，李健命書，要勸渠方圖置毒、刺客、起兵三事。’廷輔手書出銀各人名錄，付渠上京，身陷僞造之罪，見囚懷德縣獄。刑吏朴必明，與衙奴，稱以主倅之令，搜探文書而去。本倅卽趙正綱”云。鞫廳議啓曰：“沈廷輔摘發其僞造御寶之事，世所共知，因嫌發告，輒請拿問，有關後弊。”先請拿覈必明。必明取招後，更推盡性面質，盡性理屈加刑，遂自服其 誣告。結案曰：沈廷輔爲清風府使時，渠之御寶僞造之罪，發覺成獄，陷於死地，以此銜嫌，以死中求生之計，誣告的實。朴必明以其時刑吏，出入獄中，本倅趙正綱，旣已身死，憑問無階，則以文書搜出，推諉必明，以實誣告廷輔之計。所謂名錄文書，皆是做出虛言，所謂書札及初招所供，與廷輔酬酢凶言，亦是做出云。不待時處斬，籍沒家產，朴必明放送。(□□景宗實錄□□ 11卷，景宗 3年 (1723 癸卯) 1月 24日 甲辰)

## 92. 강잔(姜纘)

○ (전략)…, 姜纘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44년(1718) 8월 11일 (정해))

- 下直, 懷德縣監姜纘, …(하략)。(□□승정원일기□□ 숙종 44년(1718) 9월 9일 (갑신))
- 忠清監司書目, 懷德縣監姜纘, 月初二日, 遭母喪事。(□□승정원일기□□ 숙종 46년(1720) 5월 11일 (정축))

### 93. 조명국(趙鳴國)

- 吏曹口傳政事, …(중략)...; 懷德縣監趙鳴國。(□□승정원일기□□ 숙종 46년(1720) 5월 11일 (정축))
- 吏曹達曰, 新除授懷德縣監趙鳴國呈狀內, 本道兵使李台望, 卽妻同姓三寸叔母夫, 法當相避, 斯速入達處置云。既有相避, 則不可仍令赴任, 懷德縣監趙鳴國改差, 何如? 令曰, 依。(□□승정원일기□□ 숙종 46년(1720) 5월 13일 (기묘))

#### 郡守趙公 鳴國 墓碣銘

余生長漢師之城西。與公同閑居。余時童子遊。公已老蒼措大。余雖後公七歲。不敢肩隨。而公則弟畜相愛者深。旋各星散。間值相對。輒款款有故遊情也。及公歿。公子翼彥以長胤命來曰。子吾先人友也。先人墓無碣。願子之銘之也。余感舊傷今。不能以拙蕪辭。按公諱鳴國。字吉之。趙氏自高麗判院事岑。始籍楊州。我朝有末生領中樞府事。謚文剛。簪裾相襲。至諱之柔。績學潛德。卽公曾祖也。祖諱相禹。號時菴。學於沙溪金先生。以學行名世。元宗追崇。丁卯和議。皆抗疏極論。忤旨抹撥。孝廟朝。始拜寢郎。考諱爾炳。官掌令。當肅廟初服。時事大變。以正言上疏極言之。尤菴先生特書以獎之。妣池氏。師傳鳳輝之孫。通德郎性淵之女。公以崇禎後丙辰五月日生。八歲。遭外艱。又三歲失恃。守制如成人。見者莫不嘉歎。公幼聰悟有秀才。未成童。經史皆目寓心解。早遊饕舍。屢占魁等。聲譽日播。二十四。取司馬試。自此人朝夕期大闈。竟不得則命也。甲午。除康陵參奉。例遷至奉事。直長。己亥。陞主簿。旋移金吾郎。庚子。又移秋曹。以事坐罷。罪該同案。公不自白。知者皆多公焉。卽拜懷德縣監。親嫌遞。又拜監察。翌年。出監新昌。歲大歉。民多顛連。公至。開獄門寬逋負。移粟以濟民飢。縮俸以蠲別賦。民誦之。是年冬。鏡黨用事。宗國將禍。公曰。此豈仕宦時耶。遂移疾辭歸。縣民奔走借寇。終皆垂泣惜去。爲政半年。惠政之入人深如此。公小築于溫陽之先壟下。時李公舉東。尹晦甫焜講學於巍巖。

之上。公杖屢過從。或講難文字。或徜徉水石。適然自適。若將終身焉。乙巳。今上新政。公復入秋曹。曹有李範疑獄。久未決。曹長專靠公。公按覈未幾。罪人自服。一曹嘖嘖稱公威明。丙午。爲歙谷縣令。自此歷天安，安山，韓山郡守。其爲治一如新昌時。在安山。當壬子大飢。方便聚穀。廣設賑具。境民無飢色。他邑之聞風來哺者。皆一視接濟。方伯繡衣皆褒聞之。湖南御史亦訪於沿路而上之。至蒙恩賞。丁巳。從子泰彥以諫官。重觸天怒。終謫海島。聞者魄褫。時公赴韓山纔數月。卽棄歸鄉廬。公在桂坊。春宮方三歲。睿姿早成。已學孝經。公參講書筵。釋告字句。必有理致。又於習字。必隨手導諭。春宮後以所習字。各賜宮官。公不勝忭喜。作詩贊嘆。諸僚皆和之。一時稱美事焉。公居閒。日以經史自娛。名其所居堂曰省菴。蓋取曾子三省。而齋曰秉燭。亦老而好學之意。其素志可見也。癸亥。公年六十八。公哭恬之回甲。公慟慕若袒括初。泫然泣曰。追服禮所不言。雖不敢徑情行之。頑不滅死。又見此歲。吾豈忍食肉衣帛。言笑嘻噫。若尋常爲哉。遂居處飲食。一依憂制。執禮甚固。纔數朔。氣日枯而病已奄奄矣。一日強疾盥洗。就拜祠堂。及卧牀席。仍就盡焉。卽其年五月十三日也。公孝友其性也。屢典郡邑。每深不暨之痛。請於伯氏。權奉祠宇於任所。晨謁暮審。若定省禮。喪餘必齋沐。備物必躬檢。及祭必盡哀。事伯氏如事父。親愛篤至。在官服食供養。必誠謹。蓋公王考時菴公，叔父佐郎公爾翻。俱以孝贈官旌閭。伯氏公鳴時，從氏公鳴周。亦皆以孝至聞於朝。公之篤於倫彝者。儘有所自來矣。且佐郎公移孝之忠。居顯廟方喪。情文無異私憾。竟以致命。公七十追喪。終不勝哀。以聖人滅性之戒言之。俱不能無過。或近於屈原，伯奇之忠孝。而其純篤之誠。眞所謂加於人一等也。亦公之家法然也歟。處世則恥與人渝渝熱。常退低一頭而不歎也。居官則廉白之操。至使妻子飢餒而不顧也。謹辭受之嚴。則如婦家之科後別券。終不屑也。恤窮困之甚。則自己之所喫着。無難施與也。此豈非衰世之至難得者耶。公配綾城具氏。父僉樞文重。領議政致寬之後。幼孝事父母。及歸公。常以未逮事舅姑慟恨焉。性廉謹。平生不以一毫累公清德。先公十年亡。其生甲子一周。葬于龍仁之負兒山下。從掌令公兆也。生四男。宅彥，錫彥，翼彥，得彥。季夭。側室一女幼。漢慶，垕慶。女李最熙，洪彥祿妻。長房出。胤慶。女李克大，尹宣國妻。仲房出。晚慶，憲慶，箕慶，宜慶。女李永源妻。叔房出。三房五女幼。漢慶子顯喆。內外孫曾男女總若干人。銘曰。

雪鵝西去。花川午原。高三尺封。寔孝子墳。人之好是。孰敢不式。世爭利棼。公韞如玉。世方慾昏。公清如冰。伊孝既篤。百行是膺。松翠入望。時翁攸藏。魂氣流通。肖孫觀往。特撮其大。有銘鐫石。詔今與後。警彼頑濁(□□屏溪先生集□□ 卷之四十九，墓碣)

## 94. 민장하(閔昌夏)

- 吏曹口傳政事, 懷德縣監閔昌夏。 (□□승정원일기□□ 숙종 46년(1720) 5월 15일 (신사))
- 下直, 懷德縣監閔昌夏, 召村察訪金昌發。 (□□승정원일기□□ 숙종 46년(1720) 6월 2일 (정유))

## 95. 서종일(徐宗一)

- 又啓曰, …(중략)… 徐宗一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 3월 25일 (갑진))
- 下直, 懷德縣監徐宗一, …(하략)。 (□□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 4월 18일 (정묘))
- 柳綏, 以御營廳言啓曰, 日昨登對時, 本廳各邑所納癸卯條新捧米布, 庚子年所貸留賑米, 尚多未納, 極爲駭然。 米則七八十石以上, 布則一同以上未收守令, 為先從重推考, 觀其前頭納與不納, 草記論罪, 當該監色, 令本道從重科罪事, 陳達矣。傳教內, 新去者推考, 則已前未捧者, 似不當一體推考, 罷職, 可也事, 命下矣。 所當卽爲舉行, 而庚子年留賑米未納之邑, 瑞山·舒川·牙山·連山·天安·新昌等六邑, 而數三年之間, 守令遞易者居多, 則自本廳有難查出現告, 分付本道, 使之詳查狀聞後稟處, 而癸卯條米布未納 忠淸道 文義縣令尹東衡, 懷德縣監徐宗一, 鎮岑縣監宋元瑞, 懷仁縣監申成集, 清州牧使崔尙鼎, 公山縣監金東鼎, 瑞山郡守李世晃, 全羅道茂長縣監申維翰, 黃海道載寧郡守閔思誠等, 依定奪爲先從重推考, 觀其前頭納未納, 草記處之, 而公山前縣監李衡坤, 遭喪遞歸, 瑞山前郡守尹基慶, 雖移他邑, 旣經秋捧, 則乃是已前未捧者, 依傳教罷黜,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1724) 10월 8일 (무인))

## 96. 이고(李東)

- 又啓曰, …(중략)…, 以李東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1월 26일 (을축))
- 下直, 昌原府使梁彬, 平康縣監申思迪, 懷德縣監李東, 沙斤察訪車亮徵。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2월 19일 (정유[정해])))

○ 乙巳二月十九日午時，上御時敏堂。晝講入侍時，知事李宜顯，特進官許旼，參贊官朴聖輅，侍讀官申昉，輪對宗臣咸平君泓，武臣副護軍黃壽聃，假注書崔暉，記事官安晟，記注官朴聖楷，同爲入侍。昌原府使梁彬，懷德縣監李東，平康縣監申思迪，沙斤察訪車亮徵，留待閣門外。…(하략)。(□□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2월 19일 (정유[정해]))

○ 上御晝講。侍讀官申昉論爲己爲人之學，曰：“人君則豈願見知於人耶？”上曰：“雖人君，豈不要見知於人也？自古好名之君，皆要見知也。漢武帝曰吾欲云云，考其行則不及遠矣。言之易，行之難，自古如此，誠不可不慎也。”上以李重煥等，既不設鞫，則文案封入未安，陸玄 獄案密封之事，今不必效之，命依他例勿封。遂引見辭朝守令，懷德縣監李東進伏。上聞其爲抄選，敎曰：“山林讀書，必知爲學之要，予欲聞之。”東曰：“臣聞爲學本末，知與行而已，知行之中，各有大致。一事一物之理，皆所當知者，而日用身心、倫常綱紀上，必先直截理會，此卽是致知之大致也。以行言之，則一善一行，固所當盡者，而就修己上言，則天人理欲之分，直截辦得，就治人上言，則善善惡惡，真實用力，此是力行之大致也。爲學而不先其大致，則恐非爲學之要。孟子所謂先立其大者，非謂是歟？”上曰：“言豈多乎哉？義理大體，一言盡之矣。聞有老母，今姑出送，而講學之人，甚不易得。早晚上來講論，以補予不逮。”(□□英祖實錄□□ 3卷，1年(1725 乙巳) 3年) 2月 19日 丁亥)

## 97. 죄증정(崔重鼎)

○ 乙巳九月十一日午時，上御時敏堂。晝講輪對入侍時，…(중략)…，刑曹正郎崔重鼎，…(중략)… 崔重鼎進伏，上問職姓名，重鼎曰，刑曹正郎崔重鼎。上問履歷，重鼎曰，康陵參奉·宗廟奉事·繕工直長·軍資主簿，至監察，爲懷德縣監，中間在喪矣，今都目復職矣。…(하략)。(□□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9월 11일 (을사))

○ “청렴하고 근신하며 잘 다스렸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회덕읍지□□ 「명관」)

## 98. 조이숙(趙爾翻)

○ 忠清道儒生·進士金錫來等疏曰，伏以忠孝，乃人道之大綱，清白爲士夫之高節，而其激勵之方，則惟在上耳。誕惟我列聖，斯之爲重，苟有忠孝之卓異者，則必旌之，清白之表著者，

則必褒之，以爲觀感興起之資。矧乎一人之身，而兼有忠孝之行，清白之操者乎？臣等，竊惟故懷德縣監臣趙爾翻，沒已六十餘年，而湖鄉長老，至今稱其忠孝兩至，清白無比，而崇獎之典，未稱其德，茲豈非聖朝之闕遺，而多士之抑鬱也哉？臣等請略陳之。在昔先正臣文元公金長生之門，有篤學至孝高世之士，曰贈吏曹參判趙相禹也。朝家旣棹楔之，士林又俎豆之，蔚爲湖人所尊慕，而其家庭之學，寔傳其子，曰爾翻是也。爾翻，襲純深之訓，聞義理之學，持心皎而厲，律己莊而慎，居家則尙敦厚，待人則主平恕，奉公則盡其誠，莅民則推其仁，此其平生事行之著見於出處之間者也。故門庭雍穆，而子弟和順，鄉黨信服，而士類推重，孝宗大王，以盡心國事許之，懷德遺民，以沒世不忘稱之，據此可知爲力行君子有用之學矣。然臣等，竊觀先正臣宋時烈所撰碣文祭文挽詞，先正臣宋浚吉所撰祭文挽詞及一代名人高士，若故相臣鄭太和，判書臣南龍翼，大司憲〈臣〉李翔，判書臣宋奎濂等哀誄之文，則皆首稱其忠孝，次言其清白，而其他事行則略之。蓋以爾翻之截然過人，人所難及處，尤在於忠孝·清白大節目耳。今於前輩所已言者而考之，則其在韋布時，遭仁廟國哀，食素終三年，及監懷德縣，值孝廟國哀，食素又如之，傍人悶其羸瘁而勸其從權，則輒引先訓以拒之，逮至疾革，而猶以勿用肉汁，戒家人。噫，儻非愛君之誠，素積於中，而悲慕之情，久而彌切者，豈於羸瘁疾革之際，尙不忍以滋味近口哉？此一款，可見其忠之至也。當其父病亟，稽首北辰，請以身代，蒼黃奔擣，觀者隕涕。及其遭喪也，葬前只歎粥，期後始食菜，血泣呼號，三年如一日。永慕追慟，終身如始喪，至於謁廟之禮，祭奠之節，恒盡其誠，罔敢少懈。噫，死則致其哀，夫子稱之，終身慕父母，古人難之，斯豈非至誠之根於天，而能自盡於人子之職者哉？此一款，可見其孝之盡也。身爲邑宰，而食不兼味，時值冬寒，而尙衣故絮，及其沒也，襲斂之具，返葬之資，皆出於邑人之所扶助，而至於子孫之計，則初無一毫經營。噫，凡人之居下流者，固不足責，而其或自許以矜厲者，鮮能超然於富貴財利之臼。若爾翻之高標爽襟，一塵不染，豈可多得乎哉？此一款，可見其清白之出倫也。是以先正臣文正公宋時烈所撰碣文曰，侯以名父子，篤於行義，旣仕，冰蘖自勵。又曰，侯之方喪一節，今世無之。祭文曰，國哀踰期，仍變寢食，凡有民彝，孰不歎服？挽詞曰，清標雪欲爭，懷縣去思碑，清操冰懸，惠政春流，方喪至行，前史罕儔。先正臣文正公宋浚吉所撰祭文曰，玉質金章，貞操苦節，忠孝友悌，固天所出，方喪六年，前後若一。又曰，篋無餘衣，家無餘蓋，妻子呼寒，四壁如洗。挽詞曰，夫子金玉姿，心境清如水，忠孝得於天，友悌亦深至，前後服君喪，六年如一日。宋時烈與俞槩書曰，此縣不幸，賢太守逝。夫非但一縣之不幸，實關吾輩運氣。此人，曾於仁祖大王喪，別居不肉，以終三年，今又如此，其至行，誠不可泯沒。儻於筵席啓達，有褒贈之舉，則實關世道，勸懲之端。宋浚吉與故相臣閔鼎重書曰，吾地主，意外不淑，其清白勤謹，猶是餘事。忠孝友悌，可謂出於天，方喪

六年，今古所未聞。噫，前輩之言，孰非可徵，孰非可信，而兩先正之張大褒揚，若是其隆重，則爾翻之忠孝兩全，清白無比，益可驗矣。臣等其敢阿好而創爲之說？我顯宗大王幸溫時，湖人以爾翻之實行，陳疏登聞，遂贈左承旨，而旌表之典，不及行也。肅宗大王幸溫時，欲請旌表之典，具疏將上，而適值回鑾，未果登徹。遂使至行清節，迄未蒙崇獎之恩，而將或至湮沒而已，則臣等所謂，聖朝之遺闕，多士之抑鬱，實非過論，茲敢不避瀆擾，相率叫閭。伏惟聖明，垂察焉。噫，我東方，以忠孝褒贈者，何限，以清白褒錄者，亦何限，而其誠之篤守之苦，則臣等於爾翻見之。今當新服之日，凡係風化之道，不可不逐件舉行，而人道之大綱，在於忠孝，士夫之高節，在於清白，則此尤聖明之所當致意處也。伏願殿下，勿以疏遠之言忽之，亟命攸司，俾舉旌表崇褒之典，以爲觀感興起之資，則非但爾翻之歿有餘榮，其爲世道之幸，國家之光，何如哉？臣等無任激切祈懇之至，謹昧死以聞。答曰，省疏具悉。疏辭，令該曹稟處。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11월 11일 (을사))

### 詩○五言絕句

趙懷德爾翻 挽 庚子十二月

惠政春如煦。清標雪欲爭。如何棄我去。還載柳車行。

### 銘

懷德縣監趙侯爾翻去思碑銘

清操冰懸。惠政春流。方喪至行。前史罕儔。昔公來麻。稚耋歡謳。今以柩歸。攀號莫留。何以寄哀。碑于道周(□□宋子大全□□ 卷一百五十)。

### 祭文

祭趙懷德爾翻 文 庚子十一月

惟靈學殖于家。祇飭其身。早歲入官。屢稱于人。迨其來此。愈自謹勤。逢歲大儉。民飢無食。公走村閭。戶哺人呷。流丐家歸。均無損瘠。民曰靡公。我其溝壑。公館渠渠。昔無今有。從昔不圖。只有資聚。公貶衣食。其功克究。民曰靡公。此構寧觀。國哀踰期。仍變寢食。凡有民彝。誰不歎服。況其清苦。如冰如檗。雖有巧詆。罔或瑕謫。惟茲賑政。擬以歲更。升鳩斗拾。倉庾將盈。民有所恃。各守竈陘。云胡不淑。沈痼遽嬰。天不佑善。殄促其齡。邑人奔號。腸摧涕零。伊我庸愚。猥蒙輸傾。松間之舍。溪上之亭。暇日從容。兩忘其形。誠意益孚。契義彌成。今焉已矣。徒煎五情。有懿先行。病未成文。敢不終副。以永於聞。嗚呼哀哉。舟溪油油。思公流澤。其澄徹底。想公清節。此邦之民。沒世可忘。一片短石。

若襄悲羊。嗚呼哀哉。日月流邁。素車將啓。嗷嗷稚寡。卹卹聯棟。朔風淒悲。頽景幽暮。  
一觴來訣。詎寫情素。嗚呼哀哉。尚饗。(□□宋子大全□□ 卷一百五十二)

### 戶曹佐郎贈左承旨趙公墓碣銘 幷序

趙侯爲懷德縣監。其民方歌來暮。而侯遽以柩歸。民爲立石通衢。以哀以頌焉。旣而侯之胤鳴世客寓于隣邑。懷民相謂曰。愛其人。愛其屋上烏。遂相與懷綏。鳴世奉侯神主。來居于縣治之南。此幾於桐鄉故事也。鳴世一日來謂曰。吾墓無表。願有謁焉。余辭曰。邑有口碑。足以不朽。彼鐫于道周者。猶是贅矣。復何贅爲。曰。世人不以有碑于州邑而闕于墓前也。余曰然。按侯名爾翻。字景翬。楊州人。始祖岑。高麗判院事。副司正訥。副司果之柔。寔侯曾祖祖也。考參奉相禹。以行義著名。沙溪先生門下。顯廟朝以孝行旌閭。母姜氏。僉樞籜之女。判書柏年之姊。侯生于萬曆丙辰。生時應其考異夢。幼服習庭訓。讀性理書。旁通馬韓諸子。入場屋居上游。戊子。除禮賓寺參奉。大臣稱其清慎。孝宗初服。慎齋金先生集秉銓。授典設別檢。中司馬。辛卯。遷義盈庫直長。收拾財力。造成藏府。事聞。上曰。盡心國事。不可不嘉獎。特命陞敍爲造紙。歸厚兩署別提。及爲掌隸院司評。戶曹佐郎。官皆劇務。侯尤剛明用職。官長皆請久任不他遷。嘗以輪對入侍。敷奏明白。皆稱旨。悉命罷行其所言。移井邑縣監。一以愛民爲主。治聲藉甚。諸公尉薦以爲可合州郡。無何忽聞參奉公病劇。疾馳歸侍。露禱北長。祈以身代。及喪。葬前餕粥。期年疏水。服除。爲司畜別提。及爲懷德。則孝廟新陟。每朔望。詣殿牌北向拜哭。先是仁廟喪。食疏以終三年。至是旣練而猶居外不肉。諸兄弟愍其羸悴。相與勉之。則曰。先君子每教以忠孝二字。每值國喪。必致其哀。至老猶然。今吾血氣方盛。可無憂矣。翌年庚子。只穿故絮。日坐寒廳受糴。疾遂作。十月廿三日。卒于官。年四十五。邑民皆會哭流涕。歸葬溫陽郡南首谷里巽向之原。侯名父子。篤於行義。旣仕。冰槯自礪。及歿。至無以襲斂焉。配曹氏。梅溪先生偉之後。顯信校尉沃之女。男長卽鳴世。次鳴遠生員。出爲叔父後。女適士人崔寀。鳴世生子文興。三女幼。鳴遠生子文煥。顯廟乙巳。臨幸溫陽之湯泉。邑中人士上疏顯侯家群行。命贈承政院左承旨。其爲風化之助大矣。余於參奉公。忝爲同門生。仍與侯兄弟復修姻義。及侯莅縣。又有習池好。每服公持守之篤。嘗語人曰。侯之他事可及。方喪一節。今世無之云。銘曰。

維侯先考號時菴。學文元公一事三。侯承厥緒徽未沫。令譽方馳圖遽屈。民追惠澤士友悼。其存者長孰謂天。(宋子大全□□ 卷一百八十)

## 行狀

### 戶曹佐郎贈左承旨趙公行狀

侯諱爾翻。字景翬。姓趙氏。楊州人。始祖岑。高麗判院事。歷二世有文剛公末生。以性理之學文藝之才。擅名當時。是生瑾。觀察使。觀察生仲輝。正言。是侯六代祖也。曾祖訥。副司正。祖之柔。副司果。司果公始自漢師避兵亂。寓居溫陽。爲鄉里所敬。考相禹。號時庵。以孝聞。經學詞章無出其右。隱居不耀其有。久事沙溪文元公先生。講論不懈。先生重之。薦拜爲齊陵參奉。不就。娶文科僉樞姜籀女。萬曆丙辰生侯于溫之梅谷里。生時時庵公有異夢。自幼服習時庵公教訓。受讀性理諸書。又旁通馬史韓柳等文字。其所製述。頗有古人體制。嘗入場屋發解居上游。戊子。以薦除禮賓寺參奉。人或曰。本寺官冗吏頑。儒生未易居。侯益自信。洗手奉職。謹察收支。無所漏失。吏輩皆曰。前後未有如此官者。原平元相國爲提調。亦以清謹盡心。稱之。未幾以事罷。孝宗大王元年庚寅。除典設司別檢。慎獨齋金先生集秉銓時也。冬中司馬。辛卯。例薦義盈庫直長。收拾財力。造成藏府。提調李公時昉。啓其狀。上特命陞敍曰。如此盡心國事之人。不可不嘉獎。壬辰春。遂陞造紙署別提。尋移歸厚署。又連爲掌隸院司評。戶曹佐郎。兩皆劇務。侯用職剛明。盡其誠心。長官皆請久任本職。爲戶曹時。以輪對入侍。悉舉本曹弊端。敷奏詳雅。上皆可之。命廟堂罷行之。癸巳。爲井邑縣監。一如京官時。尤以愛民爲主。治聲藉甚。諸公應別薦之命。以侯爲可合州郡。居四載。聞時庵公病劇。疾馳歸侍。稽首北辰。祈以身代。既遭喪。一依朱文公家禮。葬前啜粥。朞後始食菜果。服除。拜司畜別提。將赴闕謝恩。路聞孝宗大王賓天。卽所在。與士大夫會哭。詣闕成服。六月。除懷德縣監。約己奉公。修舊起弊。朔望。行望闕禮。仍北向拜哭。又詣鄉校。書院。率諸生焚香拜謁。蓋侯先是仁廟喪。已以小官。食素三年。至是成服前啜粥。已經初朞。而猶居外不肉。伯仲憫其羸悴。相與勉之。侯答曰。吾兄弟自幼侍先君。先君每以忠孝二字教之。且前後國喪。先君以草野布素皆卒哭前致哀。至於年既七十而猶然。今余官雖微。已是食祿之臣。且吾氣血方盛。無可虞者。終不聽。侯少年入仕。再爲守宰而水操不渝。故衣無故新。時庚子十月。天氣早寒。侯尙穿故絮。日坐寒廳。聽事監糴。遂患脣腫。其二十三日。卒于官。年四十五。邑民皆涕下。歸葬溫陽郡南首谷里巽向之原。配曹氏。梅溪先生偉之玄孫。顯信校尉沃之女。生二男一女。男長鳴世。次鳴遠。司馬。出爲仲氏爾重後。女適士人崔成。鳴世生一男三女。男文興。三女幼。鳴遠生一男二女。男文煥。二女幼。崔有三男一女。女適士人尹尙元。侯受教家庭。兄弟六人。至誠友愛。旣以文行立身。已仕以清白自礪。侯沒。縣之族人士民。入而治喪。惟見大夫人新衣禦寒而已。其餘僅僅掩體。邑人莫不嗟歎。自襲至斂。皆爲之資助。

得以隔至<sup>001</sup>。公前去井邑。其人立石頌之。及是又相與追頌焉。顯廟乙巳夏。南幸溫陽。郡中人士上疏。以顯侯家行誼。上命旌時庵公閭。贈侯承旨。又官侯伯氏爾後。仲氏爾重。而季弟爾炳。捷行朝廷試。遠近莫不歎動焉。余與時庵公爲同門生。仍與侯兄弟相善。及侯來蒞懷德。則尤服侯持身奉職之實。今因鳴世之請。第錄爲狀如此云。崇禎甲子八月日。恩津宋時烈謹狀(□□宋子大全□□ 卷二百十一)。

## 99. 유신(柳紳)

○ 有政。吏批, …(중략)…, 柳紳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1월 14일 (정미))

○ 慎無逸啓曰, 今日下直守令·邊將留待引見入侍時, 未下直守令問啓事, 命下矣。招問吏曹郎廳, 則旌義縣監朴良儉, 已署經而未下直, 鳳山郡守李義豐, 除署經而未下直, 懷德縣監柳紳, 憲府雖已署經, 諫院姑未署經,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2월 2일 (을축))

○ 下直, …(중략)…, 懷德縣監柳紳,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2월 10일 (계유))

○ 金致重啓曰, 臣敬奉聖旨, 馳往于忠清道忠州樓巖議政府領議政鄭灝所住處, 傳宣敦諭。則以爲, …(중략)…。臣於三月二十九日, 抵忠州可興倉, 翼朝[翌朝]行過倉前路矣。懷德縣監柳紳, 以貢稅差使員, 方在倉舍, 當諭書過去之際, 以寢冠襪服, 壓坐俯視, 了不回避, 且怒臣行之掠過其前, 捉去本院使令及伴僕, 將加刑杖, 故院隸據理謂, 使行既奉命, 則雖大臣, 亦且回避, 不可以外方差員, 擅杖奉命一行之人云。則咆哮[咆勃]良久, 還使捽出, 而以本州倉吏之初不指引倉後小路, 遂加重杖, 臣不勝駭然。分付本州, 推論其陪吏者, 凡三次, 而終不送之。噫, 式路馬 蹤馬蕪者有罪, 乃所以敬君也。今柳紳是何人, 乃敢以寢冠襪服, 凭軒睨視, 又敢欲使敦諭聖批, 遂巡回避, 舍正路而趨僻逕, 又敢拿院隸, 而恣咆哮[咆勃]也哉? 無識悖妄, 慢君命蔑王法, 不可不嚴懲, 惶恐敢啓。傳曰, 知道。柳紳所爲, 誠極駭然, 拿問處之。(□□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윤3월 5일 (신유))

○ 李重協, 以義禁府言啓曰, 懷德縣監柳紳拿問處之事, 傳旨啓下矣。柳紳, 時在忠州地云,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윤3월 6일 (임술))

## 100. 조정숙(趙廷涑)

○ 有政。吏批, …(중략)…, 趙廷涑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6월 13일 (무술))

○ 下直, 懷德縣監趙廷涑。 (□□승정원일기□□ 영조 3년(1727) 7월 8일 (임술))

○ 向者賊起湖西, 凶關奔馳, 列邑風靡, 多有可駭者, 而其中懷德縣監趙廷涑, 自清州來賊關, 使其使令登卽奉傳於鎮岑, 唯恐不及。其時鎮岑縣監李萬東, 執囚傳者, 未卽斬徇, 固已失之, 而廷涑所爲, 臣節都喪, 其臨亂逃匿, 為政昏劣, 卽餘事耳。一道之人, 傳說藉藉, 久而愈憤, 請懷德縣監趙廷涑拿問定罪。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7월 23일 (임신))

○ 洪景輔, 以義禁府言啓曰, 懷德縣監趙廷涑拿問定罪事, 傳旨, 啓下矣, 趙廷涑時在任所云, 依例發遣拿來,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7월 25일 (갑술))

○ 諫院【正言朴弼載。】申前啓, 不允。李太元遠竄事, 依啓。又啓懷德縣監趙廷涑, 傳送賊關, 請拿問, 從之。又啓: “洪陽縣監南渭老, 年少手生, 全未經事, 請遞差。仁平君李普赫, 特命進爵封君, 旣違常例, 又非儲養愛惜之道。請還寢加資, 以重賞典。”並不從。又請沈尙觀遠配, 上以被誣分明, 不從。 (□□英祖實錄□□ 18卷, 英祖 4年(1728 戊申) 7月 23日 壬申)

## 101. 이숙(李瀦)

○ (전략)…, 李瀦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7월 25일 (갑술))

○ 又啓曰, 新除授懷德縣監李瀦呈狀內, 重患毒痘, 積月沈綿, 添得痢疾, 痘樣苦劇, 飲啖全廢, 真元澌綴, 方〈在〉凜凜之中, 目今病狀, 實無時月內赴任之勢, 斯速入啓處置云。身病果如是危重, 則不可強令赴任, 懷德縣監李瀦, 罷黜,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8월 16일 (갑오))

## 102. 이구휴(李龜休)

獻納, 李性孝爲司書, 李知聖爲兵曹佐郎, 朴亨潤爲兵曹佐郎, 柳漢柱爲校書校理, 南漢明爲

內資主簿，柳淀爲樂安郡守，徐宗玉爲副校理，金尚星爲副修撰，南一明爲應敎，平海君申漫富興君朴道常，功臣嫡長，依例承襲封君，尹鳳郊學正單付，權賛單監察單付，李時沆兼春秋單付，李慶錫爲奉常正，金字集爲敦寧主簿，李龜休爲懷德縣監，鄭錫五爲江華留守。(□□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8월 16일 (갑오))

○ 又啓曰，新除授懷德縣監李龜休呈狀內，重得似瘧非瘧之症，筋力漸頓，病情危劇，頭疼咳嗽，喘氣兼發，旬月之內，斷無起動之勢，斯速入啓處置云。李龜休病勢輕重，雖未知如何，而年分迫頭，此時守令，不可許久撕捱，不得已依例罷黜，何如？傳曰，允。(□□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8월 23일 (신축))

### 103. 宋國緯(宋國緯)

- (전략)… 宋國緯爲懷德縣監，…(하략)。(□□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8월 28일 (병오))
- 下直，庇仁縣監鄭運采，懷德縣監宋國緯。(□□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10월 9일 (병술))
- 辛亥十一月二十九日未時，上御清陰亭，…(중략)… 出舉條 上曰，公山縣監安宗海，除署經催促發送，懷德縣監宋國緯，亦令該曹囚家僮，催促下送，可也。諸臣，遂退出。(□□승정원일기□□ 영조 7년(1731) 11월 29일 (무자))
- 忠清監司，以洪陽縣監尹敬龍陞牧事及懷德縣監宋國緯催促下送事狀啓，傳于李聖龍曰，申飭之下，歉歲守令，豈容若此？宋國緯其令該曹，各別催促，明朝還官舉行之由，轉達政院事，分付。(□□승정원일기□□ 영조 7년(1731) 12월 12일 (신축))
- 未時，諸臣復入，錫命曰，懷德縣監宋國緯催促發送事，分付矣。道臣有賑政難堪之語，故連爲辭狀，終不下去，何以爲之？上曰，曾已下敎矣。頃聞黃最所達，已知其善治矣。道臣果有此言，則其間必有曲折矣。最曰，臣聞諸道臣，則宋國緯治蹟甚著，而以緩督還穀軍布之故，起過該任云矣。其後聞國緯，以此事引嫌辭狀，道臣縷縷題辭，還爲退送，臣亦以催促察職之意，貽書道臣，道臣亦以爲然矣。今聞待新官舉行之語，此無他。國緯頗爲吏輩所嚴憚，故必爲此中間飛語也。上曰，道臣若有待新官之語，則朝家亦難催促，大臣以爲，何如？致中曰，此或下吏輩，中間過傳之致，卽今道臣，連爲催促狀啓，則催促下送宜矣。在魯曰，道臣既不許遞，則寧有待新官之語乎？似不近似矣。上曰，雖有此事，朝家則催促下送，可也。旣已，申飭之後，終始撕捱，宋國緯拿推，可也。(□□승정원일기□□ 영조 7년(1731) 12월 13일 (임인))

“송국위(宋國緯) 명쾌한 결단이 있고 잘 다스렸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회덕읍지□□ 「명관」)

## 104. 조화벽(趙和璧)

○ 有政。吏批, …(중략)…, 趙和璧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732) 윤5월 29일 (갑인))

## 105. 이상요(李相堯)

○ (전략)…, 李相堯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9년(1733) 6월 11일 (경신))

○ 下直, …(중략)…, 懷德縣監李相堯,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9년(1733) 7월 12일 (신묘))

○ 辰時, 上御別第廂, 藥房入診, 下直守令, 同爲入侍時, …(중략)…, 懷德縣監李相堯入侍。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9년(1733) 7월 12일 (신묘))

○ “이상요(李相堯) 충실하고 부지런해 고을을 잘다스리니 이민(吏民)이 다 편안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회덕읍지□□ 「명관」)

○ “현감이상요애민선정비(縣監李相堯愛民善政碑)” (□□대전금석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085쪽)

## 106. 이홍모(李弘模)

○ 懷德縣監 : (落點) 副護 李弘模(蔭,折衝), 監察 閔宸英, 禁都 趙階 (□□政事冊□□ 乙卯 (영조 11, 1735) 八月 二十三日)

○ (전략)…, 李弘模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 8월 23일 (기축))

○ 下直, 明川府使李命哲, 懷德縣監李弘模。(□□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 9월 19일 (을묘))

## 107. 서종협(徐宗浤)

○ 吏曹口傳政事, 以徐宗浤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14년(1738) 9월 25일 (갑술))

○ 下直, …(중략)…, 懷德縣監徐宗浤,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14년(1738) 9월 27일 (병자))

○ 宋徵啓, 以義禁府言啓曰, 本府, 以王府衙門, 事體自別, 吏卒雖或有罪, 上司皆不得任自推治, 雖法官, 必以進來公事, 報府推捉, 自是例也。而日者公洪都事朴成玉, 拿來羅將到公州, 與本州下人言詰之際, 懷德縣監徐宗浤, 適到羅將所住近處, 謂以喧譁, 捉入羅將, 至於杖臀云。羅卒雖賤, 既是王差, 則爲守令者, 何敢任意杖治乎? 其在事體, 不可置之, 懷德縣監徐宗浤, 罷職, 以懲日後,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6월 25일 (경자))

○ 以公洪監司狀啓, 懷德縣監徐宗浤仍任事, 越例陳稟, 惶恐待罪事, 傳于南泰良曰, 勿待罪事, 回諭。(□□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7월 3일 (정미))

○ 己未七月初五日辰時。上御興正堂。大臣·備局堂上引見, …(중략)…。寅明曰, 以懷德縣監徐宗浤毆打羅卒事, 義禁府草記請罷職, 而懷德, 湖西之弊邑也。人皆厭避, 而徐宗浤, 素稱善治, 守令不可輕進矣。上曰, 羅卒固有弊, 而既曰王人, 則不可毆打, 或欲遞職, 而有此故犯耶? 寅明曰, 無論姑犯與不姑犯, 仍任爲宜矣。顯命曰, 如此守令, 不可輕遞矣。上曰, 既是善治而果爲姑犯, 則適中其願, 仍任可也…(하략)。(□□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7월 5일 (기유))

○ 庚子 / 義禁府啓請懷德縣監徐宗浤罷職。宗浤以府隸之作弊列邑, 杖治之。禁府啓言 : “羅卒雖微, 既是王差, 則爲守令者, 何敢杖治乎?” 上從之。

【史臣曰: 羅卒雖云王差, 守令獨非王人乎? 不問其本事之當否, 直罷其職, 則後弊將如何哉?】(□□英祖實錄□□ 49卷, 英祖 15年(1739) 己未 6月 25日 庚子)

## 108. 정석범(鄭錫範)

○ 辛未/憲府【掌令申兼濟。】申前啓，又啓：“慶尙左水使李景喆專事暴斂，軍情咸怨，虐侵漁稅，浦戶將空，宜罷其職。”竝不允。又啓：“殿最何等謹嚴，而公洪監司李普赫褒貶中，堤川縣監朴弼重則人器不稱，宜試盤錯；懷德縣監鄭錫範則牛刀割鷄，盍亦勤勵，句語相舛，文勢模糊，普赫宜重推。”依啓。諫院申前啓，不允(□□英祖實錄□□ 47卷, 英祖 14年(1738 戊午) 1月 18日 辛未。)

## 109. 이덕항(李德恒)

○ 吏批, …(중략)…, 李德恒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7월 2일 (병오))

○ 下直, 懷德縣監李德恒。(□□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7월 27일 (신미))

## 110. 황호원(黃顥源)

○ (전략)…, 黃顥源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9월 6일 (경술))

○ 又啓曰，新除授懷德縣監黃灝源呈狀內，矣身，承重祖母，年迫七十，所患風痰之症，當寒猝劇，兼患泄痢，矣身，以無兄弟，獨自扶護，以此情勢，萬無離側赴任之望，斯速入啓處置云。親病既如是危篤，則不可強令赴任，依例罷黜，何如？傳曰，允。(□□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10월 12일 (을유))

## 111. 이익현(李益炫)

○ (전략)…, 以李益炫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15년(1739) 10월 16일 (기축))

## 112. 흥성규(洪聖揆)

○ 吏批判書閔應洙受由在外, …(중략)…, 洪聖揆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7년(1741) 7월 25일 (정해))

○ 下直, …(중략)…, 懷德縣監洪聖揆,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7년(1741) 8월 15일 (정미))

○ 又以吏曹言啓曰, 今日本曹開坼坐起時, 考見各道褒貶啓本, 則彦陽縣監趙廷佑, 以勤慎可尚, 疲殘宜警爲目, 懷德縣監洪聖揆, 以雖自勉勵, 其奈優柔爲目, 則宜置下考, 而置之中考。此兩邑守令。或疲殘不能莅民, 或雖欲自勵而優柔, 難以莅事, 俱不可仍置。竝罷黜,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영조 18년(1742) 9월 15일 (신미))

## 113. 이언환(李彦煥)

○ (전략)…, 李彦煥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8년(1742) 9월 21일 (정축))

○ 下直, …(중략)…, 懷德縣監李彦煥,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8년(1742) 10월 24일 (기유))

○ 同日午時, 上御熙政堂。大臣·備局諸宰引見入侍時, …(중략)…。在魯曰, 公洪監司李宗城, 以去冬軍餉還上捧未捧馳啓。而還上則懷德縣監李彦煥爲居末, 鎮川縣監鄭錫徽爲之次, 軍餉則延豐縣監趙昌林爲居末, 陰城縣監洪采輔居二, 成歡察訪李夏翼居三云。末端以爲今此舊未捧, 皆是久遠流亡絕戶, 而因傳敎徑許封倉, 則與無端不捧有間, 似有參酌之道, 請令廟堂, 粟處矣。軍餉重於還上, 故雖遇赦令, 居末拿處, 無蕩滌之規, 趙昌林之全不始捧, 非矣。何可以歲時封倉之傳敎, 免罪乎? 延豐縣監趙昌林, 依事目拿處, 其餘還上居末之次及軍餉居二居三, 竝依前例蕩滌, 何如? 上曰, 依爲之。而伊時特敎, 蓋軫歲時不封倉之弊也。道臣之以此措辭, 欲其分揀, 殊涉未安。道臣亦推考, 可也。…(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19년(1743) 4월 5일 (무자))

○ 鄭翬良, 以義禁府言啓曰, 懷德縣監李彦煥, 鎮岑前縣監朴弼濂, 懷仁前縣監鄭希泰等拿處傳旨啓下矣。朴弼濂·鄭希泰,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而李彦煥,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1월 21일 (정미))

## ○ 與李懷德彥煥

民巖居寒寂。飲啄隨分。而平生拙規模。不以口腹累人。如非目無見耳無聞則不向隣并求水火。更可以干乞公債耶。公糴尙不食。尤何敢坐受營門之租穀也。數年以來。以民戶名受糴者。蓋皆一家人所食。而昨年幾盡償還。今又使小兒輩求得家兄俸餘。期以畢納爲計。不料人未諳此間委折。而乃以貧之一字仰聞于閣下。聞于使家。致有此周急之物。過爲優厚。民雖貧。自有寒泉可食。夫此出於民之公穀。得將安用。嘗見大明律。受人斗米以上皆有罪。私家舊法。亦有防限。雖於至親密之間。不會受五斗以外者。良由農民粒粒辛苦。無事而食於民爲不可耳。茲被來命。不覺愕然以驚。幸伏望閣下以此意微報外臺。而還送此紙。勿以爲不恭。千萬千萬(□□雲坪先生文集□□ 卷之五, 書)

## 114. 정운유(鄭運維)

○ 吏批, …(중략)…, 鄭運維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4년(1748) 4월 18일 (신미))

### 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事鄭公神道碑銘

公諱運維。字持國。姓鄭氏。海州人。在麗有典法正郎者曰肅。實爲公始祖。入聖朝。十一世祖官議政府左贊成者曰易。再傳至諱悰。尙文宗女敬惠公主。封寧陽尉。光廟五年。受後命。寧陽生諱眉壽。策中宗靖國勳。海平府院君。是爲九世八世祖也。高祖諱孝俊。知敦寧府事。曾祖諱樞。司憲府掌令。奉書狀命如皇京。道卒。贈承政院都承旨。祖諱重龜。贈司憲府大司憲。考諱必寧。文科重試。卒官戶曹參判。妣貞夫人尹氏。籍坡平。父天休。肅宗甲申。公生。英宗乙卯。中國子生員。癸亥。除陵寢郎。戊辰。由義禁府都事。除懷德縣監。爲政。束豪橫甚峻。邑民始知有公法。庚午。罷歸。居頃之。荐擢內外艱。服闋之明年丙子。闡文科除禮曹佐郎。尋拜司憲府持平。時。莊獻世子聽政。上書陳賑民饑講睿學之道。大朝命入所上書。敎曰。語甚切實。玉署春坊所未能也。錫馬以嘉之。以吏曹佐郎。除舒川郡守。郡嘗患水脉短。田野易乾涸。公教穿渠灌注。舒人至今賴焉。居三載罷歸。壬午閏五月。以掌令值十三日。聞急報。蒼黃赴闕。衛士已團結禁門不可入。公與三司諸人排闥者三。三見阻。遂倡議曰。今日不上全恩疏。豈曰有臣分。立草疏未完。見上所下傳敎。泣涕而止之。旋以不論趙相國載浩事罷。後除通禮掌令。皆不就。每獨處

掩抑曰。既不能如安金藏之剖心。又不能如田千秋之悟主。有臣如此。不如無有。尋因冬雷。以掌令疏請修德用人安民。仍及修省訓諭之方。上褒嘉。乃曰訓諭二字。於予心有愧。癸未春。擢拜承政院同副承旨。自是恩顧甚渥。官未嘗不在銀臺也。述海以玉堂彈駁人。上罪之。院僚方伸救。公持異見不參。致讓爲述海反蟄公。上命其父笞治。蓋致讓時相之子也。未幾。以昨年閏月後違牌三司。被削職。甲申。敍拜承旨。時。上方動駕。命鼓吹前後振作。仍命世孫祇迎。公奏曰。世孫方在心制。上動色曰。然矣然矣。亟寢祇迎命。後因皇壇肄儀。將動樂。上視公仍命世孫入。蓋念公前日奏也。連除禮曹參議。大司諫。疏啓多蒙開納。乙酉。爲驪州牧使。州多貴族。難治甲諸路。公一以法斷之。道臣褒以鋤強。明年因事遞。丁亥。上幸景福舊闕設重試。公時在承旨掌禮房。陞嘉善階。遂拜都承旨。屢移漢城左尹。副摠管。戶曹參判。公之治驪也。邑有田摠隱漏者。官與吏染指久矣。公括給民。以防荒年徵稅。至是。相臣請勘律持甚力。上曰。賢哉。鄭某。不于己而于民也。其勿問。己丑十一月。以大司諫參賓對。進曰。再明十六日也。王世孫往拜孝章廟。仍詣垂恩廟展拜。於禮似不可已矣。蓋十六日。眞宗忌日。而王世孫一未拜垂恩廟。公常以爲情禮有缺。故先言十六。以及於是也。上良久曰。此豈臺臣所宜請者乎。顧相臣曰。垂恩廟之請。不亦泛濫。於是引避蒙遞。後數十日。相臣奏鄭某所懷。不可不嚴處。上曰。予本欲率世孫一往垂恩廟。不忍過昌德宮矣。是後屢拜大司憲。大司諫。禮曹參判。副摠管。都承旨。頃之。有崔益男之獄。大司憲趙榮進疏。言崔益男之招。謂以昨年鄭某所懷與渠意略相彷彿。故爲此疏云爾。則鄭某實益男之嚆矢。罪當竄。批旨有曰。嚆矢二字。過矣。然執法之請。宜特允。於是竄湖南之興陽縣。明年春。上曰。業已知其心無他。其放還。公泣曰。朋友知心人。猶許之死。況君父乎。秋。命豎碑淨業院舊基。院卽端宗妃所住處。上臨視之。召公入。詢以故事。蓋端宗妃常以公之八世祖海平府院君爲依歸。以其爲端宗之姊之子也。上感舊。特陞公嘉義階。仍除都承旨。拜兵曹參判者再。又移大司憲。領相金致仁嘗斥益男之疏。有曰鸞輿不發則鶴駕無獨往之例。公憤曰。景廟之在春宮。當寧之爲世弟。不陪鸞輿。猶且往拜。余所目覩。其誰欺。欺天乎。至是盛論其罪不可赦。上移授公兵曹參判。明日。除知義禁府事。陞資憲階。敎曰。鄭某年雖衰。性剛烈。其聲若鐵。明年當入耆社。俄除工曹判書。爲肅恩詣闕。疾作昇歸。遂卒于寢。卽壬辰五月十日。享年六十九。訃聞。上震悼。親製文祭之。命其子待闋服調用。追悼之敎屢發於中朝。葬于驪州之趨揖山卯坐原。配贈貞夫人原州元氏。節度使徽女。繼配全州李氏。東俊女。元夫人生二男二女。男長喆祚文科正言。次厚祚縣監繼伯父后。女長適朴祐源。次適■■■文科前判書。李夫人生一男順祚。喆祚無子取順祚子時行爲後。一女適盧光晉。厚祚三娶皆無子。順祚三

男一女。男長卽時行。餘幼。女適任百豐。朴祐源繼子宗倫。□□□繼子載績。公事親孝。推以事君。惟義理是秉。言人之所不言。南荒瘴霆。視如樂地。向非英廟知臣。公何以保身於衆怒之中也。公喜讀書。於思傳用工尤篤。出以遇明主。卒能藉手終始者。義理而已。此讀書之效也。信乎人不可以不學也。公之子縣監君。撰次公事行。嘗托銘於濟恭。濟恭辭不文不獲。則含意耿耿。君居然作千古人矣。茲乃不揆耄荒。按其狀書之。庶可以不負幽明歟。銘曰。

英廟乃聖。人倫之至。曰禮曰義。豈忽造次。公有獨見。忠言懇款。新廟在彼。盍許省覲。人噤我叫。海瘴非畏。英廟嘉乃。鐵腸剛氣。千世在後。百世在前。英廟之廷。莫曰無人。卿月崇班。在公全未。我銘公墓。後人之喟(□□樊巖先生集□□ 卷之四十八, 神道碑)

## 115. 이준(李浚)

- (전략)… 李浚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2월 2일 (경오))
- 下直, 懷德縣監李浚。(□□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2월 28일 (병신))
- 癸酉二月二十六日申時, 上御熙政堂。忠清御史入侍時, …(중략)…。懷德縣監李浚, 御史出啓中, 雖以營建公廡首稱, 其所濫用, 無異於相徽。舒川郡守洪有輔, 不戢下吏, 使吏偷結, 亦不可不懲, 亦竝令該府從輕重准法勘律。…(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2월 26일 (임자))
- 李奎采, 以義禁府言達曰, …(중략)…, 懷德縣監李浚, 舒川郡守洪有輔等, 竝令該府勘處事, 徵旨達下矣。…(중략)…, 方今待令於本府, 卽爲拿囚。…(중략)… 令曰, 依。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2월 27일 (계축))
- 湖西御史蔡濟恭復命。上問曰：“均役果無民怨乎？”濟恭曰：“民皆稱便矣。”上曰：“鹽稅亦如何？”對曰：“民情亦稱頌矣。”命恩津縣監李最鎮、瑞山前郡守任鏡觀、泰安郡守李師祚、洪州牧使安相徽、懷德縣監李浚、舒川郡守洪有輔, 竝令該府勘罪, 天安郡守金相說、稷山縣監崔普興, 竝賜璽書、表裏, 藍浦縣監李世泰右職調用, 利仁察訪金範錫, 亦令擢用, 因御史之書啓也。(□□英祖實錄□□ 79卷, 英祖 29年(1753 癸酉) 2月 26日 壬子)

## 116. 임지호(林志浩)

- (전략)…, 林志浩爲懷德縣監, 金…(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5월 21일 (병자))
- 任珣, 以吏批言啓曰, …(중략)…。又啓曰, 新除授懷德縣監林志浩呈狀內, 矣身素患痰癥之症, 中暑添發, 旬月之內, 萬無起動之望云。身病既如是危重, 則不可強令赴任, 依例罷黜, 何如? 令曰, 依。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7월 18일 (신미))

## 117. 정완(鄭完)

- (전략)…, 鄭完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7월 18일 (신미))
- 同月二十六日辰時, 藥房入診時, 上御熙政堂。…(중략)…。又啓曰, 懷德, 卽本道式年都會官, 而新除授縣監鄭完, 未及署經, 試期已迫, 舉行之事, 一時爲急, 懷德縣監鄭完, 除署經不多日內發送, 何如? 上曰, 依爲之。以上出舉條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7월 26일 (기묘))
- 三月十四日申時, 上御崇文堂。均堂·忠清監司各邑守令, 同爲入侍時, …(중략)…。湖西 鎮岑·懷德·保寧等三邑守令, 亦入其中矣, 此時遞易, 誠甚可悶。而鎮岑·保寧則全數不納云, 臣不敢舉論, 至於懷德, 則所當納者, 只是廿餘匹, 草記入達之日, 亦其準納云。本倅鄭完, 前冬始爲赴任, 其所未納, 恐不可專責於新倅, 且本縣以尤甚設賑之邑, 今若徑遞, 則官事民事, 實甚可慮, 既已準納之後, 似或有分揀之道, 下詢均堂而處之, 何如? 上曰, 均堂達之。洪鳳漢曰, 均廳各樣所納, 既有年條, 前後申飭, 亦甚嚴明, 而列邑全不動念, 至有過三年不納者。立法之初, 不可無懲勵之道, 故果以未收者推考, 全不納者先罷後拿事, 草記, 允下矣。懷德則草記翌日, 果卽畢納, 道臣以數遞之有弊, 賑政之狼狽, 有所陳達, 似可有容恕之道, 而亦不可全然無罰, 或自營門決杖, 而仍存其職, 亦似不妨矣。上曰, 懷德縣監, 勿罷勿拿, 营門決杖, 此後過年不納者, 营門決杖事, 定式施行, 曾經侍從者, 先罷後拿, 可也。…(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3월 14일 (갑자))

- 又以義禁府言達曰, 懷德縣監鄭完, 以均役廳結錢不納事, 拿處徽旨達下。而鄭完勿罷勿拿, 营門決杖事, 舉條已爲啓下, 徽旨中改付標達下矣。鄭完勿爲拿問之意, 敢達。令曰,

知道。(□□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4월 17일 (병신))

○ 又以吏曹言啓曰，今日本曹開拆坐起時，考見諸道殿最啓本，則昌原府使鄭翼濟，以徵布有謗爲目。長淵府使邊鎮一，以終欠柔善爲目。懷德縣監鄭烷，以報災或過爲目。…(中략)…。守令之疏於聽訟者，元無可論，則實合下考，而乃置上考。殊無嚴明殿最之意。諸道監司，推考警責，八邑守令，竝罷黜，何如？傳曰，允。(□□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12월 21일 (을축))

## 118. 오숙(吳璣)

○ 親臨都目政事，以…(中략)…，吳璣爲懷德縣監，…(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12월 28일 (임신))

○ 二月初四日申時，上御養心閣，備局堂上·承旨入侍，…(中략)…。懷德縣監吳璣進伏。上曰，見汝，却思汝祖矣。…(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2월 4일 (무신))

○ 下直，龍川府使鄭德鳴，興德縣監權知重，懷德縣監吳璣。(□□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2월 5일 (기유))

## 119. 김윤승(金允升)

○ 懷德縣監：(落點)軍判 金允升，獻陵令 朴時晉，禁都 洪有徵 (□□政事冊□□ 乙亥(영조 31, 1755) 十月 九日)

○ 有政。吏批，…(中략)…，金允升爲懷德縣監，…(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0월 9일 (기유))

○ 同日罷漏後，上仍爲殿坐親鞫入侍時，…(中략)…李天輔所啓，忠清道懷德縣監金允升，扶餘縣監鄭志浩，新除未辭朝矣。而本道監司，以兩縣俱是災邑，不可付之生手，以曾經有聲績人差送事狀請矣。兩縣既是小邑，兩人又皆積仕，足以堪當云，用人之道，何可以未曾經而初不試之乎？道臣狀請勿施之，兩邑守令，使吏曹，申飭下送，何如？上曰，有禁令矣，依爲之。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0월 26일 (<병인>))

○ 李得宗, 以吏曹言達曰, …(중략)…, 懷德縣監金允外, 申飭下送事, 大臣既已陳達, 故自臣曹, 囚家僮催促, 今至三朔, 而謂有情勢, 終不辭朝, 其在事體, 誠極未安, 扶餘縣監鄭志浩, 懷德縣監金允升, 索令該府拿處, 何如? 令曰, 依。 (□□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2월 17일 (병진))

○ 下直, 瑞山郡守申璆, 扶餘縣監鄭志浩, 懹德縣監金允升。 (□□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2월 23일 (임술))

○ 上御通明殿廬次, 召見忠清道安集御史洪景海、會葬官伊川府使蔡濟恭。上問濟恭曰：“有民弊可達者乎?”濟恭曰：“伊川東北五面, 入於糧餉廳屯田。當初甲戌詳定時, 定其稅總殆若金石, 近年以來, 所謂屯將, 剝割不已, 其稅逐年增加, 居民不堪其苦, 流散過半。田亦從以陳廢, 此實爲本邑之痼弊矣。”上命戶判重推, 一依甲戌詳定施行。命承旨讀御史書啓, 上問：“何以安集?”景海對曰：“兩邑窮民, 雖多還鄉, 無牛不可耕作, 故貸錢於列邑, 往嶺外買牛, 丹陽二十三頭、懷仁十三頭, 分授無牛之民, 使之作農。”又問守令能否, 景海曰：“懷德縣監金允升、清安縣監具德勳, 恐非蘇殘祛弊之才矣。”命竝改差, 擇其代以送。仍命書傳敎曰：御史竭心安集, 不負上意, 其雖嘉之, 兩邑未歸者, 尚過百云。噫! 彼丹、懷之民, 是予赤子, 雖一人未還, 何甘玉食? 御史其敢曰竣事而歸乎? 洪景海從重推考, 卽復下往 (□□英祖實錄□□ 90卷, 英祖 33年(1757 丁丑) 7月 2日 壬辰。)

## 120. 정경순(鄭景淳)

○ 吏批, 有政, …(중략)…, 以鄭景淳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 7월 18일 (무신))

○ 下直, …(중략)… 懹德縣監鄭景淳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 8월 1일 (경신))

○ 戊寅七月二十五日辰時。上御恭默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중략)… 出舉條畧曰, 懹德縣監鄭景淳到任未久, 道臣以病狀罷矣。鄭景淳勤於奉公, 是其門風, 而新到之初, 已有治聲, 積逋之在兩班者, 聞風自納云, 民邑凡事, 庶有收拾之望, 如此之人, 觀其成效而

將擢，亦是用人之道，遽爾遞改，誠爲可惜，鄭景淳仍任，何如？上曰，依爲之。…(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7월 25일 (기유))

○ (전략)…，懷德縣監鄭景淳仍任事，承傳，…(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8월 12일 (을축))

“회덕현감 정경순 백미일석(懷德縣監鄭景淳 白米一石)〔천평시부조용하기(尤庵)遷笠時  
轉助用下記)」”

## 121. 금리복(金履復)

○ (전략)…，金履復爲懷德縣監，…(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7월 13일 (정유))  
○ 吏批啓曰，新除授懷德縣監金履復呈狀內矣，身於本邑有狀奴婢十餘口，法不當冒赴，  
卽速遞改云，守令於本邑，有田十結，或狀奴婢十口以上者，啓聞遞改事，載在法典，懷德縣監  
金履復，依例改差，何如？傳曰，允。(□□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7월 17일 (신축))

## 122. 민백분(閔百奮)

○ 吏曹口傳政事，以閔百奮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12월 30일 (임오))  
○ 李基敬，以吏曹言達曰，新除授懷德縣監閔百奮呈狀內，矣身於本縣有田十一結零，法不  
當冒赴，依例入達處置云，守令於本邑有田十結，或壯奴婢十口以上者，啓聞遞改事，載在法  
典矣。懷德縣監閔百奮，依例改差，何如？令曰，依。(□□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월  
22일 (갑진))

## 123. 윤동철(尹東喆)

○ (전략)… 尹東喆爲懷德縣監，…(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월 24일 (병오))

○ 正月二十六日午時, 上御恭默閣。秋判·大臣·戶判·惠堂同爲入侍時, …(중략)… 拓基曰, 卽今民困極矣。救濟之道, 莫先於擇守令一事矣。向日懷德縣監, 以幾及年限人, 備擬還下望單, 而仍令十考十上中擬入三望, 閔百奮, 首擬受點矣。以本縣有田畠十一結見遞, 則其代, 又當以十考十上人擬入, 而十考十上中無故者, 尚餘四人, 推移備擬, 不患不足, 再昨政, 以尹東喆, 首擬受點, 非但年已六十三。且前爲懷仁縣監時, 殿最居中, 而因吏曹啓見罷, 則有不可責之以蘇殘起弊, 甚非特教另擇之意, 當該政官, 從重推考, 懷德縣監尹東喆, 改差, 何如? 上曰, 此則銓官非矣。依爲之, 而其代口傳擇差, 可也。…(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759) 1월 26일 (무신))

## 124. 조재우(趙載遇)

○ 備邊司薦望, 以李成中爲平安監司。吏曹口傳政事, 以趙載遇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월 27일 (기유))

○ 下直, …(중략)…, 懷德縣監趙載遇。(□□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2월 19일 (경오))

○ 己卯二月十九日申時, 上御崇文堂。左右捕將·未下直守令, 同爲入侍時, …(중략)…, 懷德縣監趙載遇, …(중략)…。上曰, 懷德縣監, 誰也? 錫祥曰, 趙載遇也。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2월 19일 (경오))

○ 成天柱, 以義禁府言達曰, 咸鏡·忠清兩道監司狀達, 據刑曹粘目內, 前北兵使李柱國, 懷德縣監趙載遇等, 移本府處之事, 達下矣。李柱國·趙載遇等, 今方待令於本府, 卽爲拿囚之意, 敢達。令曰, 知道。(□□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0월 22일 (기해))

## 125. 윤득홍(尹得弘)

○ 有政。吏批, …(중략)…, 尹得弘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759) 11월 29일 (을해))

○ 己卯十二月初五日辰時, 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중략)…。已上竝

出舉條翼書曰，近來弊邑守令之有除輒避，誠一痼弊，而至若懷德尤爲甚焉。昨今年以後，除拜者，或以奴婢遞之。或以田結遞之，新除授縣監尹得弘，又以奴婢十口呈之，此在法典，雖難以勿拘仰請，而不可不各別申飭，故仰達矣。鳳漢曰，若以此法爲拘，則楊州似無可往者矣。上曰，今後則勿拘此法，何如？畊曰，臣曾任銓曹時，亦以此邑守之，辭避不往，果爲筵飭下送，而今則人皆苦避，幾乎廢棄，誠非細憂矣。然而既有法典，則今難變改。尹得弘姑爲改差，其代擇送有聲績人，似好矣。上笑曰，邑若好，則雖有田奴，必不告之矣。仍命書傳教曰，懷德縣監尹得弘遞差，其代以曾經有聲績人，口傳擇差，當日下送。…(하략)。(□□승정원 일기□□ 영조 35년(1759) 12월 5일 (신사))

○ 己卯十二月十四日未時，上御熙政堂。藥房三提調入侍時，…(중략)… 百祥曰，懷德縣自前逋欠甚多，故人皆厭避云矣。畊曰，本倅鄭克淳，能捧逋欠云矣。上曰，承旨書之。傳曰，懷德縣監鄭克淳勅已行。此時守令，其何曠官？附過放送，其令今日辭朝。出…(하략)。(□□승정원 일기□□영조 35년(1759) 12월 14일 (경인))

## 126. 정극순(鄭克淳)

- 吏批口傳政，以鄭克淳爲懷德縣監。(□□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2월 5일 (신사))
- 李福源，以吏曹言啓曰，昨日入侍時，懷德縣監口傳差出，當日內辭朝事，命下矣。新除授懷德縣監鄭克淳，謂有身病，連呈辭狀，特教之下，不卽膺命，其在事體，極爲駭然。懷德縣監鄭克淳，令該府爲先拿問處之，何如？傳曰，允。(□□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12월 6일 (임오))
- 上御景賢堂，藥房入診。慶尙監司金尙喆入侍，三司追後入侍時，獻納李興宗啓曰：“平壤庶尹鄭克淳，以泰耆女婿，前任懷德時，往拜其墓，便同掃墳之儀，略無忌憚，關係世變。且久任腴邑，全事不法，如此之人，不可不嚴懲。請平壤庶尹鄭克淳遠竄。”上以不可只竄而止，拿問處之。…(하략)。”(□□英祖實錄□□ 99卷，英祖 38年(1762 壬午) 6月 21日 壬子)
- 壬午六月二十一日午時，上御景賢堂。編次人入侍，三司追後入侍時，編次人具允明，…(중략)…。又所啓，平壤庶尹鄭克淳，以兇賊泰耆之女婿，爲任懷德縣監時，往拜泰耆所瘞之處，便固掃墳之儀，略無忌憚，關係世變，且久任營下腴邑，專事不法，見過於前後道臣，

不止一二，而恬不知愧，貪墨愈甚，如此之人，不可不嚴懲。請平壤尹鄭克淳，遠竄。上曰，果若所陳，極涉駭然，不可只竄而止，爲先拿問處之。…(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762) 6월 21일 (임자))

## 127. 김명노(金鳴魯)

○ 親臨都目政。吏批，…(중략)…，金唯魯爲懷德縣監，…(하략)。영조 36년(1760) 6월 25일 (정묘[정유]))

○ 庚辰六月二十六日午時，上御熙政堂。戶判判尹守令侍直洗馬同爲入侍時，…(중략)…懷德縣監金鳴魯，…(중략)…，以次進伏訖。…(중략)…。上曰，依。懷德進前，問履歷，鳴魯對以監役，因大報壇役事，特命別工作出六矣。上曰，然乎？予始思得矣。彼領相家族乎？鳳漢曰，六寸矣。沈鏞曰，故承旨樞之侄也。上曰，然乎？聞其聲有相似者矣。捨曾經府使人，以汝特除矣。汝爲能吏乎，良吏乎？鳴魯曰，不願爲能吏，願爲良吏，而臣才駑下，何敢當聖揅也？上顧左右曰，善哉其對也，昨日黃錠，以能吏在七事中，當奉行爲言，又問治民，則曰教民紡績云，如此者豈能當百里哉？雖十里，決難矣。鳳漢曰，守令則本非其責，而雖如此，有軍功，付料餉之無妨，今番處分，極好矣。啓禧曰，臣亦知其爲人，非百里才也。沈鏞曰，臣於院中見之，則爲人殊常殊常矣。上曰，承旨亦見而接談乎？對曰，聞其言語，知其不了了矣。上曰，此後則稱以縣監，縣監之稱，於渠足矣。若知如此，初何召見耶？上曰，卿等見李長泰乎？予雖落點，而心甚凜惕矣。鳳漢曰，鄭克淳可謂得人矣。得如此之人，然後可以分憂矣。上曰，果得人矣。仍問鳴魯曰，懷德素稱弊邑，而今聞弊已盡祛云，汝亦聞之否。對曰，臣則新除，故姑未知，如何，而舊逋蕩減後，姑無大段之弊云矣。上曰，懷德則委之於汝，汝體予此意，善爲之，可也。命誦七事。上曰，頃聞儒臣之言，則關東新方伯，以年事失稔爲憂云，承宣亦有所聞否？沈鏞曰，才聞東來人之言，則原·橫·洪等數三邑，多有奉天畧，故未移者頗多，而其外旱付者及田穀，勿論嶺東西，庶有登稔之望，若無風霜災則多幸云矣。…(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6월 26일 (무술))

○ 辛巳四月十七日辰時，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중략)…洪鳳漢曰，此統制使李泰祥，諸道軍餉還上捧未捧狀聞也。京畿新還上，居末利川府使趙漢弼，居二南陽府使崔晟，忠清道新還上，居末唐津縣監金載大，居二德山縣監成德永，舊還上居末

懷德縣監金鳴魯, 居二尼山縣監尹得宣, 新軍餉居末德山縣監成德永, 居二唐津縣監金載大, 居三禮山縣監韓警, 江原道舊還上居末洪川縣監洪啓祐, 居二金城前縣令魚錫定, 平安道舊軍餉居末慈母山城別將鄭興周, 居二於汀權管朴淳亨, 居三植松萬戶鄭錫曾, 元還上居末慈母山城別將鄭興周, 居二清江僉使許任, 私賑穀居末於汀權管朴淳亨, 居二寧城僉使具光翊, 統營新軍餉居末唐津縣監金載大等罪狀, 竝請令廟堂稟處矣。新舊軍餉居末拿問, 居二決杖, 居三推考, 新舊還上居末決杖, 居二推考, 私賑穀依元還例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7년(1761) 4월 17일 (병술))

○ 壬午正月十四日巳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중략)…。上曰, 唐津縣監金載大, 考目非純褒, 中考施行, 懷德縣監金鳴魯, 噩, 三紀臨御, 雖無恩及枯骨之惠, 身爲字牧, 有此題目, 以下考施行, 道臣推考。…(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1월 14일 (무신))

## 128. 이득영(李得永)

○ 有政。吏批, …(중략)…, 李得永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1월 16일 (경술))

○ 下直, …(중략)…, 懷德縣監李得永,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2월 11일 (을해))

○ 壬午二月十一日申時, 上御景賢堂。備局堂上引見入侍時, …(중략)…。上曰, 守令進前, 各言職姓名舉七事, 可也。珍島鄉守李毅壽, 金化縣監南舜喆, 大靜縣監崔宗信, 懷德縣監李得榮, 以次進對七事訖。…(하략)。(□□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2월 11일 (을해))

○ 甲申三月二十八日午時, 上御景賢堂。晝講, 編次人·守令同爲入侍時, …(중략)… 上曰, 今日夕講爲之。出傳敎 上命諸守令, 以次進伏, 各問姓名。…(중략)…, 懷德縣監李得永, …(중략)…, 皆以次納名。上仍問糶糴之政, 及年麥農形, 民間疾苦, 而各賜勉飭, 仍命退去, 上曰, 承史小退, 復入於夕講, 可也。承史亦退出。(□□승정원일기□□ 영조 40년(1764) 3월 28일 (기묘))

### 行縣監李公得永遺愛碑

奧昔 壬午 公莅是邑 值歲大侵損廩以賑之 民以活 將堅石 紀之 公奪而藏諸衙後之園

爲後洴澼之石 余見而感之 訪公實蹟 髮白歌誦 今歷二有嘘唏 歎息者 可見其仁政之浹深也  
是與邑中耆耆 相議取公所藏之碑 紀而立之 勸來者

辛卯四月日

知縣

## 129. 유운(柳灝)

○ 懷德縣監 : (落點)盈主 柳灝 (蔭, 通訓), 賓都 尹得霖, 工正 李德溥 (□□政事冊□□ 甲申  
(영조40, 1764) 六月 三十日)

## 130. 김상구(金相龜)

○ 有政。吏批, …(중략)…, 金相龜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6월 5일 (계묘)

○ 下直, 懷德縣監金相龜。 (□□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6월 22일 (경신) 원본1256책/  
탈초본70책 (2/14) 1766년

○ 李碩載, 以義禁府言啓曰, 全義前縣監李東賓, 燕岐兼任懷德縣監金相龜, 索拿來, 京畿  
監司狀啓, 宣惠廳粘目憑閱處之事, 傳旨啓下, 而李東賓,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金相龜,  
時在任所云, 依, 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1) 8월 3일  
(병자))

### 金瑞甲墓誌銘

金君瑞甲其諱曰相龜。圭璋之質。蘭蕙之馥。殆可謂一代瑞物。而旣未有爵位可稱。又無  
所著述傳後。墓于湖山荒隴之上。百世之後。孰知有斯人哉。始吾姑母李氏。以芝村文簡公  
長女。嫁于金沙溪先生之門。爲大司憲孫婦。高識哲範。師表閨閣。早寡無育。取滄洲文貞  
公曾孫玄澤爲子。賢孝過絕於人。士友盛推其節行。不幸未得年。有一子卽君是已。四歲  
而孤。門戶凜如。於是祖母與母食貧鞠養。見其幼不嬉戲。無咲親意。稍長則勤業飭躬。

左右惋愴於承奉之間。儀刑舉止無一非酷肖。衆皆稱曰。乃父不死也。天性澹泊無嗜慾。惟書是探。所慕尤在於家學性命理之奧。眼熟心專。多所融會。雖不肯自爲標致。日用所蹈。鮮出於繩墨之外。舉英宗癸酉進士。丁母憂。又承重祖母喪。制行之篤。人不忍視也。屬今上以東宮入學。泮中推君爲將命。生雖在鄉免。而實儒林極選也。初除徽寧殿參奉。遷世子洗馬。陞司饔院主簿。改工曹佐郎。轉正郎。出爲懷德縣監。居五載移陝川郡守。由獻陵令。除慶山縣令。遞歸。又令獻陵。拜安城郡守。解任經歲。爲義城縣令。則以年格未赴。至上之十五年辛亥。年躋七十。以某月某日告終。當其病革。見傍人失措。厲聲呵之。諄諄所語。奉先戒子事也。葬連山先兆某坐之原。光山之金。爲我國甲族。沙溪有子曰。槃。官吏曹參判。卽君五代祖。高祖大憲公諱益昊。曾祖諱萬堅。祖諱鎮岳。有俊聲。蘭谷詩稿行于世。數世不振。皆坐早殞。君子悲之。妣韓山李氏。父參奉秀蕃。平安道觀察使泰淵曾孫女也。君前配延安李氏。縣監泰祥女。後娶驪興閔氏。學生某之女。皆無子。以三從姪箕章爲子。生子女幼。君敦雅慈靜。終日寡默。喜怒罕見於色。論是非甄淑慝。內用明辨而口不極人之過失。接人客。親不加欵詬。踈不作表襮。其在座中。氣味襲人。肫肫然煦煦然。祥和溢于眉宇。至令初覲者不交一辭。而愛不欲捨之而去也。然御家裁物節度。未嘗不莊肅。居官任悃愞。民莫敢慢。吏亦孚感。不敢欺也。余於君情好至矣。嘗謂得致身於顯塗。能與金華之講。則骨鯁諫諍。或非其長。而啓沃之術。可令人主動聽。若管庫理獄簿牒之末。非所以處君者。嗚呼以若淵源。天資近道。置諸林下。用力於聖門之業。則其爲學。必能紹明其先休。卓爲衿紳所矜式。其於世教。豈小補哉。惜乎其未究有爲之志矣。余齒長五歲。相視如骨肉。老而不死。誌君幽宮。自信吾筆無愧矣。銘曰。

魄之降也。還他濁界。神之升也。御彼清霄。想精英之不化。豈或隨萬物而俱凋。一氣孔昭。窅不知其何所逍遙。銘以短些。尙欲招招。(□□豐墅集□□ 卷之十一, 墓誌銘)

## 131. 박사흠(朴師欽)

○ 庚寅十二月二十九日□時, 半行腐缺 堂上, 引見入侍時, …(중략)…。又命守令入侍, …(중략)…, 懷德縣監朴師欽, …(중략)…‘以次進伏。上各問七事, 半行腐缺 上命讀全羅監司金魯鎮上疏訖。上曰, 半行腐缺 下送。出傳敎。(□□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12월 29일 (신축))

## 132. 이서규(李瑞圭)

○ 有政。吏批, …(중략)… 以李瑞圭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47년 (1771) 8월 17일 (을유))

○ 李得臣, 以義禁府言啓曰, 前大興郡守尹得弘, 前沃川郡守宋載中, 前懷德縣監李瑞圭, 前陰城縣監姜命達等, 令該府, 依例勘處事, 傳旨啓下矣。尹得弘·姜命達等,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宋載中時在江原道淮陽地, 李瑞圭時在忠清道鎮岑地云, 依例發遣府羅將, 並拿來,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영조 48년(1772) 9월 5일 (정유))

## 133. 조기현(趙基顯)

○ (전략)…; 趙基顯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48년(1772) 7월 27일 (경신))

○ 甲午七月初九日酉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 右承旨·兩道道臣守令, 儒臣追後入侍時, …(중략)…, 懷德縣監趙基顯, 康翎縣監韓榮錫, 以次進伏訖。上曰, 道臣入來乎? 鍾正曰, 未及入來, 而只三守令同入矣。命守令進前, 詢其職姓名, 命誦七事訖。命書傳敎曰, 今日下敎後, 況此時乎? 長城府使·懷德縣監, 皆令明日辭朝。…(하략)。(『승정원일기』 영조 50년 (1744) 7월 9일 (경신))

## 134. 윤득휘(尹得徽)

○ (전략)…; 尹得徽爲懷德縣監, …(하략)。(『승정원일기』 영조 51년(1775) 6월 20일 (병신))

## 135. 이수빈(李壽彬)

○ 下直, …(중략)…, 懷德縣監李壽彬, …(하략)。(『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1776) 5월 11일 (계미[신사]))

## 136. 심정진(沈定鎮)

- 有政。吏批, …(중략)…, 沈定鎮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1777) 10월 9일 (신축))
- 下直, 龜城府使權拭, 懷德縣監沈定鎮。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1777) 11월 4일 (병인))
- 丁酉十一月初四日午時, 上御熙政堂。畫講, 詣臺臺臣·下直守令同爲入侍時, …(중략)…, 懷德縣監沈定鎮, …(중략)…, 以次進伏訖。…(중략)… 定鎮進伏。上下詢職姓名, 又命誦七事訖, 上曰, 自桂坊時, 已知汝矣。下往後, 努力爲治, 可也。仍命退, 諸臣以次退出。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1777) 11월 4일 (병인))
- 以鄭好仁爲左尹 鄭一祥爲同敦寧 朴師海爲順興府使 沈之鎮爲懷德縣監) 崔致侃爲洪原縣監. (□□日省錄□□ 正祖 1년 丁酉(1777) 10월 9일(辛丑))

## 137. 한상묵(韓尙默)

- 有政。…(중략)…, 韓尙默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정조 5년(1781) 7월 30일 (경오))

## 138. 박광회(朴光晦)

- 懷德前縣監朴光晦, 投印徑歸。洪忠監司申大升, 啓請其罪, 令攸司稟處。及光晦置對, 供曰: “正月中, 斧軍數十, 攏入城隍壇, 斫伐生松, 捉來犯斫人, 乃前承旨宋載經及宋載緯奴, 故使之自本家治罪, 則招去由吏, 替罵曰: ‘我乃道先生, 汝倅安敢捉吾奴乎? 吾當盡斫其松。’ 云。果於翌日, 百餘斧軍, 漫山亂斫, 使之禁斷, 則載緯父子及載經之子, 允鼎, 多發豪奴, 罷打差隸, 督伐松木。不得已發刑吏, 欲捉宋載緯, 則載緯父子, 晏坐中堂, 拔劍斫軒, 咆哮詬辱, 載經則捉去下隸, 恐喝威脅, 故一邊催捕載緯, 一邊具由報營。伊日初更, 縣軍官房再琯來言: ‘宋載緯之子允鼎, 拔劍揮刃, 直到官門。’ 云, 聞甚驚凜, 更報營門。營門定查官查實, 則查官曲護宋哥, 漫漶爲報。更定查官再查, 則以房再琯醉中誤告, 爲報營門, 薄治宋奴而止。

營決之後，宋載經，使其子再呈議送，搆捏矣身。矣身實無坐衙莅民之顏，六呈辭狀，躬詣營下，齎納印符。”云云。兵曹參議宋載經上疏曰：

臣所居，卽本縣邑內，洞壑園麓，自先世護養。去冬使樵奴，斫來數株稚松，光晦忽問臣父母墓所在不在境內，則於臣亡姪之墓，盡赭其山。至於臣從弟載緯，則直令官隸縛來，而特出於一時狂酣之說，故欲徐待其醒，以爲入庭卞明之計。不意饗怒陡作，駭舉層生，調發邑底之吏卒，招集各面之將校，半夜鉦鼓，呐喊四匝，毀門逼室，婦牛驚窒，其子允鼎，不勝震迫，自引佩刀，排出門戶曰：“吾母將死，吾父又將死。吾寧先刺犯吾父者。”此不過謀紓目下之急，而光晦以欲犯土主，至報巡營。畢竟允鼎父子，自入縣庭，被其枷囚。光晦乃奏凱犒賞，若勝大敵。卽此舉措，又可以常性人責之乎？

敎曰：“囚人未及勘律，遽捧對章？捧納承旨推考。本事是非，雖示弦韋，此等處責備，實合存事體之義。兵曹參議宋載經推考。”又敎曰：“士人拔劍事，無論官門抽刃，官庭擬刃，律有已行未行之別。又或在家向捕者，發劍拒捕，毆人至折傷，然後置辟，未折傷以上勿問。此一款，已令付之該道，自可按法準繩。而際見兵議對章，此囚之在邑也，吏、校無時調發，敲角半夜大振，赭其邱壠，毀其門屏，繼有奏凱犒賞之舉云。此則不可但以妄錯論。無警急不先申，而擅調者，典憲自有斷例。朝家旣聞之後，擅調委折，不可不一番按問。發問日取招。”及光晦再招。令道臣，詳查狀聞。至是，湖西伯上查啓曰：“旣非束伍哨、摠，乃縣官吏校，似與擅調軍兵有異。以一士民之不就捕，招集村校，半夜圍捕，舉措駭妄。其罪狀，令攸司稟處。宋允鼎只欲驅逐將差，初非擬刃官長。而以民抗官，亦壞城化之等分，其悖駭之罪，自臣營勘斷。”禁府論朴光晦罪，徒三年定配，以大赦當前，特命收贖。翌日，除載經爲兵曹參判（□□正祖實錄□□ 18卷，8年（1784 甲辰）7月 9日 壬戌）

## 139. 이상기(李尚琦)

○ 甲午/三南暗行御史金履成，復命進書啓，論昌原府使李東植、金海府使閔永喆、丹陽郡守趙時淳、光陽縣監姜忱、懷德縣監李尚琦不法狀，竝拿問勘罪。（□□正祖實錄□□ 24卷，11年（1787 丁未）9月 30日 甲午）

懷德縣監李尚琦 鄉奸吏猾 自然爲其所賣（□□日省錄□□ 正祖 11年 丁未 9月 30日（甲午））

## 140. 흥경후(洪景厚)

○ 懷德縣監 : (落點)僕判 洪景厚(進通訓 蔡弘覆薦), 翼令 沈原之, 漢庶 丁載遠 (『政事冊』  
丁未(정조11, 1787) 九月 三十日)

○ 有政 以徐鼎修爲吏曹參議 鄭萬始爲副應敎 金鍾秀爲弘文提學 再政 洪景厚爲 懷德  
縣監, 鄭駿采爲昌原府使(□□日省錄□□ 正祖 11年 丁未(1787) 9月 30日(甲午))

## 141. 김박연(金博淵)

金懷德博淵 大夫人 輓 二首

壺範名門素有傳  
好述矧又大夫賢  
誠勤所格人咸服  
誰秉當今女史編

箕疇錫福壽爲隆  
嚮用方知异德功  
葬不別營情理愜  
大運深墨孝無窮  
(□□錦谷先生集□□ 卷1 ‘詩’)

## 142. 강세정(姜世靖)

○ 館學儒生李近源等七百二十七人聯疏, 略曰: 我東方偏受神宗皇帝再造之恩, 皇朝正朔,  
保有今日, 而不至泯滅者, 獨我東爲然。昔在英廟朝, 忠良科放榜時, 因特敎恩牌書以崇禎,  
而凡士夫家墓道文字、師友間詩文唱和, 皆特書崇禎紀元, 以表其尊周之誠者, 亦可以有辭於  
天下後世。忠清之懷德一縣, 亦我東曲阜、新安耳, 鄉校釋奠之祝, 特書崇禎年號者, 其來

蓋久。噫！彼知縣姜世靖，抑獨何心，乃於今年秋享，身爲初獻官，讀祝時聞到崇禎二字，脅止大祝，使之改讀而後已。是皆出於平日心腸，讎視義理，必欲立幟於虜號，而甘爲亂賊於春秋也。華陽院儒，移文懷邑，聲罪世靖，而揭罰改讀之大祝，則世靖不惟不服其罪，乃反盛氣張皇，敢引不敢引之地，力戰一世之公議，遍辱當世之士夫誥牒之所受、使價之所赴。竝舉人家之祖先，譏之以皇朝賊臣，讎庭陪臣。至有四度公帖，其言曰，‘今距崇禎數百年，痛冤二字，豈非過當而可笑者乎？’此言奚爲而發也？噫！我東之於皇明，有百世不可忘之恩，於彼虜，有百世不可忘之讎，豈可以較歲月之久近，忘宿昔之恩讎哉？身爲我東臣民，以痛冤二字，歸之於過當之域、可笑之科，則是我東之罪人也，皇朝之罪人也。其子浚欽，曲爲之隱諱可也，私爲之痛迫可也，旣聞士論，揚揚設場，已非嚴畏之意也。衆口難防，自爲罷場，急急陳疏，角勝公議，其所以辨其父之誣者，反所以彰乃父之惡也。臣等義不與世靖同中國，略舉事實，伏願特治世靖背馳義理之罪，屏諸四裔，以靖世道焉。

批曰：“姜世靖事，其心亦豈欲背馳，而其跡則然。依施屏裔姜世靖于機張縣。”(□□純祖實錄□□ 5卷，純祖 3年(1803 癸亥) 12月 11日 壬申)

### 143. 임중백(任重白)

○ 懷德縣監：(落點)市令 任重白(蔭,通訓 吳鼎源薦)，樂主 金敬烈，漢主 嚴載(『政事冊』戊辰(순조8,1808) 正月 二十七日)

### 144. 이보한(李普漢)

○ 丁卯/掌令趙直永疏略曰：今番館錄，何其淆雜之甚也？金敬淵之釁累，沈鈁之病廢，金鎮之狂易，朴升鉉之輕佻浮薄，重以心疾自刎，又何強覓而苟充哉？心跡莫掩於愛護，手法盡露於濫猾。辜負委界，全沒顧忌，請副提學金履喬，施以刊削之典，今番館錄，特令改圈。仍論洪陽縣監申光軾，貪饕剝割，懷德縣監李普漢，侮辱儒賢，請竝罷黜，賜批，令廟堂稟處(□□純祖實錄□□ 18卷，純祖 15年(1815 乙亥) 2月 11日 丁卯)

## 145. 유준(柳燭)

○ 公忠右道暗行御史李彥淳書啓：“論公州判官李德彬，定山縣監權思謙，青陽縣監金昊淳，泰安前郡守具俊，藍浦前縣監申應祿，金井前察訪申允，唐津縣監李正紳，瑞山郡守李用錫，懷德前縣監宋儒載，韓山郡守金在範，懷德縣監柳燭，前水使申純等不治之狀，竝令從輕重勘處。又論連山縣監南駿應，恩津縣監李翻在，有治績，竝施陞敍之典。別單，陳釐田結、正斗斛、嚴軍餉、飭松禁、繕廨宇、安興之當設防營，雙樹之當浚井泉等事，令廟堂，從長採施。(□□純祖實錄□□ 25卷，純祖 22年(1822 壬午) 8月 24日 乙丑)

## 146. 송유재(宋儒載)

○ 懷德縣監：禁都 宋欽大，(落點)翼陵令 宋儒載(蔭,通訓,李相璜等薦)，顯隆令 朴肯源(□□政事冊□□ 丁丑(순조17,1817) 九月 十五日)

○ 公忠右道暗行御史李彥淳書啓：“論公州判官李德彬，定山縣監權思謙，青陽縣監金昊淳，泰安前郡守具俊，藍浦前縣監申應祿，金井前察訪申允，唐津縣監李正紳，瑞山郡守李用錫，懷德前縣監宋儒載，韓山郡守金在範，懷德縣監柳燭，前水使申純等不治之狀，竝令從輕重勘處。又論連山縣監南駿應，恩津縣監李翻在，有治績，竝施陞敍之典。別單，陳釐田結、正斗斛、嚴軍餉、飭松禁、繕廨宇、安興之當設防營，雙樹之當浚井泉等事，令廟堂，從長採施(□□純祖實錄□□ 25卷，純祖 22年(1822 壬午) 8月 24日 乙丑)

## 147. 전윤담(全允淡)

“현감전후윤담애민선정비(縣監全侯允淡愛民善政碑)”(□□대전금석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091쪽)

## 148. 홍리섭(洪履燮)

○ 懷德縣監：(落點) 儀都 洪履燮(進朝奉 李紀淵薦)，用判 李憲三，漢主 李敬會(『政事冊』癸未(순조23,1823) 十二月 二十二日)

## 149. 조운구(趙雲龜)

○ 懷德縣監 : (落點) 廟令 趙雲龜(進士通訓 任星鎮薦), 健令 徐有皓, 軍主 李正履  
(『政事冊』戊子(순조28, 1828) 六月 二十四日)

○ 公清道暗御史洪遠謨書啓 :

論忠州牧使趙濟仁, 清風府使朴齊尚, 前府使趙吉源, 溫陽前郡守沈鐸, 新昌縣監李博鉉, 唐津縣監崔弘岱, 前縣監鄭東老, 藍浦縣監姜九成, 庶仁縣監安塾, 扶餘縣監金在宣, 青陽縣監李鍾惠, 懷德縣監趙雲龜, 德山縣監鄭世教等不法之罪, 公州前判官洪義翼、李魯俊, 沔川郡守趙雲杓, 泰安郡守李惟穆, 槐山郡守沈源祖, 丹陽郡守金炳元, 林川郡守金在星, 西原縣監李常在, 堤川縣監朴宗聞, 延豐縣監李元在, 鎮川前縣監徐膺淳, 木川縣監洪永燦〔洪永燮〕, 燕岐縣監金箕明, 平澤縣監趙鎮文, 保寧前縣〔監〕李是鍊, 定山縣監洪梅, 魯城前縣監尹行定, 恩津前縣監徐有準, 永同前縣監李啓朝, 黃潤縣監鄭始容, 青山縣監徐鴻輔, 懷仁縣監李時學, 穂山前縣監嚴耋, 連山前縣監宋持膺, 清安縣監宋欽明, 前水使朴潤榮等不治狀, 幷令從輕重勘處, 別單, 陳軍田糴三弊及戰備之虛踈, 驛站之凋殘, 吏額之漸增, 松禁之久弛, 潛倉濫捧官結偏重等事。令廟堂, 從長採施 (□□純祖實錄□□ 30卷, 純祖 29年(1829 己丑) 11月 30日 庚申)

## 150. 여동규(呂東奎)

### 행현감이공득영유애비(行縣監李公得永遺愛碑)

옛날 임오(임오)년 공이 이 고을에 부임한 해에 큰 흉년을 만나 창고를 열어 진휼하여 백성들을 살리니 장차 비를 세워 기록했다. 공이 빼앗아 아문의 정원에 감추었는데 후에 병벽(涇濱: 섬유를 물로 바래서 희게 함)하는 돌이 되었다. 내가 보고 감동하여 공의 실적을 찾아 보니 초백(髫白: 젊은이와 노인)이 노래하고 외우고 있었다. 지금 분명하게 크게 탄식하는 자만이 그 어진 정치의 사무치고 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고을의 노인들과 서로 상의하여 공이 감춘 비를 취해 기록해 세워서 후자에게 권한다.

신묘(辛卯) 4월일 현감(縣監) 여동규(呂東奎)가 기록했다. (□□대전금석문□□, 대전시사편찬 위원회, 1082-1084쪽)

## 151. 윤희대(尹希大)

○ 懷德縣監 : (落點)(尹希大 遷轉代)特判金敲根(蔭,通訓 朴潤榮薦), 慕令 崔璜, 健元令  
韓容鼎 (□□政事冊□□ 乙未(현종원년, 1835)十二月 二十二日)

○ 謹次尹懷德希大韻

隨分田園晚計疎  
任他外事自棼如  
林花消息清明後  
隴畝經綸穀雨初  
暇日因書心自適  
衰顏借酒氣猶舒  
年來況值絃歌化  
往往唱酬慰索居  
(□□金谷先生集□□ 卷1 ‘詩’)

## 152. 김고근(金敲根)

○ 懷德縣監 : (落點)(尹希大 遷轉代)特判金敲根(蔭,通訓 朴潤榮薦), 慕令 崔璜, 健元令  
韓容鼎 (□□政事冊□□ 乙未(현종원년, 1835)十二月 二十二日)

## 153. 서원보(徐元輔)

○ 懷德縣監 : (落點) 柳承根遷轉代 崇陵令 徐元輔(進 通訓, 李參鉉薦), 光陵令 金正秀,  
孝陵令 曺演承(□□政事冊□□ 戊午(철종9, 1858) 六月 十四日)

○ 진시(辰時). 상이 자경전에 나아갔다. 진강할 때에 입시하였다. …(중략)… 상이 이르기를, “전 해백(海伯)은 앞으로 나오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편안히 갔다가 올라왔는가?” 하니, 서원보가 아뢰기를, “성상의 은혜로 편안히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신이

하찮은 음관(蔭官)으로서 평소 학식과 재주가 없어 성상의 명을 잘 받들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드문 은혜를 전후로 받았으므로 송구스러워 앙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중략)… 상이 이르기를, “참찬관은 누차 지방 수령을 거쳤는데 몇 곳이나 되는가?” 하니, 서원보가 아뢰기를, “회덕(懷德), 천안(天安), 무안(務安), 서홍(瑞興) 등 네 곳인데, 서홍에 있을 때에 특별한 은총으로 해백(海伯)에 제수되었습니다.”하였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계유(1873,) 5월 17일(갑오) 맑음

## 154. 흥신모(洪莘謨)

○ 懷德縣監 : (落點) 洪莘謨遷轉代 廣主 柳泳根(進 通訓, 黃浩民薦), 刑佐 金正秀, 廟令 林喜鎮 (□□政事冊□□ 甲寅 (철종5, 1854) 五月 十五日)

## 155. 유승근(柳承根)

○ 懷德縣監 : (落點) 洪莘謨遷轉代 廣主 柳承根(進 通訓, 黃浩民薦), 刑佐 金正秀, 廟令 林喜鎮(□□政事冊□□ 甲寅(철종5, 1854) 五月 十五日)

○ “현감유후승근영세불망비(縣監柳侯承根永世不忘碑)”(□□대전금석문□□, 대전광역시사편찬 위원회, 1077쪽)

○ 오시(午時).

상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중략)… 유승근이 아뢰기를, “광흥창수 신 유승근입니다. 이력은, 을미 8월 생원시에 급제하였고, 무신 3월 정사에서 공릉 참봉(恭陵參奉)으로 제수되었고, 기유 12월 도목 정사에서 서빙고 별검으로 옮겨 제수되었고, 경술 2월 정사에서 의금부 도사로 옮겨 제수되었고, 경술 6월 도목 정사에서 광흥창 봉사로 옮겨 제수되었고, 신해 6월 도목 정사에서 광흥창 직장으로 승진 제수되었고, 임자 12월 도목 정사에서 광흥창 주부로 승진 제수되었고, 갑인 5월 정사에서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옮겨 제수되었고, …(중략)… 임신 3월 정사에서 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담당은 백관들에게 녹봉을 나누어 주는 일인데, 1년에 올라오는 것은 쌀이 2만 석, 콩이 1만 석이며,

매달 초하루에 지출하는 것은 쌀이 1700석, 콩이 900석이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쌀이 7472석 3두 5합(合) 6작(勺)이고 콩이 1만 492석 9두 9합입니다. 소회는 없습니다.” 하였다. …(중략)… 김규홍이 아뢰기를, “윤대관들의 아름이 끝났으니, 먼저 물러가도록 합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어 사관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또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갑술(1874) 3월 11일(계축) 맑음)

## 156. 김낙균(金樂均)

- 말미를 받아 서울에 올라온 수령 예산 현감 서상옥 등이 내려간다는 이조의 계.
- 이순익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정부의 초기(草記)에 따라, 경과(慶科)의 초시(初試)가 이미 지나갔고 가을일이 한창이니 입격(入格)한 사람 이외에 말미를 받아 서울에 올라왔거나 아직 하직하지 않은 수령을 모두 재촉하여 내려 보낼 것을 윤허하셨습니다. 신의 조(曹)에서 재촉하였더니, 말미를 받아 서울에 올라온 수령 …(중략)…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형집(金亨集)과 창평 현령(昌平縣令) 박제형(朴齊珩)과 영동 현감(永同縣監) 오건영(吳健泳)과 회덕 현감(懷德縣監) 김낙균(金樂均)과 청산 현감(青山縣監) 남정斗(南定斗)와 태인 현감(泰仁縣監) 김연근(金延根)은 모두 오는 9월 2일에 내려간다 합니다. (□□승정원일기□□ 고종 1년 갑자(1864) 8월 28일(병신) 맑음)
- 李淳翼, 以吏曹言啓曰, 因議政府草記, 慶科初試已過, 秋務方殷, 入格人外, 受由上京及未下直守令, 索催促下送事, 允下矣。自臣曹催促, 則受由上京守令禮山縣監徐相鉉, 今月二十八日下去云, 天安郡守南鍾鶴, 牙山縣監申命羲, 俱以爲今月二十九日下去云。泗川郡守李僖, 青陽縣監趙東淳, 井邑縣監尹榮輔, 俱以爲今月三十日下去云。韓山郡守金亨集, 昌平縣令朴齊珩, 永同縣監吳健泳, 懷德縣監金樂均, 青山縣監南定斗, 泰仁縣監金延根, 俱以爲來九月初二日下去云。林川郡守李英, 以省掃事, 京畿楊根地下去云。泰安郡守鄭洛鉉, 以觀親事, 京畿龍仁地下去云。魯城縣監沈宜薰, 以省掃事, 京畿砥平地下去云。清安縣監張鳳達, 以觀親事, 慶尙道仁同地下去云。茲斯速還官之意, 發關知委於該道道臣。未下直守令高原郡守李赫文, 今月二十九日辭朝之意, 敢啓。傳曰, 知道。((□□승정원일기□□ 고종 원년(1864) 8월 28일 (경신))

○ 미시(未時).상이 흥복헌(興福軒)에 나아갔다. …(중략)... 김낙균(金樂均)이 앞으로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이력은, …(중략)... 경신년(1860) 12월의 도목 정사에서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제수되었고, …(중략)... 기묘년 6월의 정사에서 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맡고 있는 직무는 없고, 현재 남아 있는 물품은 없으며, 소회도 없습니다.”하고, 이어 물러나서 엎드려 있었다.(□□승정원일기□□, 고종 17년 경진(1880), 12월 28일(신유) 맑음)

### ○ 金侯樂均事蹟

國之有太學 所以敦風教育人材之源也 稽于古 夏有庠 殷有序 周有學 而逮我東學校之設遍於州郡 規模宏遠 昭軼三代之隆 傳道諸賢 次第從享 猶歟盛哉 列聖朝右文崇德 樹綱扶紀殆無餘蘊矣 自夫學宮廢 而教法不修 其所尊奉先聖 只不過歲 再舍采月 再焚香而已 至於懷縣名賢輩出 專尚儒業 素稱鄒魯 而不幸遺澤침遠 絃誦久廢 爲縫掖者 安得無感歎者哉 官本冷薄民亦簡樸 春秋大享 諸般儀節 尚不能備禮 且及多士供饋 素無準排盤匙等屬 柴束軍丁 亦使窮蔀殘戶 支待舉行 既成謬例 未知爲幾個歲于今也 今侯樂均 下車三載 法祛凋瘵 事多綜核聞此規約之駁駁汶汶 慨然興歎曰 此非徒煩民 蓋堂堂清肅之地 每當釋菜 反貽民弊 恐非正士趨導民彝之意 特許廩俸一結 劃付齋中 偿爲奉供之資 而民間進排一切革罷 從簡磨鍊 略成節目永使遵守 奚特尊聖之誠 亦爲字民之政 豈不美哉 從茲以往校宮 可以清靜享禮 可以成樣 懷之士民 苟欲不忘明府之嘉惠 而守其定式 必思所以傳後之道也 於是竊倣堅碑長陽 揭板連州之事請記于余 余雖鹵莽 適添齋末之任 不敢以無文因辭 遂敍顛末以記 校約鑄革之由 幷著金侯施惠之蹟 刊之梓 揭于壁 昭示後來以爲瞻聆而欽聳焉 記實者 齋任宋赫老 朔始者一邑之民 于時昭陽大淵獻 暮春之哉生魄也

### 節目

爲永久遵行事 日前春享時 因西齋稟目 聽聞多感 且因洞等訴 始審其事實是如乎 蓋堂堂清肅之地 多士供饋之節 宜有成規 而今此盤匙等諸具 借用於殘村下戶者 非但爲弊於民間 有非崇儒重道之義 故自念爲始 每一結以詳定例 年年自官廩劃給以爲給代之資是遣 其盤匙也 柴束也 軍人也 勿使貽弊於民間 則齋中有寧靜之美 民間無騷擾之歎 校奴之輩又無以售奸於其間 後之來侯 繼此施惠 則豈曰少補云乎哉 此節目成出三件 一件置之校中 一件官上 一件付之作廳爲旂 亦以此意 傳令於各該洞 以爲遵守之地向事

- 一. 上山垈卽烽臺舉行之村 鄉校應係是疊役 每每呼訴 故以此錢給代 偿無責徵是齊
- 二. 所謂禊坊新設木浦塔立場垈山直村新垈諸洞 皆是殘民下戶 盤匙卜定之際 或有庫直輩操縱討索之弊 非但呼冤之狼藉 其在一視之政 不可使偏苦之役 故以給代盤匙 借用永爲革罷是齊

- 一. 今年詳定結價 每結爲十四兩五錢 故以官廩中劃給庫直 以爲兩次進排之資是齊
- 一. 每一結 代每年春享後上下使庫直殖利 以爲當年秋享及明年春享時補用 則可以綽綽有餘  
俾爲庫直聊賴之資是齊
- 一. 盤匙也 柴束也 軍人也 如是厘正之後 复有貽弊 則後庫直嚴治是齊
- 一. 守直軍人以此雇立 點火柴束以此貿用 排床盤匙以此貿用是齊
-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是齊

癸亥 二月 日 (□□대덕의 제영기□□ 대덕구, 대덕문화원, 2006, 33~37쪽)

## 157. 송재성(宋在誠)

- (전략)…, 宋在誠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1864) 12월 27일 (갑오))
- 또 계목에, “전 회덕(懷德) 현감 송재성(宋在誠)이 원정(原情)에 운운하였습니다. 전지 내의 죄상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遲晚)이라 하였으나, 나이가 70세라 법으로 볼 때 형추를 청해서는 안 됩니다. 의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4년 정묘(1867) 5월 9일(신유) 맑음)

## 158. 이교선(李教善)

- 懷德縣監 : 宋在誠居下代)用判洪萬燮, (落點) 徽陵令李教善(通訓, 李守曾薦), 明陵令尹永善乙丑 (고종2, 1865) 十二月 二十二日)
- 都政。吏批, 行判書李宜翼進, 參判鄭健朝進, 參議李載冕牌招不進。(전략)…, 李教善爲懷德縣監,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2년(1865) 12월 22일 (계축))

## 159. 홍재정(洪在鼎)

- 懷德縣監 : (落點) 辛教善罷黜代 景慕令 洪在鼎(進士, 通訓), 翼陵令 李象準, 用判 洪佑龍 (□□政事冊□□ 丁卯(고종4, 1867) 四月 二十四日)
- 洪在鼎懷德縣監으로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4년, 정묘(1867), 4월 24일(정미) 맑음)

## 160. 이인익(李寅翼)

○ 2차 정사를 하였다. 오인영 · 이조신(李肇信)을 정언으로, 유용함(柳龍鎬)을 병조 정랑으로, 도석훈(都錫熏)을 감찰로, 이인익(李寅翼)을 회덕 현감(懷德懸監)으로 삼았다. 전한에 이승우를 단부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8년 신미(1871), 1월 13일(계묘) 맑음)

○ 이조 계목에,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충청우도 암행어사 박용대의 서계를 보니, 전 연산 현감(連山縣監) 서규순(徐圭淳)은 어사의 서계에 이미 유사를 시켜 품처하기를 청하였다 하니, 다시 논할 것이 없겠습니다. …(중략)… ‘전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인익(李寅翼)은 성질이 부드럽고 착하기만 하여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술취한 사람 같으며, 방임(房任)의 태거(汰去)와 임임(仍任)은 오직 뇌물을 보아서 하고 송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청탁을 기다려서 판결합니다. 차임하는 값으로는 임상옥(任相沃)에게서 100냥, 임상현(任相賢)에게서 300냥, 박내풍(朴來豐)에게서 200냥, 박내춘(朴來春)에게서 70냥, 임정로(任貞魯)에게서 50냥, 임상립(任相林)에게서 50냥, 임시택(林時澤)에게서 100냥을 받은 것과, 송사의 뇌물로는 평촌(平村) 박치만(朴致萬)에게서 불효(不孝)하다는 죄를 꾸며 뇌물로 받은 돈 200냥과 송탄(松炭) 송중심(宋仲心)에게서 음행(淫行)하였다는 죄를 꾸며 뇌물로 받은 돈 300냥을 합한 돈이 1370냥인데, 책객(冊客)이 폐단을 지은 것일지라도 실은 주관(主官)이 살피지 않은 것이니, 폄파(貶寵)하였다 하여 버려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갑술(1874) 11월 6일(을사) 맑음)

### ○ 校宮重修關文

卽到禮曹關內卽者

大院位敎是分付 而惟我大東一隅 卽禮義之邦也 列聖朝崇儒重道之化 永垂無窮 而逮聖上  
卽祚以來 治敎休明 明正學 炳如日星 斥邪術 嚴於鉄鉞 勤學之筵 教風動是誠 八域士子切  
磋琢磨 需世展用之一大機會也 夫學宮者 賢士之關也 國有學 州有序 皆所以講賢聖之書  
明孝悌之道 以至作成人材 參贊王化之本也 夫何挽近以來 土習不古 縫掖罕講習之工 校宮  
無藏修之觀已極 慨然至若院宇之設 卽先賢尸祝 祖豆之所 則亦出於專尚寓慕之誠 而駸駸然  
久而弊生 爲其院任者 或寅緣而以其財取殖 或憑藉而以其免稅 甚至招呼朋類以爲酒食之場  
此等之弊 難保其必無 則當初尊賢慕道之意 果安在哉 此固有識之所 共興嘆者 而校宮之荒  
廢頹圯處一併修治而改觀 爲士林依歸之地 而校任則自官必擇古家名闕中劬經飭行 而爲一鄉  
之望 可以師丈之人 委之以導率之責 然後說法講習 一遵朱夫子白鹿洞規 日講月課 不興土林

使凡民俊秀 家有絃誦之聲 戶服仁義之行 咸知孝於親 忠於君 風俗於變 將見比屋之可封而邇來邪說暴行 陷溺人心 人心陷溺 則殆爲夷狄禽獸之歸矣 豈不大可憂懼 今欲息邪說莫如明正學 明正學之本 惟在於興學校 學校興 則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治化之隆 不外乎是有國大政 自昔伊然 而尤爲目下之最急先務 是如乎 有地望學術人士之差出 校任者自其邑這成冊爲旂 若各其作新人材 蔚有成效者 錄名掄効 亦係朝家應行之典也 將此關辭 傳各揭板于校宮 以爲常目警省之 亦教是置 紲以文移爲去乎 道內各邑良中申明知委向事 關是旂一時到付太學通文內 尊師衛賢 吾儒之常道也 闢異討邪 前聖之垂訓也 惟我東邦素稱小華國有太學 州有校宮 環三千封域之內 絃誦洋洋 垂五百郅隆之餘 文物彬彬 迄至于今 猶歛爲盛不意挽近以來 正道昬微 邪學闖發 所謂一種洋學 詭誘愚俗 幾入禽獸之域 屢侵海徼 每多蛇豕之患 思之及此 豈不寒心哉 猶我主上殿下衛道斥邪 屢下渙散之音 亦我院位閣下 扶義持綱 特守公正之論 爲我土類也 豈可不奉承其萬一乎 大抵斥邪 道在於明吾道 明吾道 在於興學矣 豈無重修之道乎 而況院校 先自太學 既有重建之舉 暫于鄉學 豈無重修之道乎 而況院位所教 不啻鄭重 故茲以發通 伏願僉君子 輪示一鄉 媒合財物 以爲修葺校宮之地 亦有置乎爾校宮 卽多士藏修之所 一鄉表準之地也 文化之蔚興 儒道之丕彰 在於此 而苟或居處就荒有失齊整之意 任掌乖望 則無補導率之 乃校宮焉 修葺其頽圯 校任則擇差以翹楚弘盡崇養之道以勸課之責爲旂 關辭一通翻贍下帖于校宮 使之揭板 存警校任姓名成冊 必以兩件 修報以爲輪送之地 是遣舉行形止 各卽馳報向事

辛未五月初十日出

行縣監 李演翼	宋秉大
掌議 宋寅老	韓世熙
有司 金鼎夏	

### ○ 大成殿重修記

當寧八年春 余自卽潘出宰懷邑 懷湖之斗邑 儒賢代出 敦尚詩禮 俗多近古世所稱鄒魯之鄉也 於莅任之明朝 謁聖廟周視殿宇 檻桷棟楹績久朽傷 風雨鳥鼠患 將難測用 是兢懼居常料理徒切補葺之計 奈蔑拮据之方 荏苒時日 有志莫辦 適於是歲自春 曹有別飭 列邑校宮 一齊重建蓋出衛道之特典 興學之急務也 其在對揚之道 有不容緩者 顧事鉅力綿 恐或未逮 乃與齋任宋寅老諸人 圖所以共濟之策 詢及於一二章甫 公議協從士林 聽聰各輸其誠 競出其財 陸續相助 區劃有裕 遂以翌年正月 始命工匠伐材軍夫運民 以至鐵治土甞凡干器械之具 悉齋任隨事周旋 詳慎照管 井井有條理 於是乎 電斧雪鋸 閃閃於左右 平準方矩 簿籜於後前 是尋是

尺約之 一遵舊制 無敢加損 纔及半載 廟貌奕奕 翠甍連空 比曩時而增瑞丹艤 照日使行路而改觀 儼若聖人之爰處 蔚然多士之攸掃?簡日 奉牲還安先聖先賢位次 如禮儀維新於俎豆 文可觀於衣冠 仍設落成之會於明倫堂 講之五教 帶之六藝 酒旣行 諗于章甫曰 以余不佞頃當浩大之役 非有絲毫效勞於其間 能完其工 竣其事 致有今日之盛舉者 莫非齋任勤幹之功 諸儒救助之力也 信乎此鄉風教之美 知有所由來 而與名稱相孚 非他邑所可企及也歟 咸曰 不然 詩云 思皇多士生此王國 豈弟君子遐不作人 惟我聖上特念導化 之本 先自學宮而修改之使我土民趨向之藏修遊息 觀感知有進退揖讓之節以培養之 然則朝家作成興起之化 未有盛於斯者 豈以區區效力容有可云云也哉 余善其言而起謝 述以文而記之 歲(癸)

壬申七月既望後二日 庚子 知縣 李寅翼謹識

掌議 宋寅老

有司 金鼎夏

宋秉大

韓世熙

(양승률, □□大德의 題詠記□□, 대덕구·대덕문화원, 2006, 42-48)

## 161. 김현순(金獻淳)

○ “현감김후현순영세불망비(縣監金侯獻淳永世不忘碑)”(□□대전금석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062쪽)

### 懷德縣學明倫堂重修記

吾鄉之儒生李陽來鄭器中等七十餘人 具書與幣 告于來熙曰 吾縣鄉校 歲久傾敍 聖座不免滲濕 今縣監金侯膺簡視篆 慨然興歎 先修殿宇 瓦縫之剝泐之 棟桷腐橈者易之 至翌年壬寅又欲改繕明倫堂而不可 但以彌補而止 量度以工費時詘舉영 縣之前牧使宋公啓洙措劃有方 以告縣侯 而縣侯從之 乃命齋任徐龍中敦其事 經始於仲春 閱數朔而斷手 以至門觀 俱爲煥新 閣境士民拭目欽聳咸曰 堂則成矣 不可以無記 願得一言 以載其實也 余辭以病且不文 未幾李君等再至 請益勤 宋公於余爲三從叔 而旣與聞是役 則余安得終辭乎 噫 今之爲學政者完其屋宇 修其牲幣 斯亦無多焉 若論其極 則當有進於此者 顧余陋淺之識 又何敢妄爲之說哉雖然 嘗見朱夫子靜江部學之記矣 其言曰 古者 聖王設爲學校 以教其民 而其教之之具 則皆因其天賦之秉彝 而開導勸勉 使其明諸心 修諸心 行之於父子兄弟夫婦朋友之間 而推之以達

乎君臣上下人民事物之際 必無不盡其分焉 及其學之既成 則又與其賢且能者 置之列爲公卿大夫 百工 之選 無不得其人焉 此先王學校之官 所以爲政事之本 道德之歸 而不可以一日廢焉者也 至於後世 學校之設 雖或不異於先王之時 皆忘本逐末懷利去義 風俗日廢 人材日衰 遂以學校爲虛文 而無所與於道德政理之實 其董存而不至於遂廢者 亦無幾耳 朱夫此說 讀於百歲之下 惟覺警惕矣 余故謹敍次以復焉 倩縣之諸生 曉其盛昔設校之隆 季世習常之弊 有所勉勵而修省焉 抑余復有所感焉 天下莫不知尊孔子 而當今冠帶之國 惟我青邱一域也 傳道諸賢 以此殷享極其象德 亦莫盛於我朝矣 翱吾文正先祖與尤庵先生 興於此土 義秉尊攘學任繼開 一門同德 庶幾河南之伯叔 而并又配食於廟中 則懷之人士攀化慕誼 相與尊奉而藏修者 尤異於他縣 諸君其知之乎 今其堂齋告落 肆業有所 則遊於斯學於斯者 莫敢誕謾恣睢而觀感講習 當以聖賢爲依歸 發其秉執之彝 循其己之分所固有 則三代教人之法 多士自修之方 不越乎是 其必蔚然而有興也 余將翹足以待之矣 諸君盍相與勉之哉 金侯名獻淳 安東人

崇禎紀元後 一百九十八年壬寅 季秋 恩津 宋來熙 謹記

(양승률, □□大德의 題詠記□□, 대덕구·대덕문화원, 2006, 26-29쪽)

### ○ 懷德縣校脯米灾減復古記

昔朱夫子吏於南康 以興化補弊爲已任 南康土民皆歌詠矣 今金侯獻淳 莅茲五載 亦以興學救弊 爲治事之本 而慨然於鄒魯鄉禮俗之漸下 雖隆寒暑雨必參大享之禮 躬覩學校之傾欹竭聞 常典之日頽 彻誠力 先修殿宇 大劃方略 改繕堂齋 以至殿席幣篚 煥然俱新 遠近瞻聳絃歌復興 余適冒忝於學舍 任有公事 嘗至於公之室 公歎曰 邑殘弊極 百無一補 以至若縣庠奠國鞏？邦之基也 尊聖矜士之所也 故設以俎豆以著崇奉之禮 奠以脯珍以享春秋之儀 則自先王不易之規也 而邇來邑規 不古脯米 亦入灾減莫重 享禮極爲欠敬 前後任事者 旣無能措處而官亦茲有年矣 寧不悚然 乃下歸屬鼓舞 蔚然歎然曰 盛矣 我侯來何暮也 里閭絃誦 學校遺制於是復覩 則永矣 考遵之道 不可無記 余以不文 妄構一言 以載其實 以公數行節目并揭于楣末 以寓乎百代士林瞻慕耳 崇禎紀元後 一百九十九年 癸卯仲夏 連山徐龍中 謹記

一. 春十石雜米中實減者分 加於各項應用脯米 則依原數上下事

一. 秋八石儲置末中實減者 凡於享用皆資於儲置 則末由從權斟酌矣 不已灾減數爻 每從其多少 以爲責推於路粮廳外面驟看 似或未妥 而各項上納 亦在其中 宜無如何之端 脢米則以此磨鍊依原數上下事

(양승률, □□大德의 題詠記□□, 대덕구·대덕문화원, 2006, 26-29쪽)

## 162. 홍용주(洪用周)

○ 懷德縣監 : (落點) 洪用周遷轉代 廣令 安榮植(成載玉薦), 勳都 南廷翊, 宣陵令 沈東贊  
(□□政事冊□□ 乙亥(고종12,1875) 九月 三日)

○ 권철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중략)… 홍용주(洪用周)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으로,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계유(1873, 동치 12) 1월 13일(계사) 맑음)

## 163. 안영식(安榮植)

○ 懹德縣監 : (落點) 洪用周遷轉代 廣令 安榮植(成載玉薦), 勳都 南廷翊, 宣陵令 沈東贊  
(□□政事冊□□ 乙亥(고종12,1875) 九月 三日)

○ 7차 정사를 하였다. 안영식(安榮植)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12 을해(1875) 9월 3일(병신) 맑음)

○ 충청 감사 조병식이, 회덕 현감(懷德縣監) 안영식(安榮植)이 침정(牒呈)으로 보고한  
산림(山林) 송병선(宋秉璿)의 정단(呈單)을 장계로 아뢰었다. 장계 안의 정단에 아뢰기를,  
“보잘것없는 천박한 자가 외람되어 은혜로운 명을 받아 화려한 직함에 헛되이 매여  
있을지도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이 두려워  
감히 다시 사정을 아뢰어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움츠리고 엎드려 이에  
대해 침묵한 채 기꺼이 오만을 떠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상의  
유시가 다시 내려와 이에 담긴 뜻이 더욱 간절하고 은혜로운 예우는 더욱 융성하였으니,  
이는 실로 우리 조정이 나이 든 유학자와 덕이 높은 이들을 대우하는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우가 지극히 우매하고도 용렬한 부류인 신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실로 어쩌다 이러한 예우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 너무도 두려운  
심정에 몸 둘 바조차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로 실정을 다시 아뢰어 파직의  
은혜가 내려지길 청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재야에서의 운신은 결국은 성상을 번거롭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에 감히 외람되어 미천한 뜻을 아뢰어 이 답답하고도 두려운  
정상을 현감을 통해 감영에 보고해 조정에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신에게 파직의 은혜를 내리시어 편안하게 이 미천한 분수를 지켜 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를 입계하자 계(啓) 자를 찍어 내렸다. (□□승정원일기□□ 고종 15년 무인(1878, 광서 4) 2월 11일(신묘) 맑음) 164

## 164. 남정린(南廷麟)

○ 충청 감사 이명응(李明應)이 장계하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남정린(南廷麟)의 첨정(牒呈) 안에, ‘산림 송병선(宋秉璿)의 정단(呈單)에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품으로 오래도록 잘못된 은혜를 입어 포만(逋慢)한 죄를 짓고 집에서 근신하며 견책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6품으로 올린다는 은혜로운 제수가 특별히 내전(內殿)에서 나왔습니다. 신은 명을 듣고 당황스러워 며칠째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또 춘방(春坊)의 관원이 전해 준 소식을 받으니, 세자궁의 천연두 증세가 회복되어 기쁨을 나누기 위한 은혜로운 예사(例賜)가 미천한 신에게 까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은 초야의 미천한 몸으로 의리상 감히 받을 수가 없으니,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사유를 갖추어 우러러 아립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황공하고 민망한 글을 즉시 감영에 보고하여 전달되도록 해서 면직되고, 분수에 넘는 상을 환수하게 하여 미천한 분의를 편안케 해 주소서. 천만번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 이에 첨보의 연유를 가지고 치계(馳啓) 합니다.……” 하였는데,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승정원일기□□ 고종 17년 경진(1880) 2월 11일(기유) 맑음)

## 165. 윤영현(尹永顯)

○ 충청 감사 남일우(南一祐)의 장계에, “회덕 현감(懷德縣監) 윤영현(尹永顯)의 첨정(牒呈) 내에, ‘산림(山林) 송병선(宋秉璿)의 정단(呈單) 내에 「저는 분수에 벗어난 은총을 오래 받아서 평소에 두려워 움츠리고 오직 꾸짖어 물리치시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일전에 춘방 서리가 알린 것을 받으니, 세자궁께서 《동몽선습》의 강독을 끝낸 뒤에 반사한 상전(賞典)이 혼동하여 천신에게까지 미쳤으나,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도리상 감히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실정을 우러러 호소하며, 특별히 감영에 알려 조정에 전달하여 도로 거두도록

하여 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하여 주시면 다행하기 그지없겠습니다.」 하였으므로 첨보합니다.' 하였으므로 연유를 치계(馳啓)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것은 기쁜 일을 당하여 반사한 것이다. 이처럼 사양할 것 없으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지방관을 보내어 다시 전유(傳諭)하도록 하라." 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21년 갑신(1884), 2월 20일(병인) 막음)

○ 현감 윤후영현(尹侯永顯)이 향교 폐단을 막은 사실 기록(縣監尹侯永顯鄉校防弊事實記) 학교의 설치가 본조(本朝)보다 성한 적이 없고 도를 전한 여러 현인들은 차례로 배향하고 열성(列聖)의 덕과 문(文)을 숭상하는데 거의 남김이 없으니 무릇 유관(儒冠)을 쓰고 유복(儒服)을 입고 성인(聖人)의 글을 읽는 자 중에 누가 우러러 숭모하고 경양하지 않으랴! 학교가 폐하고 가르침이 닦이지 않고 부터 그 존모하고 받드는 것이 불과 한해 두 번 제사(봄 가을 穩奠)와 달에 두 번 분향(朔望 焚香)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이것이 어찌 조정이 학교를 세워 도리를 밝히고 인재를 기르는 본 뜻이랴! 이에 창주모적(滄洲茅籍)이 남김 없지 않으나 창평봉호(昌平蓬蒿)를 근심하나 없애지 않았으니 오호라! 선비의 풍속이 날로 무너지고 사문(斯文)의 폐단이 아주 심했도다. 오직 우리 윤후영현(尹侯永顯)은 충효(忠孝)을 대대로 이어왔고 밝게 닦고 높이어 숭상하여 부임하고는 대성전에 배알하고 두루 건물과 기와가 떨어지고 갈라진 것과 용마루와 서까래가 부러지고 썩은 것을 보고 또한 재생(齋生)이 연호(煙戶)의 역에 괴로워하는 것을 가련하게 여기고 개탄 탄식하고는 거듭 새로 할 것을 도모하는데 특히 얼마 안되는 녹미를 덜어서 조처하는데 방책이 있어 보수하여 쓰고 완비 하는 방책을 쓰니 이는 실로 근래의 성사라 족히 문옹(文翁)의 교화(중국 漢나라 때 文翁이 蜀郡에서 한 教化)한 것보다 아름다운 베품을 잊지 않으리니 그 처음을 지키고 쫓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의(掌議) 송인로(宋寅老)가 내게 그 일을 적기를 청하기에 졸렬하여 감히 학식이 없다고 굳게 사양하지 못하고 대략 전말을 엮어서 돌아가게 하고 그 영구히 도모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노라.

승정기원후 네 번째 계미(癸未:1883) 6월 덕은(德恩) 송면로(宋勉老)는 기록한다.

(양승률, □□대덕의 제영기□□, 회덕현학명륜당중수기, 51-52 쪽)

學校之設 莫盛於本朝 傳道諸賢 以次從享 列聖之尚德右文 殆無遺蘊 凡係冠儒而服儒讀聖人之書者 孰不瞻慕而景仰哉 自夫學廢而教不修 其所尊奉 不過歲再舍 菜月再燒香而已此豈朝家所以建學明倫育才之本意 於是焉滄洲茅藉不無餘 憾昌平蓬蒿 未克剪除 鳴呼 士風日壞 斯文之弊極矣 惟日我尹侯永顯 世襲忠孝 修明尊尚 下車卽謁廟 遍觀屋瓦剝泐 棟桷摧朽

且憐齋生之困瘁烟戶 慨然興歎 圖以重新 特蠲殘廩 劃措有方 倘爲補用完備之策 此實挽近盛舉 足可婉美於文翁之化 蜀懷之士 苟不忘尹侯之嘉惠 守其緒而相與遵奉之可矣 掌議宋寅老請余以記其事 淏劣不敢以不文固辭 略擣顛末而歸之 其永圖不墜焉

崇禎紀元後 四癸未 季夏 德殷 宋勉老 記

## 166. 이준하(李遵夏)

○ 민영환(閔泳煥)을 이조 참판으로, 이호준(李鎬俊)을 판돈녕부사로, 조동면(趙東冕)을 대사성으로, 황선경(黃善卿) · 백채진(白采鎮) · 엄석진(嚴錫晉)을 돈녕부 도정으로, 이준하(李遵夏)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을유(1885, 광서 11) 8월 8일(갑술) 맑음)

## 167. 정기찬(鄭基贊)

○ (전략)… 정기찬(鄭基贊)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한용원(韓龍源)을 아산 현감(牙山縣監)으로, 배익영(裴翼永)을 연천 현감(漣川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병술(1886) 3월 10일(계묘) 맑음)

○ 이조가 아뢰기를, “청하 현감(清河縣監) 송병필(宋秉弼)이 신병 때문에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정기찬(鄭基贊)과 서로 바꾸라.”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정해(1887) 3월 18일(병오) 맑음)

## 168. 송병필(宋秉弼)

○ 懷德縣監 : (落點)宋秉弼遷轉代 順興金炳休, 朴齊億 李輔仁 (□□政事冊) 戊子(고종25, 1888), 正月 二十九日)

## 169. 김병휴(金炳休)

○ 懷德縣監 : (落點) 金炳休遷轉代 春川任龜鎬, 申榕 李周弼 (□□政事冊□□ 己丑(고종26,1889) 三月 九日)

○ 2차 정사를 하였다. 김병휴(金炳休)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진성령(秦成濂)을 은율 현감(殷栗縣監)으로, 이용의(李用儀)를 함창 현감(咸昌縣監)으로, 석태연(石泰淵)을 흥해 군수(興海郡守)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5년 무자(1888) 1월 29일(신사) 막음)

## 170. 임구호(任龜鎬)

○ 懷德縣監 : (落點) 金炳休遷轉代 春川任龜鎬, 申榕 李周弼 (□□政事冊□□ 己丑(고종26,1889) 三月 九日)

○ 이비가 3차 정사를 하였다. 임구호(任龜鎬)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이철우(李徹愚)를 원주 판관(原州判官)으로 삼았다. 충청 중군 조기택(趙基澤)과 횡성 현감(橫城縣監) 홍종우(洪鍾雨)를 서로 바꾸었는데, 서로 바꾸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승정원일기□□ 고종 26년 기축(1889) 3월 9일)

## 171. 이승우(李承愚)

○ 민영국에게 전교하기를, “기기국 사사 이승우(李承愚)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에 제수 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경인(1890) 1월 29일(경오) 막음)

## 172. 이승린(李承麟)

“현감이후승린영세불망비](縣監李候承麟永世不忘碑) 계사삼월 일 립(癸巳三月 日立)”(□□대전 금석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087)

좌목. 김병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중략)… 이승린(李承麟)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조우영(趙祐永)을 거제 부사로, 남희덕(南熙德)을 영회원 수봉관으로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임진(1892, 광서 18) 1월 27일(정해) 막음)

### 173. 황종현(黃鍾玄)

○ 황종현(黃鍾玄)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민영수(閔泳壽)를 영광 군수(靈光郡守)로 삼았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2월 24일(정축) 막음)

○ 또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중학 교수 이병호(李秉昊), 서학 교수 이병성(李炳城), 남학 교수 이병옥(李炳錫), 회덕 현감(懷德縣監) 황종현(黃鍾玄)이 모두 신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2월 28일(신사) 막음)

### 174. 노옹우(盧應愚)

○ (전략)… 노옹우(盧應愚)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2월 28일(신사) 막음)

### 175. 김준근(金俊根)

○ (전략)…, 김준근(金俊根)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안윤명(安潤明)을 사천 현감(泗川縣監)으로, 유계환(兪啓煥)을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권석희(權錫熙)를 평구도 찰방(平邱道察訪)으로 삼았다. 종정경(宗正卿)에 이현영(李永)을 단부하고, 수(守) 의주부윤 통상사무(義州府尹通商事務)에 조만승(曹萬承)을 단부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3월 10일(임진) 막음)

○ 윤정구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통례원 좌통례 이병옥(李炳錫), 사복시 정 윤두병

(尹斗炳), 동학 교수 송정섭(宋廷燮), 경주 부윤(慶州府尹) 김용원(金容元), 회덕 현감(懷德縣監) 김준근(金俊根)이 모두 신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3월 13일(을미) 맑음)

## 176. 박용석(朴容奭)

○ (전략)... 박용석(朴容奭)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중략)... 삼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3월 13일(을미) 맑음)

○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충청 감사 조병호(趙秉鎬)의 장계 내에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용석(朴容奭)을 먼저 파출하고 그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박용석이 현재 임소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羅將)을 보내어 잡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나수(拿囚)하라.” 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4월 13일(기미) 맑음)

○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용석(朴容奭)은 전에 도신(道臣)의 계사로 인하여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나수(拿囚)하라는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특별히 임명시키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대명하기를 기다려 나수하라.’고 전에 행회(行會)했던 것을 시행하지 말도록 해도의 도신에게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4월 21일(정묘) 맑음)

## 177. 이규서(李圭瑞)

○ 이비가 2차 정사를 하였다. 정인희(鄭寅羲)를 청양 현감(青陽縣監)으로, 이규서(李圭瑞)를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 (중략)... 삼았다(□□승정원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개국 503) 11월 17일(기축) 맑음

○ 외부 협판 윤치호(尹致昊), 회덕 군수(懷德郡守) 이규서(李圭瑞), 신녕 군수(新寧郡守)

권재기(權載紀), 한산 군수(韓山郡守) 백낙형(白樂亨)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2년 을미(1895, 개국 504) 11월 8일(갑진) 맑음)

## 178. 장덕근(張德根)

○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장덕근(張德根)을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삼았다. (□□승정원 일기□□ 고종 31년 갑오(1894) 4월 17일(계해) 흐림

## 179. 신재림(申載臨)

○ 회덕 군수(懷德郡守) 신재림(申載臨), 부여 군수(扶餘郡守) 한재익(韓在益)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병신(1896) 4월 15일 맑음)

## 180. 조용희(趙用熙)

○ 궁내부 종목과 주사(宮內府種牧課主事) 이유관(李有觀), 의릉 참봉(義陵參奉) 정세귀(鄭世龜), 태인 군수(泰仁郡守) 이병익(李秉翼), 회덕 군수(懷德郡守) 조용희(趙用熙), … (중략) … 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5월 6일 (갑오) 맑음)

## 181. 노사엄(盧士儼)

懷德郡守盧士儼 字 汝敬 豊川人 租九斗三升 太一斗 咸陽池谷及咸陽邑(濫溪書院 □□哀寶錄□□)

## 182. 조철하(趙哲夏)

○ 탁지부 대신 조병직(趙秉稷)이 삼가 아뢰기를, “결전(結錢)의 납부를 지체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논주(論奏)를 거쳤습니다. …(중략)… 무술년분을 많이 체납한 전 회덕

군수(懷德郡守) 조철하(趙哲夏), …(중략)… 은 이미 체차되었다고 해서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형률에 비추어 징계 처리하고, …(중략)…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승정원 일기□□ 고종 36년 기해(1899) 12월 17일(경인, 양력 1월 17일) 막음)

### 183. 민병성(閔丙星)

○ (전략)… 회덕 군수(懷德郡守)에 민병성(閔丙星)을 임용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기해(1899) 6월 25일(신축, 양력 8월 1일 막음)

### 184. 김윤환(金閨煥)

좌목 ○ 이두희(李斗喜)를 의릉 참봉에 임용하고, …(중략)… 김윤환(金閨煥)을 회덕 군수(懷德郡守)에 임용하고, …(하략)… 홍봉관(洪鳳觀)을 고원 군수(高原郡守)에 임용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39년 임인(1902, 광무 6), 7월 23일(신사, 양력 8월 26일))

○ 영희전 영 민영완(閔泳完), …(중략)… 회덕 군수(懷德郡守) 김윤환(金閨煥), …(중략)… 고성 군수(固城郡守) 이완수(李完洙)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40년 계묘(1903, 광무 7) 6월 28일(경진, 양력 8월 20일))

“김윤환 위 수비편에 보인다.

고종 계묘(1903)에 회덕군수로 부임해 정자에 올라 시를 지었는데,  
‘벼슬길 돌아서 비풍(比豐;懷德)을 맡게 되어 먼저 이 루(樓)에 오르니,  
홍련(紅蓮)과 흰 달은 맑은 가을과 함께 하는 구나.  
천 층 계족산은 그림 중에 서 있고,  
십리 용호(龍湖)는 주렴 밖에서 흐르는구나,  
문물(文物)이 살아 빛내어 함께 기뻐하니,  
술과 시는 더욱 흥을 내어 소주(韶州)로부터 나오는 구나,  
침벽(枕碧) 유래한 인연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작은 둑의 대나무와 담의 소나무 푸르러 그윽하구나.’하고 하였다.

그리고 김윤환의 송덕비가 진잠면 학하리에 있다. 명(銘)에 이르되,

‘단양(丹陽)에서는 보리에 부쳤고,  
청주(淸州)에서는 백성을 살렸으니  
공의 어진 덕 아니라면  
누가 그 같은 인(仁)이라.’  
□□조선환여승람□□ 「누정□□ ‘침벽정(枕碧亭)’

## 185. 조동준(趙東濬)

“군수조후동준영세불망비(郡守趙候東濬永世不忘碑) 갑진 9월 일립(甲辰九月 日立)”(□□대전  
금석문□□, 대전광역시사편찬우원회, 1095쪽)

동궁이 하례를 받고 선온하고 사찬할 때의 춘방과 계방 이하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시강원 침사 민영린(閔泳璘)에게 반숙마 1필을 사급(賜給)하라. 예모관인 부첨사 윤우식(尹雨植)은 가자(加資)하라. 시독관 이범석, 윤하영(尹夏榮), 신성균(申性均), 박제황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시종관 정인헌(鄭寅獻), 김용완(金容完), 홍난유(洪蘭裕), 조동준(趙東濬), 김택진(金宅鎮), 조남익(趙南益), 김황진(金璜鎮), 정재덕(鄭在惠)은 모두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라. (□□승정원일기□□ 고종 40년 계묘(1903, 광무 7) 2월 8일(계사, 양력 3월 6일)

학부 편집국장(學部編輯局長) 채범석(蔡範錫)을 겸임 사범학교장에 임용하고, …(중략)…  
회덕 군수(懷德郡守) 조동준(趙東濬)을 태안 군수에 임용하고, 정3품 유봉근(柳鳳根)을 회덕 군수에 임용하고, 종2품 방한덕(方漢德)을 남양 군수(南陽郡守)에 임용하고, 창원감리서 주사(昌原監理署主事) 남상칠(南相七)을 용안 군수(龍安郡守)에 임용하고, 정3품 김형두(金亨斗)를 연풍 군수(延豐郡守)에 임용하고, 전라남도관찰부 주사 김정기(金正基)를 익산 군수(益山郡守)에 임용하고, 6품 이종석(李種奭)을 서천 군수(舒川郡守)에 임용하고, 정3품 이시재(李時宰)를 김제 군수(金堤郡守)에 임용하고, 정3품 이승우(李承宇)를 순천군수(順川郡守)에 임용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43년 병오(1906, 광무 10) 2월 14일(신해, 양력 3월 8일) 막음)

## 186. 구주현(具周鉉)

召見懷德郡守具周鉉及縉紳章甫五十七人。大田驛少駐時陞見也(□□純宗實錄□□ 3卷, 隆熙 3年  
1月 7日 陽曆)

## 187. 강원노(姜元魯)

(隆熙 年 3月 丙辰(1916) 皇帝遣臣懷德郡守姜元魯 致祭于宋浚吉云云)(宋鳳基 所藏 古文書)



대덕문화총서제11호

## 회덕현감과 대덕군수 및 구청장

大德縣  
縣  
署  
印

大德縣  
縣  
署  
印

大德縣  
縣  
署  
印

大德縣  
縣  
署  
印



## IV. 회덕현감과 대덕군수 및 구청장

### 1. 歷代 懷德縣監

번호	이름	도임일	이임일	재직일	재임기간	생진, 음보	문무파	체직사유
1	박성치 (朴成治)		1430(세종12) 윤12.12					
2	박염 (朴恬)		1440(세종22) 3.28					파직
3	노진해 (盧晉諧)	1441(세종23) 7.22	(1442.2.15?)		232	1435(세종17) 1436(세종18) 중시		
4	윤위인 (尹爲仁)	1442(세종24) 2.15	1443(세종25) 7.16 이전					
5	황의현 (黃義軒)		1448(세종25) 7.16			1442(세종24)		파직
6	홍계생 (洪繼生)	1451(문종1) 7.19						
7	유맹지 (柳孟智)			1451(문종1) 전후				
8	강순 (姜循)		1467(세조13) 1.22					파직
9	홍군(?) (洪君?)			1462(세조8)				
10	홍계생 (洪季生)			1471(성종2)-1472 (성종3)사이				
11	이달손 (李達孫)			1478(성종9) 11.5 이전				파직
12	정일보 (鄭一寶)	1480(성종11) 2.13						

13	이성생 (李誠生)	1478(성종9) 7.14	1480(성종11) 2.12		568			파직
14	문걸 (文傑)			1480(성종11) 이전			1480(성종11)	
15	우계노 (禹繼老)			1480(성종11) 2-1497연산3) 2(이전)				
16	강희신 (姜熙臣)	1508(중종3) 4.17				1496 (연산2)생		
17	오황 (吳滉)	1516(중종11)	1518(중종13)					파직
18	정승주 (鄭承周)		1525(중종20) 12.19		1510 (중종5)진	1517(중종12)	파직	
19	양의 (梁儀)			1550(명종5)-1557 (명종12)				
20	김사수 (金師秀)			1540(중종35) 1553(명종8)				
21	권덕린 (權德麟)			1553(명종8) 1573(선조6)				
22	안경빈 (安敬賓)			1558(명종13) 전후			1558(명종13)	
23	윤응지 (尹應之)			1561년(명종16) 1576(선조9)				
24	민천부 (閔天符)		1565 (명종20)9		1552 (명종7)생	1558(명종13)		
25	고응척 (高應陟)	1570 (선조3)경					1549(명종16)	
26	김복억 (金福億)			1573(선조6)-1594 (선조27)	1573 (선조6)진			

27	이간 (李幹)	1575년 (선조8)	1582년 (선조15)		2160	음보		
28	최세해 (崔世瀞)			1574 (선조7)이전				
29	박광전 (朴光前)	1587(선조20)				1568 (선조1)진		
30	정효성 (鄭孝誠)	1589 (선조22)이후	1595 (선조28)6.9					파직
31	양응춘 (楊應春)			1592(선조25)				
32	남경성 (南景誠)	1592(선조25) 12경					*무과1584 (선조17)	
33	노세준 (盧世俊)		1597(선조30) 7.28			1501 (연산7)생	1522(중종17)	파직
34	양억 (梁嶽)	1604(선조37) 윤9.26						
35	유계룡 (柳季龍)		1617(광해군9) 4.25			1591 (선조24)진		파직
36	윤효생 (尹孝生)		1618(광해군 10)8.17					파직
37	심척 (沈惕)			1623(인조1)				
38	노희천 (盧希天)	1626(인조4) 7.18	1627(인조5) 7.26		404	(蔭官?)		파작
39	유면증 (俞勉曾)			1635(인조13) 10.20재임		1606 (선조39)진		
40	지봉수 (池鳳邃)	1639(인조17) 1.3	1639(인조17) 3.19		52			파직
41	조송년 (趙松年)	1639(인조17) 4.4	1641(인조19) 5.17		733			파직

42	장귀한 (張歸漢)	1641(인조19) 5.20						
43	안경심 (安景深)			1641(광해군6) 9.14 이전		1589 (선조22)진	1616 (광해군8)	
44	조창우 (曹昌宇)	1645(인조23) 11.23						
45	김향 (金嚮)	1648(인조26) 12.19						
46	김자회 (金自晦)	1649(효종즉 위년)12.26						
47	박린 (朴麟)			1649(효종즉 위년).12.28				
48	조옥 (趙沃)	1651(효종2) 7.9						
49	유지화 (柳志和)	1653(효종4) 10.						
50	김단 (金湍)	1656(효종7) 1.16	1656(효종7) 10.19		275			파직
51	박명우 (朴明宇)	1656(효종7) 10.21						
52	심강 (沈樞)			1657(효종8) 이후		1657 (효종8)생		
53	유성오 (柳誠吾)	1660(현종원 년).11.7	1661(현종2) 9.18		315	1663 (인조11)진		父喪
54	이수익 (李壽翼)	1661(현종2) 9.22				1648 (인조26)생		
55	이운 (李淳)耘?	1663(현종4) 11.10	1664(현종5) 11.2		352	1651 (효종2)진		
56	허찬 (許贊)	1664(현종5) 11.3				1642 (인종20)생		

57	황진구 (黃震壽)	1667(현종7) 7.26					
58	이군섭 (李君燮)		1666(현종7) 7.20 이전				
59	한성보 (韓聖輔)	1668(현종9) 12.26	1669(현종10) 12.20 이전				
60	이정기 (李鼎基)	1669(현종10) 12.26	1670(현종11) 1.24		28	1650 (효종1)생	질병
61	이민정 (李敏政)	1670(현종11) 1.25				1657 (효종8)생	
62	윤정하 (尹徵夏)	1671(현종12) 8.18	1676(숙종2) 6.2??			1660 (현종1)진	파직
63	반윤기 (潘潤沂)	1676(숙종2) 5.5				1646 (인조24)생	1648(인조26)
64	조순원 (趙淳源)	1677(숙종3) 6.22	1677(숙종3) 7.12		20		무능
65	홍진 (洪璡)	1677(숙종3) 7.15				1654 (효종5)진	
66	이증현 (李曾賢)	1678(숙종4) 8.16					
67	이동백 (李東白)	1679(숙종5) 4.19					
68	윤추 (尹推)	1682(숙종8) 6.21	1683(숙종9) 8.23		382		중병
69	심력 (沈櫟)	1683(숙종9) 8.24	1683(숙종9) 8.25				상피 개차
70	정정양 (鄭正陽)	1683(숙종9) 8.27	1683(숙종9) 9.18		21		
71	최세경 (崔世慶)	1683(숙종9) 9.18					

72	이지렴 (李之濂)	1684(숙종10) 3.25					
73	정익주 (鄭翊周)	1684(숙종10) 4.12	1686(숙종12) 2.7		499	1675 (숙종1)생	
74	심정기 (沈廷耆)	1688(숙종14) 12.22				음직	
75	이인망 (李仁望)	1689(숙종15) 5.14					
76	권태시 (權泰時)	1690(숙종16) 10.27	1694(숙종20) 윤5.17		2280		병증 과출
77	안세정 (安世徵)	1694(숙종20) 윤5.21				1675 (숙종1)진	1675(숙종1)
78	강석범 (姜錫範)	1694(숙종20) 8.19	1697 (숙종23).4.8		239		부모 위증 과출
79	이수만 (李綏晚)	1697(숙종23) 5.11				1689 (숙종15)진	
80	유만령 (柳萬齡)	1698(숙종24) 6.19	1698 (숙종24).6.22		3		상파 改差
81	이연 (李縵)	1698(숙종24) 6.24	1702 (숙종28).3.13		1369		부병 과증
82	이정천 (李挺天)	1702(숙종28) 3.18	1702 (숙종28).9.9		171		병증 과출
83	임명원 (任命元)	1702(숙종28) 9.10	1702 (숙종28).9.12		2	1675 (숙종1)진	改差
84	남반 (南磐)	1702(숙종28) 9.13					
85	이제설 (李齊說)	1702(숙종28) 9.24					
86	허전 (許塽)	1702(숙종28) 9.29	1705 (숙종31).8.19		1010	1679 (숙종5)진	사망

87	남궁체 (南宮塏)	1705(숙종31) 8.19			1687 (숙종13)진		
88	조기지 (趙紀之)			1700(숙종26) 전후			
89	최침 (崔沈)	1713(숙종39) 9.10			1682 (숙종8)생		
90	구창주 (具昌柱)	1715(숙종41) 1.17					
91	조정강 (趙正綱)	1715(숙종41) 1.23			1696 (숙종22)생		
92	강찬 (姜纘)	1718(숙종44) 8.11	1720 (숙종46).5.11		510	1699 (숙종25)생	도친 상
93	조명국 (趙鳴國)	1720(숙종46) 5.11	1720 (숙종46).5.13			1699 (숙종25)진	상피 改差
94	민창하 (閔昌夏)	1720(숙종46) 5.15				1691 (숙종17)진	
95	서종일 (徐宗一)	1723(경종3) 3.25	1724(영족즉 위년).10.8		943		세금 미납 파출
96	이간 (李柬)	1725(영조1) 1.26	1725(영조1) 12.27		323		체직
97	최중정 (崔重鼎)			1725(영종원 년).9.11 이전		1684 (숙종10)진	
98	조이숙 (趙爾翹)	1659(효종10) 6	1660(효종11) 10.23		473		사망
99	유신 (柳紳)	1726(영조2) 1.14	1727(영조3) 윤3.5		372		
100	조정속 (趙廷漣)	1727(영조3) 6.13	1728(영조) 7.25		368		정죄 파직
101	이흡 (李瀉)	1728(영조4) 7.25	1728(영조4) 8.16				증병 파직

102	이구휴 (李龜休)	1728(영조4) 8.16	1728(영조4) 8.23					질병 파직
103	송국위 (宋國緯)	1728(영조4) 8.28					1717(숙종43)	
104	조화벽 (趙和璧)	1732(영조5) 윤5.29						
105	이상요 (李相堯)	1733(영조9) 6.11		거사비(불명)				
106	이홍모 (李弘模)	1735(영조11) 8.23				음보		
107	서종협 (徐宗浤)	1735(영조11) 9.19	1739(영조15) 6.25			1719 (숙종45)진		파직
108	정석범 (鄭錫範)			1738(영조14) 1.18		1721 (경종1)진		
109	이덕항 (李德恒)	1739(영조15) 7.2	1739(영조15) 7.27					
110	황호원 (黃顥源)	1739(영조15) 9.6	1739(영조15) 10.12		36			중병 파출
111	이익현 (李益炫)	1739(영조15) 10.16						
112	홍성규 (洪聖揆)	1741(영조17) 7.25	1742(영조18) 9.15					우유 부단 파출
113	이연환 (李彦煥)	1742(영조18) 9.21	1747(영조23) 11.21					拿囚
114	정운유 (鄭運維)	1748(영조24) 4.18	1750(영조26)			1735 (영조11)생	1756(영조32)	
115	이준 (李浚)	1751(영조27) 2.2	1753(영조29) 2.27		1854			파직
116	임지호 (林志浩)	1753(영조29) 5.21	1753(영조29) 7.18		57			질병 파출

117	정완 (鄭完)	1753(영조29) 7.18	1754(영조30) 12.21		513			
118	오숙 (吳璣)	1754(영조30) 12.28						
119	김윤승 (金允升)	1755(영조31) 10.9	1757(영조33) 7.2		563	1726 (영조2)생		
120	정경순 (鄭景淳)	1757(영조33) 7.18				1744 (영조20)진		
121	김리복 (金履復)	1758(영조34) 7.13	1758(영조34) 7.17		4			회덕에노비소유개차
122	민백분 (閔百奮)	1758(영조34) 12.30	1759(영조35) 1.22		22			회덕에田을소유개차
123	윤동철 (尹東喆)	1759(영조35) 1.24	1759(영조35) 1.26		2			
124	조재우 (趙載遇)	1759(영조35) 1.27	1759(영조35) 10.22		265			
125	윤득홍 (尹得弘)	1759(영조35) 11.29			5			
126	정극순 (鄭克淳)	1759(영조35) 12.5	1759(영조35) 12.6			1729 (영조5)진		사직파직
127	김명노 (金鳴魯)	1760(영조36) 6.25						
128	이득영 (李得永)	1762(영조38) 1.16						
129	유운 (柳漸)	1764(영조40) 6.30				음보		

130	김상구 (金相龜)	1770(영조46) 6.22					
131	박사흠 (朴師欽)	1770(영조46) 12.29		1770(영조46) 12.29			
132	이서규 (李瑞圭)	1771(영조47) 8.17					
133	조기현 (趙基顯)	1772(영조48) 7.27					
134	윤득휘 (尹得徽)	1775(영조51) 6.20					
135	이수빈 (李壽彬)	1776(정조즉 위년).5.11					
136	심정진 (沈之鎮)?	1777(정조원 년).10.9					
137	한상목 (韓尙默)	1781(정조5) 7.30					
138	박광회 (朴光晦)		1784(정조8) 7.9				
139	이상기 (李尙琦)		1787(정조11) 9.30				
140	홍경후 (洪景厚)	1787(정조11) 9.30			蔡弘覆薦		
141	김박연 (金博淵)			1801(순조1)			
142	강세정 (姜世靖)		1803(순조3) 12.11		1783 (정조7)진		
143	임중백 (任重白)	1808(순조8) 1.28			蔭補 吳鼎源薦		
144	이보한 (李普漢)		1815(순조15) 2.11				파직

145	유준 (柳燭)			1822(순조22) 8.24			
146	송유재 (宋儒載)	1817(순조17) 9.15		1822(순조22) 이전	蔭補 李相璜薦		
147	전윤담 (全允淡)			1822(순조22) 이후			
148	홍리섭 (洪履燮)	1823(순조23) 12.22			李紀淵薦		
149	조운구 (趙雲龜)	1828(순조28) 6.24	1829(순조21) 11.30		1804 (순조4)진 任星鎮薦		파직
150	여동규 (呂東奎)			1831(순조31) 전후	1810 (순조10)진		
151	윤희대 (尹希大)			1833(순조33)			
152	김고근 (金敲根)	1835(현종원 년).12.22			蔭補, 朴潤榮薦		
153	서원보 (徐元輔)	1858(철종9) 6.14		1837(현종3)-1873 (고종10)	1837 (현종3)진 李參鉉薦		
154	홍신모 (洪莘謨)		1854(철종5) 5.15				
155	유승근 (柳承根)	1854(철종5) 5.15	1858(철종9) 6.13		1338	1835 (현종1)생 黃浩民薦	
156	김낙균 (金樂均)	1860(철종11) 12	1864(고종1) 9.2		약 1142		
157	송재성 (宋在誠)	1864(고종원 년).12.27				1819 (순조19)진	
158	이교선 (李敎善)	1865(고종2) 12.22	1867(고종4) 4.24		826	1874 (고종 11) 進李守曾薦	

159	홍재정 (洪在鼎)	1867(고종4) 4.24			1848 (현종14)진		
160	이인익 (李寅翼)	1871(고종8) 1.13					
161	김현순 (金獻淳)			1843(현종9) 전후			
162	홍용주 (洪用周)	1873(고종10) 1.13	1875(고종12) 9.3.이전				
163	안영식 (安榮植)	1875(고종12) 9.3	1879 (고종167)		成載玉薦		
164	남정린 (南廷麟)	1879(고종16) 2.11	1881(고종18)				
165	윤영현 (尹永顯)	1884(공21) 2.20	1885(고종22) 8.7		507		
166	이준하 (李遵夏)	1885(고종22) 8.8	1886(고종23) 3.9		198		
167	정기찬 (鄭基贊)	1886(고종23) 3.10	1887년(고종 24)3.18		367	1861 (칠종12)진	
168	송병필 (宋秉弼)		1888(고종25) 1.29이전				
169	김병휴 (金炳休)	1888(고종25) 1.29	1889년(고종26) 3.8		369	1859 (칠종10)진	
170	임구호 (任龜鎬)	1889(고종26) 3.9	1890(고종27) 1.29		290		
171	이승우 (李承愚)	1890(고종27) 1.29	1892(고종29) 1.26		687		
172	이승린 (李承麟)	1892(고종29) 1.27	1893(고종30) 2.23		356	1882) (고종19)진	
173	황종현 (黃鍾玄)	1893(고종30) 2.24	1893(고종30) 2.28		5		

174	노옹우 (盧應愚)	1893(고종30) 2.28	1893년(고종30) 3.10		12			체직
175	김준근 (金俊根)	1893(고종30) 3.10	1893(고종30) 3.13		4			
176	박용석 (朴容奭)	1893(고종30) 3.13	1894(고종31) 4.13		373	1876 (고종13)진		
177	이규서 (李圭瑞)	1894(고종31) 11.17	1895(고종32) 11.8		351			
178	장덕근 (張德根)	1894(고종31) 4.17	1894(고종31) 7.14		82			
179	신재림 (申載臨)	1895(고종31) 11.9	1896(건양1) 4.15		126			의원면직
180	조용희 (趙用熙)	1896(고종33) 4.15	1897(고종34) 5.6		331			의원면직
181	노사엄 (盧士儼)			1895(고종32) 이후				
182	조철하 (趙哲夏)			1899(고종36)				체직
183	민병성 (閔丙星)	1899(고종36) 6.25						
184	김윤환 (金閏煥)	1902(광무6) 7.23	1903(광무7) 6.28		305	1891 (고종28)진		
185	조동준 (趙東濬)	1903(광무7) 6.27	1904(광무8)9					
186	구주현 (具周鉉)			1909(순종2) 1.7				
187	강원노 (姜元魯)			1917(융희3)				

## □□政事冊□□의 회덕현감 삼방(三望)과 낙점(落點)자

정사일	수망	차망	말망
을묘 8월 23일 (영조11, 1735)	○ 副護 李弘模(蔭, 折衝)	監察 閔宸英	禁都 趙階
을해 10월 9일 (영조31, 1755)	○ 軍判 金允升	獻陵令 朴時晉	禁都 洪有徵
갑신 6월 30일 (영조40, 1764)	○ 盈主 柳澑(蔭, 通訓)	賓都 尹得霖	工正 李德溥
정미 9월 30일 (정조11, 1787)	○ 僕判 洪景厚(進通訓 蔡弘覆薦)	翼令 沈原之	漢庶 丁載遠
무진 정월 27일 (순조8, 1808)	○ 市令 任重白(蔭, 通訓 吳鼎源薦)	樂主 金敬烈	漢主 嚴載
정축 9월 15일 (순조17, 1817)	禁都 宋欽大	○ 翼陵令 宋儒載 (蔭, 通訓, 李相璜等薦)	顯隆令 朴肯源
계미 12월 22일 (순조23, 1823)	○ 儀都 洪履燮(進朝奉 李紀淵薦)	用判 李憲三	漢主 李敬會
무자 6월 24일 (순조28, 1828)	○ 廟令 趙雲龜(進士通訓 任星鎮薦)	健令 徐有皓	軍主 李正履
을미 12월 22일 (현종원년, 1835)	○ (尹希大遷轉代)特判金敲根 (蔭, 通訓 朴潤榮薦)	慕令 崔璜	健元令 韓容鼎
갑인 5월 15일 (철종5, 1854)	○ (洪莘謨遷轉代) 廣主 柳泳根 (進 通訓, 黃浩民薦)	刑佐 金正秀	廟令 林喜鎮
무오 6월 14일 (철종9, 1858)	○ (柳承根遷轉代) 崇陵令 徐元輔 (進 通訓, 李參鉉薦)	光陵令 金正秀	孝陵令 曺演承
을축 12월 22일 (고종2, 1865)	(宋在誠居下代)用判洪萬燮	○ 徽陵令李教善 (通訓, 李守曾薦)	明陵令 尹永善
정묘 4월 24일 (고종4, 1867)	○ (辛教善罷黜代)景慕令 洪在鼎 (進士, 通訓)	翼陵令 李象準	用判 洪佑龍
을해 9월 3일 (고종12, 1875)	○ (洪用周遷轉代)廣令 安榮植 (成載玉薦)	勳都 南廷翊	宣陵令 沈東贊
무자 정월 29일 (고종25, 1888)	(宋秉弼遷轉代)順興金炳休	朴齊億	李輔仁
기축 3월 9일 (고종26, 1889)	(金炳休遷轉代) 春川任龜鎬	申榕	李周弼
경인 정월 29일 (고종27, 1890)	單 李承愚 除授 事承傳		

\* ○ 표시는 낙점자임

## 忠賢書院 □□尋院錄□□ 에 기록된 회덕현감

을해10월 념일	杞溪俞勉曾·尙曾	충현서원심원록	
기묘계동 26일	趙松年	충현서원심원록	

## 2. 歷代 大德郡守

구 분	성 명	경력	재임기간	비고
1代	정영진(鄭英鎮)		49.1.8~49.8.20	
2代	김홍식(金洪植)	公州郡守, 道社會課長	49.8.21~50.12.25	
3-5代	이건호(李建浩)	青陽郡守, 道社會課長	50.12.26~51.2.24 52.3.26~52.10.29	大德, 儒城
4代	이원목(李源穆)	青陽郡守	51.2.25~52.3.25	青陽
6代	권병식(權炳軾)	道文政課長	52.10.30~53.12.8	公州
7代	김윤환(金允煥)	忠淸南道知事, 農協中央會長	53.12.9~54.11.10	西山
8代	전시영(田始榮)	論山·保寧郡守	54.11.11~57.4.1	論山
9-11代	정범호(鄭範好)	禮山郡守	57.4.2~59.10.10 60.5.13~60.10.3	禮山
10代	송인덕(宋寅惠)	道糧政·學務課長	59.10.11	大德 新灘津
12代	조인행(趙仁行)	道學務課長, 扶餘郡守	60.11.9~61.7.3	天原
13代	이승규(李承圭)	瑞山·錦山郡守, 大田市副市長	61.7.17~64.7.18	青陽

14代	<b>최광택(崔光澤)</b>	洪城郡守	64.7.19–66.5.31	論山
15代	<b>유옹렬(柳雄烈)</b>	燕岐·公州郡守	66.6.1–67.12.4	大德 炭洞
16代	<b>송희섭(宋喜燮)</b>	燕岐·保寧·論山·瑞山郡守, 道糧政·保社局長	67.12.15–69.7.10	大德 新灘津
17代	<b>박옥래(朴昱來)</b>	扶餘·論山·唐津郡守, 道保社局長	69.7.11–71.8.20	瑞山
18代	<b>이돈구(李敦求)</b>	青陽·天原郡守, 天安市長	71.8.21–73.5.7	天原
19代	<b>송우빈(宋佑彬)</b>	燕岐·天原·禮山·牙山·公州郡守, 道商工局長, 天安市長, 大田市副市長	73.5.8–74.7.31	大德 東面
20代	<b>박창희(朴昌義)</b>	舒川·瑞山·論山郡守	74.8.1–76.4.11	大田
21代	<b>조기탁(曹基鐸)</b>	公州·論山郡守, 大田市長	76.4.12–79.7.4	舒川
22代	<b>이근영(李根永)</b>	錦山·扶餘郡守, 道殖產·內務局長, 天安市長, 公州市長	79.7.5–80.7.24	牙山
23代	<b>박찬무(朴贊武)</b>	青陽·瑞山郡守, 道保社局長, 公州市長	80.7.25–81.7.5	扶餘
24代	<b>박영목(朴永穆)</b>	瑞山郡守, 道農政·內務局長, 大田 市企劃管理室長	81.7.6–82.7	瑞山
25代	<b>조국환(曹國煥)</b>	唐津·保寧郡守, 道山林局長, 大德 郡醫療保險組合長	82.7.24–85.3.23	大田
26代	<b>김선규(金善圭)</b>	青陽·洪城郡守, 禮唐農地改良組合長	85.3.24–85.12.31	瑞山
27代	<b>민경희(閔庚徽)</b>	舒川·牙山郡守	86.1.1–86.12.23	扶餘
28代	<b>김홍태(金興泰)</b>	青陽·唐津·扶餘·論山郡守	86.12.24–87.9.10	扶餘
29代	<b>김덕중(金惠中)</b>	大田中區廳長, 溫陽·天安副市長	87.9.11–	論山

### 3. 歷代 大德區廳長

구 분	성 명	경 력	재임기간	비 고
1代	강원조(姜元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산군수</li> <li>• 대전시 건설본부장</li> </ul>	1989.1.1~1990.11.15	
2代	송일영(宋日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 중구청장</li> </ul>	1990.11.16~1993.3.28	
3代	정춘희(鄭春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 건설주택국장</li> </ul>	1993.3.29~1994.1.2	
4代	한범덕(韓凡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무부 근무</li> <li>• 대전시 환경녹지국장</li> </ul>	1994.1.3~1995.6.13	
5代	오희중(吳熙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탄진농협 조합장</li> <li>• 대전광역시의회 의원</li> <li>• 자민련대덕구지구당위원장</li> </ul>	1995.7.1~1998.6.30	
6代	"	"	1998.7.1~2002.6.30	
7代	"	"	2002.7.1~2003.12.16	
8代	김창수(金昌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일보 기자</li> <li>•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li> <li>• 새천년민주당 대덕지구당위원장</li> <li>• 노무현 대통령후보 대전선거 대책본부장</li> <li>• 대통령선거백서 편집위원장</li> </ul>	2004.6.5~2006.6.30	
9代	정용기(鄭容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대 한나라당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li> <li>• 한나라당 대덕구지구당 위원장</li> <li>• 한나라당 행정자치심의위원</li> <li>• 한나라당 지방자치 지도위원</li> </ul>	2006.7.1~현재	

대덕문화총서제11호

## 참고문헌



## V. 참고문헌

- ▶ 輿地圖書
- ▶ 經國大典
- ▶ 政事冊
- ▶ 尋院錄, 충현서원
- ▶ 朝鮮王朝實錄 DB
- ▶ 承政院日記 DB
- ▶ 日省錄 DB
- ▶ 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DB
-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DB
- ▶ 懷德邑誌
- ▶ 湖西邑誌
- ▶ 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 ▶ 양승률, 大德의 題詠記, 대덕구·대덕문화원, 2006.
- ▶ 大田金石文,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5.
- ▶ 大田地理志,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6.
- ▶ 續大德郡誌, 大德郡, 1988.
- ▶ 任先彬, 「朝鮮初期 守令制度의 變遷과 運營」,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附屬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金東栓, 「朝鮮前期 守令制度 研究」, 사학지 21, 1987.
- ▶ 林容漢, 「조선초기 수령제 개혁과 그 운영-태종~세종 연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1998.
- ▶ 李義權, 「朝鮮後期의 守令과 統治機能」, 전라문화논총,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88.
- ▶ 具玩會, 「先生案을 통해 본 朝鮮後期의 守令」, 慶北史學 4, 1982.
- ▶ 具玩會, 「世宗朝의 守令六期法」, 경북사학 11, 1988.
- ▶ 李存熙, 「朝鮮初期의 守令制度」, 역사교육 30·31 합집, 1982.
- ▶ 鄭求福, 「조선시대 자문(尺文)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11, 1997.
- ▶ 김웅호, 「17세기 守令薦舉制의 보완과 그 운영」, 한국사론 40, 1998.
- ▶ 김혁, 「조선후기 수령의 부임의례-이제난고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2, 2002.
- ▶ 유지영, 「조선시대 관원의 呈辭와 그 사례」, 藏書閣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 金成俊, 「朝鮮守令七事와 牧民心鑑」, 민족문화연구 21, 1988.